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제4차 경상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22~'26) 수립 용역 보고서**

2022. 12.



경상남도
GYEONGNAM

제 출 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관에서 의뢰하신 「제4차 경상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용역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사)한국분석연구원
원장/책임연구원 김 창 재

참여연구진

연 구 원 : 오 민 석

연 구 원 : 장 나 진

연 구 원 : 안 성 훈

연 구 원 : 김 가 램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6
제2절 연구의 수행절차	7
제2장 교통약자 현황 및 관련계획	9
제1절 교통약자 현황 및 이동실태	11
1. 교통약자의 정의	11
2. 전국 교통약자 현황	11
3. 경상남도 교통약자 현황	16
4. 교통약자 이동실태	24
제2절 관련법령 및 계획	28
1. 관련법령	28
2. 상위계획 검토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36
제3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현황 및 분석	63
제1절 경상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추진실적	65
1. 전국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추진실적	65
2. 경상남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추진실적	67
제2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성과분석	142
1.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142
2.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144
3. 이동편의시설 이용자 만족도	145
제3절 경상남도 교통복지지표	150
1. 경상남도 교통복지지표 평가	150
2. 경상남도 교통복지지표 평가 분석	157

제4장 경상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지원 계획 161

제1절 계획의 비전과 목표 163

- 1. 경상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현황과 전망 163
- 2. 경상남도 제4차 계획의 비전과 목표 166

제2절 세부계획과 전략설정 173

- I.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확대 173
 - 1. 저상버스의 도입 확대 173
 - 2. 특별교통수단 보급 및 지원 186
 - 3. 바우처택시 도입확대 194
- II.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197
 - 1. 보행환경 개선 197
 - 2. 이동편의시설 개선 209
 -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효율화 226
- III.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247
 - 1. 교통복지협의회 구성 247
 -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실행 제고 249
- IV.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250
 - 1.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강화 250
 - 2. 포용적 교통복지 문화 조성 252

제5장 예산 및 투자계획 255

제1절 소요사업비 검토 257

제2절 연차별 투자계획 264

제3절 투자재원 분담방안 265

제6장 부록 269

제1절 중간 및 최종보고서 주요의견 및 조치사항 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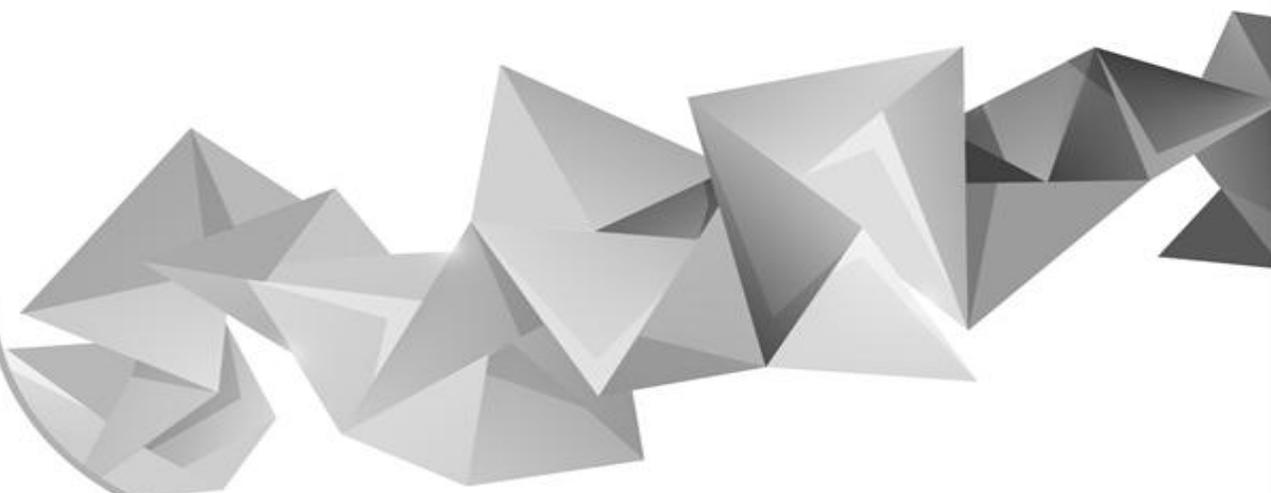
제2절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274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절 연구의 수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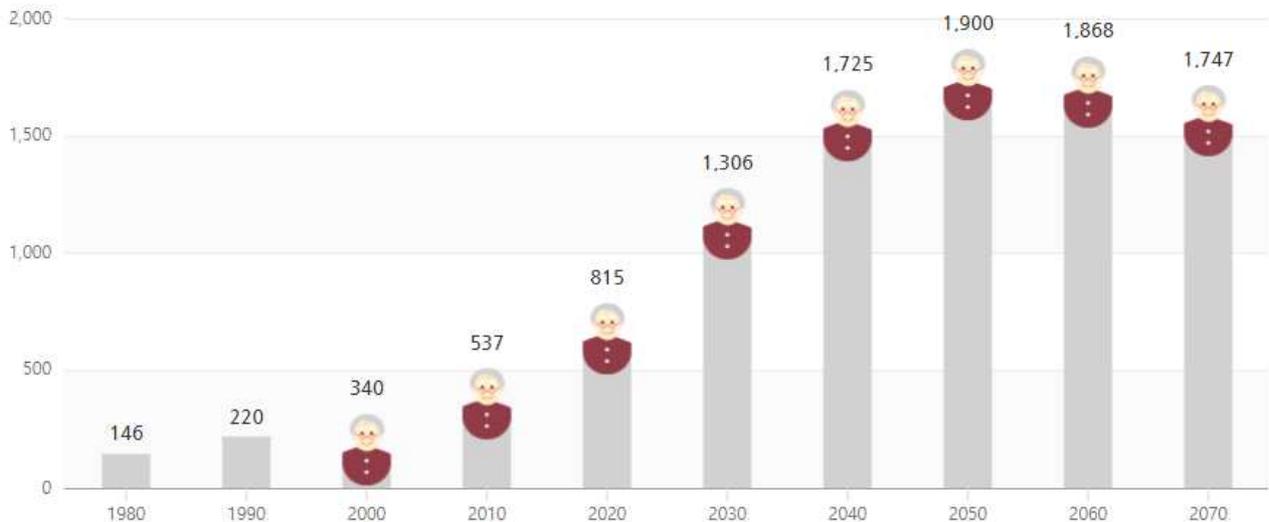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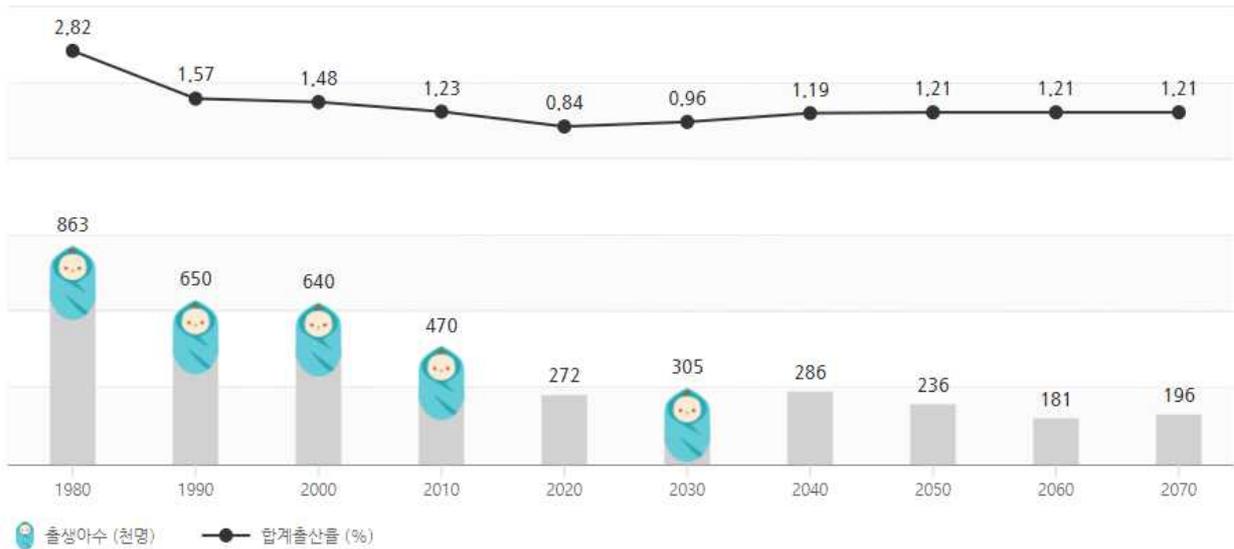
가. 연구의 배경

- 2022년 고령사회와 2025년 이후 초고령사회 진입 등 교통약자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마련이 필요함
 - 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계획의 중·장기적 일관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필요 있음
-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영유아 감소,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자 증가 등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음



[그림] 우리나라 고령인구 현황과 미래 전망(자료 :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통계청)

- 출산율은 2005년 기준 1.3명 수준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5년 1.0명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1.68명에 못 미치는 최하위권임. 또한 고령인구 비중은 2025년 20%로 향후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그림] 우리나라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현황과 전망(자료 :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통계청)

- 한편,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교통약자¹⁾는 전체인구의 30%인 약 15,509천명으로 나타남
 - 교통약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령자가 17.1%, 어린이가 6.2%, 장애인이 5.1%, 영유아 동반자가 3.8%이며, 임산부가 0.5% 순으로 교통약자 중 고령자가 과반수(57.1%)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9개 광역 도 지자체의 교통약자는 9,020천명으로 도 지역 인구 대비 31.0%의 비율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37.2%(682천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도가 27.6%(3,749천명)로 가장 낮았음

1) 교통약자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교통약자법 제2조)

나. 연구의 목적

- 본 계획에서는 경상남도의 교통약자 및 경남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보행시설 등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기존의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경상남도의 지속적인 고령인구 비율 증가와 사회적 인식변화에 따른 장애인 사회활동 증가, 임산부의 사회적 배려 필요 등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개선을 위한 중장기 증진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세부추진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5년간의 투자비 산정 및 자원 조달방안의 수립 등을 통하여 경상남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촉구하고자 함
- 경상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 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및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년~2026년)을 기초로 경상남도의 현황에 맞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 고령자 증가 및 교통약자의 사회활동 증가 등 사회요구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2년
- 대상년도 : 2022년 ~ 2026년

나. 내용적 범위

- 시·군의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도입에 관한 사항
-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 특별교통수단 외의 이동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 도내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시군별 이동 특성 및 이동 실태 조사·분석
- 광역이동지원센터(경상남도특별교통수단콜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 관련 사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과제별 지원계획
- 제도 운영상 문제점 발굴 및 개선 대안 제시
- 과제별 소요비용, 투자효과 분석, 재원조달 방안 및 추진일정

다. 공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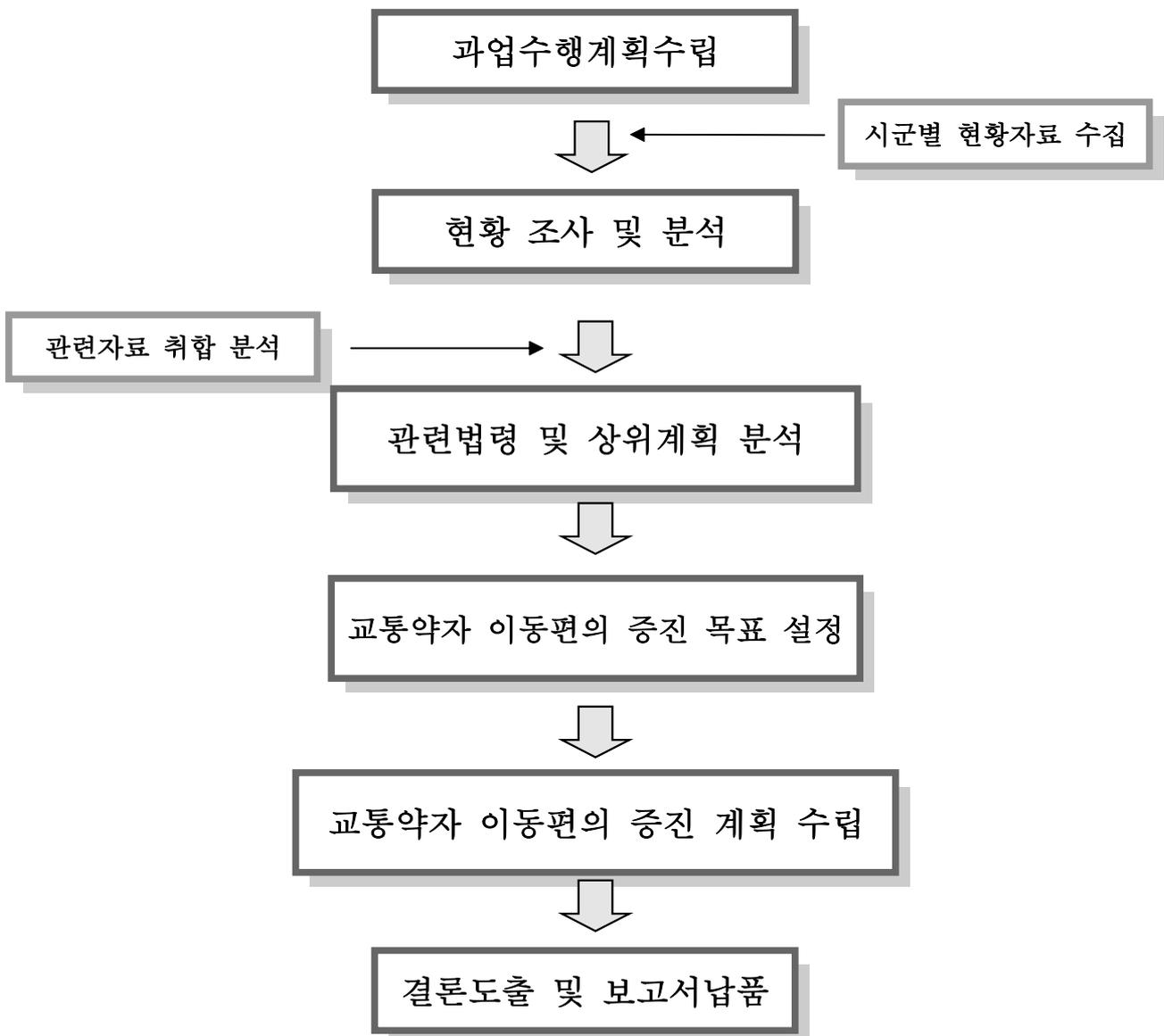
- 경상남도 전 지역 (18개 시·군)

라. 관련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절 연구의 수행절차

-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위탁사용료 산정을 위한 현황조사 및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위탁사용료를 도출하기 위하여 아래의 과정을 거쳐 수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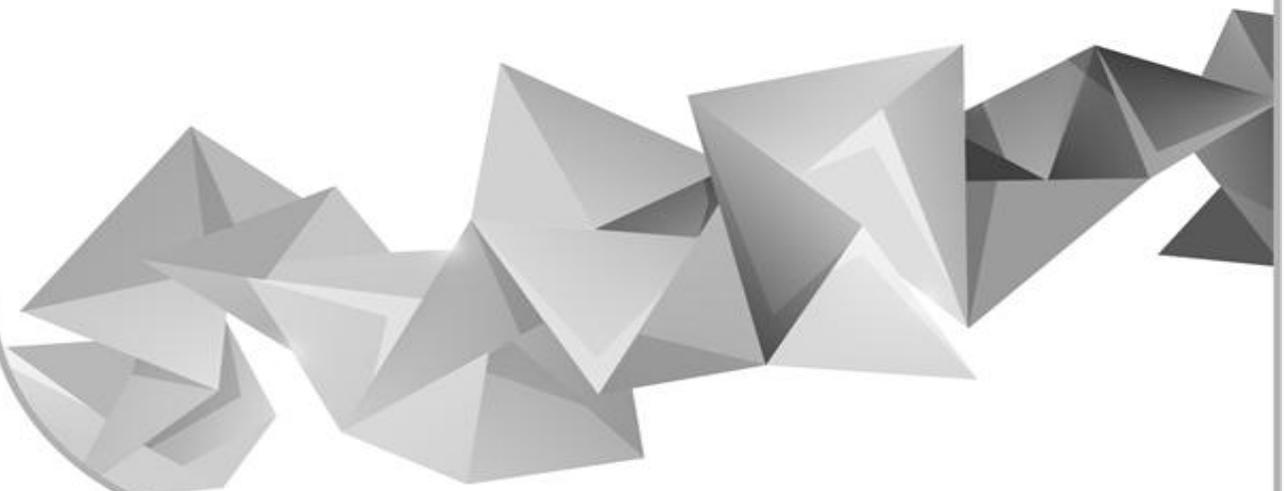


제2장

교통약자 현황 및 관련계획

제1절 교통약자 현황 및 이동실태

제2절 관련법령 및 계획



제2장 교통약자 현황 및 관련계획

제1절 교통약자 현황 및 이동실태

1. 교통약자의 정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20. 12. 22 개정)의 제2조 1항에서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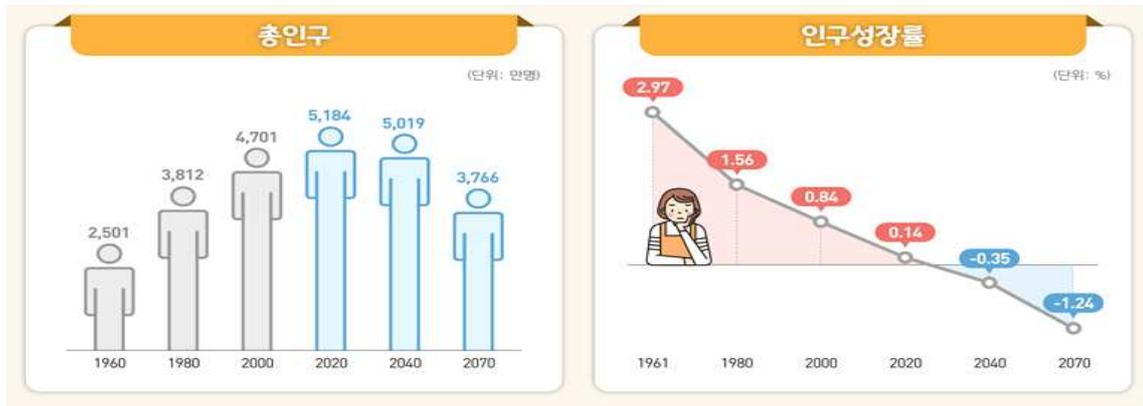
[표2-1] 교통약자의 정의

조항	내용
제2조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전국 교통약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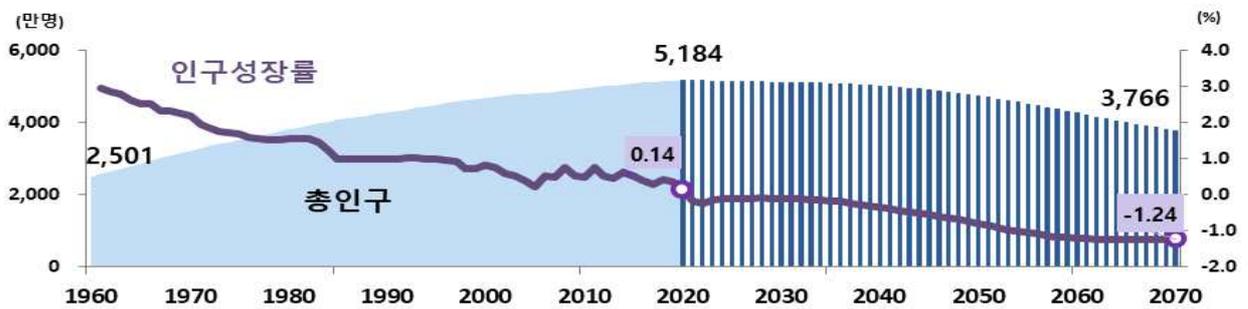
가. 장래인구 추계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2021. 12)

- 2020년 현재 5,184만명에서 향후 10년간은 연평균 6만명 내외로 감소해 2030년 5,120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2070년에 3,766만명(1979년 수준)에 이를 전망
- 저위 추계(낮은 출산율-기대수명-국제순이동) 가정시 2070년 인구는 3,153만명(1969년 수준), 고위 추계 가정시 2070년에 4,438만명(1993년 수준)



[그림 2-1] 총인구 와 인구성장률, 1960~2070년

- 2021~2035년까지는 -0.1% 수준, 이후 감소 속도가 빨라져 2070년에는 -1.24% 수준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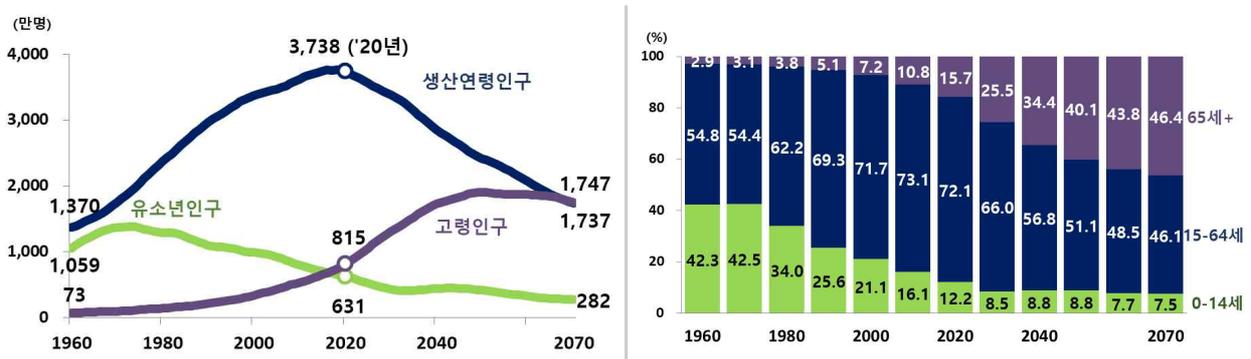
[그림 2-2]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1960~2070년

- 자연감소(출생아수-사망자수) 규모는 2020년 -3만명에서 2030년-10만명, 2070년 -51만명 수준으로 계속 커질 전망
 - 출생아는 2020년 27만명에서 2070년 20만명(2020년의 71.5% 수준)으로 감소
 - 사망자는 2020년 31만명에서 2070년 70만명(2020년의 2.3배 수준)으로 증가



[그림 2-3] 출생아 및 사망자수, 1985~2070년

- 연령구조는 2020년과 2070년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감소(72.1%→46.1%),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증가(15.7%→46.4%),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감소(12.2%→7.5%)할 전망
-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10년간 357만명 감소, 2070년에 1,737만명 수준일 전망
 -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6만명, 2030년대는 연평균 53만명씩 감소할 전망
- 고령인구는 2020년 815만명에서 2024년에 1,000만명을 넘고, 2070년에는 1,747만명까지 증가할 전망
- 유소년인구는 2020년 631만명에서 향후 10년간 198만명 감소하고, 2070년 282만명 수준일 전망
- 6~21세의 학령인구는 2020년 789만명에서 향후 10년간 195만명 감소하고, 2070년에 328만명 수준일 전망
- 19~34세 청년인구는 2020년 1,096만명에서 향후 10년간 198만명 감소하고, 2070년에 499만명 수준일 전망
- 중위연령은 2020년 43.7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고, 2070년 62.2세까지 증가할 전망



[그림 2-4] 연령별 인구구조와 구성비, 1960~2070년

나. 전국 교통약자의 인구 대비 비율

-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인구의 30%인 약 15,509천명으로 나타남
 - 교통약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령자가 17.1%, 어린이가 6.2%, 장애인이 5.1%, 영유아 동반자가 3.8%이며, 임산부가 0.5% 순으로 교통약자 중 고령자가 과반수(57.1%)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9개 광역 도 지자체의 교통약자는 9,020천명으로 도 지역 인구 대비 31.0%의 비율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37.2%(682천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도가 27.6%(3,749천명)로 가장 낮았음

[표2-2] 전국 교통약자 인구 및 비율 현황

지역	총 인구 (천명)	교통약자 인구(천명)							
		소계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임산부
		(천명)	(%)	(천명)	중복제외				
전국	51,639	15,509	30.0	2,645	1,238	8,851	1,943	3,216	261
서울특별시	9,509	2,621	27.6	392	180	1,597	308	491	46
부산광역시	3,350	1,075	32.1	176	80	682	112	187	14
대구광역시	2,385	719	30.1	127	60	417	85	145	11
인천광역시	2,948	823	27.9	149	74	435	113	186	15
광주광역시	1,442	415	28.8	70	36	213	58	100	8
대전광역시	1,452	414	28.5	72	37	221	55	93	7
울산광역시	1,122	311	27.7	51	26	153	47	79	6
세종특별자치시	372	110	29.7	13	6	37	25	38	4
경기도	13,565	3,749	27.6	579	292	1,881	573	927	76
강원도	1,538	525	34.1	102	45	333	53	86	7
충청북도	1,597	517	32.4	98	47	302	61	100	8
충청남도	2,119	715	33.7	135	60	420	84	140	11
전라북도	1,787	630	35.2	132	56	398	59	110	8
전라남도	1,833	682	37.2	140	57	445	64	108	8
경상북도	2,627	929	35.4	183	76	596	92	152	12
경상남도	3,314	1,061	32.0	190	89	608	125	223	16
제주특별자치도	677	212	31.3	37	18	111	29	50	4

[표2-3] 전국 9개 도 지역 교통약자 인구 및 비율 현황

지역	총 인구 (천명)	교통약자 인구(천명)							
		소계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임산부
		(천명)	(%)	(천명)	중복제외				
합계	29,057	9,020	31.0	1,596	740	5,094	1,140	1,896	150
경기도	13,565	3,749	27.6	579	292	1,881	573	927	76
강원도	1,538	525	34.1	102	45	333	53	86	7
충청북도	1,597	517	32.4	98	47	302	61	100	8
충청남도	2,119	715	33.7	135	60	420	84	140	11
전라북도	1,787	630	35.3	132	56	398	59	110	8
전라남도	1,833	682	37.2	140	57	445	64	108	8
경상북도	2,627	929	35.4	183	76	596	92	152	12
경상남도	3,314	1,061	32.0	190	89	608	125	223	16
제주특별자치도	677	212	31.3	37	18	111	29	50	4

(자료: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22.10.)

- 경상남도의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 대비 32.0%로 9개 도지역 평균인 31.0%에 비해 소폭 높으며 9개 도 지역 중 낮은 비율순으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은 3위를 나타내었음

다. 전국 교통약자 장래 예측

-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 제4차 증진계획 기간 중 우리나라 총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교통약자의 인구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전체 인구의 약 34.3%인 교통약자 비율은 2026년까지 1,941만 명으로 연평균 약 2.3% 증가 전망
 - 특히 고령자가 연평균 5.3%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어린이 및 영유아동반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장애인 인구는 큰 변화는 없으나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2-4] 제4차 증진계획 기간의 전국 교통약자 추계인구

구분	총 인구 (천명)	교통약자 인구(천명)							
		소계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임산부
		(천명)	(%)	(천명)	중복제외				
2022년	51,622	15,511	30.0	2,660	1,245	9,012	1,867	3,141	246
2023년	51,550	15,777	30.6	2,674	1,252	9,492	1,720	3,080	233
2024년	51,492	16,040	31.2	2,689	1,259	10,000	1,601	2,946	234
2025년	51,439	16,401	31.9	2,704	1,266	10,577	1,515	2,795	248
2026년	51,388	16,818	32.7	2,719	1,273	11,188	1,473	2,623	261
증가율	-0.1%	2.0%	-	0.5%	0.6%	5.6%	-5.8%	-4.4%	1.5%

(자료: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22.10.)

3. 경상남도 교통약자 현황

가.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인구 대비 비율

[표2-5] 2021년 말 경상남도 교통약자 인구 비율

구분	총 인구 (천명)	교통약자 인구(천명)						
		소계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임산부
			중복	중복제외				
경상남도	3,314	1,061	190	89	608	125	223	16
인구 비율	100%	32.0%	5.7%	2.7%	18.3%	3.8%	6.7%	0.5%
교통약자 비율		100%	17.9%	8.4%	57.3%	11.8%	21.0%	1.5%

- 경상남도의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 대비 32.0%, 교통약자 중 고령자의 비율이 57.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인 57.1%보다 소폭 높은 수준임
- 교통약자 중 중복제외시 장애인의 비율도 전국 평균인 8.0% 보다 높은 8.4%이며 전체 인구 대비 어린이의 비율은 전국 평균인 6.2%보다 높은 6.7%를 나타내고 있음

나. 경상남도 장애인 현황

[표2-6] 2021년 말 경상남도 시군별 장애인 인구 비율

구분	총 인구 (명)	장애인 (명)	비율 (%)	비고
경상남도	3,314,183	189,621	5.7%	
시부	창원	1,032,741	50,373	4.9%
	진주	347,097	18,158	5.2%
	통영	125,383	7,663	6.1%
	사천	109,953	7,389	6.7%
	김해	537,673	25,100	4.7%
	밀양	103,525	8,976	8.7%
	거제	241,216	11,272	4.7%
	양산	354,726	16,741	4.7%
군부	의령	26,322	2,902	11.0%
	함안	62,547	5,067	8.1%
	창녕	60,129	5,452	9.1%
	고성	50,478	4,671	9.3%
	남해	42,266	4,294	10.2%
	하동	43,449	4,455	10.3%
	산청	34,360	3,537	10.3%
	함양	38,310	3,752	9.8%
	거창	61,073	5,043	8.3%
	합천	42,935	4,776	11.1%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10.)과 동일한 한국인 인구 기준, 총인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장애인(중복) :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 경상남도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의 비율은 5.7%이며 시부에 비해 군부의 장애인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 거제시와 양산시의 장애인 비율이 4.7%로 가장 낮게 나타나며 합천군의 장애인 비율은 1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 경상남도 고령자 현황

[표2-7] 2021년 말 경상남도 시군별 고령자 인구 비율

구분	총 인구 (명)	고령자 (명)	비율 (%)	비고
경상남도	3,314,183	608,379	18.4%	
시부	창원	1,032,741	160,521	15.5%
	진주	347,097	61,615	17.8%
	통영	125,383	26,428	21.1%
	사천	109,953	25,437	23.1%
	김해	537,673	65,524	12.2%
	밀양	103,525	31,006	30.0%
	거제	241,216	28,842	12.0%
	양산	354,726	51,977	14.7%
군부	의령	26,322	10,114	38.4%
	함안	62,547	16,739	26.8%
	창녕	60,129	19,600	32.6%
	고성	50,478	16,543	32.8%
	남해	42,266	16,448	38.9%
	하동	43,449	15,781	36.3%
	산청	34,360	13,175	38.3%
	함양	38,310	13,494	35.2%
	거창	61,073	17,545	28.7%
	합천	42,935	17,590	41.0%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10.)과 동일한 한국인 인구 기준, 총인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고령자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만 65세 이상의 인구현황 (고령자 정의 : 만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복지법」 제1조2 제5호)

- 경상남도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의 비율은 18.4%이며 시부에 비해 군부의 고령자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 거제시의 고령자 비율이 12%로 가장 낮게 나타나며 합천군의 고령자 비율은 41%로 가장 높게 나타남

라. 경상남도 영유아 동반자 현황

[표2-8] 2021년 말 경상남도 시군별 영유아 동반자 인구 비율

구분	총 인구 (명)	영유아 동반자 (명)	비율 (%)	비고
경상남도	3,314,183	124,927	3.8%	
시부	창원	1,032,741	39,850	3.9%
	진주	347,097	13,457	3.9%
	통영	125,383	3,795	3.0%
	사천	109,953	3,745	3.4%
	김해	537,673	22,840	4.2%
	밀양	103,525	2,673	2.6%
	거제	241,216	11,448	4.7%
	양산	354,726	17,121	4.8%
군부	의령	26,322	520	2.0%
	함안	62,547	1,630	2.6%
	창녕	60,129	1,482	2.5%
	고성	50,478	964	1.9%
	남해	42,266	728	1.7%
	하동	43,449	848	2.0%
	산청	34,360	615	1.8%
	함양	38,310	799	2.1%
	거창	61,073	1,687	2.8%
	합천	42,935	725	1.7%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10.)과 동일한 한국인 인구 기준, 총인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영유아동반자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만 0-5세 인구현황 (영유아 정의: 만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 「영유아보육법」 제2조 1항)으로 대체

- 경상남도 전체 인구 대비 영유아 동반자의 비율은 3.8%이며 시부에 비해 군부의 영유아 동반자 비율이 낮은 편으로 나타남
- 양산시의 영유아 동반자 비율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합천군과 남해군의 영유아 동반자 비율은 1.7%로 가장 낮게 나타남

마. 경상남도 어린이 현황

[표2-9] 2021년 말 경상남도 시군별 어린이 인구 비율

구분	총 인구 (명)	어린이 (명)	비율 (%)	비고
경상남도	3,314,183	222,916	6.7%	
시부	창원	1,032,741	68,780	6.7%
	진주	347,097	23,668	6.8%
	통영	125,383	8,898	7.1%
	사천	109,953	7,094	6.5%
	김해	537,673	40,890	7.6%
	밀양	103,525	4,635	4.5%
	거제	241,216	22,014	9.1%
	양산	354,726	26,877	7.6%
군부	의령	26,322	865	3.3%
	함안	62,547	3,692	5.9%
	창녕	60,129	2,527	4.2%
	고성	50,478	2,470	4.9%
	남해	42,266	1,544	3.7%
	하동	43,449	1,541	3.5%
	산청	34,360	1,083	3.2%
	함양	38,310	1,617	4.2%
	거창	61,073	3,379	5.5%
	합천	42,935	1,342	3.1%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10.)과 동일한 한국인 인구 기준, 총인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어린이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만 6-12세 인구현황 (어린이 정의: 만 13세미만인 사람, 「도로교통법」 제2조 23항)

- 경상남도 전체 인구 대비 어린이의 비율은 6.7%이며 시부에 비해 군부의 어린이 비율이 낮은 편으로 나타남
- 거제시의 어린이 비율이 9.1%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합천군의 어린이 비율은 3.1%로 가장 낮게 나타남

바. 경상남도 임산부 현황

[표2-10] 2021년 말 경상남도 시군별 임산부 인구 비율

구분	총 인구 (명)	임산부 (명)	비율 (%)	비고
경상남도	3,314,183	15,562	0.5%	
시부	창원	1,032,741	5,213	0.5%
	진주	347,097	1,751	0.5%
	통영	125,383	424	0.3%
	사천	109,953	462	0.4%
	김해	537,673	2,802	0.5%
	밀양	103,525	342	0.3%
	거제	241,216	1,198	0.5%
	양산	354,726	2,096	0.6%
군부	의령	26,322	73	0.3%
	함안	62,547	171	0.3%
	창녕	60,129	215	0.4%
	고성	50,478	120	0.2%
	남해	42,266	91	0.2%
	하동	43,449	127	0.3%
	산청	34,360	89	0.3%
	함양	38,310	99	0.3%
	거창	61,073	203	0.3%
	합천	42,935	86	0.2%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10.)과 동일한 한국인 인구 기준, 총인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임산부 : 통계청 출생·사망통계의 출생아수로 대체(2021년 잠정통계)

- 경상남도 전체 인구 대비 임산부의 비율은 0.5%이며 시부에 비해 군부의 임산부 비율이 낮은 편으로 나타남
- 양산시의 임산부 비율이 0.6%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고성군, 남해군, 합천군의 임산부 비율은 0.2%로 가장 낮게 나타남

시. 경상남도 시군별 교통약자 현황

[표2-11] 2021년 말 경상남도 시군별 교통약자 현황

구분	총 인구 (명)	교통약자 인구(명)								
		소계	비율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임산부	
				중복	중복제외					
경상남도	3,314,183	1,061,099	32.0%	189,621	89,315	608,379	124,927	222,916	15,562	
시부	창원	1,032,741	299,598	29.0%	50,373	25,234	160,521	39,850	68,780	5,213
	진주	347,097	109,526	31.6%	18,158	9,035	61,615	13,457	23,668	1,751
	통영	125,383	43,061	34.3%	7,663	3,516	26,428	3,795	8,898	424
	사천	109,953	40,103	36.5%	7,389	3,365	25,437	3,745	7,094	462
	김해	537,673	145,962	27.1%	25,100	13,906	65,524	22,840	40,890	2,802
	밀양	103,525	42,149	40.7%	8,976	3,493	31,006	2,673	4,635	342
	거제	241,216	69,561	28.8%	11,272	6,059	28,842	11,448	22,014	1,198
	양산	354,726	106,627	30.1%	16,741	8,556	51,977	17,121	26,877	2,096
군부	의령	26,322	12,650	48.1%	2,902	1,078	10,114	520	865	73
	함안	62,547	24,310	38.9%	5,067	2,078	16,739	1,630	3,692	171
	창녕	60,129	25,882	43.0%	5,452	2,058	19,600	1,482	2,527	215
	고성	50,478	21,926	43.4%	4,671	1,829	16,543	964	2,470	120
	남해	42,266	20,272	48.0%	4,294	1,461	16,448	728	1,544	91
	하동	43,449	19,897	45.8%	4,455	1,600	15,781	848	1,541	127
	산청	34,360	16,197	47.1%	3,537	1,235	13,175	615	1,083	89
	함양	38,310	17,341	45.3%	3,752	1,332	13,494	799	1,617	99
	거창	61,073	24,737	40.5%	5,043	1,923	17,545	1,687	3,379	203
	합천	42,935	21,300	49.6%	4,776	1,557	17,590	725	1,342	86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10.)과 동일한 한국인 인구 기준

총인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고령자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만 65세 이상의 인구현황

(고령자 정의 : 만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복지법」 제1조2 제5호)

영유아동반자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만 0-5세 인구현황

(영유아 정의: 만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 「영유아보육법」 제2조 1항)으로 대체

어린이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만 6-12세 인구현황

(어린이 정의: 만 13세미만인 사람, 「도로교통법」 제2조 23항)

임산부 : 통계청 출생·사망통계의 출생아수로 대체(2021년 잠정통계)

장애인(중복) :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장애인(중복제외) :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중 0~12세과 65세 이상의 수를 제외한 수

아. 경상남도 교통약자 장래 예측

- 경상남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기간의 장래 예측 교통약자는 국토부의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간 중 우리나라 총 인구 감소율과 교통약자 분류별 증감율을 적용하여 추계 함
 - 총인구 : -0.1%
 - 장애인 : 0.5%(중복)/0.6%(중복제외)
 - 고령자 : 5.6%
 - 영유아동반자/어린이 : -5.8% / -4.4%
 - 임산부 : 1.5%

[표2-12] 제4차 증진 지원계획 기간의 경상남도 교통약자 추계인구

구분	총 인구 (천명)	교통약자 인구(천명)							
		소계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임산부
		(천명)	(%)	중복	중복제외				
2022년	3,314	1,061	32.0%	189	89	608	125	223	16
2023년	3,311	1,079	32.6%	190	90	642	118	213	16
2024년	3,307	1,099	33.2%	191	90	678	111	204	16
2025년	3,304	1,123	34.0%	192	91	716	104	195	17
2026년	3,301	1,149	34.8%	193	91	756	98	186	17
증가율	-0.1%	2.0%	-	0.5%	0.6%	5.6%	-5.8%	-4.4%	1.5%

4. 교통약자 이동실태

가. 전국 교통약자인 이동실태

-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지역 내 이동의 경우, 교통약자 및 비교통약자 모두 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통약자 유형별로는 고령자(58.2%) 및 임산부(60.7%) 대부분은 버스를 이용하나, 시각(34.6%)·지체장애인(38.9%)의 이용비율은 저조

[표2-13] 전국 지역 내 동일 지역 이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구분	버스	지하철	걸어서/휠체어	자가용	장애인 택시	특별교통수단	무료셔틀버스	택시	기타
전체	53.7	14.7	13.4	8.3	3.1	2.1	2.5	2.0	0.2
일반인	58.7	15.8	11.6	11.2	0.1	0.3	1.8	0.2	0.3
교통약자	51.6	14.2	14.2	7.0	4.4	2.9	2.8	2.7	0.1
지체장애인	38.9	15.4	12.3	7.0	8.1	11.9	0.9	5.5	0.0
시각장애인	34.6	7.2	13.5	4.3	20.2	2.4	5.3	12.5	0.0
청각장애인	50.8	14.1	18.6	5.1	6.2	0.6	1.7	2.8	0.0
장애인	40.4	13.1	13.9	6.0	10.7	7.1	2.1	6.7	0.0
임산부	60.7	13.3	8.6	12.9	0.0	0.0	4.5	0.0	0.0
고령자	58.2	15.8	17.3	5.1	0.4	0.1	2.6	0.1	0.4

※특별교통수단 일반인 탑승 수치는 장애인 동승자,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국토부, 2022.10)



- 지역 간 이동의 경우, 교통약자 및 비교통약자 모두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고속·시외버스 순으로 조사됨
 -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 간 고속·시외버스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고령자 24.7%, 장애인 10.7%, 임산부 7.4%로 장애인과 임산부의 고속·시외버스의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표2-14] 전국 지역 간 이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타 지역 이동) (단위:%)

구분	승용차	고속/시외버스	기차	장애인 택시	비행기	특별교통수단	택시	여객선	기타
전체	65.7	16.5	9.3	2.4	1.6	1.5	0.8	0.3	1.9
일반인	64.7	18.9	10.7	0.3	2.2	0.0	0.7	0.5	2.1
교통약자	66.2	15.5	8.7	3.3	1.4	2.1	0.8	0.2	1.8
지체장애인	59.8	10.6	8.7	5.7	0.7	8.7	0.5	0.0	5.2
시각장애인	67.7	7.1	5.6	14.1	1.0	2.0	1.5	0.0	1.0
청각장애인	65.5	14.9	9.2	6.9	0.6	0.6	1.1	0.0	1.1
장애인	63.0	10.7	8.1	8.1	0.8	5.3	0.9	0.0	3.3
임산부	87.9	7.4	3.2	0.0	0.7	0.0	0.0	0.2	0.5
고령자	57.9	24.7	12.3	0.1	2.4	0.0	1.2	0.4	1.0

※특별교통수단 일반인 탑승 수치는 장애인 동승자,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국토부, 2022.10)



나.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실태

- 국토교통부의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지역 내, 또는 타지역 간 이동을 위해 교통약자의 외출빈도는 다음과 같음

[표2-15]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지역 내 이동을 위한 외출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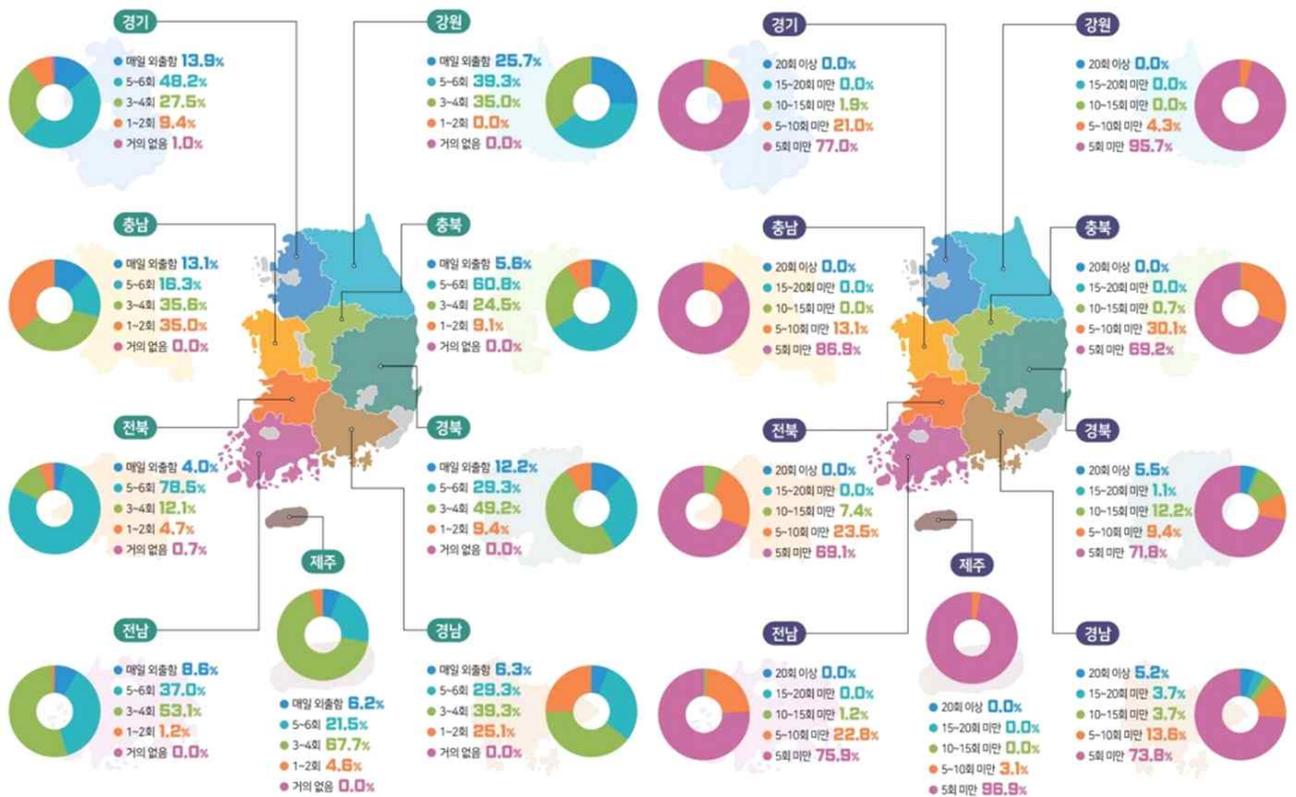
구 분	매일	주간				비고
		5~6회	3~4회	1~2회	거의없음	
경상남도 지역내	6.3%	29.3%	39.3%	25.1%	0.0%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보고서(국토부,2022.06)

[표2-16]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지역 내 이동을 위한 외출 빈도

구 분	월간				비고
	20회이상	15~20회미만	5~10회미만	5회미만	
도외 타지역 이동시	5.2%	3.7%	3.7%	73.8%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보고서(국토부,2022.06)



<전국 도 지역 내 교통약자 외출빈도>

<전국 도 지역 간 교통약자 외출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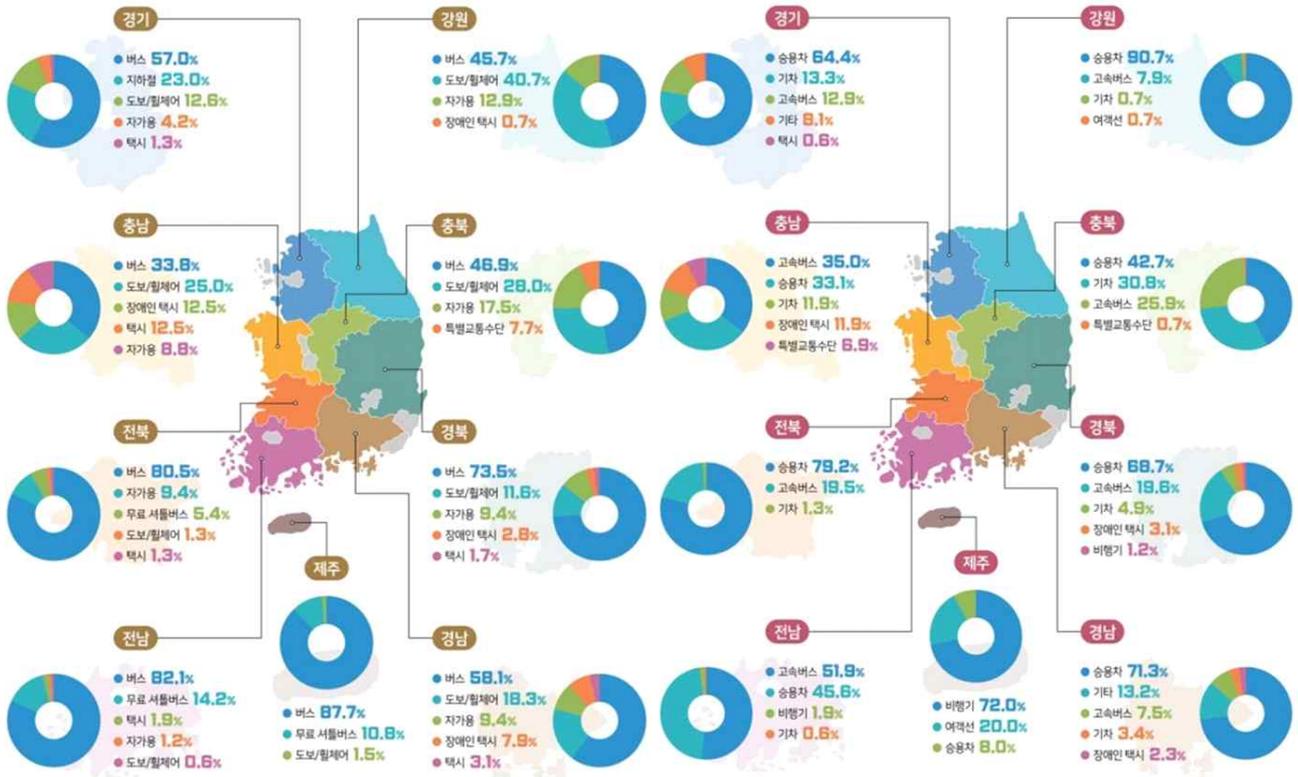
- 국토교통부의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지역 내, 또는 타지역 간 이동을 위해 교통약자의 주 이용 교통수단은 다음과 같음

[표2-17]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이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구 분	버스	도보/휠체어	자가용/승용차	장애인택시	택시	고속버스	기차	기타
경상남도 지역내	58.1%	18.3%	9.4%	7.9%	3.1%	-	-	-
도외 타지역 이동시	-	-	71.3%	2.3%	-	7.5%	3.4%	13.2%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보고서(국토부,2022.06)

- 경상남도내 이동시 교통약자는 버스로 이동하는 빈도가 58.1%로 가장 많았으며 도외 타지역 이동시에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71.3%로 가장 높음



<전국 도 지역 내 교통약자 교통수단>

<전국 도 지역 간 교통약자 교통수단>

제2절 관련법령 및 계획

1. 관련법령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1) 개요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하에서는 교통약자법이라 함)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교통약자법 제1조 목적)
- 교통약자법은 총 6개의 장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제3장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 등, 제4장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등,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으로 구성 되어 있음
- 특히, 제2장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7조의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2)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해서는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에서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까지 규정하고 있음

[표2-18]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련된 조항

조항	내용
제9조	<p>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p>[전문개정 2012. 6. 1.]</p>
제11조	<p>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6. 1.]</p>

-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하며,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규정은 제16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특별교통수단은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운행하여야 하는 대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은 자율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도지사는 이동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시·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2018년 6월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할 수 있으며,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표2-19] 특별교통수단에 관련된 조항

조항	내용
제16조	<p>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23.></p> <p>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p> <p>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p> <p>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제외한다)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1. 28.,2020. 6. 9.></p> <p>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p> <p>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p> <p>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2. 6. 1.]</p>
제16조의2	<p>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p> <p><개정 2020. 10. 20.></p> <p>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한다.</p> <p>[본조신설 2018. 6. 12.]</p>

나. 위계별 법규 비교 검토

-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및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경상남도 조례)를 비교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음
 - 교통약자법에서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및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상남도 조례의 경우 별도 조항 없이 관계기관의 협조 조항으로 제시하고 있음
 - 한편, 경상남도 조례에서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해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약자법에서는 제7조의2를 통해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사항만 제시하고 있음

[표2-20] 위계별 법규조항 비교 검토

구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계획수립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조의 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이동편의시설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련	(제7조의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조(콜센터 운영) • 제13조(콜센터의 기능)
특별교통수단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6조(특별교통수단 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조(특별교통수단 지원계획) • 제15조(도입·운영 지원)
저상버스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조(저상버스 도입 및 계획) • 제9조(저상버스의 운영) • 제10조(재정지원 등)
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6조(교육)

다. 세부 법규검토 결과

- 상기 ‘나. 위계별 법규 비교검토’에서 검토를 실시한 계획 수립, 이동편의시설, 광역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 수단, 저상버스, 교육 등의 관련 사항에 대한 세부 법규 검토를 실시하였음

1) 계획수립 관련 사항

- 교통약자법 상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인 법 제7조의 2의 주요내용 및 검토 결과 등은 다음과 같음
 - 검토결과 : 경상남도 조례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을 제4조(도지사의 책무)를 통해 규정하고 있음

[표2-21] 계획 수립관련 사항 법규검토 결과

구분	주요내용	검토결과
법 제7조의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함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군 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도입·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③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음	• 경상남도 조례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을 제4조(도지사의 책무)를 통해 규정하고 있음

2) 이동편의시설 관련 사항

- 교통약자법 상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관련 사항에 대한 법률적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 등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검토결과 : 경상남도 조례에서는 이동편의지원시설의 설치 대상 및 설치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협조 요청 관련 사항만 제시)

[표2-22] 이동편의시설 관련 사항 법규검토 결과

구분	주요내용	검토결과
법 제9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교통수단 / 2. 여객시설 / 3.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 조례에서는 이동편의지원시설의 설치 대상 및 설치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법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협조 요청에 대한 사항만 제시하고 있음
법 제10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등편의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3)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련 사항

- 경상남도 조례에서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해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약자법에서는 제7조의2를 통해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사항만 제시하고 있음

[표2-23]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련 사항 법규검토 결과

구분	주요내용	검토결과
법 제7조의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는 콜센터 운영(제5조) 및 콜센터의 기능(제6조) 등 구체적 사항을 조례 상 규정하고 있음

4) 특별교통수단 관련 사항

- 교통약자법 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련 사항에 대한 법률적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 등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검토결과 : 경상남도는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 제14조(특별교통수단 지원계획)를 통해 규정하고 있음

[표2-24] 특별교통수단 관련 사항 법규검토 결과

구분	주요내용	검토결과
법 제16조 (특별교통수단 운행)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는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 제14조(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계획)를 통해 규정하고 있음

5) 저상버스 관련 사항

- 교통약자법 상 교통약자 저상버스 관련 사항에 대한 법률적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 등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검토결과 : 경상남도는 조례를 통해 저상버스 도입 및 계획(제8조), 저상버스의 운영(제9조) 및 재정지원 등(제10조)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2-25] 저상버스 관련 사항 법규검토 결과

구분	주요내용	검토결과
법 제14조 (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③ 시장·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저상버스등의 도입, 저상버스등의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 등을 도입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는 조례를 통해 저상버스 도입 및 계획(제8조), 저상버스의 운영(제9조) 및 재정지원 등(제10조)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6) 교육 등 기타사항

■ 교통약자법 상 교통약자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법률적 주요내용 및 검토 결과 등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검토결과 : 경상남도는 조례 제16조(교육)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법령 및 정책 관련 사항, 교통약자 유형별 특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모든 운수종사자는 성실히 교육을 받아야하며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마련하여 시장·군수에게 이행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2-26] 교육 관련 사항 법규검토 결과

구분	주요내용	검토결과
법 제13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통사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함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는 조례 제16조(교육)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모든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아야하며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을 마련, 시장·군수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2. 상위계획 검토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국토부, 2022.10)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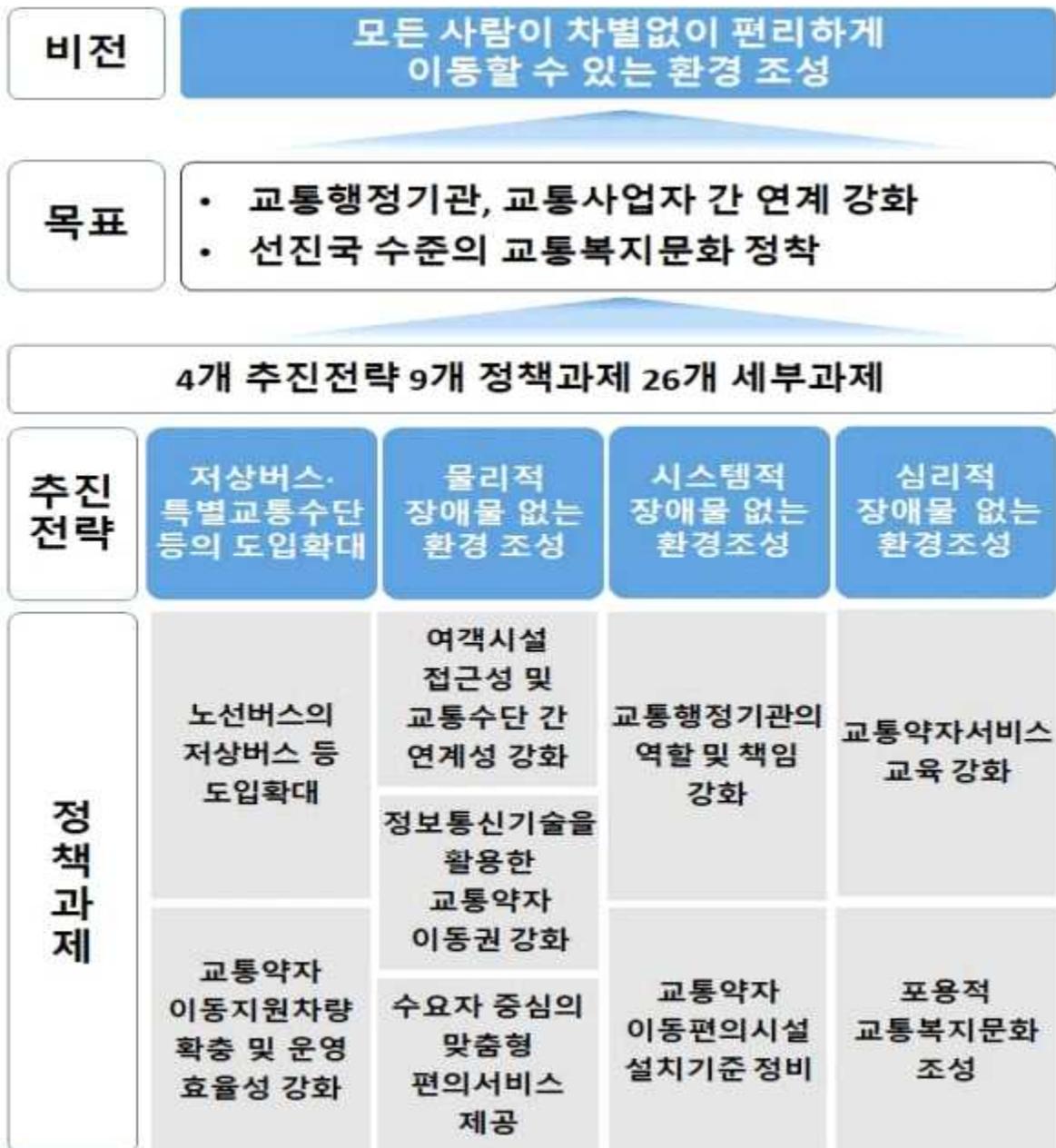
- 「교통약자법」 제6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단위 국가계획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 도로(보행환경) 철도 도시 및 광역철도 항공 해양 저상버스등(저상버스,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특별교통수단) 분야의 계획 수립
-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이동권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 등 사회환경 변화를 감안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중장기 계획 마련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이상 경우('21년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
 -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 정책추진 및 투자지원을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하도록 정책의 목표,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고 투자 규모 산정
 - UN장애인권리협약 중 장애인 이동권 관련 사항 이행
-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해야 하는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의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투자 근거 및 기준 마련
- 한편, 본 계획의 기준이 되는 공간적, 시간적 및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

[표2-27]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개요

구분	내용
공간적 범위	전국의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군 제외)을 포함하는 161개 지방자치단체
시간적 범위	5개년 계획 / 계획기간 : 2022년 ~ 2026년
내용적 범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에 의거한 이동편의 시설의 개선과 확충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정책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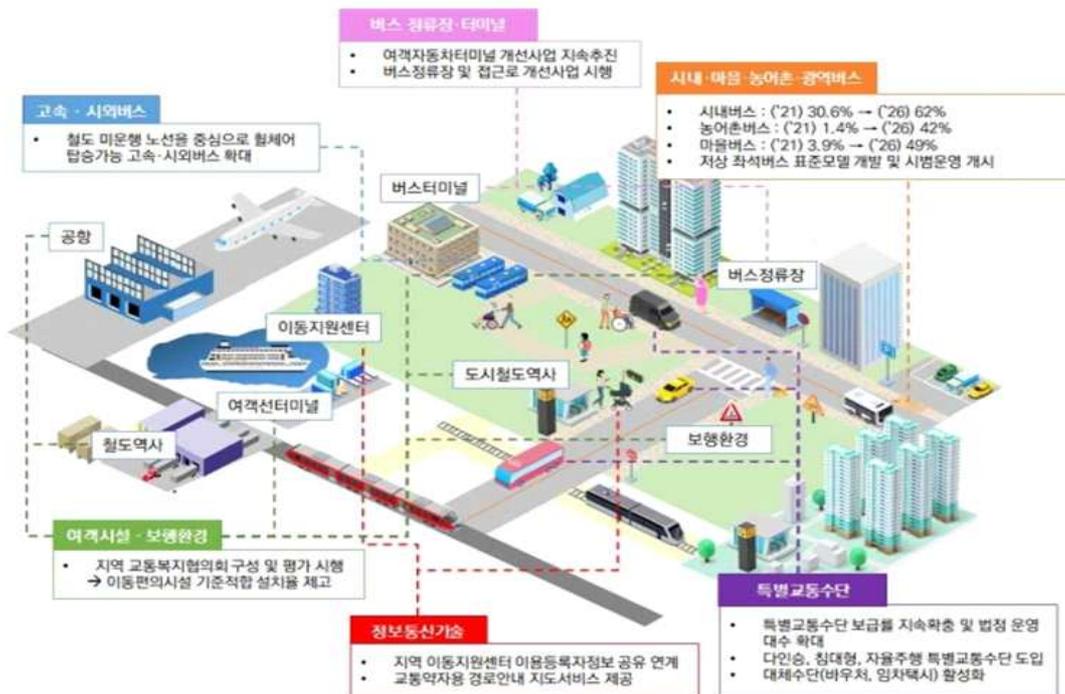
나. 비전 및 목표

- 주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이용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개 추진 전략, 9개 정책과제, 26개 세부과제 추진



추진전략	정책과제	세부 정책과제
<p>I. 저상버스· 특별교통 수단 등의 도입확대</p>	<p>1-1 노선버스의 저상버스 등 도입확대</p>	<p>1-1-1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p> <p>1-1-2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p> <p>1-1-3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한 저상 좌석버스의 개발 및 운영</p>
	<p>1-2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확충 및 운영 효율성 강화</p>	<p>1-2-1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지원 확대</p> <p>1-2-2 지역 이동지원센터의 지역·수단 간 정보연계 서비스</p> <p>1-2-3 특별교통수단 운영 효율화 및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대체수단) 확대</p> <p>1-2-4 특별교통수단 차량 종류의 다양화</p> <p>1-2-5 교통소외지역 고령자 의료·교통 복지지원 서비스 확대</p>
<p>II.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p>	<p>2-1 여객시설 접근성 및 교통수단 간 연계성 강화</p>	<p>2-1-1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p> <p>2-1-2 육상·해상 교통수단간 연계 및 환승체계 마련</p> <p>2-1-3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이동편의시설 개선</p> <p>2-1-4 여객선 기준적합 설치율 개선사업</p>
	<p>2-2 정보통신기술 기반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p>	<p>2-2-1 교통이용정보 공유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p> <p>2-2-2 여객시설별 교통약자 접근성수준 제공</p> <p>2-2-3 휠체어이용자 이용가능선박안내 기능제공</p>
	<p>2-3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편의 서비스 제공</p>	<p>2-3-1 교통약자 참여형 이동편의 수준평가</p> <p>2-3-2 데이터기반 교통약자 이동취약점 관리체계 구축</p> <p>2-3-3 교통약자를 위한 스마트 서비스 환경 조성</p> <p>2-3-4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최적 배차 유도</p>

추진전략	정책과제	세부 정책과제
Ⅲ.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3-1 교통행정기관의 역할 및 책임 강화	3-1-1 교통복지 유관기관 거버넌스 구성 및 평가 3-1-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실행력 제고
	3-2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	3-2-1 이동편의시설 종류 확대 및 기준 정비 3-2-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정비
Ⅳ.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4-1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강화	4-1-1 교통약자 서비스교육 관리 강화
	4-2 포용적 교통복지 문화 조성	4-2-1 대국민 교통약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4-2-2 교통복지협의체를 통한 교통약자 배려문화 조성



다. 부문별 목표 및 정책 추진방향

1)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확대

■ 주요 목표 (2022년~2026년)

- 저상버스 도입률 : 시내버스 62%, 농어촌버스 42%, 마을버스 49%
-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 법정 운영대수의 100% 확대

(1)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필요성

-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에서 시내버스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는 42.0%이나, '21년 기준 보급률은 30.6% 수준
- 기존 도입된 저상버스의 내구연한이 제3차 계획기간('17~'21년)에 본격적으로 만료가 시작되어 저상버스의 자연감소분(폐차) 증가
- 마을 및 농어촌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 매우 저조
- '21년 마을·농어촌버스 저상버스 도입률 : 마을버스 3.9%, 농어촌버스 1.4%

■ 주요내용

- 대상 노선버스*에 대하여 자동차 연한 만료 등으로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교통약자법」 개정 '22.1.18)
- '26년까지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 62% 달성 목표
- 지역별 목표 : 서울 90%, 광역시 61%, 도지역 41%
- 농어촌 및 마을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은 각각 42%, 49% 달성

■ 추진계획

- 노선버스의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관련 법령 정비 ('22년)
- 대상 노선버스의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시행 ('23년~)

(2)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

■ 필요성

- 장애인 장거리 이동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모델을 개발하여 4개 고속도로 노선 대상(10대)을 시범운영('19.10~'21.6) 실시
(시범운영 노선)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 시범운영 노선은 타 교통수단(철도) 노선과 중복되어 차량도입 및 휠체어 이용자의 이용률 저조

■ 주요내용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의 도입·운영 확대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가 정차하는 여객시설(터미널, 정류장) 및 휴게소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개선지원
- 전국 고속·시외버스 운영노선 중 철도 이용이 어려워 버스 외 대체수단이 없는 노선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 도입 확대 추진

■ 추진계획

- 철도 미운영 고속·시외버스 노선 현황조사 및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우선 도입 노선 검토 ('22년)
- 지자체/사업자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독려 및 확대 (~'26년)

(3)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한 저상 좌석버스의 개발 및 운영

■ 필요성

- 도시의 광역화로 광역철도 미제공 지역의 광역버스 중요성은 매우 높으나,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버스는 제한적
- 현재 국내에는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버스는 일반저상버스, 중형 저상버스, 2층 저상버스 및 휠탑버스(이하 '저상버스 등')가 운영 중

- 2층 버스 및 휠탑버스를 제외한 일반 및 중형 저상버스는 안전 장치 미흡으로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운행이 불가
- 2층 버스는 탑승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도입은 어려우며, 휠탑버스는 타 수단대비 승하차 소요시간 및 공간이 제한적

■ 주요내용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 가능한 저상 좌석버스 등의 표준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 시행
- 관계 법령의 안전기준 등을 만족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할 수 있으며, 휠체어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저상버스 등의 표준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
- 저상 좌석버스 등의 도입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검토

■ 추진계획

-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한 저상 좌석버스 등의 표준모델 개발 (~`26년)
- 저상 좌석버스 시범운영 실시(`26년)

(4) 특별교통수단 보급 및 지원 확대

■ 필요성

-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21년 말 기준 보급률은 86% 수준
-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정책 등에 따라 관외 이동, 24시간·즉시콜 운영, 이용요금 등의 서비스 수준 격차 발생

■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대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추진
- 교통이용 여건이 어려운 비도시 지역의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영대수 상향 검토

토(보행상 중증 장애인 150명→100명당 1대)

- 광역이동, 24시간 운영 등을 위한 이동지원센터 지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교통약자법 '22.1.18 개정, '23.7.19 시행)

■ 추진계획

- 이동지원센터 지원방안 마련(~'22년) 및 시행 ('23년~)
- 법정 운영대수 조정(상향)을 위한 법령 정비 (~'23년)

(5) 지역 이동지원센터의 지역·수단 간 정보연계 서비스

■ 필요성

- 지역별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약자가 '타 지역에서의 이용'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 시 별도 이용자 등록 필요
- (타 지역에서의 이용) 각 지역의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자만 이용이 가능하여 별도 등록되지 않은 자는 해당 지역에서 이용 불가
- (타 지역으로의 이동) 인근 지역과 협약을 맺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타 지역으로 이동을 위해서는 특별교통수단의 환승 필요
(환승을 위해서는 별도 예약 및 타 지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로 등록 필요)

■ 주요내용

- 각 센터의 이용대상 등록자(보행상 장애인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보공유를 통한 이동지원센터의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각 도(道)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정보를 연계하여 지역 간 환승·연계 활성화 기반 마련
- 거주지의 시·군에 등록할 경우, 전국 어디서든 별도 추가 등록없이 타 지역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 등록정보 연계
- 타 지역(道) 이동 시 타 지역 특별교통수단으로 환승 및 타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으로 고도화

■ 추진계획

- 지역별 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자 등록정보 DB 구축 및 환승연계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기획연구(BPR/ISP) (~`23년)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지역 간 환승시범서비스(~`25년)
- 타 교통수단(철도, 시외버스 등)과의 환승서비스 시범운영 (`26년~)

(6) 특별교통수단 운영 효율화 및 대체수단 확대

■ 필요성

-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인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휠체어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탑승을 허용하고 있어 예약 및 배차에 대한 불만 발생
-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시각장애인 등)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가 없는 수단(대체수단)을 확대하여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 필요
- `21년말 기준, 8개 특별·광역시는 모두 대체수단을 운영 중이며, 9개 도지역은 78개(51.0%) 시·군에서 대체수단 운영 중

■ 주요내용

- 휠체어 이용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우선 배정 등 운영 효율화 및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하여 대체수단(임차·바우처 택시 등)을 도입 확대
-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의 운영방법 표준화
(휠체어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배정하고 비휠체어 이용자는 대체수단(임차·바우처 택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 마련)
- 일반 (대형)택시를 대체수단(바우처 택시)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추진계획

- 특별교통수단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23년)
- 비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대체수단 도입 확대 검토(`23년~)

(7) 특별교통수단 차량 종류의 다양화**■ 필요성**

- 현재 운영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은 수동형 및 전동형 휠체어 이용자 1명(동승자 추가 탑승가능)만 이용 가능한 차량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효율화 및 운영비용 절감, 탑승 가능한 휠체어 종류의 다양화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범위 확대 필요

■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 차량 종류 다양화를 통한 이용 편의성 제공
- 동일 출발지와 목적지, 또는 노선의 일부를 공유하는 휠체어 이용자가 함께 이용 가능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운영
- 수동형 및 전동형 휠체어 외에 침대형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및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 다양한 형태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안전기준, 운영방법, 법정 운행대수 산정방안 마련

■ 추진계획

- 다양한 형태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법령 정비 검토 (~`24년)
- 다인승 및 침대형 휠체어 특별교통수단 운영 검토 (`24년~)
- 도시규모 리빙랩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자율주행 및 원격제어를 통한 모빌리티서비스 개발 및 실증* (~`26년)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모빌리티 서비스 기술개발’과 연계하여 휠체어 탑승가능 자율주행차량 실증운영

(8) 교통소외지역 고령자 의료·교통 복지지원 서비스 확대

■ 필요성

- 교통소외지역의 열악한 교통서비스로 지방 쇠퇴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공공의 적극적 지원 필요
- 고령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기적인 대중교통 운행 감소로 수요에 대응한 탄력적 운송서비스 제공 필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서비스 : 대중교통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구간, 정류장 등 탄력적으로 운행되는 여객운송 서비스)
- 또한,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운송서비스 제공과 지자체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 서비스 필요

■ 주요내용

- 교통소외지역 고령자 이동권 보장과 의료·복지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교통모델 개발과 통합 관리체계 기술 도입
- 지자체별 의료·이동 지원사업과 연계*(지자체 협업)하여 고령자 교통불편에 따른 의료서비스 차별 해소와 다양한 교통모델 개발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플랫폼 운영·배차 서비스로 제공 추진)
- 자가용처럼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ICT, 플랫폼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확대 도입
- 교통약자 DRT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로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복지 지원서비스 확대

■ 추진계획

- 교통소외지역 의료·교통 복지지원 연계를 위한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23년)
- 교통소외지역 의료·교통복지시스템 구축 및 지자체 연계(~`24년)

2)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 주요 목표 (2022년~2026년)

-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 (시내버스) 96%, (버스정류장) 특별·광역시 94%, 도지역 73% (터미널) 73%
 - (철도) 철도차량 99%, 철도역사 90% / 도시(광역)철도차량 98%, 도시(광역)철도역사 93%
 - (항공) 항공기 90%, 공항여객터미널 92%, (해양) 여객선 52%, 여객선터미널 92%
 - (보도) 특별·광역시 94%, 도지역 73%

(1)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 필요성

- 교통수단(버스)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약 90%(일반버스 88.0%, 저상버스 95.8%)로 타 분야(여객시설, 보행환경)에 비해 양호
- 반면, 도로 및 버스정류장의 구조 및 낮은 이동편의시설 설치율로 교통약자에게 저상버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21년 기준적합 설치율 버스정류장 45.4%, 도로(보행환경) 77.6%)

■ 주요내용

- 재정적 한계로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편의시설 정비 추진
- 저상버스 운행에 부적합한 도로의 구조·시설 개선 추진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시설* 접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시설 접근 이동경로의 보행환경 개선
-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통한 차량과 보도(정류장) 간 간격을 해소하고,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정비 추진

■ 추진계획

- 저상버스 운행이 부적합한 도로·시설 구조에 대한 개선('22년~)
- 버스정류장의 보행접근로 및 시설 표준모델 개발('24년) 및 보급('25년)

(2) 육상-해상 교통수단간 연계 및 환승체계 마련

■ 필요성

- 연안여객선 이용시, 여객선터미널과 육상 교통수단의 연계/환승체계 부족으로 교통약자의 여객선 이용에 제한
(현재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여객선 터미널 접근 시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
- 버스노선 선정, 도시(광역)철도 등 육상 교통수단 노선의 신설·개편 시 연안여객선 터미널과 연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
- 육상의 버스-지하철 연계/환승체계에 여객선을 포함시켜, 교통약자의 연안여객선 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 있음

■ 주요내용

- 여객선 터미널을 중심으로 여객선과 육상 교통수단을 연계 이용할 수 있는 연계/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현황 조사 및 구축방안을 수립
- 전국의 여객선 터미널 이용객 대상 이용실태조사 및 개선사항 도출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해수부,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여객선과 육상 교통수단과의 연계 및 환승체계 구축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 실시

■ 추진계획

- 여객선 이용자의 육상 교통수단 연계/환승 현황 분석(~'23년)
- 여객선과 육상 교통수단과의 연계 및 환승체계 구축방안 마련(~'23년)
- 육상-해상 교통수단 간 연계 시범사업 실시('24년~)

(3)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이동편의시설 개선

■ 필요성

-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약자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현황 등을 확인중이나, 버스정류장 및 보행환경조사 시, 주요 여객시설(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주변에 설치된 정류장·보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어 누락되는 시설 존재
- 또한, 교통행정기관에 조사결과(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등)를 공유하고 개선을 요청하고 있으나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사례 미비

■ 주요내용

- 실태조사 표본 수 확대 및 실태조사 결과 환류 프로세스 마련
- 표본조사 중인 버스정류장 및 보행환경의 조사를 교통약자의 이동특성, 지역·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범위 확대
- 교통행정기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계획 및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국토교통부는 차년도 실태조사시 조치결과 확인

■ 추진계획

- 실태조사 시 버스정류장 및 보행환경 조사 범위 확대('22년~)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및 조치 결과 제출(교통행정기관), 실태조사시 조치결과 사항 모니터링('22년~)

(4) 여객선 기준적합 설치율 개선사업

■ 필요성

- 여객선은 타 교통수단보다 기준적합 설치율(34.9%)이 낮으며,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 투입 필요

■ 주요내용

- 여객선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 국고 보조항로 운항 여객선에 대해 우선 설치, 일반 항로로 확대
- 이동편의시설 중 기준적합 설치율이 낮은 전자문자안내판(22.5%), 교통약자용 좌석(0.8%), 장애인 접근가능표시(2.2%) 시설 설치 강화

■ 추진계획

- 일반항로 운항 여객선 시설개선 (~`23년)

(5) 교통이용정보 공유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필요성

- 해외 선진국에서는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도, 대중교통이용 이동경로 정보를 일반 보행자와 구분하여 안내 중
-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철도역사의 이동경로정보는 제공* 중이나, 버스·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여객시설의 경우는 제공하고 있지 않아 정보 제공 필요

■ 주요내용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경로 서비스 제공
- 교통수단·여객시설·보행환경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 DB 구축
- 민간 지도서비스 사업자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정보 활용도 제고

■ 추진계획

- 여객시설(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 여객선터미널) 내 이동편의시설 정보의 서비스 제공 (`23년~)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23년)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24년~)

- 여객시설 내 이동경로 안내 서비스 제공 (`24년~)
- 여객시설 주변 보행환경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정보 서비스 제공 (`25년~)
- 저상버스 배차정보와 연계한 교통약자 경로서비스 제공 (`26년~)

(6) 여객시설별 교통약자 접근성수준 평가 및 제공

■ 필요성

- 이동편의시설 개선 시 여객시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이동편의시설 별 가중치는 고려되지 않아 이동편의시설이 개선되어도 실제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존재

■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웹기반 여객시설(환승시설 포함)의 접근성 수준 평가 및 개선필요 여객시설 우선순위 제공
- 이동편의시설 현황DB 및 이용자 설문조사 정보 등을 분석하여 웹(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기반 개선시급 여객시설 우선순위 제공
- 이동편의시설 개선 시 여객시설별 접근성 수준 정보 활용

■ 추진계획

- 여객시설별 접근성 수준 제공방법론 수립 (~`24년)
- 여객시설별 접근성 수준 정보 제공 (`25년~)

(7) 휠체어 이용자 이용가능 선박안내 기능 제공

■ 필요성

- 교통약자들이 탑승 가능한 여객선이 적으며, 교통약자가 탑승 가능한 여객선 이용 정보에 대한 안내가 없어 여객선 이용률이 저조

■ 주요내용

- 예약시스템(가고싶은섬)에 선박별 휠체어 탑승가능여부 표기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의 경우, 예매시스템에서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시간대에 표시를 하여 휠체어 이용자의 이용가능여부를 사전에 파악가능)
-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현황 및 개선 계획을 분석하여, 교통약자 유형별 이용가능 선박정보를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 추진계획

-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현황 및 개선계획 분석 (~`25년)
- 휠체어 탑승가능 선박정보 제공 (~`26년)

(8) 교통약자 참여형 이동편의 수준평가

■ 필요성

- 실태조사 시 조사된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과 이용자 만족도의 상관관계가 적어 교통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조사를 설문지 응답형식이 아닌 교통약자와 동행하여 현장점검을 하는 등 만족도 조사방법 개선
- 교통약자 유형(휠체어이용자, 영유아동반자,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을 고려하여 각 여객시설의 접근경로, 여객시설 내 이동 및 교통수단 탑승(좌석착석)까지의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
- 만족도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각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기준 및 교통이용편의서비스 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추진계획

- 매년 대상시설(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중 일부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모든 대상시설에 대하여 조사 실시

- 교통약자 참여형 이동편의 수준평가 평가지표 개발 ('22년)
- 분야별(버스, 철도, 항공 등) 현장 조사·평가 ('22년~)

(9) 데이터기반 교통약자 이동취약점 관리체계 구축

■ 필요성

- 철도사업자별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나, 편의증진을 위한 정보 분석 및 공유 부족

■ 주요내용

- 교통약자 특성별 철도차량과 여객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의 수집 및 공유체계를 마련하고 체계적 관리로 이동편의증진 서비스 신뢰성 제고
- 수단이용 중 발생하는 민원데이터, 안전사고 데이터 등 이용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으로 교통약자 특성별 취약지점 및 시설 도출
- 도출된 취약지점 및 시설 대응 및 관리 매뉴얼* 제작·활용

■ 추진계획

- 교통약자 이용패턴 데이터 수집 및 취약지점·시설 도출 ('22년~)
- 취약지점과 시설을 고려한 가이드북 및 대응매뉴얼 개발 (~'24년)

(10) 교통약자를 위한 스마트 서비스 환경 조성

■ 필요성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발전으로 소프트웨어형 스마트 서비스 도입이 가속화
- 항공·철도분야를 중심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표준인증 체계 미비로 서비스화가 어려운 실정

- 교통약자 혼자서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항터미널 및 철도역사 환경 구현과 인적서비스 보완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고도화 필요

■ 주요내용

- 첨단기술을 접목한 교통약자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철도
 - AI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철도역사 사업 연계 및 확대
 - 무장애환경 제고를 위한 첨단기술접목 통합 철도플랫폼 표준화
- 항공
 - 유·무인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교통약자 서비스 다각화 및 전문화
 - 확장현실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으로 미래형 안내서비스체계 도입
 - 자율주행 PM(Personal Mobility), 웨어러블 글래스, AI기반 수어
 - 인식 서비스 등 비대면 서비스의 스마트화를 통한 공항이용 장벽 감소
 - 차별없는 스마트 정보이용 환경 조성
(키오스크 등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기기들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설치·운영규정을 강화하여 교통약자를 포함한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보장 확대)

■ 추진계획

- 항공
 - 공항 여객터미널 스마트 기술 대상 표준화 모델 개발 (~'23년)
 - 교통약자 이동편의 스마트 서비스 R&D 추진 (~'26년)
- 철도
 - 무장애 통합플랫폼 표준화 연구 (~'23년)
 - 스마트 기술의 철도역사 확대 (~'26년)

(11)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최적 배차 유도**■ 필요성**

- 정부에서 저상버스를 지속 확충하고 있으나,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21년말 기준 30.6% 수준으로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함 발생
- 교통약자가 저상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약 19.0%가 저상버스 배차간격이 길어 이용이 불편하다 응답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저상버스를 효율적으로 배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8% 추가 도입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

■ 주요내용

- 지역별 저상버스 배차간격 조사 및 최적 배차간격 유도
- 지역별 요일별 시간대별 저상버스 배차간격 현황 및 차이 분석
- 조사결과의 교통행정기관 공유를 통하여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배차간격 조절 유도
(각 지자체에서는 지방증진계획을 통해 저상버스 적정배차 방안 검토)

■ 추진계획

- 이동 실태분석을 통한 교통약자/비교통약자의 이동특성 차이 분석('22년~)
- 지역·시간대별 저상버스 배차간격 현황 조사 및 결과 배포('23년~)

3)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 주요 목표 (2022년~2026년)

- 교통행정기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역별 교통복지협의체 구성
- 교통수단 특성을 고려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

(1) 교통복지 유관기관 거버넌스 구성 및 평가

■ 필요성

- 각 지역에서 교통복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교통수단 사업자, 여객시설 사업자 등 다양하나, 협력체계 부족으로 체계적인 교통복지 정책 추진 저해 (협력체계 부재로 여객시설과 교통수단 사업자에서 서비스의 중복제공 또는 공백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 문제 발생)
-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도시철도, 보도 등 담당 부서들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 정책 시행 일관성 확보 필요

■ 주요내용

-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중앙-광역(시·도)-지역(시·군) 교통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
- 교통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가, 사업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 정보공유 및 정책 추진을 위해 협력하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이행1), 기준적합성 심사2), 교통사업자 교육3)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 점검체계 구축
 - 1) 국가·지방 증진계획의 적기 수립 및 정합성 확보, 연차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관리
 - 2) 교통행정기관에서 교통수단·여객시설 면허·허가시 이동편의시설 설치 적합여부 심사
 - 3) 교통사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함

- 지자체별 교통복지수준 개선 모범사례 발굴·전파 및 인센티브 부여

■ 추진계획

- 교통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마련 및 지역별 교통복지협의체 구성 (~'23년)
- 교통복지지표 개발 및 법제화를 통해 평가 시행 (~'23년)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실행력 제고

■ 필요성

- 국가 증진계획 적기 수립을 통해 국가-지방 계획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증진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이행현황 모니터링 필요

■ 주요내용

- 국가 증진계획을 계획 시작 전년도 상반기에 수립하여 지방 증진계획이 계획 연도 이전에 차질 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 교통약자법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시, 교통복지협의체에서 점검 후 제출

■ 추진계획

- 연차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22년~) 및 제5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고시('26년 상반기)

(3) 이동편의시설 종류 확대 및 기준 정비

■ 필요성

-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확대, 교통수단·여객시설별 규모·특성의 다양화 등을 반영한 이동편의시설 기준의 재정비 필요
-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이 관계 법령과 상이한 부분 정비 필요 (「교통약자

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의 승강기 출입문 유효폭 상이)

■ 주요내용

-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특성·규모를 고려한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세분화 등 정비
- 국내·외에서 개발·운영 중인 교통약자관련 시설* 중 이동편의시설로 새롭게 포함 가능한 시설 검토
- 교통약자의 동선을 고려한 이동편의시설 세부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 추진계획

- 관계법령과 상이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 정비 (~`22년)
- 「궤도운송법」에 따른 수단 및 시설 중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범위 및 설치해야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23년)
- 교통약자 동선을 고려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24년)
- 교통수단 세분화 및 수단별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 (~`25년)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정비

■ 필요성

-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 사항을 반영하고 이동편의 시설 설치기준과 BF 인증기준의 상이한 부분 정비 필요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여객·환승시설은 BF인증을 획득하여야 함('22.10월 시행)에 따라 인증기준 사전 정비 필요

■ 주요내용

- BF인증 기준 검토 및 정비를 통해 현장의 혼란 해소
-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과 BF인증 기준을 비교·검토하고 국제기준과 장애인 등 정책 수혜자를 고려한 BF인증 기준 정비

■ 추진계획

- BF인증 기준 정비('22년)

4)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 주요 목표 (2022년~2026년)

- 승무원대상 교통약자 서비스교육 실적관리체계 마련
-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홍보자료 배포 및 국민 참여형 인식개선 행사 개최

(1) 교통약자 서비스교육 강화

■ 필요성

- 대중교통 승무원 대상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실시 중
- 일부 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 이론교육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교육 시행여부에 대한 실적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
- 승무원 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대상 인식개선 필요

■ 주요내용

- 운수종사자(승무원) 및 일반국민 대상 실효성 있는 교통약자 인식 및 서비스 개선 교육 추진 및 관리
-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실적제출 규정 마련 및 관리시스템 구축
- 대중교통 승무원 대상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의 체험교육 활성화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교육내용에 대중교통, 여객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인식개선 내용 포함 검토

■ 추진계획

-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실적제출 관련 법령 정비안 마련 (~`23년)
-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구축 (~`24년)
- 교통약자 유형별 표준 훈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 (`24년)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중교통 관련 내용 포함 검토 (`23년~)

(2) 대국민 교통약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필요성

-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휠체어 이용자의 저상버스 이용률은 매우 저조
- 지역 내 외출 시 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약 52.4%였으나, 휠체어 이용자 중 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약 10.9%로 큰 차이
- 많은 휠체어 이용자들(27%)이 저상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불친절’ 및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응답

■ 주요내용

- 지역사회 주민들과 대중교통 종사자들이 교통약자를 이해하고 돕는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
-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이동권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모전 시행
- 교통수단별(버스, 철도, 항공기, 선박 등) 교통약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 경험 등을 활용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자료(영상, 포스터, 리플렛 등) 제작·보급

■ 추진계획

-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통약자 자원봉사단(항공) 운영 (22년~)
-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대국민 공모전 시행 (`23년~)
-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배포 (`23년~)

(3) 교통복지협의체를 통한 교통약자 배려문화 조성

■ 필요성

- 유관기관의 협조 및 정보교환을 통한 실행력 있고 다양한 교육·홍보전략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교통행정기관,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사업자 등과 협업하여 교육 및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
- 교통행정기관은 도시철도 교통약자 및 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체계 구축
- 교통사업자는 매뉴얼을 활용한 교통약자 및 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 철도운영기관은 자체 매뉴얼 제작 및 전 직원 대상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마련
- 역·열차 미디어 장치를 활용한 교통약자를 위한 대국민 홍보, 교통약자 배려 캠페인 시행
- 고령자를 위한 특화 직무 발굴, 사랑 나눔 기부좌석 운영 등 사회적 사회공헌 활동 강화

■ 추진계획

- 교통약자를 위한 기관별 교육 및 매뉴얼 구축 (~'23년)
- 교육·홍보 체계 구축 및 시행 (~'26년)



기준적합 설치율			
	운영수단	21년	26년
	시내버스 버스 정류장 버스 터미널	88.0% 45.4% 65.0%	96% 66% 73%
	보행환경	77.6%	83%
	도시철도(차량) 도시철도(역사)	96% 89%	98% 93%
	철도(차량) 철도(역사)	98.9% 82.5%	99% 90%
	여객선 항만	37.8% 82.2%	52% 92%
	항공기 공항	73.7% 86.8%	90%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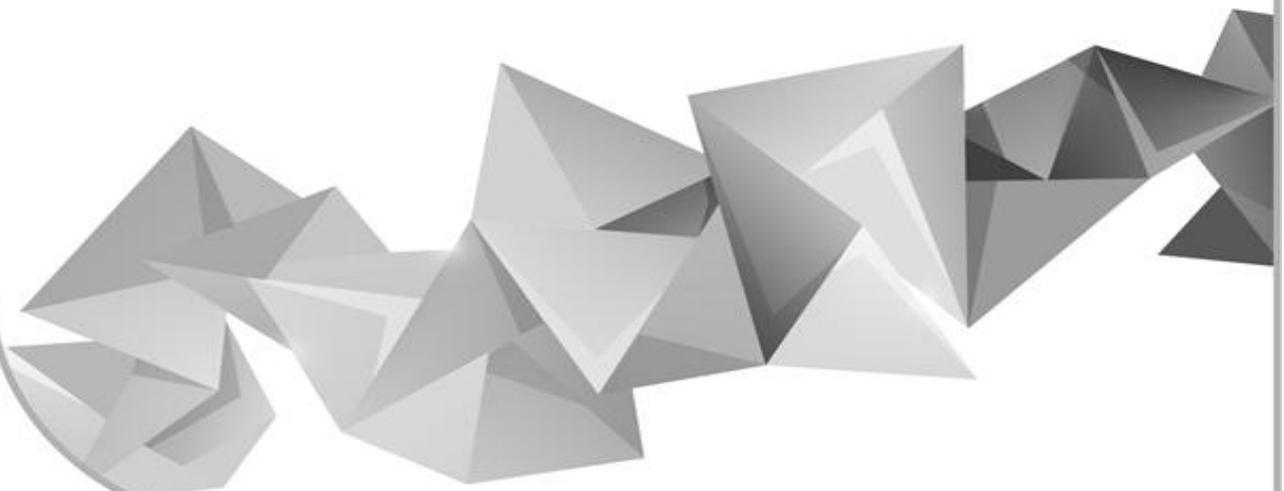
제3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현황 및 분석

제1절 경상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추진 실적

제2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성과분석

제3절 경상남도 교통복지지표



제3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현황 및 분석

제1절 경상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추진 실적

1. 전국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추진 실적(국토부, 2022.10)

가.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 목표 달성률은 교통수단 101.9%, 여객시설 94.2%, 보행환경 95.8%으로 교통수단만 목표 달성
 - 교통수단 : 버스, 도시철도·철도 차량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항공기와 여객선은 목표에 미달하였음
 - 여객시설 : 여객선 터미널을 제외한 모든 여객시설이 목표에 미달

[표3-1] 전국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대상시설		목표(전국)	실적('21년)	달성률
교통수단	일반버스	82.0%	88.0%	107.3%
	저상버스	90.0%	95.8%	106.4%
	도시철도	90.0%	96.0%	106.7%
	철도	90.0%	98.9%	109.9%
	항공기	90.0%	73.7%	81.9%
	여객선	39.0%	37.8%	96.9%
	교통수단 평균	80.2%	81.7%	101.9%
여객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73.0%	64.0%	87.7%
	도시철도역사	90.0%	89.9%	99.9%
	철도역사	90.0%	82.5%	91.7%
	공항터미널	90.0%	86.8%	96.4%
	여객선터미널	79.0%	82.2%	104.1%
	버스정류장	57.0%	45.4%	79.6%
	여객시설 평균	79.8%	75.1%	94.2%
도로(보행환경)		81.0%	77.6%	95.8%
전체평균		80.1%	78.4%	97.8%

나.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율

-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30.6%로 목표 미달
-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86.0%로 목표 대비 102.4% 달성

[표3-2] 전국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현황

구분		도입률 목표	실적('21년)	달성률	비고
저상버스	전국	42.0%	30.6%	72.9%	목표미달성
	서울	65.0%	59.7%	91.8%	목표미달성
	광역시	45.5%	29.1%	64.0%	목표미달성
	도지역	32.0%	19.8%	61.9%	목표미달성
특별교통수단		84.0%	86.0%	102.4%	목표달성

다. 이동편의시설 이용자 만족도

- 전국 이동편의시설의 이용자 만족도는 평균 70.2점으로 목표 달성

[표3-3] 전국 이동편의시설 이용자 만족도 현황

구분		목표	실적('21년)	달성률	
교통수단	버스	일반버스	70점	73.5점	105.0%
		저상버스	70점		
	도시철도		80점	79.5점	99.4%
	철도		80점	80.2점	100.3%
	고속/시외버스		-	72.7점	-
	항공기		80점	76.7점	95.9%
여객시설	여객선		70점	71.3점	101.9%
	여객자동차 터미널		70점	71.4점	102.0%
	버스정류장		80점	70.9점	88.6%
	철도역사		80점	78.9점	98.6%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역사		80점	79.3점	99.1%
	공항		80점	76.7점	95.9%
여객선터미널		80점	68.7점	85.9%	
도로(보행환경)		70점	68.2점	97.4%	
전체평균		70점	70.2점	100.3%	

2. 경상남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지원 계획 추진 실적

- 경상남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지원 계획(경상남도, 2018.04), 202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국토교통부, 2021.05.),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국토교통부, 2022.06) 및 도내 시·군부의 제3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등을 기초로 추진 실적을 분석함

가.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1) 버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표3-4] 경상남도 버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자동안내 시설	방송음성	명확한 음량과 음색	1,244	1,061	85.3	0	0.0	183	14.7
	방송언어	국어와 영어로 방송	1,244	158	12.7	903	72.6	183	14.7
	자동안내시설 평균		-	-	49.0	-	36.3	-	14.7
전자문자 안내판	설치위치	전면 윗부분 또는 중간문 부근	1,244	731	58.8	0	0.0	513	41.2
	문자형태	두터운글씨, 구별하기 쉬운 색상	1,244	731	58.8	0	0.0	513	41.2
	문자언어	한글과 영문	1,244	359	28.9	372	29.9	513	41.2
	전자문자 안내판 평균		-	-	48.8	-	10.0	-	41.2
목적지 표시	설치위치	외부 정면, 후면 및 측면	1,244	670	53.9	574	46.1	0	0.0
	소재	강한 햇빛과 야간에도 식별 가능	1,244	1,108	89.1	136	10.9	0	0.0
	목적지 표시 평균		-	-	71.5	-	28.5	-	0.0
휠체어 승강설비 (저상)	바닥높이	바닥면적의 35이상 승강구 첫 번째 발판과 동일	125	125	100.0	0	0.0	0	0.0
	승강설비	경사판 설치	125	125	100.0	0	0.0	0	0.0
	승강구 유효폭	0.8m 이상	125	125	100.0	0	0.0	0	0.0
	휠체어 승강설비(저상) 평균		-	-	100.0	-	0.0	-	0.0

[표계속]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승강구	승강구 바닥면	미끄럽지 않은 재질	1,244	1,244	100.0	0	0.0	0	0.0
	승강구 계단	색상과 명도차이로 계단을 쉽게 구분	1,244	1,244	100.0	0	0.0	0	0.0
	승강구 평균		-	-	100.0	-	0.0	-	0.0
교통 약자용 좌석	위치	승강구 부근	1,244	656	52.7	0	0.0	588	47.3
	비율	전체좌석의 1/3 이상	1,244	157	12.6	499	40.1	588	47.3
	안내표시	교통약자용 좌석 안내판 부착	1,244	656	52.7	0	0.0	588	47.3
	정차 스위치	앉은 상태에서 사용가능한 위치에 설치	656	656	100.0	0	0.0	0	0.0
	휠체어 전용공간 (저상)	1.3m×0.75m 이상 확보	125	125	100.0	0	0.0	0	0.0
	휠체어 고정설비 (저상)	지시대등 휠체어 고정설비	125	125	100.0	0	0.0	0	0.0
	교통약자용 좌석 평균		-	-	69.7	-	6.7	-	23.6
수직 손잡이	설치위치	좌석기준 2열 또는 3열에 하나씩 설치	599	594	99.2	5	0.8	0	0.0
	설치규격	손잡이 지름 30mm	599	599	100.0	0	0.0	0	0.0
	승강구 수직 손잡이	승강용 수직손잡이 설치	1,244	1,244	100.0	0	0.0	0	0.0
	수직손잡이 평균		-	-	99.7	-	0.3	-	0.0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저상)	안내표시	휠체어전용공간이 설치된 버스의 승강구에 장애인 이용가능 그림표지 부착	125	103	82.4	0	0.0	22	17.6
경상남도 버스 평균		-	-	77.6	-	10.2	-	12.1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표3-5] 경상남도 버스 차량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2021년)

구분		기준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시내버스	일반	477	79.0	11.9	9.1
	저상	125	88.1	9.7	2.2
	계	602	84.0	8.5	7.5
농어촌버스		79	55.7	17.1	27.2
마을버스	일반	40	71.8	10.6	17.6
	저상	-	-	-	-
	계	40	71.8	10.6	17.6
고속·시외버스		523	57.3	16.1	26.6
합계		1,244	77.6	10.2	12.1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표3-6] 전국 9개도 평균 버스 차량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2021년)

구분		기준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시내버스	일반	5,089	89.6	6.2	4.2
	저상	1,367	93.8	4.3	1.9
	계	6,456	92.9	4.1	3.0
농어촌버스		718	69.8	15.4	14.8
마을버스	일반	856	79.0	15.3	5.7
	저상	47	83.2	10.7	6.1
	계	903	79.4	10.9	9.8
고속·시외버스		3,018	65.4	16.5	18.1
합계		11,095	86.6	7.4	6.0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표3-7] 2016년 전국 9개도 평균 버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구분	2016년 전국 9개 도지역 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기준적합률	기준미적합	미설치
경기도	87.6	12.4	0
강원도	73.8	5.5	20.6
충청북도	78.2	6.4	15.5
충청남도	81.8	12.6	5.6
전라북도	78.2	6.4	15.5
전라남도	77.7	16.5	5.8
경상북도	78.7	19.3	2
경상남도	81.8	13.8	4.3
제주도	86.8	12.1	1.1
평 균	80.5	11.7	7.8

※자료: 201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17.02)

- 경상남도 교통수단 중 버스(일반, 저상)의 이동편의 시설 설치기준 적합율은 77.6%로 2016년 적합율 81.8% 대비 4.2%p가 감소하였고 전국 9개도 평균 86.6% 대비 9.0%p 낮은 수치로 나타남
- 버스차량은 내용년수 도래에 따라 연도를 거듭 할수록 신차 비율이 높아져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매년 이루어지는 국토부의 전국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버스차량의 경우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 조사로 이루어지고 있어 표본 선정에 따라 다소 오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표3-8] 201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조사대상 선정기준

구분	조사대상	전 체	조사대상	조사비율	조사방법
교통수단	버스차량	45,428대	17,241대	38.0%	표본조사(직접조사)
	철도차량(장애인객차)	159량	159량	100.0%	전수조사(관리주체의뢰)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8,426량	8,426량	100.0%	전수조사(직접조사)
	항공기	297대	297대	100.0%	전수조사(직접조사)
	여객선	169척	169척	100.0%	전수조사(직접조사)
여객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308개소	308개소	100.0%	전수조사(직접조사)
	철도역사	309개소	309개소	100.0%	전수조사(관리주체의뢰)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역사	908개소	908개소	100.0%	전수조사(직접조사)
	공항터미널	15개소	15개소	100.0%	전수조사(관리주체의뢰)
	여객선터미널	22개소	22개소	100.0%	전수조사(직접조사)
	버스정류장	-	3,044개소	-	표본조사(직접조사)
	도로(보행환경)	-	5,479개소	-	표본조사(직접조사)

※자료: 201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17.02)

[표3-9] 버스차량의 지역 및 연도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비교

구분	시내+농어촌	시내+농어촌+마을+시외				시내+농어촌버스(마을/시외 제외)				
	2016년 (①)	19년+20년 (②)	2021년 (③)	비고		2016년 (④)	19년+20년 (⑤)	2021년 (⑥)	비고	
				③-①	③-②				⑥-④	⑥-⑤
평균	85.3	91.7	90.0	▲ 4.7	▽ 1.7	85.3	92.8	93.4	▲ 8.1	▲ 0.6
서울	90.7	97.2	97.6	▲ 6.9	▲ 0.4	90.7	97.4	97.8	▲ 7.1	▲ 0.4
부산	89.1	88.7	89.0	▽ 0.1	▲ 0.3	89.1	91.2	91.6	▲ 2.5	▲ 0.4
대구	90.7	94.3	94.9	▲ 4.2	▲ 0.6	90.7	94.3	94.9	▲ 4.2	▲ 0.6
인천	88.9	91.4	93.9	▲ 5.0	▲ 2.5	88.9	91.4	94.0	▲ 5.1	▲ 2.6
광주	88.0	94.0	94.9	▲ 6.9	▲ 0.9	88.0	95.0	95.7	▲ 7.7	▲ 0.7
대전	92.6	95.1	95.9	▲ 3.3	▲ 0.8	92.6	95.1	96.0	▲ 3.4	▲ 0.9
울산	91.9	92.0	94.0	▲ 2.1	▲ 2.0	91.9	93.0	95.2	▲ 3.3	▲ 2.2
세종	80.5	84.8	85.6	▲ 5.1	▲ 0.8	80.5	83.9	84.9	▲ 4.4	▲ 1.0
경기	87.6	93.9	91.8	▲ 4.2	▽ 2.1	87.6	96.2	96.3	▲ 8.7	▲ 0.1
강원	73.8	83.7	81.9	▲ 8.1	▽ 1.8	73.8	87.4	88.3	▲14.5	▲ 0.9
충북	78.2	77.9	80.0	▲ 1.8	▲ 2.1	78.2	78.2	83.9	▲ 5.7	▲ 5.7
충남	81.8	81.4	78.6	▽ 3.2	▽ 2.8	81.8	82.9	83.4	▲ 1.6	▲ 0.5
전북	78.2	82.5	80.7	▲ 2.5	▽ 1.8	78.2	83.3	84.5	▲ 6.3	▲ 1.2
전남	77.7	87.5	83.9	▲ 6.2	▽ 3.6	77.7	88.2	88.2	▲10.5	-
경북	78.7	76.5	78.3	▽ 0.4	▲ 1.8	78.7	78.7	81.6	▲ 2.9	▲ 2.9
경남	81.8	80.4	77.6	▽ 4.2	▽ 2.8	81.8	81.8	82.0	▲ 0.2	▲ 0.2
제주	86.8	88.3	90.1	▲ 3.3	▲ 1.8	86.8	88.3	90.6	▲ 3.8	▲ 2.3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 경상남도의 버스차량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비교를 살펴보면 2016년 대비 2021년까지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마을버스의 조사대상이 경기, 경남 2곳을 표본으로 조사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며 마을/시외버스를 제외할 시 경상남도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84.0%)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상남도 버스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표3-10] 경상남도 버스차량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구분	시외버스	창원시		진주시		양산시		김해시		합산	거창/합천	
		일반	저상	일반	저상	일반	저상	일반	저상	농어촌	농어촌	
자동안내시설	방송음성	74.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
	방송언어	0.0	38.4	22.1	0.0	0.0	0.0	0.0	100.0	100.0	0.0	0.0
전자문자안내판	설치위치	65.6	58.6	100.0	0.0	100.0	48.3	100.0	100.0	100.0	100.0	0.0
	문자형태	65.6	58.6	100.0	0.0	100.0	48.3	100.0	100.0	100.0	100.0	0.0
	문자언어	65.6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목적지표시	설치위치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
	소재	81.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5
휠체어강설비	바닥높이	-	-	100.0	-	100.0	-	100.0	-	100.0	-	-
	승강설비	-	-	100.0	-	100.0	-	100.0	-	100.0	-	-
	승강구유효폭	-	-	100.0	-	100.0	-	100.0	-	100.0	-	-
	승강구바닥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승강구계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교통약자용좌석	위치	0.0	100.0	100.0	100.0	100.0	97.2	100.0	46.8	100.0	100.0	29.4
	비율	0.0	59.1	48.1	0.0	0.0	0.0	0.0	0.0	0.0	0.0	0.0
	안내표시	0.0	100.0	100.0	100.0	100.0	97.2	100.0	46.8	100.0	100.0	29.4
	정차스위치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휠체어전용공간	-	-	100.0	-	100.0	-	100.0	-	100.0	-	-
	휠체어고정설비	-	-	100.0	-	100.0	-	100.0	-	100.0	-	-
수직손잡이	설치비율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90.2
	규격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승강구수직손잡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인접근가능표시		-	-	71.4	-	100.0	-	100.0	-	100.0	-	-
평균		46.6	82.2	88.3	68.8	86.4	74.4	86.4	80.9	95.5	78.6	42.2

[표3-11]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버스차량 조사대상 선정방법

구분	2016년(전국)	2019년 (8개 특별·광역시)	2020년(9개 도)	2021년(전국)
조사대상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시내/농어촌 조사 ◦지역별 보유대수 상위업체 38% 표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8개 특별·광역시 내 시내/마을/농어촌 조사 ◦시내/마을 버스 조사대상 - 해당지역 보유대수 1위, 4위, 7위 ……에 해당되는 업체 표본조사 ◦농어촌버스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농어촌버스 해당업체 표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9개 도 지역 내 시내/농어촌/마을/시외버스 조사 ◦시내버스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상위50%시(市) 선정 - 대상 시(市) 보유대수의 약 20~25% 조사 ◦농어촌버스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역별(도) 내 농어촌 버스의 약 20% 조사 ◦마을버스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경남 대상으로 조사 (타지역 보유대수 미미) - 경기 : 보유대수 상위 3개 시(市)의 약 20% - 경남 : 보유대수 상위 1개 시(市)의 약 20% ◦시외버스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9개 도 내 시외버스 약 5%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시내/농어촌/마을 시외버스 조사 ◦시내/마을/농어촌버스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보유대수 상위 업체별 35% 표본조사 ◦시외버스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외버스 약 35% 조사
조사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241대(전체의 약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86대(전체의 약 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버스 5,401대 (보유대수의 약 31%) - 마을버스 662대 (보유대수의 약 31%) - 농어촌버스 23대 (보유대수의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4,531대(전체의 약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버스 3,455대 (보유대수의 약 20%) - 농어촌버스 398대 (보유대수의 약 20%) - 마을버스 243대 (보유대수의 약 10%) - 시외버스 435대 (보유대수의 약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922대(전체의 약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버스 12,406대 (보유대수의 약 35%) - 농어촌버스 718대 (보유대수의 35%) - 마을버스 1,780대 (보유대수의 약 35%) - 시외버스 3,018대 (보유대수의 약 35%)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2)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표3-12] 부산-김해경전철(주)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자동안내 시설	방송음성	명확한 음량과 음색	50	50	100.0	0	0.0	0	0.0
	방송언어	국어와 영어로 방송	50	50	100.0	0	0.0	0	0.0
	자동안내시설 평균		-	-	100.0	-	0.0	-	0.0
전자문자 안내판	설치위치	차량안의 출입구 또는 중앙부근	50	50	100.0	0	0.0	0	0.0
	문자형태	두터운글씨, 구별하기 쉬운 색상	50	50	100.0	0	0.0	0	0.0
	문자언어	한글과 영문	50	50	100.0	0	0.0	0	0.0
	전자문자 안내판 평균		-	-	100.0	-	0.0	-	0.0
목적지 표시	설치위치	외부에서 알아보기 쉬운 위치	50	50	100.0	0	0.0	0	0.0
	소재	강한 햇빛과 야간에도 식별 가능	50	50	100.0	0	0.0	0	0.0
	목적지 표시 평균		-	-	100.0	-	0.0	-	0.0
교통 약자용 좌석	설치비율	-1개 차량당 12개 이상 -50개 미만시 좌석수의 20 -휠체어공간 1개소당 좌석3개로 간주	50	50	100.0	0	0.0	0	0.0
	설치위치	승강구 부근	50	50	100.0	0	0.0	0	0.0
	안내판 부착	전용좌석옆 부착	50	50	100.0	0	0.0	0	0.0
	휠체어 전용공간	1.2m×0.7m 이상	50	0	0.0	50	100.0	0	0.0
	교통약자용 좌석 평균		-	-	75.0	-	25.0	-	0.0
수직 손잡이	설치위치	좌석기준 2열 또는 4열에 하나씩 설치	50	50	100.0	0	0.0	0	0.0
	설치규격	손잡이 지름 30mm	50	50	100.0	0	0.0	0	0.0
	수직손잡이 평균		-	-	100.0	-	0.0	-	0.0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설치위치	휠체어공간이 설치된 차량의 출입문	50	50	100.0	0	0.0	0	0.0
출입구 통로	통류 유효폭	0.8m 이상	50	50	100.0	0	0.0	0	0.0
부산-김해경전철(주) 평균			-	-	96.4	-	3.6	-	0.0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표3-13] 전국 9개도 평균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차량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자동안내 시설	방송음성	명확한 음량과 음색	182	182	100.0	0	0.0	0	0.0
	방송언어	국어와 영어로 방송	182	182	100.0	0	0.0	0	0.0
	자동안내시설 평균		-	-	100.0	-	0.0	-	0.0
전자문자 안내판	설치위치	차량안의 출입구 또는 중앙부근	182	182	100.0	0	0.0	0	0.0
	문자형태	두터운글씨, 구별하기 쉬운 색상	182	182	100.0	0	0.0	0	0.0
	문자언어	한글과 영문	182	182	100.0	0	0.0	0	0.0
	전자문자 안내판 평균		-	-	100.0	-	0.0	-	0.0
목적지 표시	설치위치	외부에서 알아보기 쉬운 위치	182	122	67.0	0	0.0	60	33.0
	소재	강한 햇빛과 야간에도 식별 가능	182	122	67.0	0	0.0	60	33.0
	목적지 표시 평균		-	-	67.0	-	0.0	-	33.0
교통약자용 좌석	설치비율	-1개 차량당 12개 이상 -50개 미만시 좌석수의 20 -휠체어공간 1개소당 좌석3개로 간주	182	182	100.0	0	0.0	0	0.0
	설치위치	승강구 부근	182	182	100.0	0	0.0	0	0.0
	안내판 부착	전용좌석옆 부착	182	182	100.0	0	0.0	0	0.0
	휠체어 전용공간	1.2m×0.7m 이상	182	68	37.4	46	25.3	68	37.4
	교통약자용 좌석 평균		-	-	84.3	-	6.3	-	9.3
수직 손잡이	설치위치	좌석기준 2열 또는 4열에 하나씩 설치	182	182	100.0	0	0.0	0	0.0
	설치규격	손잡이 지름 30mm	182	182	100.0	0	0.0	0	0.0
	수직손잡이 평균		-	-	100.0	-	0.0	-	0.0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설치위치	휠체어공간이 설치된 차량의 출입문	114	114	100.0	0	0.0	0	0.0
출입구 통로	통류 유효폭	0.8m 이상	182	182	100.0	0	0.0	0	0.0
전국 9개도 평균			-	-	93.1	-	0.9	-	6.0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 경상남도 교통수단 중 부산-김해경전철(주)의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차량 이동편의 시설 설치기준 적합율은 96.4%로 2016년 100%에서 3.6% 낮아졌고 2021년 전국 9개도 평균 93.1% 대비 3.3%p 높은 수치로 나타남

[표3-14]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차량의 항목 및 연도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비교

구분	2016년(①)	19년+20년(②)	2021년(③)	비교	
				③-①	③-②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차량 평균	91.7	95.3	96.0	▲ 4.3	▲ 0.7
자동안내시설	100.0	100.0	100.0	-	-
전자문자안내판	94.1	100.0	100.0	▲ 5.9	-
목적지표시	99.6	99.1	98.6	▽ 1.0	▽ 0.5
교통약자용좌석	99.2	85.5	83.9	▽15.3	▽ 1.6
수직손잡이	62.9	88.7	92.0	▲29.1	▲ 3.3
장애인접근가능표시	98.4	93.5	97.4	▽ 1.0	▲ 3.9
출입구통로	100.0	100.0	100.0	-	-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표3-15]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차량 조사대상 선정방법

구분	2016년(전국)	2019년 (8개 특별·광역시)	2020년(9개 도)	2021년(전국)
조사대상	◦전국 운행하는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차량 전수조사 -총 8,426량	◦8개 특별·광역시를 운행하 는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차량 전수조사 -총 8,620량	◦9개 도 지역을 운행하는 도 시철도 및 광역철도 차량 전수조사 -2019년 특별·광역시 조사 에 미포함하는 차량 대상 -총 134량	◦전국 운행하는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차량 전수조사 -총 8,712량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3) 여객선 기준적합 설치율

[표3-16]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자동안내 시설	방송음성	명확한 음량과 음색	24	0	0.0	0	0.0	24	100.0
	방송언어	국어와 영어로 방송	-	-	-	-	-	-	-
		자동안내 시설평균	-	-	0.0	-	0.0	-	100.0
전자문자 안내판	설치위치	출입구부근 또는 중앙에 설치	24	0	0.0	0	0.0	24	100.0
	문자형태	굵은글씨,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	-	-	-	-	-	-	-
	문자언어	한글과 영어	-	-	-	-	-	-	-
		전자문자 안내판 평균	-	-	0.0	-	0.0	-	100.0
목적지 표시	설치위치	외부에서 알아보기 쉬운 위치	24	22	91.7	0	0.0	2	8.3
	소재	강한 햇빛과 아간에도 식별 가능	22	0	0.0	22	100.0	0	0.0
		목적지표시 평균	-	-	45.8	-	50.0	-	4.2
휠체어 승강설비	승강설비	승강설비 중 하나 이상은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에 적합한 구조	24	0	0.0	24	100.0	0	0.0
	여객 출입구	출입구 1곳 이상은 휠체어 사용자 통과 가능한 경사판 등 설치	24	24	100.0	0	0.0	0	0.0
	3천톤 이상 승강설비	승강기 또는 휠체어리프트 1곳 이상 설치	1	1	100.0	0	0.0	0	0.0
	승강기 크기 및 재질	휠체어이용이 충분하고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	1	1	100.0	0	0.0	0	0.0
		휠체어 승강설비 평균	-	-	75.0	-	25.0	-	0.0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설치비율	휠체어 전용공간이 여객정원 100인당 1곳 이상 설치	24	2	8.3	1	4.2	21	87.5
	설치위치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3	0	0.0	3	100.0	0	0.0
	휠체어 보관함	휠체어 보관함 설치	24	0	0.0	0	0.0	24	100.0
	고정설비	손잡이 및 휠체어 고정설비 설치	24	2	8.3	0	0.0	22	91.7
		휠체어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평균	-	-	4.2	-	26.0	-	69.8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위치	휠체어전용좌석과 가까운 위치	24	1	4.2	6	25.0	17	70.8
	대변기	장애인 대변기 1개 이상	7	6	85.7	1	14.3	0	0.0
	출입문 형태	미닫이식	7	1	14.3	4	57.1	2	28.6
	접자 표지판	출입문 옆에 설치	7	1	14.3	0	0.0	6	85.7
		장애인 전용 화장실 평균	-	-	29.6	-	24.1	-	46.3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설치위치	선박의 출입문에 장애인 이용가능 그림표지 부착	24	1	4.2	0	0.0	23	95.8
출입구 통로	승강구 ~좌석	통로 유효폭 0.8m 이상	24	24	100.0	0	0.0	0	0.0
	좌석 ~화장실	통로 유효폭 0.8m 이상	24	23	95.8	1	4.2	0	0.0
	손잡이	통로의 0.9m 높이에 설치	24	4	16.7	0	0.0	20	83.3
	손잡이 접자표지	손잡이에 접자표지판 설치	4	1	25.0	0	0.0	3	75.0
		출입구 통로 평균	-	-	59.4	-	1.0	-	39.6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평균	-	-	27.3	-	15.8	-	57.0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표3-17] 전국 9개도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자동안내 시설	방송음성	명확한 음량과 음색	143	37	25.9	3	2.1	103	72.0
	방송언어	국어와 영어로 방송	40	10	25.0	30	75.0	0	0.0
		자동안내 시설평균	-	-	25.4	-	38.5	-	36.0
전자문자 안내판	설치위치	출입구부근 또는 중앙에 설치	143	14	9.8	1	0.7	128	89.5
	문자형태	굵은글씨,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	15	2	13.3	13	86.7	0	0.0
	문자언어	한글과 영어	15	12	80.0	3	20.0	0	0.0
		전자문자 안내판 평균	-	-	34.4	-	35.8	-	29.8
목적지 표시	설치위치	외부에서 알아보기 쉬운 위치	143	74	51.7	31	21.7	38	26.6
	소재	강한 햇빛과 아간에도 식별 가능	105	41	39.0	64	61.0	0	0.0
		목적지표시 평균	-	-	45.4	-	41.3	-	13.3
휠체어 승강설비	승강설비	승강설비 중 하나 이상은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에 적합한 구조	143	5	3.5	128	89.5	10	7.0
	여객 출입구	출입구 1곳 이상은 휠체어 사용자 통과 가능한 경사판 등 설치	143	133	93.0	0	0.0	10	7.0
	3천톤 이상 승강설비	승강기 또는 휠체어리프트 1곳 이상 설치	7	7	100.0	0	0.0	0	0.0
	승강기 크기 및 재질	휠체어이용이 충분하고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	7	3	42.9	4	57.1	0	0.0
		휠체어 승강설비 평균	-	-	59.8	-	36.7	-	3.5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설치비율	휠체어 전용공간이 여객정원 100인당 1곳 이상 설치	143	21	14.7	2	1.4	120	83.9
	설치위치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23	18	78.3	5	21.7	0	0.0
	휠체어 보관함	휠체어 보관함 설치	143	0	0.0	0	0.0	143	100.0
	고정설비	손잡이 및 휠체어 고정설비 설치	143	18	12.6	0	0.0	125	87.4
		휠체어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평균	-	-	26.4	-	5.8	-	67.8
		휠체어 전용 좌석과 가까운 위치	143	12	8.4	35	24.5	96	67.1
장애인 전용 화장실	대변기	장애인 대변기 1개 이상	47	46	97.9	1	2.1	0	0.0
	출입문 형태	미닫이식	47	18	38.3	11	23.4	18	38.3
	점자 표시판	출입문 옆에 설치	47	21	44.7	0	0.0	26	55.3
		장애인 전용 화장실 평균	-	-	47.3	-	12.5	-	40.2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선박의 출입문에 장애인 이용가능 그림표지 부착	143	17	11.9	0	0.0	126	88.1
출입구 통로	승강구 ~좌석	통로 유효폭 0.8m 이상	143	135	94.4	6	4.2	2	1.4
	좌석 ~화장실	통로 유효폭 0.8m 이상	143	127	88.8	16	11.2	0	0.0
	손잡이	통로의 0.9m 높이에 설치	143	33	23.1	1	0.7	109	76.2
	손잡이 점자표지	손잡이에 점자표지판 설치	38	8	21.1	0	0.0	30	78.9
		출입구 통로 평균	-	-	56.8	-	4.0	-	39.1
		전국 9개도 평균	-	-	38.4	-	21.8	-	39.7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표3-18] 지방해양수산청별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부산	인천	동해	대산	군산	여수	목포	포항	마산	제주
기준사례수	1	19	4	9	5	20	68	4	24	9
평균	37.5	40.5	34.1	39.7	42.5	34.2	40.9	29.2	27.3	47.4
자동안내시설	100.0	45.2	50.0	36.1	0.0	29.2	23.2	50.0	0.0	59.7
전자문자안내판	0.0	43.5	16.7	70.4	0.0	35.0	34.8	66.7	0.0	44.4
목적지표시	100.0	41.1	25.0	19.4	80.0	17.5	54.3	0.0	45.8	77.8
휠체어승강설비	0.0	73.7	62.5	44.4	50.0	51.3	61.0	50.0	75.0	69.4
휠체어보관함 및 교통약자용좌석	0.0	3.9	0.0	11.1	35.0	27.5	34.6	0.0	4.2	27.8
장애인 전용화장실	50.0	47.8	62.5	58.3	50.0	53.8	48.3	0.0	29.6	47.2
장애인 접근가능표시	0.0	15.8	0.0	22.2	40.0	5.0	16.2	0.0	4.2	0.0
출입구통로	50.0	52.6	56.3	55.6	85.0	54.2	54.8	66.7	59.4	52.8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표3-19] 2016년 전국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기준적합률(%)	기준미적합(%)	미설치(%)
안내시설	23.3	17.5	59.3
출입구 및 통로	10.3	19.0	70.7
휠체어승강설비 및 보관함	52.5	12.8	34.7
교통약자좌석	2.4	0.0	97.6
장애인화장실	16.7	10.0	73.3
장애인 접근가능표시	0.6	0.0	99.4
여객선 평균	17.6	9.9	72.5

※자료: 201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17.02)

- 경상남도 교통수단 중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여객선 이동편의 시설 설치기준 적합율은 27.3%로 2016년 전국 평균 17.6% 대비 9.7% 높아졌고 2021년 9개도 평균 38.4% 대비 11.1%p 낮고 전국 37.3%대비 10% 낮은 수치로 나타남

[표3-20] 여객선의 항목 및 연도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비교

구분	2016년(①)	19년+20년(②)	2021년(③)	비고	
				③-①	③-②
여객선 평균	17.6	34.9	37.8	▲20.2	▲ 2.9
자동안내시설	57.1	53.3	27.1	▽30.0	▽26.2
전자문자안내판	9.8	22.5	33.3	▲23.5	▲10.8
목적지표시	3.0	54.9	45.3	▲42.3	▽ 9.6
휠체어승강설비	52.5	66.2	58.0	▲ 5.5	▽ 8.2
휠체어보관함 및 교통약자용좌석	2.4	0.8	23.7	▲21.3	▲22.9
장애인 전용화장실	16.7	22.8	47.0	▲30.3	▲24.2
장애인 접근가능표시	17.6	2.2	12.3	▽ 5.3	▲10.1
출입구통로	10.3	56.3	55.9	▲45.6	▽ 0.4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표3-21]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여객선 조사대상 선정방법

구분	2016년(전국)	2019년 (8개 특별·광역시)	2020년(9개 도)	2021년(전국)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운항중인 연안여객선 전수조사 - 총 169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인천 지방해양청 관할 연안여객선 조사 - 총 19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9개 도 지역의 운항항로 중 수송실적 상위 30% 항로를 운행하는 연안여객선 표본 조사 - 총 73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운항중인 연안여객선 전수조사 - 총 163대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나.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1)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표3-22] 전국 9개도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보행 접근로	유효폭	접근로 유효폭 2m 이상	291	242	83.2	47	16.2	2	0.7	
	기울기	접근로 전체구간 1/8이하	291	249	85.6	38	13.1	4	1.4	
	재질및마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291	260	89.3	30	10.3	1	0.3	
	높이차이 제거	단차가 없어야하며,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	291	258	88.7	13	4.5	20	6.9	
	보행접근로 평균		-	-	86.7	-	11.0	-	2.3	
매개 시설	설치장소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	55	23	41.8	3	5.5	29	52.7	
	설치비율	주차대수의 3이상	26	18	69.2	8	30.8	0	0.0	
	보행안전통로	주출입구까지 확보 (유효폭 1.2m 이상)	26	5	19.2	1	3.8	20	76.9	
	장애인전용 주차공간	3.3m×5.0m	26	24	92.3	2	7.7	0	0.0	
	바닥마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26	23	88.5	3	11.5	0	0.0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이 가능하도록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26	18	69.2	8	30.8	0	0.0	
	바닥면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1/50이하	26	25	96.2	1	3.8	0	0.0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평균		-	-	68.1	-	13.4	-	18.5	
매개시설 평균		-	-	77.4	-	12.2	-	10.4		
내부 시설	통과유효폭	0.9m 이상 확보	413	370	89.6	43	10.4	0	0.0	
	전면활동공간 유효거리	1.2m 이상 확보	413	380	92.0	0	0.0	33	8.0	
	출입구 옆 활동공간	0.6m 이상 확보	413	363	87.9	37	9.0	13	3.1	
	출입구단차	높이차를 두어서는 안됨	413	390	94.4	15	3.6	8	1.9	
	문형태	미닫이문	문지방 또는 홈이 없이 설치	5	4	80.0	0	0.0	1	20.0
		여닫이문	도어체크 설치되고 3초이상 개폐	343	230	67.1	74	21.6	39	11.4
		자동문	충분한 개방시간과 감지범위	65	65	100.0	0	0.0	0	0.0
	손잡이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사이에 설치	348	319	91.7	23	6.6	6	1.7	
	공중사무실 접자표지판	공중사무실 출입구 옆 벽면 1.5m 높이 설치	217	1	0.5	5	2.3	211	97.2	
	점형블록	출입문 전면 0.3m 설치	413	207	50.1	49	11.9	157	38.0	
	호출벨	자동문 옆 설치	65	0	0.0	0	0.0	65	100.0	
	출입구(문) 평균		-	-	68.5	-	5.9	-	25.6	

[표 계속]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내부 시설	통로	유효폭 바닥단차	유효폭 2m 이상 확보 단차 2m 이하 확보	-	-	-	-	-	-	
		바닥마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며, 넘어져도 충격이 적은 재료로 마감	-	-	-	-	-	-	
		손잡이높이	높이 0.8m~0.9m로 연속적으로 설치	-	-	-	-	-	-	
		손잡이굵기	지름 3.2~3.8cm로 연속적으로 설치	-	-	-	-	-	-	
		손잡이와 벽간 간격	벽면간의 간격은 5cm 내외	-	-	-	-	-	-	
		손잡이 점자표지판	손잡이 끝 점자표지판 부착	-	-	-	-	-	-	
		벽면 보행장애물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m~2.1m 이내에 물체의 돌출폭 0.1m 이하로 설치	-	-	-	-	-	-	
		기둥, 받침대 보행장애물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m ~2.1m 이내에 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공작물의 돌출폭 0.3m 이하로 설치	-	-	-	-	-	-	
		보행장애물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의 유효높이 확보	-	-	-	-	-	-	
		킥플레이트설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벽면 보호대 설치	-	-	-	-	-	-	
		통로모서리	통로 모서리부분 안전성 확보	-	-	-	-	-	-	
		통로 평균	통로 평균	-	-	-	-	-	-	
		경사로	경사로	유효폭	유효폭 2미터 이상 확보	42	38	90.5	0	0.0
휴식참	바닥면으로부터 0.75미터 이내마다 1.5m×1.5미터 이상의 휴식참 설치			42	35	83.3	6	14.3	1	2.4
활동공간	시작,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42	25	59.5	13	31.0	4	9.5
기울기	높이16cm초과:1/12이하 높이16cm이하:1/ 8이하			42	24	57.1	17	40.5	1	2.4
손잡이높이	높이 0.8m~0.9m로 연속적으로 설치			42	29	69.0	9	21.4	4	9.5
손잡이굵기	지름 3.2cm~3.8cm로 연속적으로 설치			38	29	76.3	9	23.7	0	0.0
손잡이와 벽간간격	벽면간의 간격은 5cm 내외			38	36	94.7	2	5.3	0	0.0
손잡이 점자표지판	손잡이 끝 점자표지판 부착			38	13	34.2	5	13.2	20	52.6
수평손잡이	시작과 끝에 0.3m 수평손잡이 연장 설치			38	5	13.2	10	26.3	23	60.5
재질및마감	미끄럽지 않게 평탄하게 마감			42	30	71.4	11	26.2	1	2.4
추락방지턱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42	33	78.6	5	11.9	4	9.5
완화매트	설치필요구간 벽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매트 설치			24	1	4.2	0	0.0	23	95.8
경사로 평균	경사로 평균			-	-	61.0	-	17.8	-	21.2

[표 계속]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내부 시설	설치 장소	외부↔ 대합실	도로양측에 1개소씩 (지상횡단가능시 1개소만)	8	5	62.5	3	37.5	0	0.0
		대합실↔ 승강장	양방향승강장 2개이상 중앙식승강장 1개이상	9	9	100.0	0	0.0	0	0.0
	전면활동공간	승강기 전면 1.5m×1.5m 이상	17	16	94.1	1	5.9	0	0.0	
	승강장과 승강기간격	간격 3cm이하	17	17	100.0	0	0.0	0	0.0	
	크기	15인승이상(9인승완화가능) 유효바닥면적 1.1m×1.4m 이상	17	16	94.1	1	5.9	0	0.0	
	출입문 유효폭	유효폭 0.8m 이상	17	17	100.0	0	0.0	0	0.0	
	조작설비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8m이상, 1.2m이하로 설치	17	17	100.0	0	0.0	0	0.0	
	점자표지판	세로조작설비의 조작반, 통화장치 등에 부착	17	13	76.5	1	5.9	3	17.6	
	가로조작반	내부 우측 0.85m높이 설치 모서리에서 0.4m 떨어져 설치	17	13	76.5	0	0.0	4	23.5	
	손잡이높이	높이 0.8m~0.9m로 연속적으로 설치	17	14	82.4	3	17.6	0	0.0	
	손잡이굵기	지름 3.2cm~3.8cm로 연속적으로 설치	17	13	76.5	4	23.5	0	0.0	
	손잡이와 벽간격	5cm내외	17	17	100.0	0	0.0	0	0.0	
	내부거울	내부 후면에 거울설치 (내부크기 1.4×1.4m이상은 거울설치 의무 없음)	5	2	40.0	1	20.0	2	40.0	
	안내시설	운행상황, 도착여부를 알려주는 점멸 및 음성신호장치 설치	17	13	76.5	4	23.5	0	0.0	
	안전장치	되열림 장치 설치	17	17	100.0	0	0.0	0	0.0	
	점형블록	버튼전면 0.3m에 설치	17	13	76.5	1	5.9	3	17.6	
	출입문형태	전면 또는 일부 투명재질로 설치	17	3	17.6	0	0.0	14	82.4	
	엘리베이터 평균			-	-	80.8	-	8.6	-	10.7
	에스컬레이터	설치장소	모든내부계단에 상행, 하행 1개소 이상 설치	7	6	85.7	1	14.3	0	0.0
		유효폭	유효폭 0.8m이상	7	7	100.0	0	0.0	0	0.0
속도		분당 30m이내	7	7	100.0	0	0.0	0	0.0	
이동손잡이		양측면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 설치	7	7	100.0	0	0.0	0	0.0	
수평이동손잡이		양끝부분에 수평이동손잡이 1.2m이상 설치	7	7	100.0	0	0.0	0	0.0	
수평고정손잡이		양끝부분에 수평고정손잡이 1.0m이상 설치	7	3	42.9	0	0.0	4	57.1	
손잡이점자표시		수평고정손잡이에 점자표시 설치	3	0	0.0	1	33.3	2	66.7	
에스컬레이터 평균			-	-	75.5	-	6.8	-	17.7	

[표 계속]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내부 시설	계단	휴식참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m 이내 마다 수평면으로 된 참 설치	44	26	59.1	12	27.3	6	13.6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 2m이상 확보	44	40	90.9	3	6.8	1	2.3
		디딤판	너비 0.28m이상으로 설치	44	41	93.2	3	6.8	0	0.0
		철폐면	높이 0.18m이하로 설치	44	39	88.6	5	11.4	0	0.0
		철폐면기울기	수평면으로부터 60°이상	44	36	81.8	8	18.2	0	0.0
		계단코 길이	3cm이하 설치	44	37	84.1	7	15.9	0	0.0
		손잡이 높이	손잡이 높이 0.8m~0.9m로 연속적으로 설치	44	34	77.3	3	6.8	7	15.9
		손잡이 굵기	지름 3.2cm~3.8cm로 연속적으로 설치	37	30	81.1	7	18.9	0	0.0
		손잡이와 벽간격	5cm내외	37	36	97.3	1	2.7	0	0.0
		손잡이 점자표지판	손잡이 끝 점자표지판 부착	37	19	51.4	5	13.5	13	35.1
		수평손잡이	시작과 끝에 0.3m 수평손잡이 연장 설치	37	4	10.8	23	62.2	10	27.0
		계단 재질	미끄럽지 않게 평탄하게 마감	44	36	81.8	7	15.9	1	2.3
		계단코 재질	줄눈넣기,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	44	27	61.4	11	25.0	6	13.6
		점형블록	시작과 끝지점(중간 참 포함) 전면 0.3m에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44	28	63.6	4	9.1	12	27.3
		추락방지턱	2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축벽 설치	44	30	68.2	0	0.0	14	31.8
계단 평균		-	-	72.7	-	16.0	-	11.3		
내부시설 평균		-	-	71.7	-	11.0	-	17.3		
위생 시설	장애인 화장실 일 반 사 항	화장실위치	장애인이 인지하기 쉽고 양호한 접근통로 확보	226	83	36.7	81	35.8	62	27.4
		대변기 남녀구분설치	장애인 이용가능한 화장실이 남녀 구분하여 각 1개이상 설치	226	141	62.4	23	10.2	62	27.4
		바닥면 높이차이	2cm이하의 단차	226	219	96.9	4	1.8	3	1.3
		바닥마감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	226	142	62.8	84	37.2	0	0.0
		점형블록	장애인 전용 화장실 전면 0.3m 위치에 점형블록 설치	226	37	16.4	8	3.5	181	80.1
		점자표지판	출입구옆 벽면에 남자용,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설치	226	71	31.4	15	6.6	140	61.9
	장애인 화장실 평균		-	-	51.1	-	15.9	-	33.0	
	장애인 대변기	대변기칸막이	유효 바닥면 크기는 폭 1.4m이상, 길이 1.8m이상 확보	429	214	49.9	215	50.1	0	0.0
		대변기 좌우측 유효폭	유효폭 0.7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429	144	33.6	136	31.7	149	34.7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429	187	43.6	94	21.9	148	34.5
출입문 형태		미닫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설치	429	277	64.6	152	35.4	0	0.0	
출입문 유효폭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이상 확보	429	273	63.6	156	36.4	0	0.0	

[표 계속]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위생 시설	장애인 대변기	대변기 형태	대변기는 양변기형태이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5m이하로 설치	429	290	67.6	139	32.4	0	0.0
		수평손잡이	양옆에 수평손잡이 설치	415	250	60.2	27	6.5	138	33.3
		세정장치, 휴지걸이	세정장치는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휴지걸이 등은 대변기 앞의 상태에서 이용가능한 위치에 설치	429	193	45.0	137	31.9	99	23.1
		사용여부 설비	대변기 출입문에 사용여부를 알수 있는 시각적 설비 설치	429	189	44.1	49	11.4	191	44.5
		장애인 대변기 평균		-	-	52.5	-	28.6	-	18.9
	장애인 소변기	수평손잡이	높이:바닥면으로부터 0.8m~0.9m 길이:벽면으로부터 0.55m 내외 좌우손잡이간격:0.6m내외	240	138	57.5	4	1.7	98	40.8
		수직손잡이	높이:바닥면으로부터 1.1m~1.2m 길이: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	240	139	57.9	3	1.3	98	40.8
		장애인 소변기평균		-	-	57.7	-	1.5	-	40.8
	장애인 세면대	설치높이	상단높이:바닥면으로부터 0.85m이하 하단높이:0.65m이상 (휠체어발판이 들어갈수 있도록 공간확보)	330	144	43.6	9	2.7	177	53.6
		수도꼭지형태	사용하기 쉬운 형태	153	153	100.0	0	0.0	0	0.0
		수평손잡이	양옆에 설치 (카운터식 세면대 제외)	153	138	90.2	0	0.0	15	9.8
		점자표시	수도꼭지 점자표시	153	11	7.2	0	0.0	142	92.8
		거울	하단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9m내외 세로길이는 0.65m이상	153	127	83.0	18	11.8	8	5.2
		장애인 세면대 평균		-	-	64.8	-	2.9	-	32.3
	위생시설 평균		-	-	56.5	-	12.2	-	31.3	
안내 시설	점자블록	설치장소	주출입구로부터 매표소, 대합실 및 승강장으로 이동시 연속적으로 설치 (장애인안내표지 설치시 해당)	217	71	32.7	65	30.0	81	37.3
		규격 및 색상	0.3m×0.3m 노란색	136	111	81.6	25	18.4	0	0.0
		설치방법	점형블록:주요지점 및 위험지점 0.3m전면 설치 선형블록: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 설치	136	76	55.9	60	44.1	0	0.0
		점자블록 평균		-	-	56.7	-	30.8	-	12.4
	안내 표지	안내도	점자를 병기한 안내판 설치	217	32	14.7	4	1.8	181	83.4
		유도신호장치	유도신호장치 설치	217	18	8.3	1	0.5	198	91.2
		안내 및 유도시설 평균		-	-	11.5	-	1.2	-	87.3
	경보 피난지	청각경보장치	청각경보장치설치	217	148	68.2	0	0.0	69	31.8
		시각경보장치	시각경보장치설치	217	129	59.4	0	0.0	88	40.6
		경보피난시설 평균		-	-	63.8	-	0.0	-	36.2
안내시설 평균		-	-	44.0	-	10.7	-	45.3		

[표 계속]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장애인 매표소	활동공간	휠체어 접근가능 활동공간 확보	222	86	38.7	3	1.4	133	59.9
	점자블록	매표소 전면 0.3m 점자블록 설치	89	24	27.0	0	0.0	65	73.0
	높이	매표소 높이 0.7m~0.9m이하	89	77	86.5	12	13.5	0	0.0
	하부공간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89	83	93.3	6	6.7	0	0.0
	장애인 매표소 평균		-	-	61.4	-	5.4	-	33.2
자동 발매기	활동공간	휠체어탄재 접근할 수 있는 활동공간 확보	141	114	80.9	17	12.1	10	7.1
	점자블록	자동발매기 전면 0.3m 점자블록 설치	141	23	16.3	4	2.8	114	80.9
	조작버튼 설치위치	조작버튼등 높이 0.4m~1.2m이하로 설치	141	100	70.9	41	29.1	0	0.0
	점자표시	조작버튼 점자로 표시	141	80	56.7	2	1.4	59	41.8
	음료대분출구 높이	분출구높이 0.7m이상 0.8m이하	25	11	44.0	0	0.0	14	56.0
	음료조작기	사용하기 쉬운 형태	25	21	84.0	0	0.0	4	16.0
	자동 발매기 평균		-	-	58.8	-	7.6	-	33.6
기타 시설	개폐방법	1개소이상 자동개폐식 설치 (상시 안내서비스 제공시 자동개폐식 설치로 봄)	-	-	-	-	-	-	-
	유효폭	0.8m이상	-	-	-	-	-	-	-
	점자블록	자동개폐기 전면 0.3m 점형블록 설치	-	-	-	-	-	-	-
	개찰구 평균		-	-	-	-	-	-	-
승강장 (철도/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역사)	바닥기울기	기울기 1/100이하	-	-	-	-	-	-	-
	바닥마감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	-	-	-	-	-	-
	점자블록	승강장 가장자리 0.3m~0.9m 범위에 설치	-	-	-	-	-	-	-
	차량간격	승강장과 차량간격 5cm이하	-	-	-	-	-	-	-
	전락방지시설	스크린도어 및 안전펜스 설치	-	-	-	-	-	-	-
	난간	승강장 끝부분에 1.1m~1.5m의 추락방지용 난간 설치	-	-	-	-	-	-	-
	차량접근 경고시설	청각,시각장애인에게 차량접근시 경고/안내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	-	-	-	-	-
	휠체어 승강장 안내	접근계단부터 휠체어탑승가능 구역 안내표시	-	-	-	-	-	-	-
	승강장 평균		-	-	-	-	-	-	-
승강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승강장	승강장 끝부분에 안전펜스 또는 점형블록 설치	893	251	28.1	16	1.8	626	70.1
	바닥기울기	기울기 1/100이하	893	859	96.2	15	1.7	19	2.1
	바닥마감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893	620	69.4	273	30.6	0	0.0
	승강장 평균		-	-	64.6	-	11.3	-	24.1

[표 계속]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보안 검사장 및 여객 탑승교	보안검사장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통로(폭 0.9m이상) 설치	-	-	-	-	-	-	-
	여객탑승교 유효폭	0.9m이상	-	-	-	-	-	-	-
	여객탑승교 기울기	1/12이하의 기울기 확보	-	-	-	-	-	-	-
	보안검사장 및 여객탑승교 평균		-	-	-	-	-	-	-
임산부 휴게 시설	임산부휴게시설 위치	휠체어사용자 및 유모차 접근가능 위치	217	23	10.6	0	0.0	194	89.4
	임산부 휴게시설	수유실 별도 설치	23	23	100.0	0	0.0	0	0.0
	전면 활동공간	1.4m×1.4m이상 활동공간 확보	23	13	56.5	8	34.8	2	8.7
	기저귀 교환대 높이	높이0.85m~0.65m 설치	21	18	85.7	3	14.3	0	0.0
	기저귀 교환대 하부공간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21	17	81.0	4	19.0	0	0.0
	임산부 휴게시설 평균		-	-	66.8	-	13.6	-	19.6
기타시설 평균		-	-	62.9	-	9.5	-	27.6	
9개 도 평균		-	-	62.5	-	11.1	-	26.4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표3-23] 전국 9개도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역 및 연도별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2016년(①)	19년+20년(②)	2021년(③)	비교	
				③-①	③-②
경기	63.3	73.1	69.9	▲ 6.6	▽ 3.2
강원	52.5	65.8	63.6	▲11.1	▽ 2.2
충북	56.2	66.0	67.0	▲10.8	▲ 1.0
충남	49.4	66.2	67.2	▲17.8	▲ 1.0
전북	46.0	61.7	59.2	▲13.2	▽ 2.5
전남	45.3	50.9	54.3	▲ 9.0	▲ 3.4
경북	43.2	64.6	55.8	▲12.6	▽ 8.8
경남	46.6	66.4	64.9	▲18.3	▽ 1.5
제주	57.1	59.7	59.7	▲ 2.6	-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 경상남도 시군별 여객자동차터미널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기준적합률

[표3-24] 경상남도 시부 여객자동차터미널 기준적합률

구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매개시설	보행접근로	95.8	100.0	75.0	75.0	75.0	87.5	10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71.4	-	-	-	-	-	71.4
내부시설	출입구	69.2	33.3	56.3	57.1	75.0	50.0	57.1
	경사로	70.8	-	41.7	-	-	-	-
	계단	81.8	-	-	-	-	-	93.3
위생시설	화장실	60.0	41.7	50.0	100.0	60.0	41.7	50.0
	대변기	82.7	27.8	62.5	85.7	77.8	38.9	100.0
	소변기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세면대	69.2	70.0	50.0	0.0	0.0	66.7	0.0
안내시설	점자블록	71.7	83.3	0.0	100.0	100.0	83.3	0.0
	안내 및 유도시설	10.0	0.0	50.0	0.0	0.0	0.0	0.0
	경보피난시설	100.0	50.0	100.0	100.0	100.0	50.0	100.0
기타시설	매표소	76.3	75.0	75.0	75.0	75.0	62.5	75.0
	자동발매기 및 음료대	90.0	75.0	66.7	66.7	75.0	75.0	75.0
	승강장	77.8	40.7	66.7	33.3	33.3	58.3	100.0
	임산부휴게시설	0.0	0.0	0.0	0.0	0.0	0.0	40.0
	교통약자이용정보 편의제공	4.0	0.0	0.0	0.0	0.0	0.0	0.0
평균		66.5	49.8	52.9	56.6	55.1	47.2	60.1

[표3-25] 경상남도 군부 여객자동차터미널 기준적합률

구분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매개시설	보행접근로	75.0	75.0	100.0	83.3	12.5	50.0	75.0	75.0	100.0	10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	-	-	42.9	71.4	-	-	-
내부시설	출입구	58.3	42.9	62.5	70.0	50.0	38.3	33.3	42.9	37.5	85.7
	경사로	-	-	-	-	25.0	-	58.3	-	-	-
	계단	-	-	-	-	72.7	-	53.3	42.9	-	-
위생시설	화장실	50.0	75.0	44.4	58.3	20.0	44.4	66.7	66.7	33.3	100.0
	대변기	50.0	42.9	59.3	44.4	50.0	29.6	44.4	50.0	55.6	88.9
	소변기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100.0	100.0
	세면대	0.0	100.0	58.3	91.7	0.0	62.5	0.0	80.0	0.0	100.0
안내시설	점자블록	100.0	100.0	88.9	83.3	0.0	44.4	0.0	33.3	100.0	100.0
	안내 및 유도시설	0.0	0.0	0.0	50.0	0.0	33.3	0.0	0.0	0.0	0.0
	경보피난시설	100.0	100.0	100.0	50.0	100.0	66.7	100.0	100.0	0.0	100.0
기타시설	매표소	0.0	0.0	0.0	0.0	0.0	83.3	0.0	0.0	0.0	75.0
	자동발매기 및 음료대	50.0	83.3	75.0	100.0	66.7	75.0	25.0	0.0	0.0	75.0
	승강장	66.7	66.7	66.7	66.7	66.7	81.0	66.7	66.7	66.7	66.7
	임산부휴게시설	0.0	0.0	0.0	90.0	0.0	0.0	0.0	0.0	0.0	0.0
	교통약자이용정보 편의제공	0.0	0.0	0.0	0.0	0.0	6.7	0.0	0.0	0.0	0.0
평균	46.4	56.1	53.9	63.4	30.9	50.5	40.8	39.8	35.2	70.8	

- 경상남도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실태조사 결과, 도내에서 창원시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남해군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표3-26]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사대상 선정방법

구분	2016년(전국)	2019년 (8개 특별·광역시)	2020년(9개 도)	2021년(전국)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여객자동차터미널 - 총 308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8개 특별·광역시 내에 위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 총 25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9개 도 지역 내에 위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표본조사 - 일 평균 이용객 1,000인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 - 총 67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운영중인 여객자동차터미널 - 총 240개소

※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 국토부 2021년 조사시 여객자동차터미널 기준적합 설치율은 64.0%로 전국 조사로 수행한 2016년(54.4%) 대비 9.6%p 증가한 수치이며, 표본조사로 수행한 2019년(8개특별·광역시)/2020년(9개 도)의 합산으로 재산정한 기준적합 설치율(66.8%) 대비 2.8%p 하락한 수치이나, 이는 2019년(8개 특별·광역시)/2020년(9개 도) 표본선정시 이용객이 많고 규모가 큰 여객시설을 선정한 원인으로 판단됨

2)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사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표3-27] 전국 9개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사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보행 접근로	유효폭	접근로 유효폭 2m 이상	579	560	96.7	14	2.4	5	0.9		
	기울기	접근로 전체구간 1/8이하	579	572	98.8	5	0.9	2	0.3		
	재질및마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579	553	95.5	25	4.3	1	0.2		
	높이차이 제거	단차가 없어야하며,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	579	548	94.6	6	1.0	25	4.3		
	보행접근로 평균		-	-	96.4	-	2.2	-	1.4		
매개 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장소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	82	70	85.4	11	13.4	1	1.2	
		설치비율	주차대수의 3이상	81	77	95.1	4	4.9	0	0.0	
		보행안전통로	주출입구까지 확보 (유효폭 1.2m 이상)	81	27	33.3	35	43.2	19	23.5	
		장애인전용 주차공간	3.3m×5.0m	81	80	98.8	1	1.2	0	0.0	
		바닥마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81	80	98.8	1	1.2	0	0.0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이 가능하도록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81	71	87.7	10	12.3	0	0.0	
		바닥면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1/50이하	81	81	100.0	0	0.0	0	0.0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평균		-	-	85.6	-	10.9	-	3.5	
		매개시설 평균		-	-	91.0	-	6.5	-	2.5	
내부 시설	출입구 (문)	통과유효폭	0.9m 이상 확보	396	395	99.7	1	0.3	0	0.0	
		전면활동공간 유효거리	1.2m 이상 확보	396	396	100.0	0	0.0	0	0.0	
		출입구 옆 활동공간	0.6m 이상 확보	396	363	91.7	18	4.5	15	3.8	
		출입구단차	높이차를 두어서는 안됨	396	392	99.0	1	0.3	3	0.8	
		문형태	미닫이문	문지방 또는 홈이 없이 설치	-	-	-	-	-	-	-
			여닫이문	도어체크 설치되고 3초이상 개폐	341	212	62.2	15	4.4	114	33.4
			자동문	충분한 개방시간과 감지범위	55	51	92.7	4	7.3	0	0.0
		손잡이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사이에 설치	341	269	78.9	69	20.2	3	0.9	
		공중사무실 접자표지판	공중사무실 출입구 옆 벽면 1.5m 높이 설치	230	50	21.7	12	5.2	168	73.0	
		점형블록	출입문 전면 0.3m 설치	396	372	93.9	7	1.8	17	4.3	
		호출벨	자동문 옆 설치	55	9	16.4	0	0.0	46	83.6	
		출입구(문) 평균		-	-	75.6	-	4.4	-	20.0	

[표 계속]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내부 시설	통로	유효폭	유효폭 2m 이상 확보	250	241	96.4	6	2.4	3	1.2
		바닥단차	단차 2m 이하 확보	250	241	96.4	8	3.2	1	0.4
		바닥마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며, 넘어져도 충격이 적은 재료로 마감	250	108	43.2	140	56.0	2	0.8
		손잡이높이	높이 0.8m~0.9m로 연속적으로 설치	250	122	48.8	2	0.8	126	50.4
		손잡이굵기	지름 3.2~3.8cm로 연속적으로 설치	124	120	96.8	4	3.2	0	0.0
		손잡이와 벽간 간격	벽면간의 간격은 5cm 내외	124	124	100.0	0	0.0	0	0.0
		손잡이 점자표지판	손잡이 끝 점자표지판 부착	124	112	90.3	2	1.6	10	8.1
		벽면 보행장애물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m~2.1m 이내에 물체의 돌출폭 0.1m 이하로 설치	250	215	86.0	0	0.0	35	14.0
		기둥, 받침대 보행장애물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m~2.1m 이내에 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공작물의 돌출폭 0.3m 이하로 설치	250	217	86.8	0	0.0	33	13.2
		보행장애물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의 유효높이 확보	250	229	91.6	11	4.4	10	4.0
		킥플레이트설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벽면 보호대 설치	250	9	3.6	0	0.0	241	96.4
		통로모서리	통로 모서리부분 안전성 확보	250	121	48.4	0	0.0	129	51.6
		통로 평균		-	-	74.0	-	6.0	-	20.0
		경사로	경사로	유효폭	유효폭 2미터 이상 확보	175	165	94.3	0	0.0
휴식참	바닥면으로부터 0.75미터 이내마다 1.5m×1.5미터 이상의 휴식참 설치			175	139	79.4	6	3.4	30	17.1
활동공간	시작,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175	150	85.7	9	5.1	16	9.1
기울기	높이16cm초과:1/12이하 높이16cm이하:1/ 8이하			175	162	92.6	4	2.3	9	5.1
손잡이높이	높이 0.8m~0.9m로 연속적으로 설치			175	157	89.7	2	1.1	16	9.1
손잡이굵기	지름 3.2cm~3.8cm로 연속적으로 설치			159	156	98.1	3	1.9	0	0.0
손잡이와 벽간간격	벽면간의 간격은 5cm 내외			159	158	99.4	1	0.6	0	0.0
손잡이 점자표지판	손잡이 끝 점자표지판 부착			159	140	88.1	8	5.0	11	6.9
수평손잡이	시작과 끝에 0.3m 수평손잡이 연장 설치			159	39	24.5	103	64.8	17	10.7
재질및마감	미끄럽지 않게 평탄하게 마감			175	167	95.4	2	1.1	6	3.4
추락방지턱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175	166	94.9	5	2.9	4	2.3
완화매트	설치필요구간 벽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매트 설치			110	0	0.0	0	0.0	110	100.0
경사로 평균				-	-	78.5	-	7.4	-	14.1

[표 계속]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내부 시설	설치 장소	외부↔ 대합실	도로양측에 1개소씩 (지상횡단가능시 1개소만)	249	196	78.7	18	7.2	35	14.1
		대합실↔ 승강장	양방향승강장 2개이상 중앙식승강장 1개이상	382	309	80.9	72	18.8	1	0.3
	전면활동공간	승강기 전면 1.5m×1.5m 이상	595	588	98.8	5	0.8	2	0.3	
	승강장과 승강기간격	간격 3cm이하	595	595	100.0	0	0.0	0	0.0	
	크기	15인승이상(9인승완화가능) 유효바닥면적 1.1m×1.4m 이상	595	585	98.3	10	1.7	0	0.0	
	출입문 유효폭	유효폭 0.8m 이상	595	592	99.5	3	0.5	0	0.0	
	조작설비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8m이상, 1.2m이하로 설치	595	595	100.0	0	0.0	0	0.0	
	점자표지판	세로조작설비의 조작반, 통화장치 등에 부착	595	589	99.0	5	0.8	1	0.2	
	가로조작반	내부 우측 0.85m높이 설치 모서리에서 0.4m 떨어져 설치	595	583	98.0	2	0.3	10	1.7	
	손잡이높이	높이 0.8m~0.9m로 연속적으로 설치	595	594	99.8	1	0.2	0	0.0	
	손잡이굵기	지름 3.2cm~3.8cm로 연속적으로 설치	595	592	99.5	3	0.5	0	0.0	
	손잡이와 벽간간격	5cm내외	595	592	99.5	3	0.5	0	0.0	
	내부거울	내부 후면에 거울설치 (내부크기 1.4×1.4m이상은 거울설치 의무 없음)	225	122	54.2	1	0.4	102	45.3	
	안내시설	운영상황, 도착여부를 알려주는 점멸 및 음성신호장치 설치	595	555	93.3	40	6.7	0	0.0	
	안전장치	되열림 장치 설치	595	546	91.8	0	0.0	49	8.2	
	점형블록	버튼전면 0.3m에 설치	595	586	98.5	1	0.2	8	1.3	
	출입문형태	전면 또는 일부 투명재질로 설치	595	591	99.3	0	0.0	4	0.7	
	엘리베이터 평균			-	-	93.5	-	2.3	-	4.2
	에스컬레이터	설치장소	모든내부계단에 상행, 하행 1개소 이상 설치	848	567	66.9	235	27.7	46	5.4
유효폭		유효폭 0.8m이상	802	784	97.8	18	2.2	0	0.0	
속도		분당 30m이내	802	790	98.5	12	1.5	0	0.0	
이동손잡이		양측면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 설치	802	802	100.0	0	0.0	0	0.0	
수평이동손잡이		양끝부분에 수평이동손잡이 1.2m이상 설치	802	765	95.4	19	2.4	18	2.2	
수평고정손잡이		양끝부분에 수평고정손잡이 1.0m이상 설치	802	525	65.5	175	21.8	102	12.7	
손잡이점자표시		수평고정손잡이에 점자표시 설치	700	316	45.1	67	9.6	317	45.3	
에스컬레이터 평균			-	-	81.3	-	9.3	-	9.4	

[표 계속]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내부 시설	계단	휴식참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m 이내 마다 수평면으로 된 참 설치	765	465	60.8	296	38.7	4	0.5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 2m이상 확보	765	601	78.6	164	21.4	0	0.0
		디딤판	너비 0.28m이상으로 설치	765	761	99.5	4	0.5	0	0.0
		철타면	높이 0.18m이하로 설치	765	762	99.6	3	0.4	0	0.0
		철타면 기울기	수평면으로부터 60° 이상	765	761	99.5	4	0.5	0	0.0
		계단코 길이	3cm이하 설치	765	737	96.3	28	3.7	0	0.0
		손잡이 높이	손잡이 높이 0.8m~0.9m로 연속적으로 설치	765	754	98.6	6	0.8	5	0.7
		손잡이 굵기	지름 3.2cm~3.8cm로 연속적으로 설치	760	705	92.8	55	7.2	0	0.0
		손잡이와 벽간격	5cm내외	760	755	99.3	5	0.7	0	0.0
		손잡이 점자표지판	손잡이 끝 점자표지판 부착	760	730	96.1	22	2.9	8	1.1
		수평손잡이	시작과 끝에 0.3m 수평손잡이 연장 설치	760	549	72.2	196	25.8	15	2.0
		계단 재질	미끄럽지 않게 평탄하게 마감	765	760	99.3	5	0.7	0	0.0
		계단코 재질	줄눈넣기,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	765	521	68.1	5	0.7	239	31.2
		점형블록	시작과 끝지점(중간 참 포함) 전면 0.3m에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765	755	98.7	0	0.0	10	1.3
		추락방지턱	2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765	652	85.2	1	0.1	112	14.6
계단 평균		-	-	89.6	-	6.9	-	3.4		
내부시설 평균		-	-	82.1	-	6.0	-	11.9		
위생 시설	장애인 화장실 일 반 사 항	화장실위치	장애인이 인지하기 쉽고 양호한 접근통로 확보	267	242	90.6	22	8.2	3	1.1
		대변기 남녀구분설치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이 남녀 구분하여 각 1개이상 설치	267	261	97.8	3	1.1	3	1.1
		바닥면 높이차이	2cm이하의 단차	264	264	100.0	0	0.0	0	0.0
		바닥마감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	264	239	90.5	24	9.1	1	0.4
		점형블록	장애인 전용 화장실 전면 0.3m 위치에 점형블록 설치	264	189	71.6	17	6.4	58	22.0
		점자표지판	출입구옆 벽면에 남자용,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설치	264	232	87.9	5	1.9	27	10.2
	장애인 화장실 평균		-	-	89.7	-	4.5	-	5.8	
	장애인 대변기	대변기칸막이	유효 바닥면 크기는 폭 1.4m이상, 깊이 1.8m이상 확보	525	485	92.4	40	7.6	0	0.0
		대변기 좌우측 유효폭	유효폭 0.7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525	257	49.0	249	47.4	19	3.6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525	456	86.9	54	10.3	15	2.9
출입문 형태		미닫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설치	525	511	97.3	14	2.7	0	0.0	
출입문 유효폭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이상 확보	525	511	97.3	14	2.7	0	0.0	

[표 계속]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장애인 대변기	대변기 형태	대변기는 양변기형태이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5m이하로 설치	525	523	99.6	2	0.4	0	0.0	
	수평손잡이	양옆에 수평손잡이 설치	496	466	94.0	20	4.0	10	2.0	
	세정장치, 휴지걸이	세정장치는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휴지걸이 등은 대변기 앞은 상태에서 이용가능한 위치에 설치	525	478	91.0	42	8.0	5	1.0	
	사용여부 설비	대변기 출입문에 사용여부를 알수 있는 시각적 설비 설치	525	480	91.4	25	4.8	20	3.8	
	장애인 대변기 평균		-	-	88.8	-	9.8	-	1.5	
위생 시설	장애인 소변기	수평손잡이	높이:바닥면으로부터 0.8m~0.9m 길이:벽면으로부터 0.55m 내외 좌우손잡이간격:0.6m내외	281	251	89.3	1	0.4	29	10.3
		수직손잡이	높이:바닥면으로부터 1.1m~1.2m 길이: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	281	250	89.0	1	0.4	30	10.7
	장애인 소변기평균		-	-	89.1	-	0.4	-	10.5	
장애인 세면대	설치높이	상단높이:바닥면으로부터 0.85m이하 하단높이:0.65m이상(휠체어 발판이 들어갈수 있도록 공간확보)	525	499	95.0	0	0.0	26	5.0	
	수도꼭지형태	사용하기 쉬운 형태	499	495	99.2	4	0.8	0	0.0	
	수평손잡이	양옆에 설치 (카운터식 세면대 제외)	499	445	89.2	0	0.0	54	10.8	
	점자표시	수도꼭지 점자표시	499	97	19.4	0	0.0	402	80.6	
	거울	하단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9m내외 세로길이는 0.65m이상	499	413	82.8	86	17.2	0	0.0	
장애인 세면대 평균		-	-	77.1	-	3.6	-	19.3		
위생시설 평균		-	-	86.2	-	4.5	-	9.3		
안내 시설	점자 블록	설치장소	주출입구로부터 매표소 대합실 및 승강장으로 이동시 연속적으로 설치 (장애인 안내소 설치시 해당 장소까지 설치)	245	243	99.2	2	0.8	0	0.0
		규격 및 색상	0.3m×0.3m 노란색	245	237	96.7	8	3.3	0	0.0
		설치방법	점행블록:주요지점 및 위험지점 0.3m전면 설치 선행블록:유도방향에따라 평행하게 연속 설치	245	241	98.4	4	1.6	0	0.0
		점자블록 평균		-	-	98.1	-	1.9	-	0.0
	안내 및 유도시 설	안내도	점자를 병기한 안내판 설치	245	197	80.4	7	2.9	41	16.7
		유도신호장치	유도신호장치 설치	245	217	88.6	9	3.7	19	7.8
	경보 파나시 설	안내 및 유도시설 평균		-	-	84.5	-	3.3	-	12.2
		청각경보장치	청각경보장치설치	245	221	90.2	0	0.0	24	9.8
		시각경보장치	시각경보장치설치	245	207	84.5	0	0.0	38	15.5
		경보파나시설 평균		-	-	87.3	-	0.0	-	12.7
안내시설 평균		-	-	90.0	-	1.7	-	8.3		

[표 계속]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장애인 매표소	활동공간	휠체어 접근가능 활동공간 확보	-	-	-	-	-	-	
	점자블록	매표소 전면 0.3m 점자블록 설치	-	-	-	-	-	-	
	높이	매표소 높이 0.7m~0.9m이하	-	-	-	-	-	-	
	하부공간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이상 길이 0.45m이상 공간 확보	-	-	-	-	-	-	
	장애인 매표소 평균		-	-	-	-	-	-	
자동 발매기	활동공간	휠체어탄재 접근할 수 있는 활동공간 확보	349	346	99.1	3	0.9	0	0.0
	점자블록	자동발매기 전면 0.3m 점자블록 설치	349	301	86.2	3	0.9	45	12.9
	조작버튼 설치위치	조작버튼등 높이 0.4m~1.2m이하로 설치	349	327	93.7	22	6.3	0	0.0
	점자표시	조작버튼 점자로 표시	349	262	75.1	56	16.0	31	8.9
	음료대분출구 높이	분출구높이 0.7m이상 0.8m 이하	32	11	34.4	0	0.0	21	65.6
	음료조작기	사용하기 쉬운 형태	32	25	78.1	0	0.0	7	21.9
자동 발매기 평균		-	-	77.8	-	4.0	-	18.2	
기타 시설	개폐방법	1개소이상 자동개폐식 설치 (상시 안내서비스 제공시 자동개폐식 설치로 봄)	329	327	99.4	0	0.0	2	0.6
	유효폭	0.8m이상	329	326	99.1	3	0.9	0	0.0
	점자블록	자동개폐기 전면 0.3m 점형블록 설치	329	275	83.6	34	10.3	20	6.1
	개찰구 평균		-	-	94.0	-	3.7	-	2.2
	바닥기울기	기울기 1/1000이하	510	508	99.6	2	0.4	0	0.0
	바닥마감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510	462	90.6	48	9.4	0	0.0
	점자블록	승강장 가장자리 0.3m~0.9m 범위에 설치	510	510	100.0	0	0.0	0	0.0
	차량간격	승강장과 차량간격 5cm이하	510	469	92.0	0	0.0	41	8.0
	전력방지시설	스크린도어 및 안전펜스 설치	510	510	100.0	0	0.0	0	0.0
	난간	승강장 끝부분에 1.1m~1.5m의 추락방지용 난간 설치	510	475	93.1	27	5.3	8	1.6
승강장 (철도/ 도시 철도 및 광역 철도 역사)	차량접근 경고시설	청각, 시각장애인에게 차량접근시 경고/안내할 수 있는 시설 설치	510	510	100.0	0	0.0	0	0.0
	휠체어 승강장 안내	접근계단부터 휠체어탑승가능 구역 안내표시	510	441	86.5	0	0.0	69	13.5
	승강장 평균		-	-	95.2	-	1.9	-	2.9
	승강장 (여객 자동 차 터미널)	승강장	승강장 끝부분에 안전펜스 또는 점형블록 설치	-	-	-	-	-	-
	바닥기울기	기울기 1/1000이하	-	-	-	-	-	-	-
바닥마감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	-	-	-	-	-	-	
승강장 평균		-	-	-	-	-	-	-	

[표 계속]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보안 검사장 및 여객 탑승교	보안검사장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통로(폭 0.9m이상) 설치	-	-	-	-	-	-	-
	여객탑승교 유효폭	0.9m이상	-	-	-	-	-	-	-
	여객탑승교 기울기	1/120이하의 기울기 확보	-	-	-	-	-	-	-
	보안검사장 및 여객탑승교 평균		-	-	-	-	-	-	-
임산부 휴게 시설	임산부휴게시설 위치	휠체어사용자 및 유모차 접근가능 위치	245	141	57.6	0	0.0	104	42.4
	임산부 휴게시설	수유실 별도 설치	141	137	97.2	0	0.0	4	2.8
	전면 활동공간	1.4m×1.4m이상 활동공간 확보	141	132	93.6	9	6.4	0	0.0
	기저귀 교환대 높이	높이0.85m~0.65m 설치	141	134	95.0	7	5.0	0	0.0
	기저귀 교환대 하부공간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141	130	92.2	11	7.8	0	0.0
	임산부 휴게시설 평균		-	-	87.1	-	3.8	-	9.1
기타시설 평균		-	-	88.5	-	3.4	-	8.1	
9개 도 평균		-	-	87.6	-	4.4	-	8.0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표3-28]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사 지역 및 연도별 설치현황

구분	2016년(①)	19년+20년(②)	2021년(③)	비교	
				③-①	③-②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사 평균	83.6	89.2	89.9	▲ 6.3	▲ 0.7
서울	-	89.2	89.2	-	-
부산	-	89.5	90.8	-	▲ 1.3
대구	-	92.8	92.8	-	-
인천	-	90.6	92.4	-	▲ 1.8
광주	-	96.1	96.1	-	-
대전	-	92.2	94.3	-	▲ 2.1
경기	-	87.4	87.4	-	-
강원	-	85.7	87.1	-	▲ 1.4
충남	-	86.8	88.2	-	▲ 1.4
경북	-	93.6	94.1	-	▲ 0.5
경남	-	83.9	89.4	-	▲ 5.5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 경상남도의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사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2020년 83.9%로 전국에서 중 가장 낮은 순위에 해당하였으나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9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인 5.5%p를 기록하며 89.4%로 전국에서 7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냄

[표3-29]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사 조사대상 선정방법

구분	2016년(전국)	2019년 (8개 특별·광역시)	2020년(9개 도)	2021년(전국)
조사대상	◦전국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사 전수조사 - 총 908개소	◦8개 특별광역시 내에 위치한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사 전수조사 - 총 729개소	◦9개 도 지역 내에 위치한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사 전수조사 - 총 258개소	◦전국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사 전수조사 - 총 925개소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 국토부 2021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사 기준적합 설치율은 89.9%로 전국 조사로 수행한 2016년(83.6%) 대비 6.3%p 증가, 표본조사로 수행한 2019년(8개 특별·광역시)/2020년(9개 도)의 합산으로 재산정한 기준적합 설치율(89.2%) 대비 0.7%p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2016년 이후 김포도시철도, 경강선, 수인분당선 등의 신규노선 개통 및 점진적인 시설개선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됨

3) 철도역사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표3-30] 전국 9개도 철도역사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보행 접근로	유효폭	접근로 유효폭 2m 이상	267	258	96.6	5	1.9	4	1.5		
	기울기	접근로 전체구간 1/8이하	267	248	92.9	11	4.1	8	3.0		
	재질및마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267	259	97.0	5	1.9	3	1.1		
	높이차이 제거	단차가 없어야하며,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	267	252	94.4	9	3.4	6	2.2		
	보행접근로 평균		-	-	95.2	-	2.8	-	2.0		
매개 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설치장소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	139	122	87.8	16	11.5	1	0.7	
		설치비율	주차대수의 30이상	138	98	71.0	40	29.0	0	0.0	
		보행안전통로	주출입구까지 확보 (유효폭 1.2m 이상)	138	49	35.5	16	11.6	73	52.9	
		장애인전용 주차공간	3.3m×5.0m	138	127	92.0	11	8.0	0	0.0	
		바닥마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138	131	94.9	7	5.1	0	0.0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이 가능하도록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138	86	62.3	50	36.2	2	1.4	
		바닥면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1/50이하	138	135	97.8	3	2.2	0	0.0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평균		-	-	77.3	-	14.8	-	7.9	
매개시설 평균		-	-	86.3	-	8.8	-	4.9			
내부 시설	출입구 (문)	통과유효폭	0.9m 이상 확보	350	341	97.4	7	2.0	2	0.6	
		전면활동공간 유효거리	1.2m 이상 확보	350	346	98.9	0	0.0	4	1.1	
		출입구 옆 활동공간	0.6m 이상 확보	350	342	97.7	6	1.7	2	0.6	
		출입구단차	높이차를 두어서는 안됨	350	348	99.4	1	0.3	1	0.3	
		문형태	미닫이문	문지방 또는 홈이 없이 설치	45	38	84.4	4	8.9	3	6.7
			여닫이문	도어체크 설치되고 3초이상 개폐	217	176	81.1	9	4.1	32	14.7
			자동문	충분한 개방시간과 감지범위	88	88	100.0	0	0.0	0	0.0
		손잡이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사이에 설치	262	248	94.7	7	2.7	7	2.7	
		공중사무실 점자표지판	공중사무실 출입구 옆 벽면 1.5m 높이 설치	194	34	17.5	22	11.3	138	71.1	
		점형블록	출입문 전면 0.3m 설치	350	322	92.0	7	2.0	21	6.0	
		호출벨	자동문 옆 설치	88	3	3.4	0	0.0	85	96.6	
		출입구(문) 평균		-	-	78.8	-	3.0	-	18.2	

[표 계속]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통로	유효폭	유효폭 2m 이상 확보	101	101	100.0	0	0.0	0	0.0
	바닥단차	단차 2m 이하 확보	101	100	99.0	1	1.0	0	0.0
	바닥마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며, 넘어져도 충격이 적은 재료로 마감	101	94	93.1	7	6.9	0	0.0
	손잡이높이	높이 0.8m~0.9m로 연속적으로 설치	101	46	45.5	2	2.0	53	52.5
	손잡이굵기	지름 3.2~3.8cm로 연속적으로 설치	48	46	95.8	2	4.2	0	0.0
	손잡이와 벽간 간격	벽면간의 간격은 5cm 내외	48	47	97.9	1	2.1	0	0.0
	손잡이 점자표지판	손잡이 끝 점자표지판 부착	48	31	64.6	3	6.3	14	29.2
	벽면 보행장애물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m~2.1m 이내에 물체의 돌출폭 0.1m 이하로 설치	101	95	94.1	0	0.0	6	5.9
	기둥, 받침대 보행장애물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m~2.1m 이내에 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공작물의 돌출폭 0.3m 이하로 설치	101	98	97.0	0	0.0	3	3.0
	보행장애물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의 유효높이 확보	101	101	100.0	0	0.0	0	0.0
	킥플레이트설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벽면 보호대 설치	101	13	12.9	0	0.0	88	87.1
	통로모서리	통로 모서리부분 안전성 확보	101	51	50.5	0	0.0	50	49.5
		통로 평균	-	-	79.2	-	1.9	-	18.9
내부 시설	유효폭	유효폭 2미터 이상 확보	54	52	96.3	0	0.0	2	3.7
	휴식참	바닥면으로부터 0.75미터 이내마다 1.5m×1.5미터 이상의 휴식참 설치	54	38	70.4	6	11.1	10	18.5
	활동공간	시작,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54	43	79.6	11	20.4	0	0.0
	기울기	높이16cm초과:1/120이하 높이16cm이하:1/ 80이하	54	44	81.5	10	18.5	0	0.0
	손잡이높이	높이 0.8m~0.9m로 연속적으로 설치	54	45	83.3	5	9.3	4	7.4
	손잡이굵기	지름 3.2cm~3.8cm로 연속적으로 설치	50	46	92.0	4	8.0	0	0.0
	손잡이와 벽간간격	벽면간의 간격은 5cm 내외	50	48	96.0	2	4.0	0	0.0
	손잡이 점자표지판	손잡이 끝 점자표지판 부착	50	20	40.0	6	12.0	24	48.0
	수평손잡이	시작과 끝에 0.3m 수평손잡이 연장 설치	50	1	2.0	31	62.0	18	36.0
	재질및마감	미끄럽지 않게 평탄하게 마감	54	46	85.2	4	7.4	4	7.4
	추락방지턱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54	46	85.2	4	7.4	4	7.4
	완화매트	설치필요구간 벽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매트 설치	45	2	4.4	0	0.0	43	95.6
		경사로 평균	-	-	68.0	-	13.3	-	18.7

[표 계속]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내부 시설	설치 장소	외부↔ 대합실	도로양측에 1개소씩 (지상횡단가능시 1개소만)	142	128	90.1	14	9.9	0	0.0
		대합실↔ 승강장	양방향승강장 2개이상 중앙식승강장 1개이상	216	208	96.3	8	3.7	0	0.0
	전면활동공간	승강기 전면 1.5m×1.5m 이상	358	353	98.6	5	1.4	0	0.0	
	승강장과 승강기간격	간격 3cm이하	358	358	100.0	0	0.0	0	0.0	
	크기	15인승이상(9인승완화가능) 유효바닥면적 1.1m×1.4m 이상	358	351	98.0	7	2.0	0	0.0	
	출입문 유효폭	유효폭 0.8m 이상	358	354	98.9	4	1.1	0	0.0	
	조작설비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8m이상, 1.2m이하로 설치	358	358	100.0	0	0.0	0	0.0	
	점자표지판	세로조작설비의 조작반, 통화장치 등에 부착	358	345	96.4	7	2.0	6	1.7	
	가로조작반	내부 우측 0.85m높이 설치 모서리에서 0.4m 떨어져 설치	358	358	100.0	0	0.0	0	0.0	
	손잡이높이	높이 0.8m~0.9m로 연속적으로 설치	358	358	100.0	0	0.0	0	0.0	
	손잡이굵기	지름 3.2cm~3.8cm로 연속적으로 설치	358	358	100.0	0	0.0	0	0.0	
	손잡이와 벽간격	5cm내외	358	358	100.0	0	0.0	0	0.0	
	내부거울	내부 후면에 거울설치 (내부크기 1.4×1.4m이상은 거울설치 의무 없음)	183	73	39.9	0	0.0	110	60.1	
	안내시설	운행상황, 도착여부를 알려주는 점멸 및 음성신호장치 설치	358	341	95.3	17	4.7	0	0.0	
	안전장치	되열림 장치 설치	358	341	95.3	0	0.0	17	4.7	
	점형블록	버튼전면 0.3m에 설치	358	356	99.4	2	0.6	0	0.0	
	출입문형태	전면 또는 일부 투명재질로 설치	358	326	91.1	0	0.0	32	8.9	
	엘리베이터 평균			-	-	94.1	-	1.5	-	4.4
	에스컬레이터	설치장소	모든내부계단에 상행, 하행 1개소 이상 설치	328	223	68.0	105	32.0	0	0.0
		유효폭	유효폭 0.8m이상	328	316	96.3	12	3.7	0	0.0
속도		분당 30m이내	328	326	99.4	2	0.6	0	0.0	
이동손잡이		양측면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 설치	328	328	100.0	0	0.0	0	0.0	
수평이동손잡이		양끝부분에 수평이동손잡이 1.2m이상 설치	328	296	90.2	31	9.5	1	0.3	
수평고정손잡이		양끝부분에 수평고정손잡이 1.0m이상 설치	328	194	59.1	115	35.1	19	5.8	
손잡이점자표시		수평고정손잡이에 점자표시 설치	309	91	29.4	47	15.2	171	55.3	
에스컬레이터 평균			-	-	77.5	-	13.7	-	8.8	

[표 계속]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내부 시설	계단	휴식참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m 이내 마다 수평면으로 된 참 설치	505	437	86.5	64	12.7	4	0.8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 2m이상 확보	505	491	97.2	14	2.8	0	0.0	
		디딤판	너비 0.28m이상으로 설치	505	504	99.8	1	0.2	0	0.0	
		철타면	높이 0.18m이하로 설치	505	504	99.8	1	0.2	0	0.0	
		철타면기울기	수평면으로부터 60° 이상	505	504	99.8	1	0.2	0	0.0	
		계단코 길이	3cm이하 설치	505	499	98.8	6	1.2	0	0.0	
		손잡이 높이	손잡이 높이 0.8m~0.9m로 연속적으로 설치	505	489	96.8	11	2.2	5	1.0	
		손잡이 굵기	지름 3.2cm~3.8cm로 연속적으로 설치	500	482	96.4	18	3.6	0	0.0	
		손잡이와 벽간격	5cm내외	500	499	99.8	1	0.2	0	0.0	
		손잡이 점자표지판	손잡이 끝 점자표지판 부착	500	433	86.6	43	8.6	24	4.8	
		수평손잡이	시작과 끝에 0.3m 수평손잡이 연장 설치	500	99	19.8	349	69.8	52	10.4	
		계단 재질	미끄럽지 않게 평탄하게 마감	505	473	93.7	32	6.3	0	0.0	
		계단코 재질	출눈넣기,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	505	335	66.3	40	7.9	130	25.7	
		점형블록	시작과 끝지점(중간 참 포함) 전면 0.3m에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505	495	98.0	7	1.4	3	0.6	
		추락방지턱	2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505	476	94.3	12	2.4	17	3.4	
계단 평균		-	-	88.9	-	8.0	-	3.1			
내부시설 평균		-	-	81.1	-	6.9	-	12.0			
위생 시설	장애인 화장실 일 반 사 항	화장실위치	장애인이 인지하기 쉽고 양호한 접근통로 확보	217	68	31.3	138	63.6	11	5.1	
		대변기 남녀구분설치	장애인 이용가능한 화장실이 남녀 구분하여 각 1개이상 설치	217	178	82.0	27	12.4	12	5.5	
		바닥면 높이차이	2cm이하의 단차	217	216	99.5	0	0.0	1	0.5	
		바닥마감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	217	210	96.8	7	3.2	0	0.0	
		점형블록	장애인 전용 화장실 전면 0.3m 위치에 점형블록 설치	217	137	63.1	13	6.0	67	30.9	
		점자표지판	출입구옆 벽면에 남자용,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설치	217	171	78.8	17	7.8	29	13.4	
		장애인 화장실 평균		-	-	75.3	-	15.5	-	9.2	
		장애인 대변기	대변기칸막이	유효 바닥면 크기는 폭 1.4m이상, 깊이 1.8m이상 확보	405	368	90.9	37	9.1	0	0.0
			대변기 좌우측 유효폭	유효폭 0.7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405	293	72.3	89	22.0	23	5.7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405	346	85.4	37	9.1	22	5.4
출입문 형태	미닫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설치		405	370	91.4	35	8.6	0	0.0		
출입문 유효폭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이상 확보		405	381	94.1	24	5.9	0	0.0		

[표 계속]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장애인 대변기	대변기 형태	대변기는 양변기형태이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5m이하로 설치	405	385	95.1	20	4.9	0	0.0	
	수평손잡이	양옆에 수평손잡이 설치	400	364	91.0	13	3.3	23	5.8	
	세정장치, 휴지걸이	세정장치는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휴지걸이 등은 대변기 앞은 상태에서 이용가능한 위치에 설치	405	332	82.0	46	11.4	27	6.7	
	사용여부 설비	대변기 출입문에 사용여부를 알수 있는 시각적 설비 설치	405	329	81.2	30	7.4	46	11.4	
	장애인 대변기 평균		-	-	87.0	-	9.1	-	3.9	
위생 시설	장애인 소변기	수평손잡이	높이:바닥면으로부터 0.8m~0.9m 길이:벽면으로부터 0.55m 내외 좌우손잡이간격:0.6m내외	216	150	69.4	0	0.0	66	30.6
		수직손잡이	높이:바닥면으로부터 1.1m~1.2m 길이: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	216	149	69.0	0	0.0	67	31.0
	장애인 소변기평균		-	-	69.2	-	0.0	-	30.8	
장애인 세면대	설치높이	상단높이:바닥면으로부터 0.85m이하 하단높이:0.65m이상 (휠체어발판이 들어갈수 있도록 공간확보)	399	355	89.0	5	1.3	39	9.8	
	수도꼭지형태	사용하기 쉬운 형태	360	359	99.7	1	0.3	0	0.0	
	수평손잡이	양옆에 설치 (카운터식 세면대 제외)	360	326	90.6	0	0.0	34	9.4	
	점자표시	수도꼭지 점자표시	360	17	4.7	0	0.0	343	95.3	
	거울	하단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9m내외 세로길이는 0.65m이상	360	348	96.7	8	2.2	4	1.1	
장애인 세면대 평균		-	-	76.1	-	0.8	-	23.1		
위생시설 평균		-	-	76.9	-	6.3	-	16.8		
안내 시설	점자 블록	설치장소	주출입구로부터 매표소, 대합실 및 승강장으로 이동시 연속적으로 설치 (장애인 안내소 설치시 해당 장소까지 설치)	194	171	88.1	16	8.2	7	3.6
		규격 및 색상	0.3m×0.3m 노란색	187	184	98.4	3	1.6	0	0.0
		설치방법	점형블록:주요지점 및 위험지점 0.3m전면 설치 선형블록:유도방향에따라 평행하게 연속 설치	187	169	90.4	18	9.6	0	0.0
	점자블록 평균		-	-	92.3	-	6.5	-	1.2	
	안내 및 유도시설	안내도	점자를 병기한 안내판 설치	194	158	81.4	2	1.0	34	17.5
		유도신호장치	유도신호장치 설치	194	103	53.1	1	0.5	90	46.4
		안내 및 유도시설 평균		-	-	67.3	-	0.8	-	32.0
	경보 피난시설	청각경보장치	청각경보장치설치	194	147	75.8	0	0.0	47	24.2
		시각경보장치	시각경보장치설치	194	136	70.1	0	0.0	58	29.9
		경보피난시설 평균		-	-	72.9	-	0.0	-	27.1
안내시설 평균		-	-	77.5	-	2.4	-	20.1		

[표 계속]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장애인 매표소	활동공간	휠체어 접근가능 활동공간 확보	166	125	75.3	2	1.2	39	23.5
	점자블록	매표소 전면 0.3m 점자블록 설치	127	110	86.6	0	0.0	17	13.4
	높이	매표소 높이 0.7m~0.9m이하	127	112	88.2	15	11.8	0	0.0
	하부공간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127	120	94.5	7	5.5	0	0.0
	장애인 매표소 평균		-	-	86.1	-	4.6	-	9.2
자동 발매기	활동공간	휠체어단체 접근할 수 있는 활동공간 확보	133	132	99.2	1	0.8	0	0.0
	점자블록	자동발매기 전면 0.3m 점자블록 설치	133	76	57.1	2	1.5	55	41.4
	조작버튼 설치위치	조작버튼등 높이 0.4m~1.2m이하로 설치	133	131	98.5	2	1.5	0	0.0
	점자표시	조작버튼 점자로 표시	133	126	94.7	6	4.5	1	0.8
	음료대분출구 높이	분출구높이 0.7m이상 0.8m 이하	65	65	100.0	0	0.0	0	0.0
	음료조작기	사용하기 쉬운 형태	65	64	98.5	0	0.0	1	1.5
	자동 발매기 평균		-	-	91.3	-	1.4	-	7.3
기타 시설	개폐방법	1개소이상 자동개폐식 설치 (상시 안내서비스 제공시 자동개폐식 설치로 봄)	208	201	96.6	0	0.0	7	3.4
	유효폭	0.8m이상	208	207	99.5	1	0.5	0	0.0
	점자블록	자동개폐기 전면 0.3m 점형블록 설치	208	165	79.3	1	0.5	42	20.2
	개찰구 평균		-	-	91.8	-	0.3	-	7.9
승강장 (철도/ 도시 철도 및 광역 철도 역사)	바닥기울기	기울기 1/100이하	618	612	99.0	4	0.6	2	0.3
	바닥마감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618	600	97.1	12	1.9	6	1.0
	점자블록	승강장 가장자리 0.3m~0.9m 범위에 설치	618	545	88.2	20	3.2	53	8.6
	차량간격	승강장과 차량간격 5cm이하	618	580	93.9	0	0.0	38	6.1
	전력방지시설	스크린도어 및 안전펜스 설치	618	132	21.4	3	0.5	483	78.2
	난간	승강장 끝부분에 1.1m~1.5m의 추락방지용 난간 설치	618	356	57.6	25	4.0	237	38.3
	차량접근 경고시설	청각,시각장애인에게 차량접근시 경고/안내할 수 있는 시설 설치	618	602	97.4	0	0.0	16	2.6
	휠체어 승강장 안내	접근계단부터 휠체어탑승가능 구역 안내표시	618	152	24.6	0	0.0	466	75.4
	승강장 평균		-	-	72.4	-	1.3	-	26.3
승강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승강장	승강장 끝부분에 안전펜스 또는 점형블록 설치	-	-	-	-	-	-	-
	바닥기울기	기울기 1/100이하	-	-	-	-	-	-	-
	바닥마감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	-	-	-	-	-	-
	승강장 평균		-	-	-	-	-	-	-

[표 계속]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보안 검사장 및 여객 탑승교	보안검사장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통로(폭 0.9m이상) 설치	-	-	-	-	-	-	-
	여객탑승교 유효폭	0.9m이상	-	-	-	-	-	-	-
	여객탑승교 기울기	1/120이하의 기울기 확보	-	-	-	-	-	-	-
	보안검사장 및 여객탑승교 평균		-	-	-	-	-	-	-
임산부 휴게 시설	임산부휴게시설 위치	휠체어사용자 및 유모차 접근가능 위치	194	79	40.7	0	0.0	115	59.3
	임산부 휴게시설	수유실 별도 설치	79	79	100.0	0	0.0	0	0.0
	전면 활동공간	1.4m×1.4m이상 활동공간 확보	79	75	94.9	3	3.8	1	1.3
	기저귀 교환대 높이	높이0.85m~0.65m 설치	78	70	89.7	8	10.3	0	0.0
	기저귀 교환대 하부공간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78	54	69.2	24	30.8	0	0.0
	임산부 휴게시설 평균		-	-	78.9	-	9.0	-	12.1
기타시설 평균		-	-	84.1	-	3.3	-	12.6	
9개 도 평균		-	-	81.2	-	5.6	-	13.3	

※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표3-31] 9개도 지역별 철도역사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기준 사례수		36	33	19	23	12	26	48	19
평균		86.9	77.6	79.0	86.1	86.1	75.9	79.4	82.3
매개 (외부) 시설	보행접근로	100.0	87.5	94.6	99.1	100.0	99.1	88.7	99.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77.1	82.1	83.1	77.7	70.6	72.2	79.7	74.3
	평균	88.6	84.8	88.9	88.4	85.3	85.6	84.2	86.7
내부 시설	출입구(문)	81.3	82.2	76.9	78.8	79.0	78.0	76.9	73.5
	통로	82.0	80.2	76.0	81.8	78.3	69.1	84.5	70.8
	경사로	73.7	75.0	67.1	76.7	75.0	55.6	65.7	55.2
	엘리베이터	94.4	98.1	96.5	94.9	92.4	91.8	93.0	91.4
	에스컬레이터	70.8	82.4	91.7	84.1	87.4	74.3	76.5	67.2
	계단	87.0	94.0	91.6	90.7	88.6	86.4	90.2	87.7
	평균	81.5	85.3	83.3	84.5	83.5	75.9	81.2	74.3
위생 시설	화장실일반사항	78.2	75.0	72.7	72.0	82.1	73.7	72.6	80.7
	대변기	94.6	74.8	83.0	94.4	93.8	90.0	81.3	87.1
	소변기	80.3	71.4	50.0	76.0	91.7	37.0	73.3	78.9
	세면대	80.0	73.6	74.8	75.7	76.8	75.1	76.4	74.4
	평균	83.3	73.7	70.1	79.5	86.1	69.0	75.9	80.3
안내 시설	점자블록	100.0	93.8	74.8	95.6	94.4	83.3	94.5	100.0
	안내 및 유도시설	77.1	55.4	57.9	87.0	79.2	50.0	67.4	73.7
	경보피난시설	89.6	39.3	78.9	87.0	79.2	73.1	64.0	94.7
	평균	88.9	62.8	70.5	89.8	84.3	68.8	75.3	89.5
기타 시설	매표소	90.3	90.4	87.8	90.4	91.7	73.3	85.1	86.7
	자동발매기 및 음료대	93.7	88.9	95.8	91.3	100.0	93.8	87.0	88.7
	개찰구	98.6	93.3	86.0	92.9	100.0	100.0	86.4	79.6
	승강장	94.1	65.7	66.1	76.0	75.9	65.5	61.4	68.2
	임산부휴게시설	84.2	67.9	74.2	91.3	88.3	67.9	83.7	79.8
	평균	92.2	81.2	82.0	88.4	91.2	80.1	80.7	80.6

※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 경상남도의 철도역사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2021년 82.3%로 9개도 중에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다음으로 4번째로 높은 설치율을 보임

[표3-32] 철도역사의 지역 및 연도별 기준적합 설치율

구분	2016년(①)	19년+20년(②)	2021년(③)	비고	
				③-①	③-②
철도역사 평균	81.0	85.4	82.5	▲ 1.5	▽ 2.9
서울	82.0	92.9	92.8	▲10.8	▽ 0.1
부산	84.9	87.7	88.4	▲ 3.5	▲ 0.7
대구	76.0	85.1	85.1	▲ 9.1	-
광주	77.1	83.8	84.1	▲ 7.0	▲ 0.3
대전	82.9	89.6	89.8	▲ 6.9	▲ 0.2
울산	76.6	81.0	89.8	▲13.2	▲ 8.8
세종	72.2	82.1	82.5	▲10.3	▲ 0.4
경기	81.8	90.1	86.9	▲ 5.1	▽ 3.2
강원	74.5	84.1	77.6	▲ 3.1	▽ 6.5
충북	76.1	84.9	79.0	▲ 2.9	▽ 5.9
충남	84.5	87.6	86.1	▲ 1.6	▽ 1.5
전북	79.2	86.1	86.1	▲ 6.9	-
전남	72.4	81.4	75.9	▲ 3.5	▽ 5.5
경북	69.1	83.2	79.4	▲10.3	▽ 3.8
경남	78.1	83.0	82.3	▲ 4.2	▽ 0.7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 경상남도의 철도역사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2016년 78.1%에서 2021년에는 82.3%로 4.1%p가 상승하여 전국 평균(82.5%)과 유사한 수준임

[표3-33]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철도역사 조사대상 선정방법

구분	2016년(전국)	2019년 (8개 특별·광역시)	2020년(9개 도)	2021년(전국)
조사대상	◦전국 철도역사 - 총 309개소	◦8개 특별광역시 내에 위치한 철도역사 전수조사 - 총 32개소	◦9개 도 지역 내에 위치한 이용인구 연 10만명 이상 철도역사 표본조사 - 총 97개소	◦전국 운영중인 철도역사 전수조사 - 총 249개소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 국토부 2021년 철도역사 기준적합 설치율은 82.5%로 전국 조사로 수행한 2016년(81.0%) 대비 1.5%p 증가한 수치이며, 표본조사로 수행한 2019년(8개 특별·광역시)/2020년(9개 도)의 합산으로 재산정한 기준적합 설치율(85.4%) 대비 2.9%p 하락한 수치이나, 이는 2019년(8개특별·광역시)/2020년(9개 도) 표본선정시 이용객이 많고 규모가 큰 여객시설을 선정한 원인으로 판단됨

4) 공항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표3-34] 전국 9개도 공항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보행 접근로	유효폭	접근로 유효폭 2m 이상	29	29	100.0	0	0.0	0	0.0		
	기울기	접근로 전체구간 1/80이하	29	29	100.0	0	0.0	0	0.0		
	재질및마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29	29	100.0	0	0.0	0	0.0		
	높이차이 제거	단차가 없어야하며,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	29	29	100.0	0	0.0	0	0.0		
	보행접근로 평균		-	-	100.0	-	0.0	-	0.0		
매개 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설치장소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	12	12	100.0	0	0.0	0	0.0	
		설치비율	주차대수의 30이상	12	11	91.7	1	8.3	0	0.0	
		보행안전통로	주출입구까지 확보 (유효폭 1.2m 이상)	12	8	66.7	0	0.0	4	33.3	
		장애인전용 주차공간	3.3m×5.0m	12	12	100.0	0	0.0	0	0.0	
		바닥마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12	12	100.0	0	0.0	0	0.0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이 가능하도록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12	12	100.0	0	0.0	0	0.0	
		바닥면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1/50이하	12	12	100.0	0	0.0	0	0.0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평균		-	-	94.0	-	1.2	-	4.8	
매개시설 평균		-	-	97.0	-	0.6	-	2.4			
내부 시설	출입구 (문)	통과유효폭	0.9m 이상 확보	29	29	100.0	0	0.0	0	0.0	
		전면활동공간 유효거리	1.2m 이상 확보	29	29	100.0	0	0.0	0	0.0	
		출입구 옆 활동공간	0.6m 이상 확보	29	29	100.0	0	0.0	0	0.0	
		출입구단차	높이차를 두어서는 안됨	29	29	100.0	0	0.0	0	0.0	
		문형태	미닫이문	문지방 또는 홈이 없이 설치	-	-	-	-	-	-	-
			여닫이문	도어체크 설치되고 3초이상 개폐	1	1	100.0	0	0.0	0	0.0
			자동문	충분한 개방시간과 감지범위	28	28	100.0	0	0.0	0	0.0
		손잡이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사이에 설치	1	1	100.0	0	0.0	0	0.0	
		공중사무실 점자표지판	공중사무실 출입구 옆 벽면 1.5m 높이 설치	9	0	0.0	0	0.0	9	100.0	
		점형블록	출입문 전면 0.3m 설치	29	29	100.0	0	0.0	0	0.0	
		호출벨	자동문 옆 설치	28	2	7.1	0	0.0	26	92.9	
		출입구(문) 평균		-	-	80.7	-	0.0	-	19.3	

[표 계속]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내부 시설	설치 장소	외부↔ 대합실	도로양측에 1개소씩 (지상횡단가능시 1개소만)	16	16	100.0	0	0.0	0	0.0
		대합실↔ 승강장	양방향승강장 2개이상 중앙식승강장 1개이상	15	15	100.0	0	0.0	0	0.0
	전면활동공간	승강기 전면 1.5m×1.5m 이상	31	31	100.0	0	0.0	0	0.0	
	승강장과 승강기간격	간격 3cm이하	31	31	100.0	0	0.0	0	0.0	
	크기	15인승이상(9인승완화가능) 유효바닥면적 1.1m×1.4m 이상	31	31	100.0	0	0.0	0	0.0	
	출입문 유효폭	유효폭 0.8m 이상	31	31	100.0	0	0.0	0	0.0	
	조작설비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8m이상, 1.2m이하로 설치	31	31	100.0	0	0.0	0	0.0	
	점자표지판	세로조작설비의 조작반, 통화장치 등에 부착	31	31	100.0	0	0.0	0	0.0	
	가로조작반	내부 우측 0.85m높이 설치 모서리에서 0.4m 떨어져 설치	31	31	100.0	0	0.0	0	0.0	
	손잡이높이	높이 0.8m~0.9m로 연속적으로 설치	31	31	100.0	0	0.0	0	0.0	
	손잡이굵기	지름 3.2cm~3.8cm로 연속적으로 설치	31	31	100.0	0	0.0	0	0.0	
	손잡이와 벽간간격	5cm내외	31	31	100.0	0	0.0	0	0.0	
	내부거울	내부 후면에 거울설치 (내부크기 1.4×1.4m이상은 거울설치 의무 없음)	6	5	83.3	0	0.0	1	16.7	
	안내시설	운행상황, 도착여부를 알려주는 점멸 및 음성신호장치 설치	31	31	100.0	0	0.0	0	0.0	
	안전장치	되열림 장치 설치	31	31	100.0	0	0.0	0	0.0	
	접형블록	버튼전면 0.3m에 설치	31	31	100.0	0	0.0	0	0.0	
	출입문형태	전면 또는 일부 투명재질로 설치	31	9	29.0	0	0.0	22	71.0	
	엘리베이터 평균			-	-	94.8	-	0.0	-	5.2
	에스 컬레 이터	설치장소	모든내부계단에 상행, 하행 1개소 이상 설치	33	31	93.9	2	6.1	0	0.0
		유효폭	유효폭 0.8m이상	33	33	100.0	0	0.0	0	0.0
속도		분당 30m이내	33	33	100.0	0	0.0	0	0.0	
이동손잡이		양측면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 설치	33	33	100.0	0	0.0	0	0.0	
수평이동손잡이		양끝부분에 수평이동손잡이 1.2m이상 설치	33	33	100.0	0	0.0	0	0.0	
수평고정손잡이		양끝부분에 수평고정손잡이 1.0m이상 설치	33	30	90.9	0	0.0	3	9.1	
손잡이점자표시		수평고정손잡이에 점자표시 설치	30	26	86.7	0	0.0	4	13.3	
에스컬레이터 평균			-	-	95.9	-	0.9	-	3.2	

[표 계속]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내부 시설	계단	휴식참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m 이내 마다 수평면으로 된 참 설치	28	24	85.7	4	14.3	0	0.0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 2m이상 확보	28	26	92.9	2	7.1	0	0.0
		디딤판	너비 0.28m이상으로 설치	28	28	100.0	0	0.0	0	0.0
		철탈면	높이 0.18m이하로 설치	28	28	100.0	0	0.0	0	0.0
		철탈기울기	수평면으로부터 60° 이상	28	28	100.0	0	0.0	0	0.0
		계단코 길이	3cm이하 설치	28	28	100.0	0	0.0	0	0.0
		손잡이 높이	손잡이 높이 0.8m~0.9m로 연속적으로 설치	28	27	96.4	0	0.0	1	3.6
		손잡이 굵기	지름 3.2cm~3.8cm로 연속적으로 설치	27	26	96.3	1	3.7	0	0.0
		손잡이와 벽간격	5cm내외	27	27	100.0	0	0.0	0	0.0
		손잡이 점자표지판	손잡이 끝 점자표지판 부착	27	16	59.3	4	14.8	7	25.9
		수평손잡이	시작과 끝에 0.3m 수평손잡이 연장 설치	27	25	92.6	0	0.0	2	7.4
		계단 재질	미끄럽지 않게 평탄하게 마감	28	28	100.0	0	0.0	0	0.0
		계단코 재질	출눈넣기,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	28	28	100.0	0	0.0	0	0.0
		점형블록	시작과 끝지점(중간 참 포함) 전면 0.3m에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28	27	96.4	0	0.0	1	3.6
		추락방지턱	2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28	28	100.0	0	0.0	0	0.0
계단 평균		-	-	94.6	-	2.7	-	2.7		
내부시설 평균		-	-	91.5	-	0.9	-	7.6		
위생 시설	장애인 화장실 일 반 사 항	화장실위치	장애인이 인지하기 쉽고 양호한 접근통로 확보	53	47	88.7	3	5.7	3	5.7
		대변기 남녀구분설치	장애인 이용가능한 화장실이 남녀 구분하여 각 1개이상 설치	53	46	86.8	4	7.5	3	5.7
		바닥면 높이차이	2cm이하의 단차	50	50	100.0	0	0.0	0	0.0
		바닥마감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	50	50	100.0	0	0.0	0	0.0
		점형블록	장애인 전용 화장실 전면 0.3m 위치에 점형블록 설치	50	47	94.0	0	0.0	3	6.0
		점자표지판	출입구옆 벽면에 남자용,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설치	50	38	76.0	0	0.0	12	24.0
		장애인 화장실 평균		-	-	90.9	-	2.2	-	6.9
	장애인 대변기	대변기칸막이	유효 바닥면 크기는 폭 1.4m이상, 깊이 1.8m이상 확보	96	96	100.0	0	0.0	0	0.0
		대변기 좌우측 유효폭	유효폭 0.7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96	18	18.8	78	81.3	0	0.0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96	96	100.0	0	0.0	0	0.0
출입문 형태		미닫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설치	96	96	100.0	0	0.0	0	0.0	
출입문 유효폭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이상 확보	96	96	100.0	0	0.0	0	0.0	

[표 계속]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위생 시설	장애인 대변기	대변기 형태	대변기는 양변기형태이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5m이하로 설치	96	96	100.0	0	0.0	0	0.0
		수평손잡이	양옆에 수평손잡이 설치	96	96	100.0	0	0.0	0	0.0
		세정장치, 휴지걸이	세정장치는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휴지걸이 등은 대변기 앉은 상태에서 이용가능한 위치에 설치	96	96	100.0	0	0.0	0	0.0
		사용여부 설비	대변기 출입문에 사용여부를 알수 있는 시각적 설비 설치	96	96	100.0	0	0.0	0	0.0
		장애인 대변기 평균		-	-	91.0	-	9.0	-	0.0
	장애인 소변기	수평손잡이	높이:바닥면으로부터 0.8m~0.9m 길이:벽면으로부터 0.55m 내외 좌우손잡이간격:0.6m내외	51	50	98.0	0	0.0	1	2.0
		수직손잡이	높이:바닥면으로부터 1.1m~1.2m 길이: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	51	50	98.0	0	0.0	1	2.0
		장애인 소변기평균		-	-	98.0	-	0.0	-	2.0
	장애인 세면대	설치높이	상단높이:바닥면으로부터 0.85m이하 하단높이:0.65m이상 (휠체어발판이 들어갈수 있도록 공간확보)	93	93	100.0	0	0.0	0	0.0
		수도꼭지형태	사용하기 쉬운 형태	93	93	100.0	0	0.0	0	0.0
		수평손잡이	양옆에 설치 (카운터식 세면대 제외)	93	91	97.8	0	0.0	2	2.2
		점자표시	수도꼭지 점자표시	93	7	7.5	0	0.0	86	92.5
		거울	하단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9m내외 세로길이는 0.65m이상	93	93	100.0	0	0.0	0	0.0
		장애인 세면대 평균		-	-	81.1	-	0.0	-	18.9
	위생시설 평균		-	-	90.2	-	2.8	-	6.9	
안내 시설	점자 블록	설치장소	주출입구로부터 매표소, 대합실 및 승강장으로 이동시 연속적으로 설치 (장애인 안내소 설치시 해당 장소까지 설치)	9	9	100.0	0	0.0	0	0.0
		규격 및 색상	0.3m×0.3m 노란색	9	9	100.0	0	0.0	0	0.0
		설치방법	점형블록:주요지점 및 위험지점 0.3m전면 설치 선형블록:유도방향에따라 평행하게 연속 설치	9	9	100.0	0	0.0	0	0.0
		점자블록 평균		-	-	100.0	-	0.0	-	0.0
	안내 및 유도시설	안내도	점자를 병기한 안내판 설치	9	9	100.0	0	0.0	0	0.0
		유도신호장치	유도신호장치 설치	9	1	11.1	0	0.0	8	88.9
	안내 및 유도시설 평균		-	-	55.6	-	0.0	-	44.4	
	경보 피난시설	청각경보장치	청각경보장치설치	9	9	100.0	0	0.0	0	0.0
		시각경보장치	시각경보장치설치	9	9	100.0	0	0.0	0	0.0
		경보피난시설 평균		-	-	100.0	-	0.0	-	0.0
안내시설 평균		-	-	85.2	-	0.0	-	14.8		

[표 계속]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장애인 매표소	활동공간	휠체어 접근가능 활동공간 확보	13	10	76.9	0	0.0	3	23.1
	점자블록	매표소 전면 0.3m 점자블록 설치	10	0	0.0	0	0.0	10	100.0
	높이	매표소 높이 0.7m~0.9m이하	10	5	50.0	5	50.0	0	0.0
	하부공간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10	5	50.0	5	50.0	0	0.0
	장애인 매표소 평균		-	-	44.2	-	25.0	-	30.8
자동 발매기	활동공간	휠체어탄재 접근할 수 있는 활동공간 확보	11	11	100.0	0	0.0	0	0.0
	점자블록	자동발매기 전면 0.3m 점자블록 설치	11	0	0.0	0	0.0	11	100.0
	조작버튼 설치위치	조작버튼등 높이 0.4m~1.2m이하로 설치	11	11	100.0	0	0.0	0	0.0
	점자표시	조작버튼 점자로 표시	11	1	9.1	0	0.0	10	90.9
	음료대분출구 높이	분출구높이 0.7m이상 0.8m 이하	46	44	95.7	0	0.0	2	4.3
	음료조작기	사용하기 쉬운 형태	46	46	100.0	0	0.0	0	0.0
	자동 발매기 평균		-	-	67.5	-	0.0	-	32.5
기타 시설	개폐방법	1개소이상 자동개폐식 설치 (상시 안내서비스 제공시 자동개폐식 설치로 봄)	-	-	-	-	-	-	-
	유효폭	0.8m이상	-	-	-	-	-	-	-
	점자블록	자동개폐기 전면 0.3m 점형블록 설치	-	-	-	-	-	-	-
	개찰구 평균		-	-	-	-	-	-	-
승강장 (철도/도시 철도 및 광역 철도 역사)	바닥기울기	기울기 1/1000이하	-	-	-	-	-	-	-
	바닥마감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	-	-	-	-	-	-
	점자블록	승강장 가장자리 0.3m~0.9m 범위에 설치	-	-	-	-	-	-	-
	차량간격	승강장과 차량간격 5cm이하	-	-	-	-	-	-	-
	전력방지사설	스크린도어 및 안전펜스 설치	-	-	-	-	-	-	-
	난간	승강장 끝부분에 1.1m~1.5m의 추락방지용 난간 설치	-	-	-	-	-	-	-
	차량접근 경고시설	청각,시각장애인에게 차량접근시 경고/안내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	-	-	-	-	-
	휠체어 승강장 안내	접근계단부터 휠체어탑승가능 구역 안내표시	-	-	-	-	-	-	-
	승강장 평균		-	-	-	-	-	-	-
승강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승강장	승강장 끝부분에 안전펜스 또는 점형블록 설치	-	-	-	-	-	-	-
	바닥기울기	기울기 1/1000이하	-	-	-	-	-	-	-
	바닥마감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	-	-	-	-	-	-
	승강장 평균		-	-	-	-	-	-	-

[표 계속]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보안 검사장 및 여객 탑승교	보안검사장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통로(폭 0.9m이상) 설치	12	11	91.7	0	0.0	1	8.3
	여객탑승교 유효폭	0.9m이상	27	27	100.0	0	0.0	0	0.0
	여객탑승교 기울기	1/120이하의 기울기 확보	27	27	100.0	0	0.0	0	0.0
	보안검사장 및 여객탑승교 평균		-	-	97.2	-	0.0	-	2.8
임산부 휴게 시설	임산부휴게시설 위치	휠체어사용자 및 유모차 접근가능 위치	14	14	100.0	0	0.0	0	0.0
	임산부 휴게시설	수유실 별도 설치	14	14	100.0	0	0.0	0	0.0
	전면 활동공간	1.4m×1.4m이상 활동공간 확보	14	14	100.0	0	0.0	0	0.0
	기저귀 교환대 높이	높이0.85m~0.65m 설치	14	14	100.0	0	0.0	0	0.0
	기저귀 교환대 하부공간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14	14	100.0	0	0.0	0	0.0
	임산부 휴게시설 평균		-	-	100.0	-	0.0	-	0.0
기타시설 평균		-	-	77.2	-	6.3	-	16.5	
9개 도 평균		-	-	88.2	-	2.1	-	9.6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 국토부의 공항여객터미널 공항별 기준적합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공항여객터미널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대구공항(91.4%)이 가장 높고 원주공항(78.9%)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김해공항의 국제선은 90.0%로 상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국내선 공항은 87.0%로 전국 평균인 87.1%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기준적합 설치율이 가장 높은 대구공항(91.4%)의 경우 안내시설 항목이 100%로 가장 높은 기준적합 설치율을 나타냈으며, 기준적합 설치율이 가장 낮은 원주공항(78.9%)의 경우 기타시설(66.7%) 항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3-35] 공항여객터미널의 공항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김포공항 [국내]	김포공항 [국제]	김해공항 [국내]	김해공항 [국제]	대구 공항	인천공항 [T1]	인천공항 [T2]	광주 공항	울산 공항
평균		87.2	86.2	87.0	90.0	91.4	81.8	85.1	82.5	91.1
매개 (외부) 시설	보행접근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인천용주차구역	85.7	85.7	85.7	-	85.7	85.7	100.0	85.7	100.0
	평균	92.9	92.9	92.9	100.0	92.9	92.9	100.0	92.9	100.0
내부 시설	출입구(문)	75.0	75.0	75.0	75.0	83.3	75.0	75.0	75.0	75.0
	통로	-	100.0	-	-	-	100.0	91.7	-	-
	경사로	-	-	-	-	-	100.0	-	-	-
	엘리베이터	100.0	96.0	96.7	93.3	93.3	91.7	99.6	93.8	93.8
	에스컬레이터	100.0	100.0	100.0	100.0	97.1	91.1	85.7	85.7	76.2
	계단	100.0	100.0	90.5	100.0	91.1	86.6	93.3	95.0	94.4
	평균	93.8	94.2	90.5	92.1	91.2	90.7	89.1	87.4	84.8
위생 시설	화장실일반사향	100.0	89.3	66.7	87.9	83.3	87.2	100.0	91.7	71.4
	대변기	88.9	70.2	94.4	95.2	100.0	88.9	88.9	88.9	88.9
	소변기	100.0	100.0	90.0	90.0	87.5	99.5	100.0	85.7	100.0
	세면대	100.0	90.4	80.0	100.0	80.0	83.5	100.0	80.0	80.0
	평균	97.2	87.5	82.8	93.3	87.7	89.8	97.2	86.6	85.1
안내 시설	점자블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안내 및 유도시설	50.0	50.0	50.0	50.0	100.0	0.0	0.0	50.0	100.0
	경보피난시설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83.3	83.3	83.3	83.3	100.0	66.7	66.7	83.3	100.0
기타 시설	매표소	25.0	25.0	75.0	75.0	75.0	25.0	50.0	0.0	75.0
	자동발매기 및 음료대	58.3	66.7	66.7	50.0	66.7	50.0	66.7	50.0	66.7
	승강장(터미널)	-	-	-	-	-	-	66.7	-	-
	보안검사장 및 여객탑승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임산부휴게시설	92.0	100.0	100.0	100.0	100.0	100.0	80.0	100.0	100.0
	평균	68.8	72.9	85.4	81.3	85.4	68.8	72.7	62.5	85.4

[표 계속]

구분		원주 공항	양양 공항	청주 공항	군산 공항	여수 공항	무안 공항	포항 공항	사천 공항	제주 공항
평균		78.9	90.2	89.0	83.8	87.6	88.5	92.9	85.6	89.5
매개 (외부) 시설	보행접근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71.4	100.0	95.2	85.7	100.0	100.0	100.0	85.7	100.0
	평균	85.7	100.0	97.6	92.9	100.0	100.0	100.0	92.9	100.0
내부 시설	출입구(문)	75.0	75.0	75.0	75.0	80.0	75.0	87.5	75.0	75.0
	통로	-	-	-	-	-	-	-	-	-
	경사로	-	-	-	-	-	-	-	-	-
	엘리베이터	-	93.8	97.9	-	93.3	95.8	96.9	-	93.5
	에스컬레이터	-	72.2	100.0	-	92.9	100.0	100.0	-	97.6
	계단	-	85.0	96.7	-	80.0	93.3	96.7	-	100.0
	평균	75.0	81.5	92.4	75.0	86.5	91.0	95.3	75.0	91.5
위생 시설	화장실일반사항	66.7	100.0	88.9	66.7	83.3	100.0	83.3	88.9	100.0
	대변기	88.9	88.9	88.9	92.6	100.0	100.0	88.9	93.3	88.9
	소변기	100.0	100.0	8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세면대	80.0	80.0	77.3	86.7	80.0	80.0	80.0	100.0	80.0
	평균	83.9	92.2	86.0	86.5	90.8	95.0	88.1	95.6	92.2
안내 시설	점자블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안내 및 유도시설	50.0	50.0	50.0	50.0	50.0	50.0	100.0	50.0	50.0
	경보피난시설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83.3	83.3	83.3	83.3	83.3	83.3	100.0	83.3	83.3
기타 시설	매표소	0.0	75.0	75.0	25.0	25.0	25.0	25.0	25.0	58.3
	자동발매기 및 음료대	-	100.0	66.7	100.0	83.3	100.0	100.0	100.0	63.9
	승강장(터미널)	-	-	-	-	-	-	-	-	-
	보안검사장 및 여객탑승교	100.0	100.0	100.0	100.0	100.0	66.7	100.0	100.0	100.0
	임산부휴게시설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66.7	93.8	85.4	81.3	77.1	72.9	81.3	81.3	80.6

[표3-36] 공항여객터미널의 공항 및 연도별 기준적합 설치율

구분	2016년(①)	19년+20년(②)	2021년(③)	비고	
				③-①	③-②
공항여객터미널 평균	80.9	84.5	86.8	▲ 5.9	▲ 2.3
김포공항_국내	-	81.5	87.2	-	▲ 5.7
김포공항_국제	-	83.2	86.2	-	▲ 3.0
김해공항_국내	-	86.8	87.0	-	▲ 0.2
김해공항_국제	-	89.6	90.0	-	▲ 0.4
대구공항	-	91.2	91.4	-	▲ 0.2
인천공항_T1	-	79.3	81.8	-	▲ 2.5
인천공항_T2	-	81.7	85.1	-	▲ 3.4
광주공항	-	82.5	82.5	-	-
울산공항	-	91.0	91.1	-	▲ 0.1
원주공항	-	78.8	78.9	-	▲ 0.1
양양공항	-	89.6	90.2	-	▲ 0.6
청주공항	-	89.0	89.0	-	-
군산공항	-	83.8	83.8	-	-
여수공항	-	87.2	87.6	-	▲ 0.4
무안공항	-	88.5	88.5	-	-
포항공항	-	90.4	92.9	-	▲ 2.5
사천공항	-	85.9	85.6	-	▽ 0.3
제주공항	-	88.7	89.5	-	▲ 0.8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 김해공항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2016년 국내선과 국제선이 각각 86.8%와 89.6%에서 2021년에는 각각 87.0%와 90%로 소폭 상승하였고 전국 평균 (86.8%) 보다 높은 수준임

[표3-37]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공항여객터미널 조사대상 선정방법

구분	2016년(전국)	2019년 (8개 특별·광역시)	2020년(9개 도)	2021년(전국)
조사대상	◦전국 공항여객터미널 - 총 15개소	◦8개 특별·광역시 내에 위치한 공항여객터미널 전수조사 - 총 9개소	◦9개 도 지역 내에 위치한 공항여객터미널 전수조사 - 총 9개소	◦전국 공항여객터미널 전수조사 - 총 18개소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 국토부 2021년 공항여객터미널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86.8%로 전국 조사로 수행한 2016년(80.9%) 대비 5.9%p 증가, 표본조사로 수행한 2019년(8개 특별·광역시)/2020년(9개 도)의 합산으로 재산정한 기준적합 설치율(84.5%) 대비 2.3%p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2016년 이후 점진적인 시설개선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됨

5) 여객선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표3-38] 전국 9개도 여객선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보행 접근로	유효폭	접근로 유효폭 2m 이상	33	32	97.0	1	3.0	0	0.0		
	기울기	접근로 전체구간 1/80이하	33	32	97.0	1	3.0	0	0.0		
	재질및마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33	33	100.0	0	0.0	0	0.0		
	높이차이 제거	단차가 없어야하며,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	33	30	90.9	1	3.0	2	6.1		
	보행접근로 평균		-	-	96.2	-	2.3	-	1.5		
매개 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설치장소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	19	18	94.7	0	0.0	1	5.3	
		설치비율	주차대수의 30이상	18	17	94.4	1	5.6	0	0.0	
		보행안전통로	주출입구까지 확보 (유효폭 1.2m 이상)	18	10	55.6	1	5.6	7	38.9	
		장애인전용 주차공간	3.3m×5.0m	18	17	94.4	1	5.6	0	0.0	
		바닥마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18	18	100.0	0	0.0	0	0.0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이 가능하도록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18	13	72.2	5	27.8	0	0.0	
		바닥면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1/50이하	18	18	100.0	0	0.0	0	0.0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평균		-	-	87.3	-	6.3	-	6.3	
매개시설 평균		-	-	91.8	-	4.3	-	3.9			
내부 시설	출입구 (문)	통과유효폭	0.9m 이상 확보	55	55	100.0	0	0.0	0	0.0	
		전면활동공간 유효거리	1.2m 이상 확보	55	55	100.0	0	0.0	0	0.0	
		출입구 옆 활동공간	0.6m 이상 확보	55	55	100.0	0	0.0	0	0.0	
		출입구단차	높이차를 두어서는 안됨	55	55	100.0	0	0.0	0	0.0	
		문형태	미닫이문	문지방 또는 홈이 없이 설치	-	-	-	-	-	-	-
			여닫이문	도어체크 설치되고 3초이상 개폐	29	29	100.0	0	0.0	0	0.0
			자동문	충분한 개방시간과 감지범위	26	26	100.0	0	0.0	0	0.0
		손잡이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사이에 설치	29	29	100.0	0	0.0	0	0.0	
		공중사무실 점자표지판	공중사무실 출입구 옆 벽면 1.5m 높이 설치	23	1	4.3	1	4.3	21	91.3	
		점형블록	출입문 전면 0.3m 설치	55	49	89.1	0	0.0	6	10.9	
		호출벨	자동문 옆 설치	26	5	19.2	0	0.0	21	80.8	
		출입구(문) 평균		-	-	81.3	-	0.4	-	18.3	

[표 계속]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내부 시설	통로	유효폭	유효폭 2m 이상 확보	3	3	100.0	0	0.0	0	0.0
		바닥단차	단차 2m 이하 확보	3	3	100.0	0	0.0	0	0.0
		바닥마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며, 넘어져도 충격이 적은 재료로 마감	3	3	100.0	0	0.0	0	0.0
		손잡이높이	높이 0.8m~0.9m로 연속적으로 설치	3	0	0.0	0	0.0	3	100.0
		손잡이굵기	지름 3.2~3.8cm로 연속적으로 설치	-	-	-	-	-	-	-
		손잡이와 벽간 간격	벽면간의 간격은 5cm 내외	-	-	-	-	-	-	-
		손잡이 점자표지판	손잡이 끝 점자표지판 부착	-	-	-	-	-	-	-
		벽면 보행장애물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m~2.1m 이내에 물체의 돌출폭 0.1m 이하로 설치	3	3	100.0	0	0.0	0	0.0
		기둥, 받침대 보행장애물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m~2.1m 이내에 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공작물의 돌출폭 0.3m 이하로 설치	3	3	100.0	0	0.0	0	0.0
		보행장애물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의 유효높이 확보	3	3	100.0	0	0.0	0	0.0
		킥플레이트설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벽면 보호대 설치	3	1	33.3	0	0.0	2	66.7
		통로모서리	통로 모서리부분 안전성 확보	3	1	33.3	0	0.0	2	66.7
			통로 평균	-	-	74.1	-	0.0	-	25.9
		경사로		유효폭	유효폭 2미터 이상 확보	10	9	90.0	0	0.0
휴식참	바닥면으로부터 0.75미터 이내마다 1.5m×1.5미터 이상의 휴식참 설치			10	10	100.0	0	0.0	0	0.0
활동공간	시작,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10	9	90.0	1	10.0	0	0.0
기울기	높이16cm초과:1/12이하 높이16cm이하:1/ 8이하			10	10	100.0	0	0.0	0	0.0
손잡이높이	높이 0.8m~0.9m로 연속적으로 설치			10	9	90.0	1	10.0	0	0.0
손잡이굵기	지름 3.2cm~3.8cm로 연속적으로 설치			10	10	100.0	0	0.0	0	0.0
손잡이와 벽간간격	벽면간의 간격은 5cm 내외			10	10	100.0	0	0.0	0	0.0
손잡이 점자표지판	손잡이 끝 점자표지판 부착			10	5	50.0	0	0.0	5	50.0
수평손잡이	시작과 끝에 0.3m 수평손잡이 연장 설치			10	1	10.0	3	30.0	6	60.0
재질및마감	미끄럽지 않게 평탄하게 마감			10	10	100.0	0	0.0	0	0.0
추락방지턱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축벽 설치			10	10	100.0	0	0.0	0	0.0
완화매트	설치필요구간 벽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매트 설치			10	0	0.0	0	0.0	10	100.0
	경사로 평균			-	-	77.5	-	4.2	-	18.3

[표 계속]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내부 시설	설치 장소	외부↔대합실	도로양측에 1개소씩 (지상횡단가능시 1개소만)	5	5	100.0	0	0.0	0	0.0
		대합실↔승강장	양방향승강장 2개이상 중앙식승강장 1개이상	6	6	100.0	0	0.0	0	0.0
	전면활동공간	승강기 전면 1.5m×1.5m 이상	11	11	100.0	0	0.0	0	0.0	
	승강장과 승강기간격	간격 3cm이하	11	11	100.0	0	0.0	0	0.0	
	크기	15인승이상(9인승완화가능) 유효바닥면적 1.1m×1.4m 이상	11	11	100.0	0	0.0	0	0.0	
	출입문 유효폭	유효폭 0.8m 이상	11	11	100.0	0	0.0	0	0.0	
	조작설비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8m이상, 1.2m이하로 설치	11	11	100.0	0	0.0	0	0.0	
	점자표지판	세로조작설비의 조작반, 통화장치 등에 부착	11	11	100.0	0	0.0	0	0.0	
	가로조작반	내부 우측 0.85m높이 설치 모서리에서 0.4m 떨어져 설치	11	11	100.0	0	0.0	0	0.0	
	손잡이높이	높이 0.8m~0.9m로 연속적으로 설치	11	11	100.0	0	0.0	0	0.0	
	손잡이굵기	지름 3.2cm~3.8cm로 연속적으로 설치	11	11	100.0	0	0.0	0	0.0	
	손잡이와 벽간격	5cm내외	11	11	100.0	0	0.0	0	0.0	
	내부거울	내부 후면에 거울설치 (내부크기 1.4×1.4m이상은 거울설치 의무 없음)	2	2	100.0	0	0.0	0	0.0	
	안내시설	운영상황, 도착여부를 알려주는 점멸 및 음성신호장치 설치	11	11	100.0	0	0.0	0	0.0	
	안전장치	되열림 장치 설치	11	11	100.0	0	0.0	0	0.0	
	점형블록	버튼전면 0.3m에 설치	11	11	100.0	0	0.0	0	0.0	
	출입문형태	전면 또는 일부 투명재질로 설치	11	7	63.6	0	0.0	4	36.4	
		엘리베이터 평균	-	-	97.9	-	0.0	-	2.1	
	에스컬레이터	설치장소	모든내부계단에 상행, 하행 1개소 이상 설치	7	3	42.9	4	57.1	0	0.0
		유효폭	유효폭 0.8m이상	7	7	100.0	0	0.0	0	0.0
속도		분당 30m이내	7	7	100.0	0	0.0	0	0.0	
이동손잡이		양측면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 설치	7	7	100.0	0	0.0	0	0.0	
수평이동손잡이		양끝부분에 수평이동손잡이 1.2m이상 설치	7	7	100.0	0	0.0	0	0.0	
수평고정손잡이		양끝부분에 수평고정손잡이 1.0m이상 설치	7	5	71.4	1	14.3	1	14.3	
손잡이점자표시		수평고정손잡이에 점자표시 설치	6	3	50.0	0	0.0	3	50.0	
		에스컬레이터 평균	-	-	80.6	-	10.2	-	9.2	

[표 계속]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내부 시설	계단	휴식참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m 이내 마다 수평면으로 된 참 설치	22	18	81.8	4	18.2	0	0.0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 2m이상 확보	22	17	77.3	5	22.7	0	0.0
		디딤판	너비 0.28m이상으로 설치	22	22	100.0	0	0.0	0	0.0
		철타면	높이 0.18m이하로 설치	22	22	100.0	0	0.0	0	0.0
		철타면기울기	수평면으로부터 60°이상	22	22	100.0	0	0.0	0	0.0
		계단코 길이	3cm이하 설치	22	19	86.4	3	13.6	0	0.0
		손잡이 높이	손잡이 높이 0.8m~0.9m로 연속적으로 설치	22	19	86.4	1	4.5	2	9.1
		손잡이 굵기	지름 3.2cm~3.8cm로 연속적으로 설치	20	20	100.0	0	0.0	0	0.0
		손잡이와 벽간격	5cm내외	20	20	100.0	0	0.0	0	0.0
		손잡이 점자표지판	손잡이 끝 점자표지판 부착	20	16	80.0	0	0.0	4	20.0
		수평손잡이	시작과 끝에 0.3m 수평손잡이 연장 설치	20	3	15.0	9	45.0	8	40.0
		계단 재질	미끄럽지 않게 평탄하게 마감	22	22	100.0	0	0.0	0	0.0
		계단코 재질	줄눈넣기,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	22	19	86.4	0	0.0	3	13.6
		점형블록	시작과 끝지점(중간 참 포함) 전면 0.3m에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22	21	95.5	0	0.0	1	4.5
추락방지턱	2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22	22	100.0	0	0.0	0	0.0		
계단 평균		-	-	87.2	-	6.9	-	5.8		
내부시설 평균		-	-	83.1	-	3.6	-	13.3		
위생 시설	장애인 화장실 일 반 사 항	화장실위치	장애인이 인지하기 쉽고 양호한 접근통로 확보	30	27	90.0	3	10.0	0	0.0
		대변기 남녀구분설치	장애인 이용가능한 화장실이 남녀 구분하여 각 1개이상 설치	30	23	76.7	6	20.0	1	3.3
		바닥면 높이차이	2cm이하의 단차	30	30	100.0	0	0.0	0	0.0
		바닥마감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	30	30	100.0	0	0.0	0	0.0
		점형블록	장애인 전용 화장실 전면 0.3m 위치에 점형블록 설치	30	19	63.3	2	6.7	9	30.0
		점자표지판	출입구옆 벽면에 남자용,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설치	30	21	70.0	1	3.3	8	26.7
	장애인 화장실 평균		-	-	83.3	-	6.7	-	10.0	
	장애인 대변기	대변기칸막이	유효 바닥면 크기는 폭 1.4m이상, 깊이 1.8m이상 확보	53	44	83.0	9	17.0	0	0.0
		대변기 좌우측 유효폭	유효폭 0.7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53	25	47.2	28	52.8	0	0.0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53	46	86.8	7	13.2	0	0.0
출입문 형태		미닫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설치	53	53	100.0	0	0.0	0	0.0	
출입문 유효폭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이상 확보	53	53	100.0	0	0.0	0	0.0	

[표 계속]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장애인 대변기	대변기 형태	대변기는 양변기형태이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5m이하로 설치	53	53	100.0	0	0.0	0	0.0	
	수평손잡이	양옆에 수평손잡이 설치	53	53	100.0	0	0.0	0	0.0	
	세정장치, 휴지걸이	세정장치는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휴지걸이 등은 대변기 앉은 상태에서 이용가능한 위치에 설치	53	41	77.4	12	22.6	0	0.0	
	사용여부 설비	대변기 출입문에 사용여부를 알수 있는 시각적 설비 설치	53	46	86.8	2	3.8	5	9.4	
	장애인 대변기 평균		-	-	86.8	-	12.2	-	1.0	
위생 시설	장애인 소변기	수평손잡이 높이:바닥면으로부터 0.8m~0.9m 길이:벽면으로부터 0.55m 내외 좌우손잡이간격:0.6m내외	31	24	77.4	0	0.0	7	22.6	
	수직손잡이	높이:바닥면으로부터 1.1m~1.2m 길이: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	31	24	77.4	0	0.0	7	22.6	
	장애인 소변기평균		-	-	77.4	-	0.0	-	22.6	
장애인 세면대	설치높이	상단높이:바닥면으로부터 0.85m이하 하단높이:0.65m이상 (휠체어발판이 들어갈수 있도록 공간확보)	51	42	82.4	2	3.9	7	13.7	
	수도꼭지형태	사용하기 쉬운 형태	44	44	100.0	0	0.0	0	0.0	
	수평손잡이	양옆에 설치 (카운터식 세면대 제외)	44	42	95.5	0	0.0	2	4.5	
	점자표시	수도꼭지 점자표시	44	4	9.1	0	0.0	40	90.9	
	거울	하단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9m내외 세로길이는 0.65m이상	44	42	95.5	2	4.5	0	0.0	
장애인 세면대 평균		-	-	76.5	-	1.7	-	21.8		
위생시설 평균		-	-	81.0	-	5.1	-	13.9		
안내 시설	점자 블록	설치장소	주출입구로부터 매표소, 대합실 및 승강장으로 이동시 연속적으로 설치 <small>(장애인 안내소 설치시 해당 장소까지 설치)</small>	23	16	69.6	3	13.0	4	17.4
	규격 및 색상	0.3m×0.3m 노란색	19	18	94.7	1	5.3	0	0.0	
	설치방법	점형블록:주요지점 및 위험지점 0.3m전면 설치 선형블록:유도방향에따라 평행하게 연속 설치	19	18	94.7	1	5.3	0	0.0	
	점자블록 평균		-	-	86.3	-	7.9	-	5.8	
	안내 및 유도시설	안내도	점자를 병기한 안내판 설치	23	15	65.2	0	0.0	8	34.8
		유도신호장치	유도신호장치 설치	23	1	4.3	0	0.0	22	95.7
		안내 및 유도시설 평균		-	-	34.8	-	0.0	-	65.2
	경보 피난시설	청각경보장치	청각경보장치설치	23	23	100.0	0	0.0	0	0.0
시각경보장치		시각경보장치설치	23	22	95.7	0	0.0	1	4.3	
경보피난시설 평균		-	-	97.8	-	0.0	-	2.2		
안내시설 평균		-	-	73.0	-	2.6	-	24.4		

[표 계속]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장애인 매표소	활동공간	휠체어 접근가능 활동공간 확보	23	13	56.5	0	0.0	10	43.5
	점자블록	매표소 전면 0.3m 점자블록 설치	13	8	61.5	0	0.0	5	38.5
	높이	매표소 높이 0.7m~0.9m이하	13	7	53.8	3	23.1	3	23.1
	하부공간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13	8	61.5	2	15.4	3	23.1
	장애인 매표소 평균		-	-	58.4	-	9.6	-	32.0
자동 발매기	활동공간	휠체어탄채 접근할 수 있는 활동공간 확보	9	9	100.0	0	0.0	0	0.0
	점자블록	자동발매기 전면 0.3m 점자블록 설치	9	2	22.2	1	11.1	6	66.7
	조작버튼 설치위치	조작버튼등 높이 0.4m~1.2m이하로 설치	9	9	100.0	0	0.0	0	0.0
	점자표시	조작버튼 점자로 표시	9	6	66.7	0	0.0	3	33.3
	음료대분출구 높이	분출구높이 0.7m이상 0.8m 이하	18	15	83.3	0	0.0	3	16.7
	음료조작기	사용하기 쉬운 형태	18	18	100.0	0	0.0	0	0.0
자동 발매기 평균		-	-	78.7	-	1.9	-	19.4	
기타 시설	개폐방법	1개소이상 자동개폐식 설치 (상시 안내서비스 제공시 자동개폐식 설치로 봄)	-	-	-	-	-	-	-
	유효폭	0.8m이상	-	-	-	-	-	-	-
	점자블록	자동개폐기 전면 0.3m 점형블록 설치	-	-	-	-	-	-	-
개찰구 평균		-	-	-	-	-	-	-	
승강장 (철도/ 도시 철도 및 광역 철도 역사)	바닥기울기	기울기 1/100이하	-	-	-	-	-	-	-
	바닥마감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	-	-	-	-	-	-
	점자블록	승강장 가장자리 0.3m~0.9m 범위에 설치	-	-	-	-	-	-	-
	차량간격	승강장과 차량간격 5cm이하	-	-	-	-	-	-	-
	전락방지시설	스크린도어 및 안전펜스 설치	-	-	-	-	-	-	-
	난간	승강장 끝부분에 1.1m~1.5m의 추락방지용 난간 설치	-	-	-	-	-	-	-
	차량접근 경고시설	청각,시각장애인에게 차량접근시 경고/안내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	-	-	-	-	-
	휠체어 승강장 안내	접근계단부터 휠체어탑승가능 구역 안내표시	-	-	-	-	-	-	-
승강장 평균		-	-	-	-	-	-	-	
승강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승강장	승강장 끝부분에 안전펜스 또는 점형블록 설치	-	-	-	-	-	-	-
	바닥기울기	기울기 1/100이하	-	-	-	-	-	-	-
	바닥마감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	-	-	-	-	-	-
	승강장 평균		-	-	-	-	-	-	-

[표 계속]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보안 검사장 및 여객 탑승교	보안검사장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통로(폭 0.9m이상) 설치	-	-	-	-	-	-	-
	여객탑승교 유효폭	0.9m이상	-	-	-	-	-	-	-
	여객탑승교 기울기	1/120이하의 기울기 확보	-	-	-	-	-	-	-
	보안검사장 및 여객탑승교 평균		-	-	-	-	-	-	-
임산부 휴게 시설	임산부휴게시설 위치	휠체어사용자 및 유모차 접근가능 위치	23	17	73.9	0	0.0	6	26.1
	임산부 휴게시설	수유실 별도 설치	17	14	82.4	0	0.0	3	17.6
	전면 활동공간	1.4m×1.4m이상 활동공간 확보	17	14	82.4	1	5.9	2	11.8
	기저귀 교환대 높이	높이0.85m~0.65m 설치	15	14	93.3	1	6.7	0	0.0
	기저귀 교환대 하부공간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15	14	93.3	1	6.7	0	0.0
	임산부 휴게시설 평균		-	-	85.1	-	3.8	-	11.1
기타시설 평균		-	-	74.0	-	5.1	-	20.9	
9개 도 평균		-	-	80.6	-	4.2	-	15.3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 여객선터미널의 지역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인천광역시가 89.1%로 가장 높고 경상남도가 68.9%로 가장 낮은 것으로 2021년 국토부의 조사결과 나타났음
- 기준적합 설치율이 가장 높은 인천(89.1%)의 경우 매개(외부)시설(98.2%) 항목이 가장 높고 기타시설(75.8%) 항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준적합 설치율이 가장 낮은 경상남도(68.9%)의 경우 매개(외부)시설(89.3%) 항목이 가장 높고, 기타시설(46.7%) 항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3-39] 전국 여객선터미널 지역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례수		2	2	1	2	1	2	10	3	2	2
평균		88.6	89.1	81.7	76.8	82.8	87.7	81.0	73.9	68.9	79.1
매개 (외부) 시설	보행접근로	100.0	100.0	100.0	87.5	100.0	100.0	93.8	100.0	100.0	10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00.0	96.4	100.0	92.9	-	85.7	85.7	85.7	78.6	89.3
	평균	100.0	98.2	100.0	90.2	100.0	92.9	89.7	92.9	89.3	94.6
내부 시설	출입구(문)	90.6	81.3	87.5	75.0	80.0	90.0	81.4	78.2	83.3	80.0
	통로	-	-	-	-	-	77.8	66.7	-	-	-
	경사로	81.8	-	-	-	83.3	-	68.8	83.3	-	-
	엘리베이터	94.5	94.7	-	-	-	100.0	96.6	-	-	100.0
	에스컬레이터	74.6	100.0	-	-	-	85.7	81.0	-	-	71.4
	계단	86.7	94.7	-	86.7	-	91.1	84.2	93.3	-	93.3
	평균	85.7	92.6	87.5	80.8	81.7	88.9	79.8	85.0	83.3	86.2
위생 시설	화장실일반사항	100.0	70.0	50.0	75.0	66.7	97.2	89.4	72.2	66.7	88.9
	대변기	98.6	88.9	100.0	66.7	88.9	96.0	77.8	92.6	88.9	100.0
	소변기	100.0	100.0	100.0	100.0	0.0	100.0	75.0	33.3	50.0	100.0
	세면대	95.0	90.0	0.0	0.0	80.0	80.0	84.7	76.0	50.0	80.0
	평균	98.4	87.2	62.5	60.4	58.9	93.3	81.7	68.5	63.9	92.2
안내 시설	점자블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9.6	77.8	83.3	50.0
	안내 및 유도시설	25.0	75.0	0.0	25.0	50.0	75.0	40.0	0.0	25.0	50.0
	경보피난시설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5.0	100.0
	평균	75.0	91.7	66.7	75.0	83.3	91.7	76.5	59.3	61.1	66.7
기타 시설	매표소	100.0	87.5	75.0	50.0	100.0	50.0	65.0	58.3	0.0	0.0
	자동발매기 및 음료대	62.5	50.0	100.0	83.3	-	75.0	88.9	66.7	50.0	66.7
	임산부휴게시설	90.0	90.0	100.0	100.0	80.0	90.0	77.4	66.7	90.0	100.0
	평균	84.2	75.8	91.7	77.8	90.0	71.7	77.1	63.9	46.7	55.6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 경상남도 여객선터미널 2개소 이동편의 조사 결과

[표3-40] 경상남도 여객선터미널 2개소 이동편의조사 결과

구분	통영시	사천시	
	통영항여객선터미널	삼천포신항여객터미널	
매개시설	보행접근로	100.0	10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85.7	-
내부시설	출입구	75.0	87.5
	통로	-	-
	경사로	-	-
	엘리베이터	-	-
	에스컬레이터	-	-
	계단	-	-
위생시설	화장실	50.0	83.3
	대변기	75.0	100.0
	소변기	0.0	100.0
	세면대	20.0	80.0
안내시설	점자블록	0.0	100.0
	안내 및 유도시설	0.0	50.0
	경보피난시설	50.0	100.0
기타시설	매표소	0.0	0.0
	자동발매기 및 음료대	50.0	-
	승강장	-	-
	임산부휴게시설	100.0	80.0
	교통약자 이용정보 편의제공	20.0	0.0
평균		44.7	73.4

[표3-41] 여객선터미널의 터미널 및 연도별 기준적합 설치율

구분	2016년(①)	19년+20년(②)	2021년(③)	비고	
				③-①	③-②
여객선터미널 평균	67.6	83.0	82.2	▲14.6	▽ 0.8
무역항 평균	67.6	83.0	84.4	▲16.8	▲1.4
연안항 평균	-	-	73.6	-	-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 국토부의 2021년 여객선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는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에 위치하여 운영중인 여객선터미널을 전수조사하였으며, 전국 조사로 수행한 2016년 기준적합 설치율과 2019년(8개 특별·광역시도), 2020년(9개 도)을 합산하여 재산정한 기준적합 설치율을 비교·분석함

[표3-42]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여객선터미널 조사대상 선정방법

구분	2016년(전국)	2019년 (8개 특별·광역시)	2020년(9개 도)	2021년(전국)
조사대상	◦전국 무역항에 위치한 여객선터미널 - 총 22개소	◦8개 특별광역시 내의 무역항에 위치한 여객선터미널 전수조사 - 총 5개소	◦9개 도 지역 내의 무역항에 위치한 여객선터미널 전수조사 - 총 13개소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에 위치하여 운영중인 여객선터미널 전수조사 - 총 27개소 무역항 19개소 연안항 8개소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 국토부 2021년 여객선터미널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82.2%로 전국 조사로 수행한 2016년(67.6%) 대비 14.6%p 증가, 표본조사로 수행한 2019년(8개 특별·광역시)/ 2020년(9개 도)의 합산으로 재산정한 기준적합 설치율(83.0%) 대비 0.8%p 하락한 수치이나, 이는 2021년 부터 무역항 및 연안항에 위치한 여객선터미널이 조사대상에 포함(기존 무역항만 포함)된 영향으로 판단됨

6)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표3-43] 전국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준 사례수	378	103	27	46	24	25	16	15	222	85	41	65	50	64	81	89	15
평균	59.0	50.6	54.9	52.4	58.2	60.3	58.1	47.6	37.0	36.6	31.4	34.2	30.5	29.4	41.8	27.8	49.1
턱낮추기	92.9	91.3	44.4	82.6	87.5	80.0	93.8	100.0	29.7	42.4	43.9	52.3	36.0	20.3	54.3	33.7	46.7
활동공간	72.0	90.3	66.7	82.6	95.8	80.0	87.5	0.0	65.3	65.1	36.6	60.0	51.0	45.3	64.2	41.6	73.3
동선분리	69.3	75.7	85.2	93.5	91.7	4.0	87.5	0.0	31.1	43.5	19.5	38.5	46.0	29.7	60.5	31.5	40.0
점형블록	64.3	41.7	66.7	13.0	16.7	40.0	25.0	40.0	23.4	7.1	12.2	12.3	16.0	7.8	14.8	18.0	20.0
선형블록	57.7	29.0	72.2	13.2	13.0	50.0	7.1	-	24.8	12.5	13.3	20.5	12.0	17.2	21.2	21.6	9.1
안내판부착위치	92.5	64.9	100.0	100.0	100.0	84.0	85.7	80.0	84.5	87.9	69.2	77.1	72.7	84.2	72.7	60.9	83.3
안내판점자 및 음성안내	23.6	0.0	3.8	0.0	61.1	52.0	28.6	40.0	6.0	12.1	3.8	4.2	6.8	7.9	15.2	4.3	50.0
버스정보조회버튼	0.0	11.8	0.0	34.2	0.0	92.0	50.0	73.3	31.1	22.0	52.4	8.5	3.7	22.7	31.4	10.5	70.0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표3-44] 경상남도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턱낮추기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이 15cm이하	89	30	33.7	59	66.3	0	0.0
활동공간	0.8m이상 확보 및 1.8m×1.8m이상 회전공간 확보	89	37	41.6	38	42.7	14	15.7
동선분리	시각장애인과 휠체어장애인이 교차하지 않도록 동선분리	89	28	31.5	0	0.0	61	68.5
점형블록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	89	16	18.0	1	1.1	72	80.9
선형블록	점형블록과 함께 선형블록 설치	37	8	21.6	0	0.0	29	78.4
안내판부착위치	안내판을 바닥에서 1.5m안팎 설치	69	42	60.9	11	15.9	16	23.2
안내판점자 및 음성안내	안내판에 점자안내 및 음성안내 제공	69	3	4.3	35	50.7	31	44.9
버스정보조회 버튼	바닥면으로부터 1.2m이내 설치	38	4	10.5	3	7.9	31	81.6
경상남도 평균		-	-	27.8	-	23.1	-	49.2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 2021년 국토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버스정류장은 조사대상 여객 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여객선터미널) 및 환승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사 중 수직이동시설(엘리베이터) 주변 150m 이내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버스정류장의 지역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대전광역시가 60.3%로 가장 높고 경상남도가 27.8%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3-45] 버스정류장의 지역 및 연도별 기준적합 설치율

구분	2016년(①)	19년+20년(②)	2021년(③)	비고	
				③-①	③-②
버스정류장 평균	39.4	47.9	45.4	▲ 6.0	▽ 2.5
서울	47.6	59.0	59.0	▲11.4	-
부산	46.2	50.2	50.6	▲ 4.4	▲ 0.4
대구	50.1	53.7	54.9	▲ 4.8	▲ 1.2
인천	45.7	52.0	52.4	▲ 6.7	▲ 0.4
광주	41.4	58.2	58.2	▲16.8	-
대전	43.6	60.0	60.3	▲16.7	▲ 0.3
울산	52.2	57.0	58.1	▲ 5.9	▲ 1.1
세종	18.4	40.5	47.6	▲29.2	▲ 7.1
경기	34.0	37.3	37.0	▲ 3.0	▽ 0.3
강원	24.7	38.4	36.6	▲11.9	▽ 1.8
충북	32.0	30.9	31.4	▽ 0.6	▲ 0.5
충남	27.5	33.2	34.2	▲ 6.7	▲ 1.0
전북	36.7	30.9	30.5	▽ 6.2	▽ 0.4
전남	26.1	28.9	29.4	▲ 3.3	▲ 0.5
경북	33.8	42.9	41.8	▲ 8.0	▽ 1.1
경남	32.3	27.7	27.8	▽ 4.5	▲ 0.1
제주	39.7	44.3	49.1	▲9.4	▲ 4.8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 경상남도의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2016년 32.3%에서 2021년 27.8%로 4.5%p가 감소하여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조사대상 선정과정에서 표본에 의한 방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2016년에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고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의 개선을 통해 설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경상남도 시군별 버스정류장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표3-46] 경상남도 시군별 버스정류장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구분	턱낮추기	활동공간	동선분리	점자블록	선형블록	안내판 부착위치	안내판점 자 및 음성안내	버스정보 조희버튼	평균
창원시	52.0	17.6	72.0	32.0	66.7	94.1	0.0	0.0	41.8
진주시	87.5	50.0	12.5	0.0	0.0	16.7	16.7	0.0	22.9
통영시	0.0	50.0	60.0	80.0	66.7	75.0	0.0	0.0	41.5
사천시	0.0	100.0	25.0	0.0	0.0	57.1	0.0	0.0	22.8
김해시	75.0	75.0	25.0	25.0	33.3	62.5	25.0	28.6	43.7
밀양시	18.2	42.9	9.1	18.2	33.3	14.3	0.0	0.0	17.0
거제시	40.0	50.0	0.0	0.0	0.0	100.0	0.0	100.0	36.3
양산시	0.0	40.0	0.0	0.0	0.0	60.0	0.0	0.0	12.5
의령군	0.0	0.0	0.0	0.0	-	0.0	0.0	-	0.0
함안군	0.0	-	33.3	0.0	33.3	-	-	-	16.7
창녕군	0.0	0.0	0.0	0.0	-	0.0	0.0	-	0.0
거창군	0.0	0.0	0.0	0.0	-	100.0	0.0	-	16.7

- 실태조사 결과, 도내 시·군의 버스정류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의령군과 창녕군의 경우 조사대상이된 여객터미널 인근 버스정류장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0점으로 평가됨, 시급한 보완 및 개선이 요구됨

[표3-47]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버스정류장 조사대상 선정방법

구분	2016년(전국)	2019년 (8개 특별·광역시)	2020년(9개 도)	2021년(전국)
조사대상	◦조사대상 여객시설 주변 버스정류장 - 총 3,044개소	◦조사대상 여객시설 및 환승 도시철도 역사 중 수직이동 시설 주변 150m이내 버스정류장 - 총 622개소	◦조사대상 여객시설 및 환승 도시철도 역사 중 수직이동 시설 주변 150m이내 버스 정류장 - 총 437개소	◦조사대상 여객시설 및 환승 도시철도 역사 중 수직이동 시설 주변 150m이내 버스 정류장 - 총 1,345개소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 국토부에서 시행한 2021년 버스정류장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45.4%로 전국 조사로 수행한 2016년(39.4%) 대비 6.0%p 증가한 수치이며, 2019년(8개 특별·광역시)/2020년(9개 도)의 합산으로 재산정한 기준적합 설치율(47.9%) 대비 2.5%p 하락한 수치이나, 이는 2019년(8개특별·광역시)/2020년(9개 도) 표본선정시 이용객이 많고 규모가 큰 여객시설 주변의 버스정류장을 선정한 원인으로 판단됨

다.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표3-48] 전국 9개도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설치 기준	기준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보도	유효폭	유효폭 2m이상 확보(1.5m미만인 경우 1.5mX1.5m이상 교행구간 설치)	833	691	83.0	102	12.2	40	4.8
	재질 및 마감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833	775	93.0	44	5.3	14	1.7
	덮개	덮개설치 및 보도높이와 같고 덮개 구멍 혹은 틈새가 1cm이하	833	796	95.6	16	1.9	21	2.5
	기울기	진행방향 1/18, 좌우 1/25이하(지형상 1/12까지 완화)	833	761	91.4	51	6.1	21	2.5
	높이차이	진행 방향상 높이차이는 2cm이하 (2005/12/30 이전 허가신청건축물은 높이차이 3cm이하)	833	725	87.0	68	8.2	40	4.8
	보행안전지대	바닥면 높이 2.1m이하의 장애물 없는 보행안전지대 설치	833	797	95.7	12	1.4	24	2.9
	차도분리	연석 높이 25cm이하 설치	833	742	89.1	61	7.3	30	3.6
	장애물 구역	가로등, 전주, 간판등 설치시 보행안전지대 밖에	833	762	91.5	0	0.0	71	8.5
가로수 가지 높이	보행안전지대 안으로 가지가 뻗은 가로수는 2.5m높이까지 가지치기	833	784	94.1	41	4.9	8	1.0	
	보도 평균	-	-	91.1	-	5.3	-	3.6	
차량 진출입부	설치방법	보도높이 유지 및 차도의 경계부분 턱낮추기 설치	343	227	66.2	45	13.1	71	20.7
	재질 및 색상	색상 및 질감을 달리 설치	343	139	40.5	123	35.9	81	23.6
차량 진출입부 평균		-	-	53.4	-	24.5	-	22.2	
턱낮추기	경계구간 높이차이	보도와 차도 높이차이는 2cm이하로 설치	493	437	88.6	46	9.3	10	2.0
	연석경사로	경사로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이하, 연면기울기 1/10이하로 설치	493	447	90.7	36	7.3	10	2.0
	턱낮추기 평균	-	-	89.7	-	8.3	-	2.0	
점자블록	횡단보도 위치안내	횡단보도폭 만큼 점형블록 설치, 유도부분은 보도의 폭 4/5까지 선형블록 설치	493	358	72.6	44	8.9	91	18.5
	일시대기용 안전지대	횡단보도의 안전지대쪽 점형블록설치, 유도부분은 선형블록설치	180	69	38.3	32	17.8	79	43.9
	음향신호기 점형블록	수동식 음향신호기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167	30	18.0	5	3.0	132	79.0
점자블록 평균		-	-	43.0	-	9.9	-	47.1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지하도 및 육교	손잡이 설치방법	계단의 양측면에 손잡이 설치	22	21	95.5	0	0.0	1	4.5
	점형블록	계단 시작과 끝지점 전면 0.3m에 점형블록설치	22	13	59.1	2	9.1	7	31.8
	손잡이 높이	0.8~0.9m높이에 연속적으로 설치 (2중설치시 위쪽 0.85m내외, 아래쪽 0.65m 안팎)	22	21	95.5	0	0.0	1	4.5
	손잡이 굵기	손잡이 지름 3.2cm~3.8cm로 연속적으로 설치	21	21	100.0	0	0.0	0	0.0
	손잡이와 벽간격	간격 5cm내외	21	21	100.0	0	0.0	0	0.0
	손잡이 점자표지판	손잡이 끝 점자표지판 부착	21	4	19.0	5	23.8	12	57.1
지하도 및 육교 평균			-	-	78.2	-	5.5	-	16.3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노상주차장)	설치비율	20~50대 : 1면, (50대이상 2%~4%이내 조례지정	19	12	63.2	7	36.8	0	0.0
	주차공간	폭 3.3m이상, 길이 5m이상(평행주차 폭 2m, 길이 6m이상)	19	18	94.7	1	5.3	0	0.0
	바닥마감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평탄하게 마감	19	14	73.7	5	26.3	0	0.0
	바닥 및 입석안내표시	바닥 및 입석안내표시 설치	19	16	84.2	3	15.8	0	0.0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노상주차장) 평균			-	-	78.9	-	21.1	-	0.0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음향신호기 안내방법	음성안내 및 균일한 신호음 작동	493	155	31.4	29	5.9	309	62.7
	음향신호기 설치위치	횡단보도로부터 1m이내, 높이 1.0m~1.2m위치설치	167	163	97.6	4	2.4	0	0.0
	잔여시간 표시기	간선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우선구역의 횡단보도에 설치	118	86	72.9	20	16.9	12	10.2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평균			-	-	67.3	-	8.4	-	24.3
자동차 진입제어용 말뚝 (블라드)	설치형태	높이 80~100cm내외, 지름 10~20cm내외로 설치	224	171	76.3	53	23.7	0	0.0
	설치간격	1.5m 내외 간격으로 설치	224	195	87.1	29	12.9	0	0.0
	점형블록	0.3m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224	24	10.7	18	8.0	182	81.3
	자동차 진입제어용 말뚝(블라드) 평균			-	-	58.0	-	14.9	-
9개 도 평균			-	-	69.9	-	12.2	-	17.8

[표3-49] 경상남도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보도	유효폭	유효폭 2m이상 확보(1.5m미만이인 경우 1.5m×1.5m이상 교행구간 설치)	110	88	80.0	17	15.5	5	4.5
	재질 및 마감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110	104	94.5	4	3.6	2	1.8
	뒹개	뒹개설치 및 보도높이와 같고 뒹개 구멍 혹은 틈새가 1cm이하	110	106	96.4	2	1.8	2	1.8
	기울기	진행방향 1/18, 좌우 1/25이하(지형상 1/12까지 완화)	110	98	89.1	9	8.2	3	2.7
	높이차이 제거	진행 방향상 높이차이는 2cm이하 (2005/12/30 이전 허가신청건축물은 높이차이 3cm이하)	110	91	82.7	14	12.7	5	4.5
	보행안전지대	바닥면 높이 2.1m이하의 장애물 없는 보행안전지대 설치	110	106	96.4	2	1.8	2	1.8
	차도분리	연석 높이 25cm이하 설치	110	88	80.0	20	18.2	2	1.8
	장애물 구역 확보	가로등, 전주, 간판등 설치시 보행안전지대 밖에 설치	110	99	90.0	0	0.0	11	10.0
	가로수 가지 높이	보행안전지대 안으로 가지가 뻗은 가로수는 2.5m높이까지 가지치기	110	100	90.9	7	6.4	3	2.7
	보도 평균			-	-	88.9	-	7.6	-
차량 진출입부	설치방법	보도높이 유지 및 차도의 경계부분 턱낮추기 설치	29	1	3.4	13	44.8	15	51.7
	재질 및 색상	색상 및 질감을 달리 설치	29	1	3.4	13	44.8	15	51.7
	차량 진출입부 평균			-	-	3.4	-	44.8	-
턱낮추기	경계구간 높이차이	보도와 차도 높이차이는 2cm이하로 설치	59	47	79.7	9	15.3	3	5.1
	연석경사로	경사로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0이하, 옆면기울기 1/100이하로 설치	59	47	79.7	11	18.6	1	1.7
	턱낮추기 평균			-	-	79.7	-	16.9	-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점자블록	횡단보도 위치안내	횡단보도폭 만큼 점형블록 설치, 유도부분은 보도의 폭 4/5까지 선형블록 설치	59	42	71.2	6	10.2	11	18.6
	일시대기용 안전지대	횡단보도의 안전지대쪽 점형블록설치, 유도부분은 선형블록설치	14	7	50.0	3	21.4	4	28.6
	음향신호기 점형블록	수동식 음향신호기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16	0	0.0	0	0.0	16	100.0
점자블록 평균			-	-	40.4	-	10.5	-	49.1
지하도 및 육교	손잡이 설치방법	계단의 양측면에 손잡이 설치	2	2	100.0	0	0.0	0	0.0
	점형블록	계단 시작과 끝지점 전면 0.3m에 점형블록설치	2	2	100.0	0	0.0	0	0.0
	손잡이 높이	0.8~0.9m높이에 연속적으로 설치 (2중설치시 위쪽 0.85m내외, 아래쪽 0.65m 안팎)	2	2	100.0	0	0.0	0	0.0
	손잡이 굵기	손잡이 지름 3.2cm~3.8cm로 연속적으로 설치	2	2	100.0	0	0.0	0	0.0
	손잡이와 벽간간격	간격 5cm내외	2	2	100.0	0	0.0	0	0.0
	손잡이 점자표지판	손잡이 끝 점자표지판 부착	2	2	100.0	0	0.0	0	0.0
	지하도 및 육교 평균			-	-	100.0	-	0.0	-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노상주차장)	설치비율	20~50대 : 1면, (50대이상 2%~4%이내 조례지정	2	0	0.0	2	100.0	0	0.0
	주차공간	폭 3.3m이상, 길이 5m이상(평행주차 폭 2m, 길이 6m이상)	2	2	100.0	0	0.0	0	0.0
	바닥마감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평탄하게 마감	2	0	0.0	2	100.0	0	0.0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설치	2	0	0.0	2	100.0	0	0.0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노상주차장) 평균			-	-	25.0	-	75.0	-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음향신호기 안내방법	음성안내 및 균일한 신호음 작동	59	23	39.0	0	0.0	36	61.0
	음향신호기 설치위치	횡단보도로부터 1m이내, 높이 1.0m~1.2m위치설치	16	16	100.0	0	0.0	0	0.0
	잔여시간 표시기	간선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우선구역의 횡단보도에 설치	13	9	69.2	0	0.0	4	30.8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평균			-	-	69.4	-	0.0	-
자동차 진입제어용 말뚝 (볼라드)	설치형태	높이 80~100cm내외, 지름 10~20cm내외로 설치	17	15	88.2	2	11.8	0	0.0
	설치간격	1.5m 내외 간격으로 설치	17	17	100.0	0	0.0	0	0.0
	점형블록	0.3m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17	0	0.0	2	11.8	15	88.2
	자동차 진입제어용 말뚝(볼라드) 평균			-	-	62.7	-	7.8	-
경상남도 평균			-	-	58.7	-	20.3	-	21.0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 2021년 국토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버스정류보행환경의 지역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서울특별시가 87.7%로 가장 높고 경상남도가 58.7%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경상남도(58.7%)의 항목별 기준적합률을 살펴보면, 차량진출입부(3.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노상주차장)(25.0%) 항목의 기준적합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3-50] 보행환경의 지역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준 사례수	389	103	30	47	26	26	16	14	240	87	42	67	50	67	84	91	15
평균	87.7	81.4	86.2	82.1	75.7	78.0	72.0	72.8	75.6	63.6	72.0	65.0	59.8	63.4	69.8	58.7	86.2
보도	98.6	91.4	95.2	98.2	91.9	85.0	91.0	93.7	94.0	87.4	88.4	94.0	88.1	91.6	89.3	88.9	97.8
차량진출입부	91.0	68.4	88.9	72.2	100.0	75.0	35.7	100.0	66.1	49.1	85.7	46.9	22.7	62.1	61.1	3.4	-
턱낮추기	96.4	97.5	100.0	93.9	78.6	98.0	100.0	100.0	90.4	86.3	95.3	99.1	84.7	86.7	94.7	79.7	100.0
점자블록	78.6	65.1	87.2	78.9	61.4	54.9	30.0	42.9	57.1	34.2	46.9	25.0	23.5	37.0	56.2	40.4	66.7
지하도 및 육교	-	83.3	-	-	77.1	-	-	-	79.	275.0	-	75.0	-	58.3	-	100.0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노상주차장)	-	-	-	-	-	-	-	-	87.5	-	-	-	-	-	50.0	25.0	-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표시기								0.0					60.3	76.4	69.4	100.0	
자동차진입제어말뚝(볼라드)	75.8	84.3	94.0	77.8	71.1	100.0	86.7	100.0	63.1	49.3	49.2	54.8	64.6	47.9	61.1	62.7	66.7



[표3-51] 보행환경 지역 및 연도별 기준적합 설치율

구분	2016년(①)	19년+20년(②)	2021년(③)	비고	
				③-①	③-②
보행환경 평균	72.2	76.4	77.6	▲ 5.4	▲ 1.2
서울	80.0	88.4	87.7	▲ 7.7	▽ 0.7
부산	76.0	80.0	81.4	▲ 5.4	▲ 1.4
대구	73.0	81.8	86.2	▲ 13.2	▲ 4.4
인천	75.7	81.2	82.1	▲ 6.4	▲ 0.9
광주	67.4	70.2	75.7	▲ 8.3	▲ 5.5
대전	69.2	71.0	78.0	▲ 8.8	▲ 7.0
울산	65.3	68.3	72.0	▲ 6.7	▲ 3.7
세종	69.0	67.5	72.8	▲ 3.8	▲ 5.3
경기	74.6	75.6	75.6	▲ 1.0	-
강원	64.6	62.1	63.6	▽ 1.0	▲ 1.5
충북	77.1	71.3	72.0	▽ 5.1	▲ 0.7
충남	62.5	62.1	65.0	▲ 2.5	▲ 2.9
전북	55.5	59.8	59.8	▲ 4.3	-
전남	65.1	61.7	63.4	▽ 1.7	▲ 1.7
경북	57.8	69.9	69.8	▲ 12.0	▽ 0.1
경남	56.7	58.3	58.7	▲ 2.0	▲ 0.4
제주	64.7	91.7	86.2	▲ 21.5	▽ 5.5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 경상남도의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2016년 56.7%에서 2021년 57.8%로 2.0%p가 증가하였으나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여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의 개선을 통해 설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표3-52]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보행환경 조사대상 선정방법

구분	2016년(전국)	2019년 (8개 특별·광역시)	2020년(9개 도)	2021년(전국)
조사대상	◦조사대상 여객시설 주변 버스정류장까지의 보행환경 - 총 5,479개 구간	◦조사대상 여객시설 및 환승 도시철도 역사 중 수직이동 시설 주변 150m이내 버스 정류장 및 노상주차장까지의 보행환경 - 총 672개 구간	◦조사대상 여객시설 및 환승 도시철도 역사 중 수직이동 시설 주변 150m이내 버스 정류장 및 노상주차장까지의 보행환경 - 총 456개 구간	◦조사대상 여객시설 및 환승 도시철도 역사 중 수직이동 시설 주변 150m이내 버스 정류장 및 노상주차장까지의 보행환경 - 총 1,394개 구간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 경상남도 시군별 보행환경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표3-53] 경상남도 시군별 보행환경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구분	보도	차량진출 입부	턱낮추기	점자블록	음향신호 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블라드	장애인전 용주차구 역(노상)	지하도 및 육교	평균
창원시	92.4	0.0	97.4	77.0	53.5	61.1	25.0	100.0	63.3
진주시	97.2	0.0	100.0	62.5	75.0	-	-	-	66.9
통영시	66.7	-	33.3	16.7	66.7	66.7	-	-	50.0
사천시	87.5	0.0	60.0	20.0	48.3	66.7	-	-	47.1
김해시	95.1	-	83.3	66.7	66.7	33.3	-	-	69.0
밀양시	81.3	0.0	90.0	95.0	55.0	66.7	-	-	64.7
거제시	91.7	0.0	50.0	50.0	0.0	-	-	-	38.3
양산시	75.6	16.7	33.3	100.0	54.2	66.7	-	-	57.8
의령군	88.9	-	-	-	-	-	-	-	88.9
함안군	100.0	-	100.0	0.0	0.0	-	-	-	50.0
창녕군	96.3	0.0	100.0	50.0	0.0	-	-	-	49.3
하동군	100.0	-	100.0	100.0	0.0	-	25.0	-	65.0
거창군	88.9	-	100.0	0.0	66.7	-	-	-	63.9

라.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1) 경상남도 도내 저상버스 운영현황

[표3-54] 도내 지역별 저상버스 운영현황

구분		전체대수 (저상버스포함)					저상버스				
		계	디젤	CNG	전기	수소	계	디젤	CNG	전기	수소
경남 소계	시내버스	1,739	549	935	226	29	439	28	163	219	29
	농어촌버스	225	219	0	6	0	4	0	0	4	0
	마을버스	117	107	10	0	0	6	6	0	0	0
창원시	시내버스	739	40	530	141	28	254	0	92	134	28
	농어촌버스	-	-	-	-	-	-	-	-	-	-
	마을버스	29	29	0	0	0	0	0	0	0	0
진주시	시내버스	272	107	153	12	0	19	0	7	12	0
	농어촌버스	-	-	-	-	-	-	-	-	-	-
	마을버스	-	-	-	-	-	-	-	-	-	-
통영시	시내버스	103	103	0	0	0	13	13	0	0	0
	농어촌버스	-	-	-	-	-	-	-	-	-	-
	마을버스	17	17	0	0	0	6	6	0	0	0
사천시	시내버스	32	32	0	0	0	3	3	0	0	0
	농어촌버스	-	-	-	-	-	-	-	-	-	-
	마을버스	-	-	-	-	-	-	-	-	-	-
김해시	시내버스	221	51	140	30	0	70	0	40	30	0
	농어촌버스	-	-	-	-	-	-	-	-	-	-
	마을버스	-	-	-	-	-	-	-	-	-	-
밀양시	시내버스	37	33	0	4	0	13	9	0	4	0
	농어촌버스	-	-	-	-	-	-	-	-	-	-
	마을버스	6	6	0	0	0	0	0	0	0	0
거제시	시내버스	119	119	0	0	0	3	3	0	0	0
	농어촌버스	-	-	-	-	-	-	-	-	-	-
	마을버스	3	3	0	0	0	0	0	0	0	0
양산시	시내버스	216	64	112	39	1	64	0	24	39	1
	농어촌버스	-	-	-	-	-	-	-	-	-	-
	마을버스	43	33	10	0	0	0	0	0	0	0
의령군	시내버스	-	-	-	-	-	-	-	-	-	-
	농어촌버스	11	11	0	0	0	0	0	0	0	0
	마을버스	1	1	0	0	0	0	0	0	0	0
함안군	시내버스	-	-	-	-	-	-	-	-	-	-
	농어촌버스	37	37	0	0	0	0	0	0	0	0
	마을버스	3	3	0	0	0	0	0	0	0	0
창녕군	시내버스	-	-	-	-	-	-	-	-	-	-
	농어촌버스	23	21	0	2	0	2	0	0	2	0
	마을버스	-	-	-	-	-	-	-	-	-	-
고성군	시내버스	-	-	-	-	-	-	-	-	-	-
	농어촌버스	21	19	0	2	0	0	0	0	0	0
	마을버스	-	-	-	-	-	-	-	-	-	-
남해군	시내버스	-	-	-	-	-	-	-	-	-	-
	농어촌버스	20	20	0	0	0	0	0	0	0	0
	마을버스	10	10	0	0	0	0	0	0	0	0
하동군	시내버스	-	-	-	-	-	-	-	-	-	-
	농어촌버스	11	11	0	0	0	0	0	0	0	0
	마을버스	-	-	-	-	-	-	-	-	-	-
산청군	시내버스	-	-	-	-	-	-	-	-	-	-
	농어촌버스	11	11	0	0	0	0	0	0	0	0
	마을버스	2	2	0	0	0	0	0	0	0	0
함양군	시내버스	-	-	-	-	-	-	-	-	-	-
	농어촌버스	22	20	0	2	0	2	0	0	2	0
	마을버스	3	3	0	0	0	0	0	0	0	0
거창군	시내버스	-	-	-	-	-	-	-	-	-	-
	농어촌버스	39	39	0	0	0	0	0	0	0	0
	마을버스	-	-	-	-	-	-	-	-	-	-
합천군	시내버스	-	-	-	-	-	-	-	-	-	-
	농어촌버스	30	30	0	0	0	0	0	0	0	0
	마을버스	-	-	-	-	-	-	-	-	-	-

[표3-55] 전국 지역별 저상버스 도입현황

구분	시내버스			기타버스						합계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총 대수	저상 버스	도입률	총 대수	저상 버스	도입률	총 대수	저상 버스	도입률	총 대수	저상 버스	도입률
전국합계	35,335	10,828	30.6	2,067	28	1.4	5,592	217	3.9	42,994	11,073	25.8
서울특별시	7,395	4,412	59.7	-	-	-	1,576	50	3.2	8,971	4,462	49.7
부산광역시	2,517	728	28.9	-	-	-	571	0	0.0	3,088	728	23.6
대구광역시	1,623	608	37.5	-	-	-	-	-	-	1,623	608	37.5
인천광역시	2,204	580	26.3	-	-	-	18	0	0.0	2,222	580	26.1
광주광역시	999	297	29.7	-	-	-	72	0	0.0	1,071	297	27.7
대전광역시	1,015	339	33.4	-	-	-	18	0	0.0	1,033	339	32.8
울산광역시	848	103	12.1	-	-	-	46	0	0.0	894	103	11.5
세종특별자치시	268	100	37.3	-	-	-	31	0	0.0	299	100	33.4
경기도	11,007	2,112	19.2	147	6	4.1	2,817	161	5.7	13,971	2,279	16.3
강원도	511	203	39.7	207	6	2.9	130	0	0.0	848	209	24.6
충청북도	637	137	21.5	208	2	1.0	8	0	0.0	853	139	16.3
충청남도	902	89	9.9	262	0	0.0	33	0	0.0	1,197	89	7.4
전라북도	818	187	22.9	152	10	6.6	37	0	0.0	1,007	197	19.6
전라남도	737	124	16.8	583	0	0.0	17	0	0.0	1,337	124	9.3
경상북도	1,285	222	17.3	283	0	0.0	57	0	0.0	1,625	222	13.7
경상남도	1,739	439	25.2	225	4	1.8	117	6	5.1	2,081	449	21.6
제주특별자치도	830	148	17.8	-	-	-	44	0	0.0	874	148	16.9

※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 국토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변경(안)(2017~2021)에서는 시내버스의 차량 및 지자체 재정여건 등 저상버스 보급 관련 요인들을 고려하여 2021년까지 수평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버스의 42.0%까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21년 저상버스 보급률은 추세를 고려한 보급 예측치에 지자체의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의지를 고려하여 지역별 목표치를 서울시 65%, 광역시 45%, 9개도 32%로 설정함

- 경상남도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시내버스 25.2%, 농어촌버스 1.8%, 마을버스 5.1%로 합계 21.6%로 나타났으며 제3차 계획의 목표치에는 미달하나 9개 도지역 중에서는 강원도 다음으로 높은 도입률을 보이고 있다.

2)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현황

[표3-56]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지역별 보급률 및 대체수단 도입 세부현황

구분	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				
	법정대수산정 장애인수 (보행상 중증장애인)	법정 기준대수	운영대수	보급률	소계	임차 택시	바우처 택시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차량	기타
경남소계	50,211	344	369	107.3	41	-	30	5	6
창원시	13,319	89	107	120.2	-	-	-	-	-
진주시	5,073	34	34	100.0	-	-	-	-	-
통영시	2,054	14	20	142.9	-	-	-	-	-
사천시	2,008	14	10	71.4	4	-	-	1	3
김해시	6,863	46	50	108.7	30	-	30	-	-
밀양시	2,206	15	20	133.3	1	-	-	1	-
거제시	3,159	22	29	131.8	2	-	-	1	1
양산시	4,448	30	30	100.0	-	-	-	-	-
의령군	764	6	4	66.7	2	-	-	-	2
함안군	1,308	9	8	88.9	-	-	-	-	-
창녕군	1,266	9	6	66.7	-	-	-	-	-
고성군	1,201	9	7	77.8	-	-	-	-	-
남해군	1,054	8	7	87.5	-	-	-	-	-
하동군	1,217	9	7	77.8	-	-	-	-	-
산청군	978	7	7	100.0	-	-	-	-	-
함양군	889	6	6	100.0	-	-	-	-	-
거창군	1,209	9	9	100.0	-	-	-	-	-
합천군	1,195	8	8	100.0	2	-	-	2	-

[표3-57] 전국 특별교통수단 지역별 보급률 및 대체수단 도입 세부현황

구분	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				
	법정대수산정 장애인수 (보행상 중증장애인)	법정 기준대수	운영대수	보급률	소계	임차 택시	바우처 택시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차량	기타
합계	698,713	4,738	4,074	86.0	24,557	471	23,718	304	64
서울	108,655	725	622	85.8	13,041	76	12,807	158	-
부산	47,824	319	206	64.6	4,700	-	4,700	-	-
대구	32,253	216	163	75.5	280	-	280	-	-
인천	38,002	254	169	66.5	300	-	300	-	-
광주	19,187	128	116	90.6	92	92	-	-	-
대전	20,063	134	96	71.6	240	90	150	-	-
울산	13,397	90	76	84.4	72	21	37	11	3
세종	3,216	22	21	95.5	11	-	-	-	11
경기	151,686	1,027	1,157	112.7	3,537	63	3,421	39	14
강원	27,727	195	149	76.4	1,784	22	1,736	15	11
충북	26,173	180	116	64.4	96	23	55	9	9
충남	34,453	236	163	69.1	33	-	20	13	-
전북	34,245	236	192	81.4	60	30	-	26	4
전남	35,668	247	179	72.5	115	11	89	15	-
경북	45,871	317	214	67.5	112	-	93	13	6
경남	50,211	344	369	107.3	41	-	30	5	6
제주	10,082	68	66	97.1	43	43	-	-	-

- 국토부의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변경(안)(2017-2021)에서는 2021년 목표연도까지 전 지자체의 법정기준 보급대수 84% 달성을 목표로 하였음
- 전국 평균 보급률은 86.0%로 목표치에 도달하였으며 경상남도(107.3%)와 경기도(112.7%)만 법정대수 대비 100%이상을 상회하였음

[표3-58] 경상남도 지역별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구분	관내요금		관외요금	심야요금	운영시간	통행료 부담주체	주차료 부담주체	도외지역 운행범위	관외지역 운행 후 회차여부 (왕복운행)	관외지역 승차가능 여부
	기본요금	추가요금								
창원시	기초수급자 1,000원 (정액제) 1,500원 (시내버스요금)	-	시외버스 요금	-	24시간	지자체 (경남도민에 한함)	지자체	부산	불가	가능
진주시	2km까지 1,100원	286m당 100원 68초당 100원 (최대 2,000원)	시외버스 1.5배 (21.10.01 시행) (기존 시외버스 2배)	-	24시간	지자체	지자체	부산	불가	가능 (출발지 또는 목적지 진주인 경우)
통영시	2km까지 1,600원	143m당 50원 (최대 2,600원)	시외버스 요금	-	24시간	지자체	-	부산	부산 한정 병원 목적시 1시간 대기	가능 (목적지가 통영인 경우)
사천시	시내버스 요금의 2배	-	시외버스 요금 1.5배	-	24시간	사천시	-	부산	불가	불가
김해시	2km까지 1,200원	500m당 100원 (최대 2,400원)	경남지역 : 시외버스편도 요금 부산지역 기본 요금 2,400원 추가요금 500m당 200원 ·최대요금 10,000원	-	24시간	지자체 (경남도민에 한함)	-	부산	불가	가능 (목적지가 김해인 경우)
밀양시	시내버스요금 (1,500원)	-	시외버스 요금	-	24시간	도민·지자체 그외·이용자	이용자	부산, 대구, 울산	탑승가능 (병원 목적시 1시간내 대기) 이용 대상 장애인 중 휠체어를 탄 사람은 치료 및 재활 목적으로 종합병원 이용시 부산 대구 울산 왕복이용	불가
거제시	1,400원 (2km까지)	143m당 50원 34초당 50원 (최대 2,600원)	시외버스 요금과 동일	-	24시간	지자체	-	경남, 부산	불가	불가
양산시	2,000원	-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넘을수 없음 부산 및 울산광역시 는 440m당 100원/ 107초당 100원 (최대10,000원)	-	24시간	지자체	-	부산,울산	불가	불가

구분	관내요금		관외요금	심야요금	운행시간	통행료 부담주체	주차료 부담주체	도외지역 운행범위	관외지역 운행 후 회차여부 (왕복운행)	관외지역 승차가능 여부
	기본요금	추가요금								
의령군	2,500원	-	시외버스요금 1.5배	-	평일 07~22시, 주말공휴일 09~18시	지자체	-		불가	불가
함안군	2,200원	-	시외버스요금 1.5배	-	24시간, 주말공휴일 09~17시	지자체	이용자	부산(종합병원)	불가	가능(목적지가 함안인 경우)
창녕군	2,100원	-	시외버스요금 1.5배	-	24시간	지자체	이용자	대구	불가	불가
고성군	1,200원	-	시외버스요금 동일	-	24시간	지자체	-	부산	불가	불가
남해군	1,000원	5km 초과시 1km당 50원 (최대 2,000원)	시외버스요금 1.5배	-	평일 07~22시, 주말 08~19시	지자체	-	부산(병원)	부산만 병원 목적시 3시간 이내 대기 가능	불가
하동군	2,000원	-	시외버스요금 1.5배	-	평일 08~22시, 주말 09~18시	지자체	이용자	광양시, 구례군	불가	불가
산청군	2,500원	-	시외버스요금 1.5배	-	평일 06~23시, 토요일, 공휴일 06~22시, 일요일 09~18시	지자체	이용자		불가	불가
함양군	2,000원	-	시외버스요금 1.5배	-	평일 06~24시, 주말 08~22시	지자체	이용자	남원시, 장수군	탑승가능 (병원목적시 1시간내 대기)	불가
거창군	2,000원	-	시외버스요금 1.5배	-	평일, 토요일 07~23시, 일요일 07~22시	지자체	지자체	대구	불가	불가
합천군	2,000원	-	시외버스요금 1.5배	-	평일 07~22시 7대, 주말 07~18시 2대	지자체	지자체	대구, 부산	원칙적으로 탑승불가 (단, 대기시간이 1시간 이내 일 경우 추가요금 1000원을 지급한 이후 탑승객과 함께 회차가능.)	불가

■ 도내 시·군부의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24시간 운영을 하는 반면 군부의 경우 창녕군과 고성군을 제외한 8개 군부에서는 평일 07시~22시, 주말 및 공휴일 07시~18시 또는 09시~18시 까지 운행하여 심야시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창원시를 제외한 도내 지역에서는 관외 승차가능이 불가하며 목적지가 해당 지자체인 경우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함안군 4개 지역에서만 관외 승차가 가능

제2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성과 분석

1.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 목표 달성률 전체 평균은 제3차 계획 국토부 기준 85.7%이고 경상남도 제3차 계획 기준 96.4%로 나타나 국토부 기준에는 못 미치나 경상남도의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지원 계획의 목표에는 근접한 것으로 나타남

[표3-59] 경상남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대상시설		제3차계획 '21년 목표		실적('21년)	달성률	
		국토부	경상남도		국토부	경상남도
교통수단	일반버스	79.0%	61.5%	66.0%	83.5%	107.3%
	저상버스	90.0%	90.0%	88.1%	97.9%	97.9%
	도시철도	90.0%	90.0%	93.1%	103.4%	103.4%
	철도	90.0%	-	-	-	-
	항공기	90.0%	-	-	-	-
	여객선	50.0%	50.0%	27.3%	54.6%	54.6%
	교통수단 평균	80.2%	72.9%	68.6%	85.6%	94.2%
여객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73.0%	64.2%	64.9%	88.9%	101.1%
	도시철도역사	90.0%	90.0%	89.4%	99.3%	99.3%
	철도역사	90.0%	90.0%	82.3%	91.4%	91.4%
	공항터미널	90.0%	90.0%	88.5%	98.3%	98.3%
	여객선터미널	79.0%	54.0%	68.9%	87.2%	127.6%
	버스정류장	57.0%	51.0%	27.8%	48.8%	54.5%
	여객시설 평균	79.8%	73.2%	70.3%	88.1%	96.0%
도로(보행환경)		81.0%	52.7%	58.7%	72.5%	111.4%
전체평균		80.1%	71.2%	68.6%	85.7%	96.4%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연구(국토부, 2016.12), 제3차 경상남도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경상남도, 2018.4)

[표3-60] 도지역 및 전국 대비 경상남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단위 :%)

대상시설	경남	경남 제외 도지역									
		평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교통수단	일반/저상버스	77.6	83.2	91.8	81.9	80.0	78.6	80.7	83.9	78.3	90.1
	도시철도	93.1	96.0	전국 평균							
	여객선	27.3	37.8	전국 평균							
	교통수단 평균	68.6	72.3	-	-	-	-	-	-	-	-
여객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64.9	62.1	69.9	63.6	67.0	67.2	59.2	54.3	55.8	59.7
	도시철도역사	89.4	89.9	전국 평균							
	철도역사	82.3	81.6	86.9	77.6	79.0	86.1	86.1	75.9	79.4	-
	공항터미널	88.5	86.8	전국 평균							
	여객선터미널	68.9	82.2	전국 평균							
	버스정류장	27.8	36.3	37.0	36.6	31.4	34.2	30.5	29.4	41.8	49.1
	여객시설 평균	70.3	73.1	-	-	-	-	-	-	-	-
도로(보행환경)	58.7	69.4	75.6	63.6	72.0	65.0	59.8	63.4	69.8	86.2	
전체평균	68.6	72.9	-	-	-	-	-	-	-	-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연구(국토부, 2016.12), 제3차 경상남도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경상남도, 2018.4)

- 경상남도의 버스차량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비교를 살펴보면 2016년 대비 2021년까지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마을버스의 조사대상이 경기, 경남 2곳을 표본으로 조사하여 마을버스의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현상으로 보임
- 경상남도의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2016년 32.3%에서 2021년 27.8%로 4.5%p가 감소하여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조사대상 선정과정에서 표본에 의한 방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경상남도의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2016년 56.7%에서 2021년 57.8%로 2.0%p가 증가하였으나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여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의 개선을 통해 설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항목별 기준적합률을 살펴보면, 차량 진출입부(3.4%),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노상주차장)(25.0%) 항목의 기준적합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2.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21.6%로 목표 미달이며 달성률은 67.5%
-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107.3%로 국토부 목표 대비 127.7% 달성

[표3-61] 경상남도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대상시설	제3차계획 '21년 목표		실적('21년)	달성률	
	국토부	경상남도		국토부	경상남도
저상버스 보급률	32.0%	32.0%	21.6%	67.5%	67.5%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84.0%	100.0%	107.3%	127.7%	107.3%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연구(국토부, 2016.12), 제3차 경상남도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경상남도, 2018.4)

[표3-62] 도지역 대비 경상남도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단위 :%)

대상시설	경남	경남 제외 도지역								
		평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저상버스 보급률	21.6	15.5	16.3	24.6	16.3	7.4	19.6	9.3	13.7	16.9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107.3	80.1	112.7	76.4	64.4	69.1	81.4	72.5	67.5	97.1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 경상남도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낮은 달성률을 보였으나 도지역에서는 강원도 다음으로 보급률이 높은 편이며 도지역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전국 평균 도입률인 25.8%보다 낮으나 광역자치체의 보급률이 도지역 보다 높아 발생하는 현상임
- 특별교통수단은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100%를 상회하여 도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인 86.0%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상회함

3. 이동편의시설 이용자 만족도

가. 전국 이동편의시설 이용자 만족도

[표3-63] 전국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이용자 만족도 및 기준적합 설치율

구분		이용자 만족도	기준적합 설치율	비고
교통수단	버스	고속/시외버스	72.7	65.4
		시내버스	73.5	94.3
	도시철도	79.0	96.0	
	철도차량	80.2	98.9	
	항공기	76.7	73.7	
	여객선	71.3	37.8	
	교통수단 평균	74.6	79.3	
여객시설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71.4	64.0	
	버스정류장	70.9	45.4	
	도시철도역사	77.6	89.9	
	철도역사	78.9	82.5	
	공항여객터미널	76.7	86.8	
	여객선터미널	68.7	82.2	
	여객시설 평균	72.6	75.1	
보행환경	68.2	77.6		
전체평균	70.6	77.3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과 비교하면, ‘보행환경’의 경우 기준적합 설치율(77.6%) 경우 ‘보통’ 수준의 성과를 보였고, 이용자 만족도(68.2점) 역시 ‘보통~약간 좋음’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교통수단’의 기준적합 설치율 대비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항목으로는 ‘고속/시외버스’, ‘항공기’, ‘여객선’으로 나타났고, ‘여객시설’ 중에서는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버스정류장’이 해당됨
- 기준적합 설치율과 이용자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보임

[표3-64] 전국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종합 만족도

구분	사례수	종합	보행환경	시내버스	도시철도	철도	고속/시외버스	항공기	여객선	특별교통수단	특별교통대체수단	
전체	3,000	70.6	68.2	70.6	77.2	79.2	72.2	74.2	69.1	63.2	68.5	
남성	1,298	70.8	68.4	70.5	77.2	78.9	72.8	72.4	68.0	66.7	69.0	
여성	1,702	70.5	68.0	70.7	77.2	79.4	71.8	75.6	70.1	58.9	67.9	
교통약자	2,100	68.1	64.8	68.4	75.3	77.4	69.8	73.4	63.8	63.2	68.5	
비교통약자	900	76.7	76.0	75.3	81.2	81.0	76.6	75.1	76.2	0.0	0.0	
교통약자	남성	841	67.7	64.3	67.6	75.1	76.7	69.6	70.9	63.2	66.7	69.0
	여성	1,259	68.3	65.2	68.9	75.4	78.1	70.0	74.7	64.3	58.9	67.9
비교통약자	남성	457	76.7	76.0	75.2	80.6	80.8	77.1	73.4	73.2	0.0	0.0
	여성	443	76.6	76.1	75.3	81.7	81.1	76.1	76.9	79.8	0.0	0.0
교통약자	장애인	840	67.3	63.4	68.1	75.1	77.7	72.0	69.8	74.5	63.0	68.6
	지체	455	67.0	63.3	68.2	76.4	78.1	69.7	62.1	53.1	63.6	68.1
	시각	208	66.3	62.6	66.6	70.4	79.7	74.6	71.5	76.6	59.9	70.3
	청각	177	69.0	64.7	69.1	74.8	75.5	74.7	79.5	83.0	61.7	67.0
	임산부	420	68.4	65.3	68.9	74.0	78.5	70.1	77.7	59.7	0.0	0.0
	고령자	840	68.7	66.0	68.4	76.0	77.1	68.4	72.0	62.1	67.5	64.4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 종합 만족도는 전체 70.6점으로 조사되었으며 교통약자 68.1점, 비교통약자 76.7점으로 비교통약자에 비해 교통약자의 만족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교통약자는 ‘철도’의 만족도가 77.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도시철도’(75.3점), ‘항공기’(73.4점), ‘고속/시외버스’(69.8점), ‘시내버스’(68.4점), ‘보행환경’(64.8점), ‘여객선’(63.7점)의 순으로 나타남. 비교통약자는 ‘도시철도’의 만족도 점수가 81.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철도’(81.0점), ‘고속/시외버스’(76.6점), ‘여객선’(76.2점), ‘보행환경’(76.0점), ‘시내버스’(75.3점), ‘항공기’(75.1점)의 순으로 나타남

나. 경상남도 이동편의시설 이용자 만족도

[표3-65] 경상남도 기준적합 설치율 대비 도지역 이용자 만족도

(단위:점,%)

구분		이용자 만족도 (100점 만점)	경상남도 기준적합 설치율	비고
교통 수단	시내/시외버스	67.3	77.6	
	도시철도	70.2	93.1	
	철도차량	77.2	-	
	항공기	70.7	-	
	여객선	66.9	27.3	
	교통수단 평균	70.5	68.6	
여객 시설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62.5	64.9	
	버스정류장	64.6	89.4	
	도시철도역사	71.0	82.3	
	철도역사	65.0	88.5	
	공항여객터미널	61.5	68.9	
	여객선터미널	64.9	27.8	
	여객시설 평균	64.9	70.3	
보행 환경		64.7	58.7	
전체 평균		67.3	68.6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이용자 만족도 도지역 수치 적용

- 전국 종합만족도(70.6점) 보다는 다소 낮은 67.3점으로 나타났으며 철도차량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기준적합 설치율의 고저에 따른 만족도의 변화는 적어 상관관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임
- 전국 조사와 같이 기준적합 설치율 대비 여객선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

[표3-66] 도지역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종합 만족도

구 분	사례수	종합	보행 환경	시내 버스	도시 철도	철도	고속/ 시외버스	항공기	여객선	특별교통 수단	특별 교통 대체수단	
전체	1,500	67.3	64.7	67.2	70.2	77.2	68.6	70.7	66.9	68.2	67.9	
남성	657	67.5	64.6	66.6	68.9	78.1	68.8	69.0	64.9	70.5	69.1	
여성	843	67.3	64.7	67.6	71.1	76.1	68.4	71.8	68.7	65.0	66.5	
교통약자	1,050	64.8	61.5	64.9	68.5	77.3	65.4	73.4	62.2	68.2	67.9	
비교통약자	450	73.2	72.0	72.0	73.2	77.1	73.9	68.6	72.6	0.0	0.0	
교통 약자	남성	426	64.0	60.4	63.3	64.7	77.1	64.4	73.9	62.0	70.5	69.1
	여성	624	65.4	62.3	66.0	70.7	77.5	66.1	73.1	62.5	65.0	66.5
비교통 약자	남성	231	73.8	72.3	72.2	74.3	79.1	74.5	66.7	67.9	0.0	0.0
	여성	219	72.7	71.8	71.8	72.1	74.0	73.4	70.3	78.1	0.0	0.0
교통 약자	장애인	420	65.0	60.8	64.9	74.8	78.8	68.8	70.1	64.1	68.2	67.9
	지체	232	64.6	60.2	64.9	75.8	78.3	66.8	65.7	0.0	67.5	67.2
	시각	101	64.5	61.1	61.6	69.9	80.3	74.1	67.7	57.7	76.7	69.5
	청각	87	66.7	62.0	68.2	75.9	78.1	70.7	76.0	70.5	80.8	67.1
	임산부	210	65.3	62.5	66.5	72.3	79.9	65.8	75.9	65.2	0.0	0.0
	고령자	420	64.4	61.7	64.2	57.0	75.7	63.0	73.2	61.1	0.0	83.3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 종합만족도는 전체 67.3점으로 조사되었으며 교통약자 64.8점, 비교통약자 73.2점으로 비교통약자에 비해 교통약자의 만족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교통약자는 ‘철도’의 만족도가 77.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항공기’(73.4점), ‘도시철도’(68.5점) ‘특별교통수단’(68.2점), ‘특별교통대체수단’(67.9점), ‘고속/시외버스’(65.4점), ‘시내버스’(64.9점)의 순으로 나타남. 비교통약자는 ‘철도’의 만족도 점수가 77.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고속/시외버스’(73.9점), ‘도시철도’(73.2점), ‘보행환경’(72.0점), ‘시내버스’(72.0점), ‘항공기’(68.6점), ‘여객선’(62.2점)의 순으로 나타남

다. 교통약자의 이동실태

- 국토부에서 실시한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중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교통약자 및 비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전국(17개 시·도)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음
- 교통약자의 이동실태를 살펴보면 교통약자의 외출 빈도는 비교통약자와 비교하여 더 적은 편으로 조사되었고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 모두 지역 내 이동 시 ‘직업 또는 업무상 외출’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교통약자 36.9%, 비교통약자 63.2%)
- 다만 교통약자의 경우 지역 내 이동 시 ‘병원’, ‘복지관/경로당’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약 37.8%로 치료 및 요양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3-67] 교통약자의 이동실태

구분		교통약자	비교통약자
지역 내 이동	외출 빈도 (1주 기준)	주 3~4회(42.6%) 주 5~6회(33.8%)	주 5~6회(50.7%) 매일 외출함(25.1%)
	외출목적	직업 또는 업무상 외출(36.9%) 병원(22.8%) 복지관/경로당(15.0%)	직업 또는 업무상 외출(63.2%) 학교/학원(16.0%) 상점/쇼핑(6.9%)
	주 이용 교통수단	버스(51.6%) ‘걸어서/휠체어’, ‘지하철’(14.2%) 자가용(7.0%)	버스(58.7%) 지하철(15.8%) 걸어서(11.6%)
지역 간 이동	외출 목적	친구/친척(40.3%) 여행(28.8%) 치료/요양(18.2%)	친구/친척(38.5%) 여행(34.1%) 직업 또는 업무상 출장(17.0%)
	주 이용 교통수단	승용차(66.2%) 고속/시외버스(15.5%) 기차(8.7%)	승용차(64.7%) 고속/시외버스(18.9%) 기차(10.7%)

제3절 경상남도 교통복지지표

1. 경상남도 교통복지지표 평가

가. 교통복지지표 평가 개요

- 국토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2022.06)에서 교통복지지표 평가는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상 보행환경, 보행안전도, 저상버스 보급률,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고령자 및 어린이 안전도, 교통복지 행정지표 등 총 9개 지표로 교통복지지표를 평가함
-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여객시설주변 접근로상 보행환경의 3개 지표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적합 설치율만을 활용하여 교통복지지표를 산정하는 방법(적용안)으로 지표를 산정하는 방법과, 「2018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적용하여 정성적 지표를 일정비율로 적용하여 지표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산정함
- 교통복지지표에 사용되는 지표별 기본 통계자료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각 자료는 가장 최신 자료를 이용하였음
 - 여객시설, 교통수단, 보행환경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은 본 연구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를 사용하였음(2021년 기준)
 - 보행자 안전도와 고령자 및 어린이 안전도는 도로교통공단의 지역별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사용하였음(2021년 기준)
 - 저상버스 보급률은 각 지자체 내부자료를 이용함(2021년 기준)
 -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률은 각 지자체 내부자료를 이용함(2021년 기준)
 - 교통복지행정지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보고서(2021년 기준)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홈페이지의 자료(2021년 기준)를 이용함

나. 경상남도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교통복지지표

-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은 버스정류장과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음

[표3-68] 경상남도 및 9개 도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평가지표(기준적합 설치율 적용)

구분		경남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버스 정류장	설치율	27.8	37.0	36.6	31.4	34.2	30.5	29.4	41.8	49.1
	지역별 가중치	0.11	0.09	0.11	0.11	0.11	0.12	0.12	0.12	0.10
	지표값	3.0	3.4	4.2	3.4	3.9	3.6	3.7	4.9	5.1
	순위	9	7	3	8	4	6	5	2	1
여객 자동차 터미널	설치율	64.9	69.9	63.6	67.0	67.2	59.2	54.3	55.8	59.7
	지역별 가중치	0.11	0.09	0.11	0.11	0.11	0.12	0.12	0.12	0.10
	지표값	6.9	6.5	7.3	7.2	7.6	7.0	6.8	6.6	6.2
	순위	5	8	2	3	1	4	6	7	9
여객 시설 평균	설치율	46.3	53.4	50.1	49.2	50.7	44.9	41.9	48.8	54.4
	지역별 가중치	0.11	0.09	0.11	0.11	0.11	0.12	0.12	0.12	0.10
	지표값	5.0	4.9	5.7	5.3	5.7	5.3	5.2	5.8	5.7
	순위	8	9	3	5	2	6	7	1	4

[표3-69] 경상남도 및 9개 도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평가지표(정성적 지표를 일정비율로 적용)

구분		경남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버스 정류장	설치율(0.7)+만족도(0.3)	37.7	45.7	44.2	31.4	38.3	30.5	48.6	54.3	54.9
	지역별 가중치	0.11	0.09	0.11	0.11	0.11	0.12	0.12	0.12	0.10
	지표값	4.0	4.2	5.0	3.4	4.3	3.6	6.0	6.4	5.7
	순위	7	6	4	9	5	8	2	1	3
여객 자동차 터미널	설치율(0.7)+만족도(0.3)	67.3	68.3	60.8	67.2	61.7	64.6	60.8	63.0	63.8
	지역별 가중치	0.11	0.09	0.11	0.11	0.11	0.12	0.12	0.12	0.10
	지표값	7.2	6.3	6.9	7.3	7.0	7.6	7.6	7.5	6.7
	순위	5	9	7	4	6	1	2	3	8
여객 시설 평균	설치율(0.7)+만족도(0.3)	52.5	57.0	52.5	49.3	50.0	47.5	54.7	58.6	59.3
	지역별 가중치	0.11	0.09	0.11	0.11	0.11	0.12	0.12	0.12	0.10
	지표값	5.6	5.3	6.0	5.3	5.6	5.6	6.8	6.9	6.2
	순위	6	9	4	8	5	7	2	1	3

- 정성적 지표를 일정비율로 적용하는 방안은 「2018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기준적합 설치율(가중치 0.7)과 만족도조사 결과(가중치 0.3)를 일정비율로 적용하여 평가지표를 산정한 방법이며 설치율 평가 지표상 경상남도는 최하위 경기도 바로 위에 위치하나 정성적 지표를 사용할 경우 9개 도 중 6위에 랭크 됨

다. 경상남도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교통복지지표

-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은 버스차량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음

[표3-70] 경상남도 및 9개 도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평가지표(기준적합 설치율 적용)

구분		경남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버스	설치율	77.6	91.8	81.9	80.0	78.6	80.7	83.9	78.3	90.1
	지역별 가중치	0.12	0.14	0.11	0.10	0.11	0.09	0.16	0.10	0.07
	지표값	9.6	12.9	9.0	7.7	8.4	7.4	13.7	7.8	6.2
	순위	3	2	4	7	5	8	1	6	9

[표3-71] 경상남도 및 9개 도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평가지표(정성적 지표를 일정비율로 적용)

구분		경남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버스	설치율(0.7)+만족도(0.3)	77.7	84.7	74.5	77.5	69.5	79.9	80.9	79.4	85.1
	지역별 가중치	0.12	0.14	0.11	0.10	0.11	0.09	0.16	0.10	0.07
	지표값	9.6	11.9	8.1	7.5	7.5	7.3	13.2	7.9	5.9
	순위	3	2	4	6	7	8	1	5	9

-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교통복지지표에서 경상남도는 기준적합 설치율 적용시와 정성적 지표를 일정비율로 적용하는 방식 모두에서 9개 도 중 3위를 차지함

라. 경상남도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의 보행환경 교통복지지표

- 조사대상 여객시설 주변 출입구 및 수직이동시설(엘리베이터)에서 버스정류장 또는 노상주차장간의 보행환경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음

[표3-72] 경상남도 및 9개 도 여객시설 주변 보행환경 평가지표(기준적합 설치율 적용)

구분	설치율	순위
경남	58.7	9
경기	75.6	2
강원	63.6	6
충북	72.0	3
충남	65.0	5
전북	59.8	8
전남	63.4	7
경북	69.8	4
제주	86.2	1

[표3-73] 경상남도 및 9개 도 여객시설 주변 보행환경 평가지표(정성적 지표를 일정비율로 적용)

구분	설치율(0.7)+만족도(0.3)	순위
경남	62.3	7
경기	71.7	2
강원	59.5	9
충북	69.8	4
충남	60.8	8
전북	64.4	6
전남	64.7	5
경북	71.3	3
제주	79.3	1

- 경상남도는 보행환경 부분의 지표가 저조하게 나타나며 설치율 기준 9개 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정성적 지표를 적용하여도 7위에 머무름

마. 경상남도 보행자 안전도 교통복지지표

- 보행자 안전도의 경우 지역별 인구(만명) 대비 보행사고 건수에 대한 평가 결과임

[표3-74] 경상남도 및 9개 도 보행자 안전도

구분	보행사고건수(건)	인구(만명)	지표값	순위
경남	7,124	331	21.5	2
경기	26,719	1357	19.7	1
강원	3,578	154	23.3	6
충북	3,451	160	21.6	3
충남	4,643	212	21.9	4
전북	4,045	179	22.6	5
전남	4,591	183	25.0	8
경북	6,181	263	23.5	7
제주	2,326	68	34.4	9

- 보행자 안전도 평가지표는 인구(만명) 대비 보행사고 건수에 대한 평가로서 지표값이 낮을수록 안전도가 높으며 경상남도는 경기도 다음의 2위로 높은 보행자 안전도를 나타냄

바. 경상남도 저상버스 보급률 교통복지지표

- 저상버스의 보급률은 지역별 인허가 된 시내버스 대수 대비 저상버스의 보급대수에 대한 평가 결과이며 경상남도는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보급률이 높음

[표3-75] 경상남도 및 9개 도 저상버스 보급률

구분	저상버스 보급대수(대)	시내버스대수(대)	지표값	순위
경남	439	1,739	25.2	2
경기	2,112	11,007	19.2	5
강원	203	511	39.7	1
충북	137	637	21.5	4
충남	89	902	9.9	9
전북	187	818	22.9	3
전남	124	737	16.8	8
경북	222	1,285	17.3	7
제주	148	830	17.8	6

사.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교통복지지표

-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지표값은 각 지자체의 법정대수산정 보행상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명에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대수에 대한 평가결과이며 경상남도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보급률이 높음

[표3-76] 경상남도 및 9개 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구분	특별교통수단 보급대수(대)	법정대수산정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명)	지표값	순위
경남	369	50,211	73.5	2
경기	1,157	151,686	76.3	1
강원	149	27,727	53.7	5
충북	116	26,173	44.3	9
충남	163	34,453	47.3	7
전북	192	34,245	56.1	4
전남	179	35,668	50.2	6
경북	214	45,871	46.7	8
제주	66	10,082	65.5	3

아.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교통복지지표

- 특별교통수단 이용률의 지표값은 각 지자체의 법정대수산정 보행상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수 대비 특별교통수단 이용실적에 대한 평가이며 경상남도는 제주도,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이용률이 높음

[표3-77] 경상남도 및 9개 도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구분	특별교통수단 이용실적(건)	법정대수산정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명)	지표값	순위
경남	638,745	50,211	12.7	3
경기	1,960,122	151,686	12.9	2
강원	324,620	27,727	11.7	5
충북	193,619	26,173	7.4	8
충남	360,475	34,453	10.5	6
전북	323,075	34,245	9.4	7
전남	433,782	35,668	12.2	4
경북	236,741	45,871	5.2	9
제주	169,471	10,082	16.8	1

자. 경상남도 고령자 및 어린이 안전도 교통복지지표

- 고령자 및 어린이 안전도는 지역별 어린이, 고령자, 어린이수(만명) 대비 고령자, 어린이 사고인수에 대한 평가 결과이며 경상남도는 9개 도 중 가장 안전도가 높게 평가됨

[표3-78] 경상남도 및 9개 도 고령자 및 어린이 안전도

구분	고령자, 어린이 사고인수(명)	고령자, 어린이수(명)	지표값	순위
경남	3,368	831,295	40.5	1
경기	11,508	2,808,842	41.0	2
강원	2,132	419,625	50.8	5
충북	2,212	401,207	55.1	6
충남	2,480	559,704	44.3	4
전북	2,121	507,427	41.8	3
전남	3,400	553,391	61.4	8
경북	4,160	748,674	55.6	7
제주	1,146	161,141	71.1	9

차. 경상남도 교통복지 행정 교통복지지표

- 교통약자 관련 조례 재정, 편의시설 또는 이동편의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운영개최 횟수, 장애인 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실적 등의 세부지표로 지역별 교통복지 행정을 평가함

[표3-79] 교통복지 행정 평가방법

구분	평가내용 및 방법	산정방식
교통약자 이동권 및 접근 관련 조례수	교통약자 접근성 관련 조례를 많이 제정할수록 높은 평가	5점 만점으로 환산
편의시설 또는 이동편의 관련 위원회 구성	관련위원회 구성에 따라 평가	위원회 없음 0점 위원회 있음 1점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개최 횟수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개최를 많이 할수록 높은 평가	5점 만점으로 환산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관련 예산 비율	5점 만점으로 환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실적	지방자치단체 내에 인증을 받은 시설이나 구역	5점 만점으로 환산

[표3-80] 경상남도 및 9개 도 교통복지 행정 산정 결과

구분	관련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횟수	지방비 비율	BF 인증실적	합계	순위
경남	1.1	1	1.5	2.3	2.7	8.6	5
경기	5.0	1	5.0	1.9	5.0	17.9	1
강원	1.5	1	0.2	2.4	1.9	7.0	8
충북	1.3	1	1.5	2.5	1.3	7.6	6
충남	2.7	1	2.0	2.6	1.8	10.2	4
전북	1.8	1	0.0	2.5	1.6	6.9	9
전남	2.6	1	2.3	2.9	3.0	11.9	3
경북	1.1	1	0.7	2.4	2.5	7.6	7
제주	4.2	1	1.7	5.0	1.1	13.1	2

2. 경상남도 교통복지지표 평가 분석

[표3-81] 경상남도 및 9개 도 교통복지지표 평가 결과 ([]안은 전년도 순위)

구분	이동편의시설				접근로 보행환경		보행자안전도		저상버스보급률	
	여객시설		교통수단							
	환산값	순위	환산값	순위	환산값	순위	환산값	순위	환산값	순위
경남	6.0	8 [7]	9.1	3 [4]	5.0	9 [9]	10.1	2 [2]	7.1	2 [3]
경기	5.8	9 [6]	12.8	2 [1]	9.5	2 [2]	10.9	1 [1]	5.9	5 [7]
강원	14.0	3 [2]	8.4	4 [9]	6.3	6 [5]	9.3	6 [7]	10.0	1 [1]
충북	9.9	5 [5]	7.1	7 [8]	8.6	3 [3]	10.0	3 [4]	6.3	4 [5]
충남	14.0	2 [3]	7.8	5 [7]	6.7	5 [6]	9.9	4 [3]	4.0	9 [9]
전북	9.5	6 [4]	6.7	8 [5]	5.3	8 [8]	9.6	5 [5]	6.6	3 [4]
전남	8.7	7 [8]	13.6	1 [3]	6.2	7 [7]	8.5	8 [8]	5.4	8 [8]
경북	14.6	1 [1]	7.1	6 [6]	8.0	4 [4]	9.2	7 [6]	5.5	7 [6]
제주	13.7	4 [9]	5.4	9 [2]	12.4	1 [1]	4.4	9 [9]	5.6	6 [2]

[표 계속]

구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고령자및어린이 안전도		교통복지행정		지역별 점수			
	환산값	순위	환산값	순위	환산값	순위	환산값	순위	2021년		2020년	2016년
									환산값	순위	순위	순위
경남	8.3	2 [2]	5.4	3 [3]	10.4	1 [2]	6.1	5 [7]	67.5	5	3	4
경기	8.8	1 [1]	5.5	2 [2]	10.3	2 [1]	12.3	1 [2]	81.8	1	1	1
강원	5.1	5 [5]	5.1	5 [4]	8.3	5 [5]	5.0	8 [8]	71.5	2	5	7
충북	3.5	9 [9]	3.6	8 [7]	7.4	6 [7]	5.4	6 [9]	61.8	9	8	3
충남	4.0	7 [7]	4.6	6 [6]	9.6	4 [3]	7.1	4 [4]	67.8	4	7	5
전북	5.5	4 [4]	4.3	7 [8]	10.1	3 [4]	4.9	9 [6]	62.4	8	6	8
전남	4.5	6 [6]	5.2	4 [5]	6.1	8 [9]	8.3	3 [5]	66.6	6	9	6
경북	3.9	8 [8]	2.8	9 [9]	7.3	7 [6]	5.4	7 [3]	63.8	7	4	10
제주	7.0	3 [3]	6.9	1 [1]	4.2	9 [8]	9.1	2 [1]	68.7	3	2	9



- 경상남도는 교통복지수준 평가지표에서 고령자 및 어린이 안전도에서 9개 도 중 1위, 보행자 안전도, 저상버스 보급률,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에서 2위,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특별교통수단 이용률에서 3위 등 9개 분야 중 6개 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으나 접근로 보행환경 최하위,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에서 8위,

교통복지 행정 분야에서 5위를 기록하며 9개도 중 전체 순위 5위를 기록함

- 2016년 4위, 2020년 3위에서 2021년 5위를 기록하여 최근 6년 낮은 지표 결과를 받아 들이게 되었으며 보행환경과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개선 할 필요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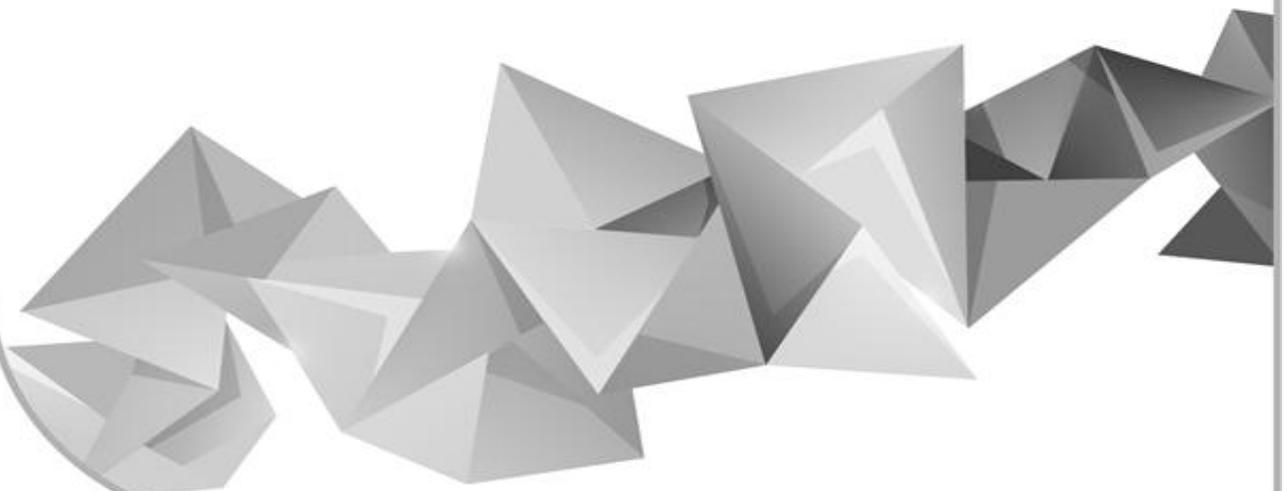
제4장

경상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지원 계획

제1절 계획의 비전과 목표

제2절 세부목표 및 전략설정

제3절 광역이동지원센터 효율화



제4장 경상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지원 계획

제1절 계획의 비전과 목표

1. 경상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현황과 전망

가. 경상남도 시군별 교통약자 현황

- 경상남도의 2021년 말 기준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포함하여 총 1,061,099명으로 집계되며 전체 인구 3,314,183명 중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전체 교통약자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교통약자는 고령자로 57.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차순으로는 어린이(21.0%), 장애인(17.9%, 중복제외시 8.4%), 영유아동반자(11.8%) 임산부(1.5%)로 조사됨
- 시·군별 전체인구 대비 가장 많은 교통약자 비율을 나타낸 지역은 합천군으로 전체인구 대비 교통약자 비율이 49.6%를 나타냈으며 차순으로는 의령군(48.1%), 남해군(48.0%), 산청군(47.1%), 하동군(45.8%) 등의 순으로 조사되며 시지역에 비해 군지역에서 교통약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경상남도 8개 시지역의 인구 대비 교통약자 비율의 평균은 32.3%이며 10개 군지역의 인구 대비 교통약자 비율은 45.0%로써 시지역 대비 12.7%p 높게 나타남

[표4-1] 2021년 말 경상남도 시군별 교통약자 현황

구분	총 인구 (명)	교통약자 인구(명)								
		소계	비율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임산부	
				중복	중복제 외					
경상남도	3,314,183	1,061,099	32.0%	189,621	89,315	608,379	124,927	222,916	15,562	
시부	창원	1,032,741	299,598	29.0%	50,373	25,234	160,521	39,850	68,780	5,213
	진주	347,097	109,526	31.6%	18,158	9,035	61,615	13,457	23,668	1,751
	통영	125,383	43,061	34.3%	7,663	3,516	26,428	3,795	8,898	424
	사천	109,953	40,103	36.5%	7,389	3,365	25,437	3,745	7,094	462
	김해	537,673	145,962	27.1%	25,100	13,906	65,524	22,840	40,890	2,802
	밀양	103,525	42,149	40.7%	8,976	3,493	31,006	2,673	4,635	342
	거제	241,216	69,561	28.8%	11,272	6,059	28,842	11,448	22,014	1,198
	양산	354,726	106,627	30.1%	16,741	8,556	51,977	17,121	26,877	2,096
군부	의령	26,322	12,650	48.1%	2,902	1,078	10,114	520	865	73
	함안	62,547	24,310	38.9%	5,067	2,078	16,739	1,630	3,692	171
	창녕	60,129	25,882	43.0%	5,452	2,058	19,600	1,482	2,527	215
	고성	50,478	21,926	43.4%	4,671	1,829	16,543	964	2,470	120
	남해	42,266	20,272	48.0%	4,294	1,461	16,448	728	1,544	91
	하동	43,449	19,897	45.8%	4,455	1,600	15,781	848	1,541	127
	산청	34,360	16,197	47.1%	3,537	1,235	13,175	615	1,083	89
	함양	38,310	17,341	45.3%	3,752	1,332	13,494	799	1,617	99
	거창	61,073	24,737	40.5%	5,043	1,923	17,545	1,687	3,379	203
	합천	42,935	21,300	49.6%	4,776	1,557	17,590	725	1,342	86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10.)과 동일한 한국인 인구 기준

총인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고령자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만 65세 이상의 인구현황

(고령자 정의 : 만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복지법」 제1조2 제5호)

영유아동반자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만 0-5세 인구현황

(영유아 정의: 만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 「영유아보육법」 제2조 1항)으로 대체

어린이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만 6-12세 인구현황

(어린이 정의: 만 13세미만인 사람, 「도로교통법」 제2조 23항)

임산부 : 통계청 출생·사망통계의 출생아수로 대체(2021년 잠정통계)

장애인(중복) :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장애인(중복제외) :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중 0~12세과 65세 이상의 수를 제외한 수

나. 경상남도 시군별 교통약자 장래예측

- 경상남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기간의 장래 예측 교통약자는 국토부의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간 중 우리나라 총 인구 감소율과 교통약자 분류별 증감율을 적용하여 추계
 - 총인구 : -0.1%
 - 장애인 : 0.5%(중복)/0.6%(중복제외)
 - 고령자 : 5.6%
 - 영유아동반자/어린이 : -5.8% / -4.4%
 - 임산부 : 1.5%

[표4-2] 제4차 증진 지원계획 기간의 경상남도 교통약자 추계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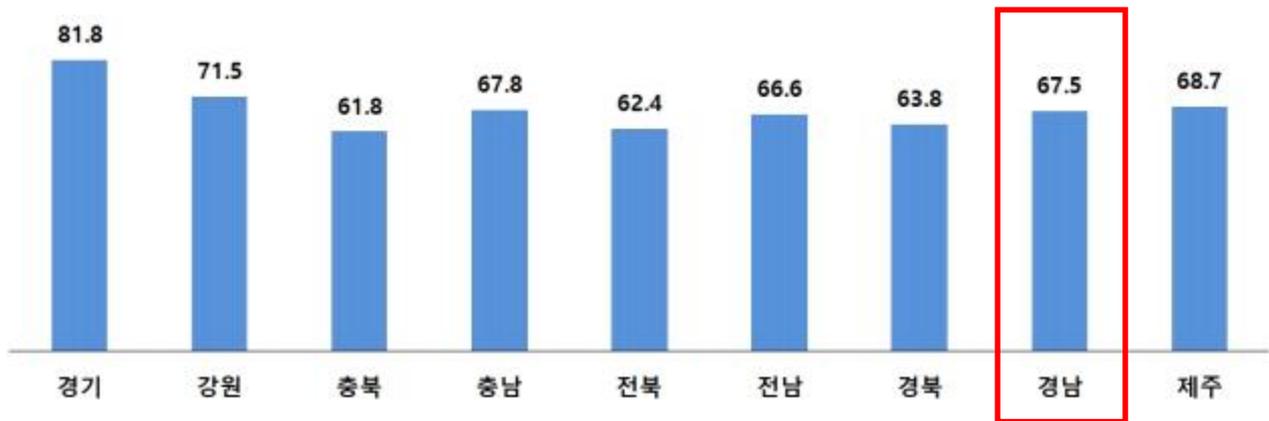
구분	총 인구 (천명)	교통약자 인구(천명)							
		소계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임산부
		(천명)	(%)	중복	중복제외				
2022년	3,314	1,061	32.0%	189	89	608	125	223	16
2023년	3,311	1,079	32.6%	190	90	642	118	213	16
2024년	3,307	1,099	33.2%	191	90	678	111	204	16
2025년	3,304	1,123	34.0%	192	91	716	104	195	17
2026년	3,301	1,149	34.8%	193	91	756	98	186	17
증가율	-0.1%	2.0%	2.1%	0.5%	0.6%	5.6%	-5.8%	-4.4%	1.5%

다. 경상남도 교통복지지표

[표4-3] 경상남도 및 9개 도 교통복지지표 평가 결과 ([]안은 전년도 순위)

구분	이동편의시설				접근로 보행환경		보행자안전도		저상버스보급률	
	여객시설		교통수단		환산값	순위	환산값	순위	환산값	순위
	환산값	순위	환산값	순위						
경남	6.0	8 [7]	9.1	3 [4]	5.0	9 [9]	10.1	2 [2]	7.1	2 [3]
경기	5.8	9 [6]	12.8	2 [1]	9.5	2 [2]	10.9	1 [1]	5.9	5 [7]
강원	14.0	3 [2]	8.4	4 [9]	6.3	6 [5]	9.3	6 [7]	10.0	1 [1]
충북	9.9	5 [5]	7.1	7 [8]	8.6	3 [3]	10.0	3 [4]	6.3	4 [5]
충남	14.0	2 [3]	7.8	5 [7]	6.7	5 [6]	9.9	4 [3]	4.0	9 [9]
전북	9.5	6 [4]	6.7	8 [5]	5.3	8 [8]	9.6	5 [5]	6.6	3 [4]
전남	8.7	7 [8]	13.6	1 [3]	6.2	7 [7]	8.5	8 [8]	5.4	8 [8]
경북	14.6	1 [1]	7.1	6 [6]	8.0	4 [4]	9.2	7 [6]	5.5	7 [6]
제주	13.7	4 [9]	5.4	9 [2]	12.4	1 [1]	4.4	9 [9]	5.6	6 [2]

구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고령자및어린이 안전도		교통복지행정		지역별 점수			
	환산값	순위	환산값	순위	환산값	순위	환산값	순위	2021년		2020년	2016년
									환산값	순위	순위	순위
경남	8.3	2 [2]	5.4	3 [3]	10.4	1 [2]	6.1	5 [7]	67.5	5	3	4
경기	8.8	1 [1]	5.5	2 [2]	10.3	2 [1]	12.3	1 [2]	81.8	1	1	1
강원	5.1	5 [5]	5.1	5 [4]	8.3	5 [5]	5.0	8 [8]	71.5	2	5	7
충북	3.5	9 [9]	3.6	8 [7]	7.4	6 [7]	5.4	6 [9]	61.8	9	8	3
충남	4.0	7 [7]	4.6	6 [6]	9.6	4 [3]	7.1	4 [4]	67.8	4	7	5
전북	5.5	4 [4]	4.3	7 [8]	10.1	3 [4]	4.9	9 [6]	62.4	8	6	8
전남	4.5	6 [6]	5.2	4 [5]	6.1	8 [9]	8.3	3 [5]	66.6	6	9	6
경북	3.9	8 [8]	2.8	9 [9]	7.3	7 [6]	5.4	7 [3]	63.8	7	4	10
제주	7.0	3 [3]	6.9	1 [1]	4.2	9 [8]	9.1	2 [1]	68.7	3	2	9



- 경상남도는 교통복지수준 평가지표에서 고령자 및 어린이 안전도에서 9개 도 중 1위, 보행자 안전도, 저상버스 보급률,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에서 2위,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특별교통수단 이용률에서 3위 등 9개 분야 중 6개 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으나 접근로 보행환경 최하위,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에서 8위, 교통복지 행정 분야에서 5위를 기록하며 9개도 중 전체 순위 5위를 기록함
- 2016년 4위, 2020년 3위에서 2021년 5위를 기록하여 최근 6년 낮은 지표 결과를 받아 들이게 되었으며 보행환경과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 및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됨

2. 경상남도 제4차 계획의 비전과 목표

가. 기본방향

1)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국토교통부) 주요내용

교통수단 도입률			
	운영수단	21년	26년
 <p>저상버스</p>	시내버스	30.6%	62%
	농어촌버스	1.4%	42%
	마을버스	3.9%	49%
	좌석버스	0%	차량개발(~'25년) 시범운영('26년~)
 <p>특별교통수단</p>	도입률	86.0%	100%
	통합서비스	지역별 다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 시간 운영 · 시도 간 운영 · 통합예약서비스

기준적합 설치율			
	운영수단	21년	26년
	시내버스	88.0%	96%
	버스 정류장	45.4%	66%
	버스 터미널	65.0%	73%
	보행환경	77.6%	83%
	도시철도(차량)	96%	98%
	도시철도(역사)	89%	93%
	철도(차량)	98.9%	99%
	철도(역사)	82.5%	90%
	여객선	37.8%	52%
	항만	82.2%	92%
	항공기	73.7%	90%
	공항	86.8%	92%

■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대상 노선버스*에 대하여 자동차 연한 만료 등으로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교통약자법」 개정 `22.1.18)
- `26년까지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 62% 달성 목표
- 지역별 목표 : 서울 90%, 광역시 61%, 도지역 41%
- 농어촌 및 마을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은 각각 42%, 49% 달성

■ 특별교통수단 보급 및 지원확대

-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대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추진
- 교통이용 여건이 어려운 비도시 지역의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영대수 상향 검토(보행상 중증 장애인 150명→100명당 1대)
- 광역이동, 24시간 운영 등을 위한 이동지원센터 지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교통약자법 `22.1.18 개정, `23.7.19 시행)

■ 지역 이동지원센터 지역·수단간 정보연계 서비스

- 각 센터의 이용대상 등록자(보행상 장애인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보공유를 통한 이동지원센터의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각 도(道)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정보를 연계하여 지역 간 환승·연계 활성화 기반 마련
- 거주지의 시·군에 등록할 경우, 전국 어디서든 별도 추가 등록없이 타 지역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 등록정보 연계
- 타 지역(道) 이동 시 타 지역 특별교통수단으로 환승 및 타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으로 고도화

■ 특별교통수단 운영 효율화 및 대체수단 확대

- 휠체어 이용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우선 배정 등 운영 효율화 및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하여 대체수단(임차·바우처 택시 등)을 도입 확대
-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의 운영방법 표준화
(휠체어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배정하고 비휠체어 이용자는 대체수단

(임차·바우처 택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 마련)

- 일반 (대형)택시를 대체수단(바우처 택시)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제고**

- (시내버스) 96%, (버스정류장) 특별·광역시 94%, 도지역 73%
(터미널) 73%
- (철도) 철도차량 99%, 철도역사 90% / 도시(광역)철도차량 98%, 도시(광역)철도역사 93%
- (항공) 항공기 90%, 공항여객터미널 92%, (해양) 여객선 52%, 여객선터미널 92%
- (보도) 특별·광역시 94%, 도지역 73%

■ **교통약자 서비스교육 강화**

- 운수종사자(승무원) 및 일반국민 대상 실효성 있는 교통약자 인식 및 서비스 개선 교육 추진 및 관리
-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실적제출 규정 마련 및 관리시스템 구축
- 대중교통 승무원 대상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의 체험교육 활성화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교육내용에 대중교통, 여객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인식개선 내용 포함 검토

2) 경상남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성격

-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도 차원의 정책방향과 달성목표를 결정하는 중기 전략계획이자 광역계획
- 정책방향 및 추진시점 등에 있어 국가 기본 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하위계획
- 경상남도 차원의 정책방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및 지원 방안

을 마련하는 실천계획

- 시군별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상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와 시군간 균형적 지원을 통하여 시군계획의 실천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상위 계획이자 지원계획

3) 경상남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과 정합성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국토교통부)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계획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작성
- 시군계획과의 연계성
 - 시군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하며, 지역 간 균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
- 시군계획에서의 지침성
 - 시군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대한 지침으로서 이에 대한 방향성 제시
- 계획의 실현가능성
 - 목표 기간 내 실현을 전제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실천과제 대한 연차별 사업계획, 추진주체, 목표기간, 예상 투자비용 및 자원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자료의 신뢰성
 - 정확한 자료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료출처와 분석과정 기재

나. 경상남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비전과 목표

비 전

도민 모두가 차별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활기찬 경남

목 표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복지 문화 정착

4개 추진전략, 10개 정책과제, 18개 세부 정책과제

추진
전략

저상버스,
특별
교통수단
등의
도입확대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
경조성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
경조성

정
책
과
제

저상버스
도입확대

보행환경
개선

교통복지
협의회
구성

교통약자
서비스교
육 강화

특별교통수단
보급 및 지원
확대

이동편의
시설개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지원
계획실행
제고

포용적
교통복지
문화조성

바우처택시
도입확대

광역이동
지원센터
운영 효율화

다. 세부 정책과제

추진전략	정책과제	세부 정책 과제
<p>I. 저상버스 특별교통 수단 등의 도입확대</p>	<p>1.1 저상버스 도입 확대</p>	<p>1.1.1 저상버스 도입 확대 계획 1.1.2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버스 도입 1.1.3 친환경 충전소 확충</p>
	<p>1.2 특별교통수단 보급 및 지원</p>	<p>1.2.1 특별교통수단 증차 필요성 및 추진계획</p>
	<p>1.3 바우처택시 도입확대</p>	<p>1.3 바우처택시 도입 확대 및 임차 택시 도입</p>
<p>II.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p>	<p>2.1 보행환경 개선</p>	<p>2.1.1 여객버스터미널 진출입부 환경개선 2.1.2 횡단보도 점자블록 및 음향신호기 설치 2.1.3 장애인 주차구역 개선 2.1.4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p>
	<p>2.2 이동편의시설 개선</p>	<p>2.2.1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목표 2.2.2 교통수단 환경개선 2.2.2 여객시설 환경개선</p>
	<p>2.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효율화</p>	<p>2.3.1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표준화 2.3.2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효율성 제고</p>

추진전략	정책 과제	세부 정책 과제
<p>Ⅲ.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p>	<p>3.1 교통복지 협의회 구성</p>	<p>3.1.1 경상남도 교통복지협의회 구성(안)</p>
<p>Ⅳ.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p>	<p>3.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실행 제고</p>	<p>3.2.1 경상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실행 제고</p>
<p>Ⅳ.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p>	<p>4.1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강화</p>	<p>4.1.1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관리 강화</p>
<p>Ⅳ.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p>	<p>4.2 포용적 교통복지 문화 조성</p>	<p>4.2.1 경남도민 교통약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및 교통약자 배려문화 조성</p>

제2절 세부계획과 전략설정

I.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확대

1. 저상버스 도입 확대

가. 저상버스 도입 확대 계획

1) 경상남도 시군별 저상버스 현황

[표4-4] 경상남도 시군별 저상버스 도입률 현황(2021년 말 기준)

구분		저상버스도입률	전체대수(저상버스포함)	저상버스
경남 전체	시내버스	25.2%	1,739	439
	농어촌버스	1.8%	225	4
	마을버스	5.1%	117	6
창원시	시내버스	34.4%	739	254
	농어촌버스	0.0%	-	-
	마을버스	0.0%	29	0
진주시	시내버스	7.0%	272	19
	농어촌버스	0.0%	-	-
	마을버스	0.0%	-	-
통영시	시내버스	12.6%	103	13
	농어촌버스	0.0%	-	-
	마을버스	35.3%	17	6
사천시	시내버스	9.4%	32	3
	농어촌버스	0.0%	-	-
	마을버스	0.0%	-	-
김해시	시내버스	31.7%	221	70
	농어촌버스	0.0%	-	-
	마을버스	0.0%	-	-
밀양시	시내버스	35.1%	37	13
	농어촌버스	0.0%	-	-
	마을버스	0.0%	6	0
거제시	시내버스	2.5%	119	3
	농어촌버스	0.0%	-	-
	마을버스	0.0%	3	0

구분		저상버스도입률	전체대수(저상버스포함)	저상버스
양산시	시내버스	29.6%	216	64
	농어촌버스	0.0%	-	-
	마을버스	0.0%	43	0
의령군	시내버스	0.0%	-	-
	농어촌버스	0.0%	11	0
	마을버스	0.0%	1	0
함안군	시내버스	0.0%	-	-
	농어촌버스	0.0%	37	0
	마을버스	0.0%	3	0
창녕군	시내버스	0.0%	-	-
	농어촌버스	8.7%	23	2
	마을버스	0.0%	-	-
고성군	시내버스	0.0%	-	-
	농어촌버스	0.0%	21	0
	마을버스	0.0%	-	-
남해군	시내버스	0.0%	-	-
	농어촌버스	0.0%	20	0
	마을버스	0.0%	10	0
하동군	시내버스	0.0%	-	-
	농어촌버스	0.0%	11	0
	마을버스	0.0%	-	-
산청군	시내버스	0.0%	-	-
	농어촌버스	0.0%	11	0
	마을버스	0.0%	2	0
함양군	시내버스	0.0%	-	-
	농어촌버스	9.1%	22	2
	마을버스	0.0%	3	0
거창군	시내버스	0.0%	-	-
	농어촌버스	0.0%	39	0
	마을버스	0.0%	-	-
합천군	시내버스	0.0%	-	-
	농어촌버스	0.0%	30	0
	마을버스	0.0%	-	-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2) 경상남도 저상버스 도입 필요성 및 추진계획

- 2021년 말 기준 경남 전체의 시내버스는 1,739대, 농어촌버스 225대, 마을 버스는 117대 보유중이며 이중 저상버스는 시내버스 439대, 농어촌버스 4대, 마을버스 6대로 합계 전체 버스 2,081대 중 저상버스 449대 보유중임
- 제4차 국가계획 도입률 대비 각각 시내버스는 274대가 부족하고 농어촌버스는 91대, 마을버스는 51대가 부족함

[표4-5] 경상남도 저상버스 현행 대비 국가계획 현황

구분	현행(2021년)		제4차 국가계획		부족분		
	대수	도입률	대수	도입률	대수	도입률	
경남 전체	시내버스	439	25.2%	713	41.0%	274	15.8%
	농어촌버스	4	1.8%	95	42.0%	91	40.2%
	마을버스	6	5.1%	57	49.0%	51	43.9%

[표4-6] 경상남도 저상버스 제4차 국가계획 총족 연간 대수 (단위: 대)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경남 전체	시내버스	55	55	55	55	55	275
	농어촌버스	18	18	18	18	19	91
	마을버스	10	10	10	10	11	51

- 2022년 1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가 시행(「교통약자법」 개정 `22.1.18)됨으로써 버스 차량의 대폐차시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로 차량을 변경해야 하며 인구 감소추세 및 개인 이동차량의 증가 등으로 버스 이용객의 감소세에 따라 본 계획에서 버스 차량의 증가율은 고려하지 않음
- 버스 차량의 내용년수는 9년으로 연속적인 시내버스 운수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매년 일정 비율의 차량이 대폐차되고 있으며 경상남도 제3차 계획의 대폐차 비율을 고려

[표4-7] 경상남도 제3차 계획 대폐차대수

(단위: %, 대)

시군	구분	등록대수	연도별 대폐차 대수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시내버스	대수	1,482	651	121	113	144	133	140
		비율	100.0	100.0	18.6	17.4	22.1	20.4	21.5
	저상버스	대수	351	242	33	38	43	50	78
		비율	23.7	100.0	13.6	15.7	17.8	20.7	32.2
창원시	시내버스	대수	574	263	47	29	63	50	74
		비율	38.7	100.0	17.9	11.0	24.0	19.0	28.1
	저상버스	대수	182	124	17	11	13	38	45
		비율	31.7	100.0	13.7	8.9	10.5	30.6	36.3
진주시	시내버스	대수	260	117	36	21	23	17	20
		비율	17.5	100.0	30.8	17.9	19.7	14.5	17.1
	저상버스	대수	26	32	16	6	9	1	-
		비율	10.0	100.0	50.0	18.8	28.1	3.1	0.0
통영시	시내버스	대수	102	18	5	4	7	-	2
		비율	6.9	100.0	27.8	22.2	38.9	0.0	11.1
	저상버스	대수	15	2	-	-	-	2	-
		비율	14.7	100.0	0.0	0.0	0.0	100.0	0.0
사천시	시내버스	대수	-	8	1	-	1	3	3
		비율	0.0	100.0	12.5	0.0	12.5	37.5	37.5
	저상버스	대수	4	2	-	-	-	2	-
		비율	-	100.0	0.0	0.0	0.0	100.0	0.0
김해시	시내버스	대수	186	99	19	24	21	27	8
		비율	12.6	100.0	19.2	24.2	21.2	27.3	8.1
	저상버스	대수	54	41	-	9	10	-	22
		비율	29.0	100.0	0.0	22.0	24.4	0.0	53.7
밀양시	시내버스	대수	37	21	4	6	3	4	4
		비율	2.5	100.0	19.0	28.6	14.3	19.0	19.0
	저상버스	대수	12	12	-	5	3	4	-
		비율	32.4	100.0	0.0	41.7	25.0	33.3	0.0
거제시	시내버스	대수	112	23	-	11	5	2	5
		비율	7.6	100.0	0.0	47.8	21.7	8.7	21.7
	저상버스	대수	14	6	-	1	3	-	2
		비율	12.5	100.0	0.0	16.7	50.0	0.0	33.3
양산시	시내버스	대수	189	86	9	13	17	25	22
		비율	12.8	100.0	10.5	15.1	19.8	29.1	25.6
	저상버스	대수	43	22	-	6	5	3	8
		비율	22.8	100.0	0.0	27.3	22.7	13.6	36.4
창녕군	시내버스	대수	22	16	-	5	4	5	2
		비율	1.5	100.0	0.0	31.3	25.0	31.3	12.5
	저상버스	대수	1	1	-	-	-	-	1
		비율	4.5	100.0	0.0	0.0	0.0	0.0	100.0

※자료: 경상남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경상남도, 2018.05)

- 경상남도 제3차 계획의 대폐차 비율은 연 평균 8.8%로 나타남

[표4-8] 경상남도 제3차 계획 보유대수 대비 대폐차 비율

구분	등록대수	연도별 대폐차 대수							
		평균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시내버스	대수	1,482	130	651	121	113	144	133	140
	비율	100%	8.8%	43.9%	8.2%	7.6%	9.7%	9.0%	9.4%

※자료: 경상남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경상남도, 2018.05)

- 폐차 비율은 연 평균 8.8%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음

[표4-9] 경상남도 제4차 계획기간 대폐차 산정

구분	등록대수	연도별 대폐차 대수						
		평균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시내버스	1,739	153	765	153	153	153	153	153
농어촌버스	225	20	100	20	20	20	20	20
마을버스	117	10	50	10	10	10	10	10

- 단, 대폐차시 저상버스도 해당하므로 현재 보유비율을 적용하여 보정하여야 함 (저상버스 보유율: 시내버스 25.2%, 농어촌버스 1.8%, 마을버스 5.1%)

[표4-10] 경상남도 제4차 계획기간 대폐차 산정

구분	등록대수	연도별 대폐차 대수						
		평균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시내버스	1,739	114	575	115	115	115	115	115
농어촌버스	225	20	100	20	20	20	20	20
마을버스	117	9	45	9	9	9	9	9

[표4-11] 경상남도 저상버스 도입대수

구분		현행(2021년)		제4차 기간 도입대수	2026년 도입대수(누적)	
		대수	도입률	대수	대수	도입률
경남 전체	시내버스	439	25.2%	575	1,014	58.3%
	농어촌버스	4	1.8%	100	100	46.2%
	마을버스	6	5.1%	45	51	47.9%

[표4-12] 경상남도 저상버스 도입대수

구분		현행(2021년)		제4차 국가계획		제4차 기간 누적 도입대수	
		대수	도입률	대수	도입률	대수	도입률
경남 전체	시내버스	439	25.2%	713	41.0%	1,014	58.3%
	농어촌버스	4	1.8%	95	42.0%	100	46.2%
	마을버스	6	5.1%	57	49.0%	51	47.9%

- 제4차 계획 기간, 2026년에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는 국가계획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이나 마을버스는 보유대수의 수가 적어 소폭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임

[표4-13] 제4차 계획기간 경상남도 시군별 저상버스 도입대수

구분		도입률	전체대수	저상버스	연도별 도입대수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경남 전체	시내버스	58.3%	1,739	1,014	575	115	115	115	115	115
	농어촌버스	46.2%	225	104	100	20	20	20	20	20
	마을버스	43.6%	117	51	45	9	9	9	9	9
창원시	시내버스	67.5%	739	499	245	49	49	49	49	49
	농어촌버스		-							
	마을버스	34.5%	29	10	10	2	2	2	2	2
진주시	시내버스	40.1%	272	109	90	18	18	18	18	18
	농어촌버스		-							
	마을버스		-							
통영시	시내버스	46.6%	103	48	35	7	7	7	7	7
	농어촌버스		-							
	마을버스	64.7%	17	11	5	1	1	1	1	1

제4장 경상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지원 계획

구분	도입률	전체대수	저상버스	연도별 도입대수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사천시	시내버스	40.6%	32	13	10	2	2	2	2	2
	농어촌버스		-							
	마을버스		-							
김해시	시내버스	65.6%	221	145	75	15	15	15	15	15
	농어촌버스		-							
	마을버스		-							
밀양시	시내버스	62.2%	37	23	10	2	2	2	2	2
	농어촌버스		-							
	마을버스	83.3%	6	5	5	1	1	1	1	1
거제시	시내버스	36.1%	119	43	40	8	8	8	8	8
	농어촌버스		-							
	마을버스	0.0%	3	0	0	0	0	0	0	0
양산시	시내버스	62.0%	216	134	70	14	14	14	14	14
	농어촌버스		-							
	마을버스	46.5%	43	20	20	4	4	4	4	4
의령군	시내버스		-							
	농어촌버스	45.5%	11	5	5	1	1	1	1	1
	마을버스	0.0%	1	0	0	0	0	0	0	0
함안군	시내버스		-							
	농어촌버스	40.5%	37	15	15	3	3	3	3	3
	마을버스	0.0%	3	0	0	0	0	0	0	0
창녕군	시내버스		-							
	농어촌버스	52.2%	23	12	10	2	2	2	2	2
	마을버스		-							
고성군	시내버스		-							
	농어촌버스	47.6%	21	10	10	2	2	2	2	2
	마을버스		-							
남해군	시내버스		-							
	농어촌버스	50.0%	20	10	10	2	2	2	2	2
	마을버스	50.0%	10	5	5	1	1	1	1	1

구분	도입률	전체대수	저상버스	연도별 도입대수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하동군	시내버스	-	-	-	-	-	-	-	-	-
	농어촌버스	45.5%	11	5	5	1	1	1	1	1
	마을버스	-	-	-	-	-	-	-	-	-
산청군	시내버스	-	-	-	-	-	-	-	-	-
	농어촌버스	45.5%	11	5	5	1	1	1	1	1
	마을버스	0.0%	2	0	0	0	0	0	0	0
함양군	시내버스	-	-	-	-	-	-	-	-	-
	농어촌버스	54.5%	22	12	10	2	2	2	2	2
	마을버스	0.0%	3	0	0	0	0	0	0	0
거창군	시내버스	-	-	-	-	-	-	-	-	-
	농어촌버스	38.5%	39	15	15	3	3	3	3	3
	마을버스	-	-	-	-	-	-	-	-	-
합천군	시내버스	-	-	-	-	-	-	-	-	-
	농어촌버스	50.0%	30	15	15	3	3	3	3	3
	마을버스	-	-	-	-	-	-	-	-	-

나.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버스 도입

1) 필요성

- 시외버스는 육상 교통수단 중에서 배리어프리(barrier-free)의 노력이 거의 없던 교통수단이며 현재 경상남도의 시외버스가 시내버스와는 달리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버스가 단 한대도 없어 장애인들과 장애인 단체들이 고속 및 시외버스 회사에 조속히 촉구를 원하는 내용임
- 시외버스는 시내버스와는 달리 입석형이 아닌 좌석형이 대부분이고 장애인 콜택시는 시외운행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휠체어 장애인의 시외 이동에 제약이 많은 상황임
- 휠체어를 접거나 눕혀서 짐칸에 넣는 방법도 있지만 휠체어가 손상될 우려가 있고 인권침해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전동휠체어의 경우 그 크기로 인해 대다수 적재가 불가함



[그림] 휠체어 개조 시외버스 차량

2) 추진방안

- 현재 운행 중인 고상 시외버스에 리프트를 장착하여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의 개조 및 여객터미널 내부 및 차량 승강장까지의 휠체어 접근로 개선 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
- 경상남도 시외버스 노선 중 철도 이용이 어려워 버스 이외의 대체수단이 없는 노선을 위주로 공모사업 대상 선정
- 경상남도 및 운수업체가 협력하여 시외버스 교통약자 탑승 개선 사업계획을 수립 및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국비확보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함

다. 친환경(전기/수소) 충전소 확충

1) 필요성

- 일부 수입 차량을 제외한 국산 저상버스는 친환경 연료인 CNG, 수소,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군부 및 농어촌 지역에는 충전 인프라가 구비되지 못해 도입률이 증가하지 못하는 상황임

[표4-14] 경상남도 내 군부 지자체 저상버스 보유현황 (2021년 기준)

구분		저상버스도입률	전체대수(저상버스포함)	저상버스
의령군	농어촌버스	0.0%	11	0
	마을버스	0.0%	1	0
함안군	농어촌버스	0.0%	37	0
	마을버스	0.0%	3	0
창녕군	농어촌버스	8.7%	23	2
고성군	농어촌버스	0.0%	21	0
남해군	농어촌버스	0.0%	20	0
	마을버스	0.0%	10	0
하동군	농어촌버스	0.0%	11	0
산청군	농어촌버스	0.0%	11	0
	마을버스	0.0%	2	0
함양군	농어촌버스	9.1%	22	2
	마을버스	0.0%	3	0
거창군	농어촌버스	0.0%	39	0
합천군	농어촌버스	0.0%	30	0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 도내 군부 중 창녕군과 함양군만이 전기 저상버스를 각 2대씩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 함양군이 군내 위치한 에디슨모터스로부터 대형 전기 저상버스 2대를 구입한 것이 도내 군부 중 최초 사례임

2) 도입사례

- 함양군 : 2020년 전기 저상버스 2대 및 차고지 내 전기 충전기 2대 설치
 - 군비 30,358,000원 투입하여 전기 충전기 2대 설치
- 창녕군 : 2021년 전기 저상버스 및 차고지 내 전기 충전기 1대(2대 동시충전가능) 설치
 - 한국전력공사에서 저상버스 2대 동시 충전 가능한 1대 무상 설치
- 거제시 : 2023년 1월 전기 저상버스 10대 도입 및 2022년 12월 현재 차고지 내 전기 충전소 설치 진행 중
 - 차량을 구입한 현대자동차에서 설치 지원 예정(협약중)
 - 충전소(충전기 10기) 설치비 : 부대시설 공사 포함 4억5천만원 예상



[그림] 버스 전기충전기와 CNG충전소

3) 추진방안

- CNG충전소의 경우 275m³/H 용량의 압축기 1대와 충전기 2기를 갖춘다고 가정하면 시설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총 4억원의 건설비용과 안전관리책임자, 충전원 등의 상주가 필요하여 군단위 지자체의 저상버스 운영을 위해 과도한 비용의 지출이 우려됨. 수소충전소도 유사하나 국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각 지자체의 사정에 따른 판단이 필요
- 버스용 고속 전기 충전기의 경우 대당 약 2천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차량용 전기 충전사업자 및 자동차 판매사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설치비용의 부담이 경감됨
- 경상남도에서 충전사업자 및 자동차 판매사 등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저상버스의 도입률이 낮은 군단위 지자체에 충전기 설치 지원을 통해 전기 저상버스의 도입률 제고
- 매년 10개 군에 충전기 1~2대 지원을 통해 대폐차량의 전기 저상버스 도입

[표4-15] 경상남도 내 군부 지자체 전기 저상버스 도입대수 및 충전기 설치대수

구분		연도별 도입대수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체	도입대수	105	21	21	21	21	21
	충전기	56	14	11	10	7	14
의령군	도입대수	5	1	1	1	1	1
	충전기	3	1	-	1	-	1
함안군	도입대수	15	3	3	3	3	3
	충전기	8	2	2	1	1	2
창녕군	도입대수	10	2	2	2	2	2
	충전기	5	1	1	1	1	1
고성군	도입대수	10	2	2	2	2	2
	충전기	5	1	1	1	1	1
남해군	도입대수	15	3	3	3	3	3
	충전기	8	2	2	1	1	2
하동군	도입대수	5	1	1	1	1	1
	충전기	3	1	-	1	-	1
산청군	도입대수	5	1	1	1	1	1
	충전기	3	1	-	1	-	1
함양군	도입대수	10	2	2	2	2	2
	충전기	5	1	1	1	1	1
거창군	도입대수	15	3	3	3	3	3
	충전기	8	2	2	1	1	2
합천군	도입대수	15	3	3	3	3	3
	충전기	8	2	2	1	1	2

2. 특별교통수단 보급 및 지원

가.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중차 필요성 및 추진계획

[표4-16]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지역별 보급률 및 대체수단 도입 세부현황

구분	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				
	법정대수산정 장애인수 (보행상 중증장애인)	법정 기준대수	운영대수	보급률	소계	임차 택시	바우처 택시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차량	기타
경남소계	50,211	344	369	107.3	316	-	305	5	6
창원시	13,319	89	107	120.2	-	-	145	-	-
진주시	5,073	34	34	100.0	-	-	50	-	-
통영시	2,054	14	20	142.9	-	-	51	-	-
사천시	2,008	14	10	71.4	4	-	-	1	3
김해시	6,863	46	50	108.7	30	-	59	-	-
밀양시	2,206	15	20	133.3	1	-	-	1	-
거제시	3,159	22	29	131.8	2	-	-	1	1
양산시	4,448	30	30	100.0	-	-	-	-	-
의령군	764	6	4	66.7	2	-	-	-	2
함안군	1,308	9	8	88.9	-	-	-	-	-
창녕군	1,266	9	6	66.7	-	-	-	-	-
고성군	1,201	9	7	77.8	-	-	-	-	-
남해군	1,054	8	7	87.5	-	-	-	-	-
하동군	1,217	9	7	77.8	-	-	-	-	-
산청군	978	7	7	100.0	-	-	-	-	-
함양군	889	6	6	100.0	-	-	-	-	-
거창군	1,209	9	9	100.0	-	-	-	-	-
합천군	1,195	8	8	100.0	2	-	-	2	-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및 경상남도 내부자료 (2022.12)

[표4-17] 전국 특별교통수단 지역별 보급률 및 대체수단 도입 세부현황

(단위:명, 대)

구분	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				
	법정대수산정 장애인수 (보행상 중증장애인)	법정 기준대수	운영대수	보급률	소계	임차 택시	바우처 택시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차량	기타
합계	698,713	4,738	4,074	86.0	24,832	471	23,993	304	64
서울	108,655	725	622	85.8	13,041	76	12,807	158	-
부산	47,824	319	206	64.6	4,700	-	4,700	-	-
대구	32,253	216	163	75.5	280	-	280	-	-
인천	38,002	254	169	66.5	300	-	300	-	-
광주	19,187	128	116	90.6	92	92	-	-	-
대전	20,063	134	96	71.6	240	90	150	-	-
울산	13,397	90	76	84.4	72	21	37	11	3
세종	3,216	22	21	95.5	11	-	-	-	11
경기	151,686	1,027	1,157	112.7	3,537	63	3,421	39	14
강원	27,727	195	149	76.4	1,784	22	1,736	15	11
충북	26,173	180	116	64.4	96	23	55	9	9
충남	34,453	236	163	69.1	33	-	20	13	-
전북	34,245	236	192	81.4	60	30	-	26	4
전남	35,668	247	179	72.5	115	11	89	15	-
경북	45,871	317	214	67.5	112	-	93	13	6
경남	50,211	344	369	107.3	316	-	305	5	6
제주	10,082	68	66	97.1	43	43	-	-	-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및 경상남도 내부자료 (2022.12)

- 국토부의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변경(안)(2017-2021)에서는 2021년 목표연도까지 전 지자체의 법정기준 보급대수 84% 달성을 목표로 하였음
- 전국 평균 보급률은 86.0%로 목표치에 도달하였으며 경상남도(107.3%)와 경기도(112.7%)만 법정대수 대비 100%이상을 상회하였음
- 경상남도는 이미 법정 대수를 초과 달성하여 107.3%의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되어 있으나 제4차 계획 기간(‘2022~’2026) 동안 경상남도의 총 인구는 감소(매년 -0.1%)하나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산정을 위한 보행상 장애를 겪는 중증장애인 인구는 증가(매년 0.5%)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특별교통단의 확충은 꾸준히 필요하다.

[표4-18] 경상남도 중증장애인 인구 변화 및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검토 (단위: 명, 대)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평균 증감률
경남 전체	중증장애인	50,211	50,462	50,714	50,968	51,223	0.50%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344	346	347	349	351	-
	현행대수	369	369	369	369	369	-
	과부족분	25	23	22	20	18	-

- 제4차 국가계획에 의하면 현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로 배정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비율을 인구 10만명 이하 도시의 경우 100명당 1대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방향을 검토 중이며 곧 시행 예정임

[표4-19] 경상남도 시군별 중증장애인 연도별 변화

(단위: 명)

구분	총인구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평균
경남	3,314,183	50,211	50,462	50,714	50,968	51,223	0.50%
창원	1,032,741	13,319	13,386	13,453	13,520	13,587	0.50%
진주	347,097	5,073	5,098	5,124	5,149	5,175	0.50%
통영	125,383	2,054	2,064	2,075	2,085	2,095	0.50%
사천	109,953	2,008	2,018	2,028	2,038	2,048	0.50%
김해	537,673	6,863	6,897	6,932	6,966	7,001	0.50%
밀양	103,525	2,206	2,217	2,228	2,239	2,250	0.50%
거제	241,216	3,159	3,175	3,191	3,207	3,223	0.50%
양산	354,726	4,448	4,470	4,493	4,515	4,538	0.50%
의령	26,322	764	768	772	776	779	0.50%
함안	62,547	1,308	1,315	1,321	1,328	1,334	0.50%
창녕	60,129	1,266	1,272	1,279	1,285	1,292	0.50%
고성	50,478	1,201	1,207	1,213	1,219	1,225	0.50%
남해	42,266	1,054	1,059	1,065	1,070	1,075	0.50%
하동	43,449	1,217	1,223	1,229	1,235	1,242	0.50%
산청	34,360	978	983	988	993	998	0.50%
함양	38,310	889	893	898	902	907	0.50%
거창	61,073	1,209	1,215	1,221	1,227	1,233	0.50%
합천	42,935	1,195	1,201	1,207	1,213	1,219	0.50%

- 도내 10만명 이하도시 중증장애인 10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 도입시 현재 107% 이상의 보유율인 경상남도도 95.1%대로 급감하게 되어 국가계획 상의 검토안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증차가 필요함

[표4-20] 시군별 10만이하 도시 중증장애인 비율 조정시 부족분

(단위: 대, 명)

구분	2026년기준		2021년 기준 운행대수	2026년 기준	
	중증장애인	법정기준대수		보급률	부족분
경남	51,223	388	369	95.1%	55
창원	13,587	91	107	117.6%	-
진주	5,175	35	34	97.1%	1
통영	2,095	14	20	142.9%	-
사천	2,048	14	10	71.4%	4
김해	7,001	47	50	106.4%	-
밀양	2,250	16	20	125.0%	-
거제	3,223	22	29	131.8%	-
양산	4,538	31	30	96.8%	1
의령	779	8	4	50.0%	4
함안	1,334	14	8	57.1%	6
창녕	1,292	13	6	46.2%	7
고성	1,225	13	7	53.8%	6
남해	1,075	11	7	63.6%	4
하동	1,242	13	7	53.8%	6
산청	998	10	7	70.0%	3
함양	907	10	6	60.0%	4
거창	1,233	13	9	69.2%	4
합천	1,219	13	8	61.5%	5

[표4-21]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현행 대비 향후 수요

구분		현행(2021년)		제4차 계획 기간		부족분
		대수	도입률	대수	도입률	대수
경남 전체	법정대수	344	100.0%	388	100.0%	44
	도입대수	369	107.3%	424	114.9%	55

- 특별교통수단도 9년의 내용년수를 가짐에 따라 대폐차 수요도 발생하며 전차인 경상남도 제3차 계획에서 대폐차된 차량 수를 고려하여 대폐차 수요도 산정

[표4-22] 경상남도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차량교체 계획('2017~'2021)

시군	연도별 특별교통수단 교체계획						비고 (평균주행거리)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275	12	59	84	68	52	271,707km
창원시	90	10	20	20	20	20	354,583km
진주시	26		13	12	1		200,000km
통영시	20	1	3	6	10		290,754km
사천시	9		4	4	1		400,000km
김해시	49		12	17	9	11	300,000km
밀양시	20			7	6	7	355,603km
거제시	18		7	5	6		379,642km
양산시	15			7	5	3	45,6401km
의령군	4				2	2	304.961km
함안군	0						
창녕군	5			2	3		253,785km
고성군	1	1					105,716km
남해군	2					2	209,821km
하동군	3					3	
산청군	3			1	1	1	149,441km
함양군	2			1	1		106,559km
거창군	3				3		208,339km
합천군	5			2		3	

※자료: 경상남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경상남도, 2018.05)

- 2017년 특별교통수단의 보유대수는 324대이며 이 중 275대의 교체가 계획되어 내용년수 미도래 차량은 49대로 향후 계획기간 대폐차 차량의 수는 전차 미교체 차량 49대와 2017년 도입되어 2026년 내용년수가 도래하는 12대, 합계 61대임

[표4-23] 경상남도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차량 대폐차 계획('2022~'2026)

시군	연도별 특별교통수단 대폐차대수						비고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61	11	12	12	14	12	
창원시	20	2	2	3	3	10	
진주시	0						
통영시	1					1	
사천시	0						
김해시	1	1					
밀양시	0						
거제시	8		2	3	3		
양산시	10	2	2	3	3		
의령군	0						
함안군	6	2	2	1	1		
창녕군	0						
고성군	5		1	1	2	1	
남해군	5	1	1	1	2		
하동군	2	1	1				
산청군	1	1					
함양군	2	1	1				
거창군	0						
합천군	0						

- 인구 10만명 이하 지자체 의 중증 장애인 100명당 1대 산정, 특별교통수단 부족분 도입을 위해 제4차 계획기간 55 및 대폐차 수요 61대를 포함하여 116대를 산정함

[표4-24] 경상남도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 계획('2022~'2026)

(단위:명,대,%)

구분	현행 특별교통수단				제4차 계획기간 추가도입						합 계		
	법정대수 산정 장애인	법정 기준 대수	운영 대수	보급률 (%)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법정 대수	대수	보급률 (%)
경남 전체	50,211	344	369	107.3	116	11	20	27	28	30	351	424	120.8
창원시	13,319	89	107	120.2	20	2	2	3	3	10	91	107	117.6
진주시	5,073	34	34	100	1	-	-	-	-	1	35	35	100.0
통영시	2,054	14	20	142.9	1	-	-	-	-	1	14	20	142.9
사천시	2,008	14	10	71.4	4	-	1	1	1	1	14	14	100.0
김해시	6,863	46	50	108.7	1	1	-	-	-	-	47	50	106.4
밀양시	2,206	15	20	133.3	0	-	-	-	-	-	16	20	125.0
거제시	3,159	22	29	131.8	8	-	2	3	3	-	22	29	131.8
양산시	4,448	30	30	100	11	2	2	3	3	1	31	31	100.0
의령군	764	6	4	66.7	4	-	1	1	1	1	8	8	100.0
함안군	1,308	9	8	88.9	12	2	2	2	3	3	14	14	100.0
창녕군	1,266	9	6	66.7	7	-	1	2	2	2	13	13	100.0
고성군	1,201	9	7	77.8	11	-	2	3	3	3	13	13	100.0
남해군	1,054	8	7	87.5	9	1	2	2	3	1	11	11	100.0
하동군	1,217	9	7	77.8	8	1	1	2	2	2	13	13	100.0
산청군	978	7	7	100	4	1	1	1	1	-	10	10	100.0
함양군	889	6	6	100	6	1	1	2	1	1	10	10	100.0
거창군	1,209	9	9	100	4	-	1	1	1	1	13	13	100.0
합천군	1,195	8	8	100	5	-	1	1	1	2	13	13	100.0

3. 바우처택시 도입확대

가. 바우처택시 도입 확대 및 임차 택시 도입

1) 경상남도 바우처택시 및 대체수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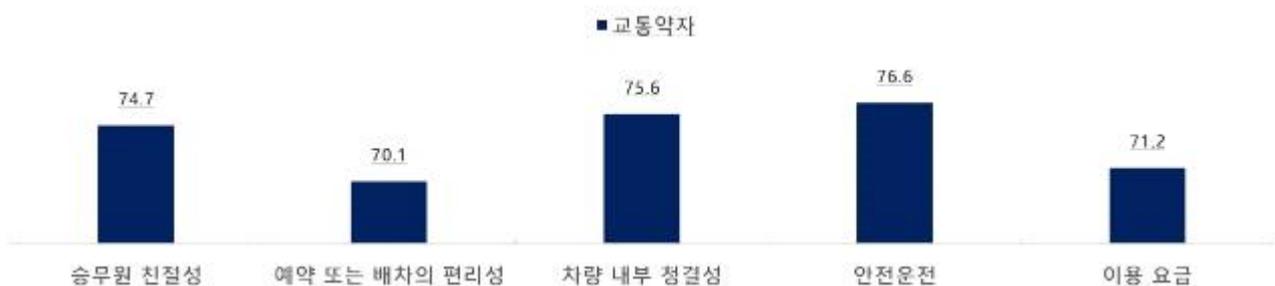
[표4-25] 경상남도 시군별 바우처택시 및 대체수단 현황(2022년 12월 기준)

구분	바우처택시 및 대체수단 (대)				
	소계	임차 택시	바우처 택시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차량	기타
경남소계	316	-	305	5	6
창원시	-	-	145	-	-
진주시	-	-	50	-	-
통영시	-	-	51	-	-
사천시	4	-	-	1	3
김해시	30	-	59	-	-
밀양시	1	-	-	1	-
거제시	2	-	-	1	1
양산시	-	-	-	-	-
의령군	2	-	-	-	2
함안군	-	-	-	-	-
창녕군	-	-	-	-	-
고성군	-	-	-	-	-
남해군	-	-	-	-	-
하동군	-	-	-	-	-
산청군	-	-	-	-	-
함양군	-	-	-	-	-
거창군	-	-	-	-	-
합천군	2	-	-	2	-

※자료: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내부자료 (2022.12)

2) 필요성

- 도내 특별교통수단 369대(2021년 기준)는 모두 휠체어 탑승 차량으로써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와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가 함께 이용함에 따라 운용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국토부), “예약 또는 배차의 편의성”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그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만족도

-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시각장애인 등)를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가 없는 수단(바우처택시, 임차택시 등)을 확대하여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 필요함

3) 추진방안

- 경상남도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145대를 운영 중인 창원시 사례를 참고로 시·군에서 사업 추진 (바우처 택시 및 임차 택시 등)
-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에게는 대체수단 배정
-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차량 배정시 휠체어 및 비휠체어 구분하여 배정

4) 창원시 운영사례

- 창원시는 2022년부터 택시 일부(145대)를 바우처 방식의 장애인 콜택시로 운영
 -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
 - 부과된 택시요금에 대해 교통약자 본인부담 1,500원
 - 결제방식은 카드, 현금, 후불교통카드 모두 가능

- 이용요금 보전 상한제 시행
 - 매월 보전해 주는 시 지원금의 한도를 일정 금액, 20만원으로 정함
 - 지원금의 한도 없이 횟수만 월 몇 차례로 제한할 경우 일부 교통약자의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
 - 개인별 바우처 콜 지원 금액 제한 방식

- 도입효과
 - 대체수단 도입에 의한 교통약자들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분산
 - 특별교통수단 만족도 제고 및 이동권 증대

II. 물리적 장애를 없는 환경 조성

1. 보행환경 개선

가. 경상남도 보행환경 현황

[표4-26] 경상남도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설치 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보도	유효폭	유효폭 2m이상 확보(1.5m미만인 경우 1.5m×1.5m이상 교행구간 설치)	110	88	80.0	17	15.5	5	4.5
	재질 및 마감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110	104	94.5	4	3.6	2	1.8
	덮개	덮개설치 및 보도높이와 같고 덮개 구멍 혹은 틈새가 1cm이하	110	106	96.4	2	1.8	2	1.8
	기울기	진행방향 1/18, 좌우 1/250이하(지형상 1/12까지 완화)	110	98	89.1	9	8.2	3	2.7
	높이차이 제거	진행 방향상 높이차이는 2cm이하 (2005/12/30 이전 허가신청건축물은 높이차이 3cm이하)	110	91	82.7	14	12.7	5	4.5
	보행안전지대	바닥면 높이 2.1m이하는 장애물 없는 보행안전지대 설치	110	106	96.4	2	1.8	2	1.8
	차도분리	연석 높이 25cm이하 설치	110	88	80.0	20	18.2	2	1.8
	장애물 구역 확보	가로등, 전주, 간판등 설치시 보행안전지대 밖에 설치	110	99	90.0	0	0.0	11	10.0
	가로수 가지 높이	보행안전지대 안으로 가지가 뻗은 가로수는 2.5m높이까지 가지치기	110	100	90.9	7	6.4	3	2.7
차량 진출입부	보도 평균		-	-	88.9	-	7.6	-	3.5
	설치방법	보도높이 유지 및 차도의 경계부분 턱낮추기 설치	29	1	3.4	13	44.8	15	51.7
	재질 및 색상	색상 및 질감을 달리 설치	29	1	3.4	13	44.8	15	51.7
차량 진출입부 평균		-	-	3.4	-	44.8	-	51.7	
턱낮추기	경계구간 높이차이	보도와 차도 높이차이는 2cm이하로 설치	59	47	79.7	9	15.3	3	5.1
	연석경사로	경사로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0이하, 옆면기울기 1/100이하로 설치	59	47	79.7	11	18.6	1	1.7
	턱낮추기 평균		-	-	79.7	-	16.9	-	3.4
점자블록	횡단보도 위치안내	횡단보도폭 만큼 점형블록 설치, 유도부분은 보도의 폭 4/5까지 선형블록 설치	59	42	71.2	6	10.2	11	18.6
	일시대기용 안전지대	횡단보도의 안전지대쪽 점형블록설치, 유도부분은 선형블록설치	14	7	50.0	3	21.4	4	28.6
	음향신호기 점형블록	수동식 음향신호기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16	0	0.0	0	0.0	16	100.0
	점자블록 평균		-	-	40.4	-	10.5	-	49.1
지하도 및 육교	손잡이 설치방법	계단의 양측면에 손잡이 설치	2	2	100.0	0	0.0	0	0.0
	점형블록	계단 시작과 끝지점 전면 0.3m에 점형블록설치	2	2	100.0	0	0.0	0	0.0
	손잡이 높이	0.8~0.9m높이에 연속적으로 설치 (2중설치시 위쪽 0.85m내외, 아래쪽 0.65m 안팎)	2	2	100.0	0	0.0	0	0.0
	손잡이 굵기	손잡이 지름 3.2cm~3.8cm로 연속적으로 설치	2	2	100.0	0	0.0	0	0.0
	손잡이와 벽간격	간격 5cm내외	2	2	100.0	0	0.0	0	0.0
	손잡이 점자표지판	손잡이 끝 점자표지판 부착	2	2	100.0	0	0.0	0	0.0
	지하도 및 육교 평균		-	-	100.0	-	0.0	-	0.0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노상주차장)	설치비율	20~50대 : 1면, (50대이상 2%~4%이내 조례지정)	2	0	0.0	2	100.0	0	0.0
	주차공간	폭 3.3m이상, 길이 5m이상(평행주차 폭 2m, 길이 6m이상)	2	2	100.0	0	0.0	0	0.0
	바닥마감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평탄하게 마감	2	0	0.0	2	100.0	0	0.0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설치	2	0	0.0	2	100.0	0	0.0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노상주차장) 평균		-	-	25.0	-	75.0	-	0.0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음향신호기 안내방법	음성안내 및 균일한 신호음 작동	59	23	39.0	0	0.0	36	61.0
	음향신호기 설치위치	횡단보도로부터 1m이내, 높이 1.0m~1.2m위치설치	16	16	100.0	0	0.0	0	0.0
	잔여시간 표시기	가셔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우선구역의 횡단보도에 설치	13	9	69.2	0	0.0	4	30.8
자동차 진입제어용 말뚝 (볼라드)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평균		-	-	69.4	-	0.0	-	30.6
	설치형태	높이 80~100cm내외, 지름 10~20cm내외로 설치	17	15	88.2	2	11.8	0	0.0
	설치간격	1.5m 내외 간격으로 설치	17	17	100.0	0	0.0	0	0.0
	점형블록	0.3m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17	0	0.0	2	11.8	15	88.2
	자동차 진입제어용 말뚝(볼라드) 평균		-	-	62.7	-	7.8	-	29.4
경상남도 평균		-	-	58.7	-	20.3	-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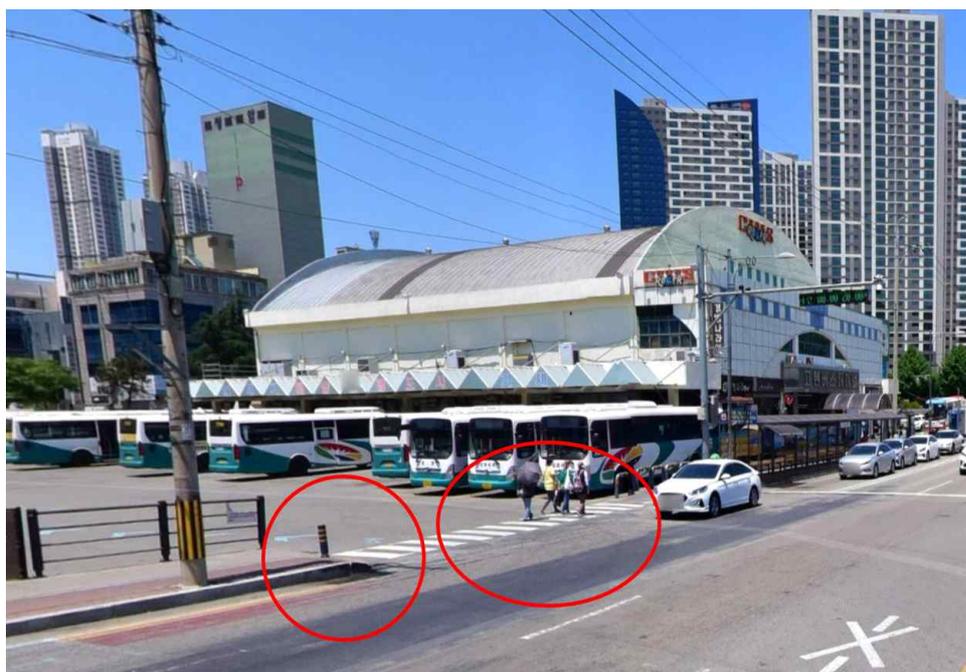
[표4-27] 보행환경의 지역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준 사례수	389	103	30	47	26	26	16	14	240	87	42	67	50	67	84	91	15
평균	87.7	81.4	86.2	82.1	75.7	78.0	72.0	72.8	75.6	63.6	72.0	65.0	59.8	63.4	69.8	58.7	86.2
보도	98.6	91.4	95.2	98.2	91.9	85.0	91.0	93.7	94.0	87.4	88.4	94.0	88.1	91.6	89.3	88.9	97.8
차량진출입부	91.0	68.4	88.9	72.2	100.0	75.0	35.7	100.0	66.1	49.1	85.7	46.9	22.7	62.1	61.1	3.4	-
턱낮추기	96.4	97.5	100.0	93.9	78.6	98.0	100.0	100.0	90.4	86.3	95.3	99.1	84.7	86.7	94.7	79.7	100.0
점자블록	78.6	65.1	87.2	78.9	61.4	54.9	30.0	42.9	57.1	34.2	46.9	25.0	23.5	37.0	56.2	40.4	66.7
지하도 및 육교	-	83.3	-	-	77.1	-	-	-	79.	275.0	-	75.0	-	58.3	-	100.0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노상주차장)	-	-	-	-	-	-	-	-	87.5	-	-	-	-	-	50.0	25.0	-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표시기								0.0					60.3	76.4	69.4	100.0	
자동차진입제어말뚝(블라드)	75.8	84.3	94.0	77.8	71.1	100.0	86.7	100.0	63.1	49.3	49.2	54.8	64.6	47.9	61.1	62.7	66.7



나. 경상남도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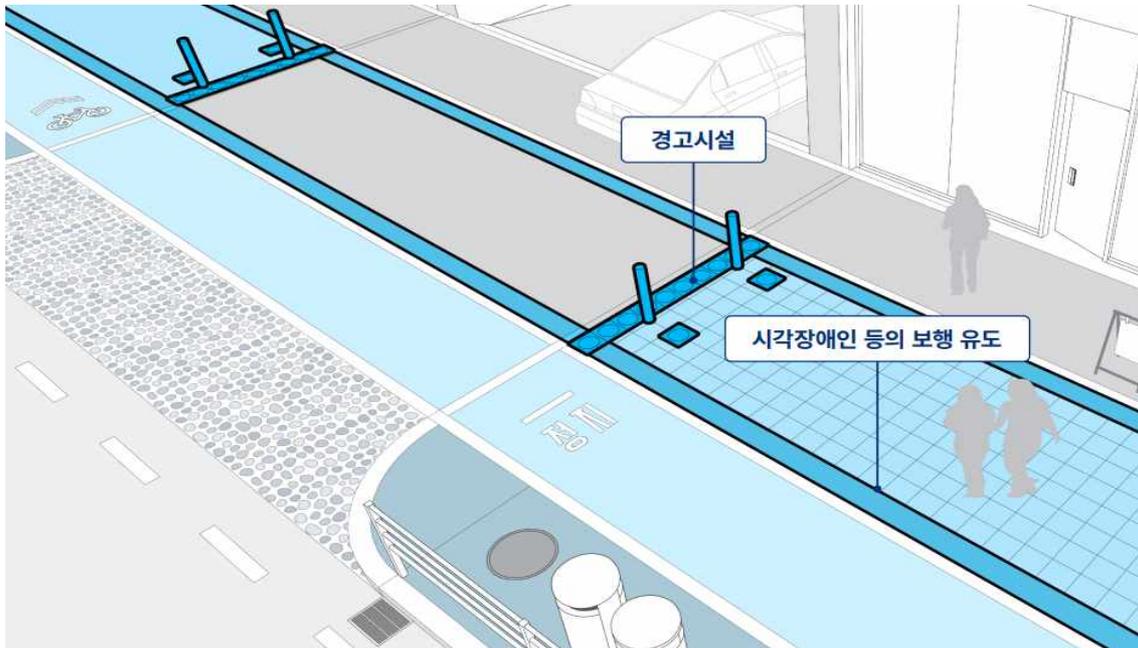
- 경상남도의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2016년 56.7%에서 2021년 57.8%로 2.0%p가 증가하였으나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여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의 개선을 통해 설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차량진출입부, 점자블록 설치, 노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음향신호기 등에서 낮은 설치율을 보여 개선이 시급
- 국토부의 2021년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에서의 조사 대상은 여객시설 및 도시철도 역사 시설 인근 150m 이내의 버스정류장 및 노상주차장까지의 보행환경을 조사한 결과임
- 휠체어이용자, 보행이 불편한 고령자 및 유모차 이용자 등의 경우 일반인이 쉽게 갈 수 있는 약간의 높은 턱이 있는 보도에서도 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음 → 교통약자에 적합한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함
- 현재 보도에는 교통약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보도 내 불법적치물, 단차가 큰 보도 폭이 넓어 바퀴가 빠지는 배수로의 빗물받이 등의 환경이 있는 실정임 - 지속적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구축 필요



[그림] 거제시 고현터미널(진출입로, 점자블록 미비 등 보행환경 열악)

다. 여객버스터미널 차량진출입부 환경개선

-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여 100점 만점에 3.4점으로 평가받아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며 여객시설 및 도시철도 역사 주위의 정비가 시급함
- 타 광역시 및 광역도의 평균값은 68.3점으로 경상남도의 3.4점과 큰 차이가 나며 설치율이 0에 가까운 결과로써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
- 차로의 횡단 구역, 보행자와 차량이 교차되는 보도 상의 차량 진출입 구역은 안전하고 연속적인 보행이 되도록 계획하고 보행자의 차로 횡단 구역에서는 차로의 수,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의 형태와 구조를 계획함
- 보행안전공간과 차량진출입구 경계의 전후에는 재질, 색상 등을 달리하여 주의·경고 표시를 하며, 보도는 단절 없이 연속되도록 계획
- 차로에서 차량진입구역 방향으로 단차 발생 시에는 시설물 구역 또는 건축물의 대지 내에서 경사 처리한다. 이때, 보행안전공간의 횡단 경사는 1/50 이하로 유지되도록 함
- 차량진출입구 경계에는 시각장애인 및 인지 능력이 낮은 보행자를 고려하여 주의·경고 표시 시설을 설치하며, 차량진출입구 전후에는 차량 속도 저감을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
- 차량 진출입 구역은 바닥 재료·마감을 주변과 달리하여 차량 진입 구역임을 보행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2대의 동시 진출입 등 차량 진출입 구간이 길게 형성되어 보행안전공간의 연속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횡단보도 형태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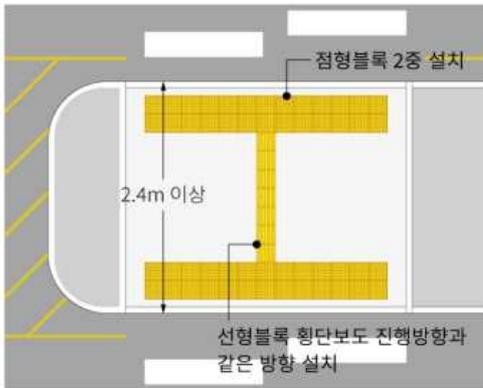
[그림] 차량진출입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라. 횡단보도 점자블록 및 음향신호기 설치

- 차량횡단보도 대기공간과 차도의 경계 등에는 시각장애인 등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과 횡단 대기를 위한 경고 및 안전시설을 설치
- 시각장애이용 경고 및 안내시설
 - 횡단보도 대기공간과 차도의 경계에 횡단보도의 폭만큼 시각장애이용 경고 및 안내시설(점자블록 등)을 설치
 - 기존 보도 상에 선형 유도블록이 설치된 경우에는 횡단보도 내 점자블록을 연계하여 설치
 - 교통신호기 설치 시에는 시각장애이용 음성·음향 신호기와 기호 또는 숫자로 잔여 횡단 시간이 표시되는 보행자용 교통 신호기를 설치
 - 시각장애인 음향 신호기, 보행자 조작 신호기 등의 조작 버튼 전면 0.3m에 점자블록을 설치

보행성 점자블록 설치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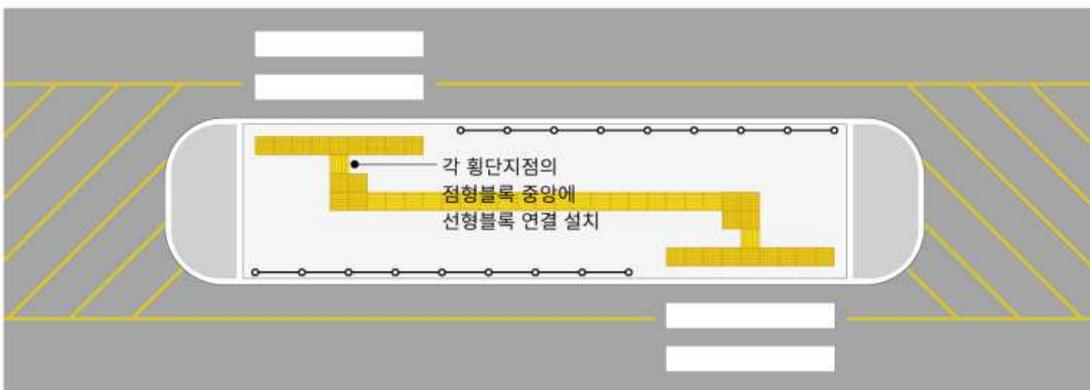
- 폭 2.4m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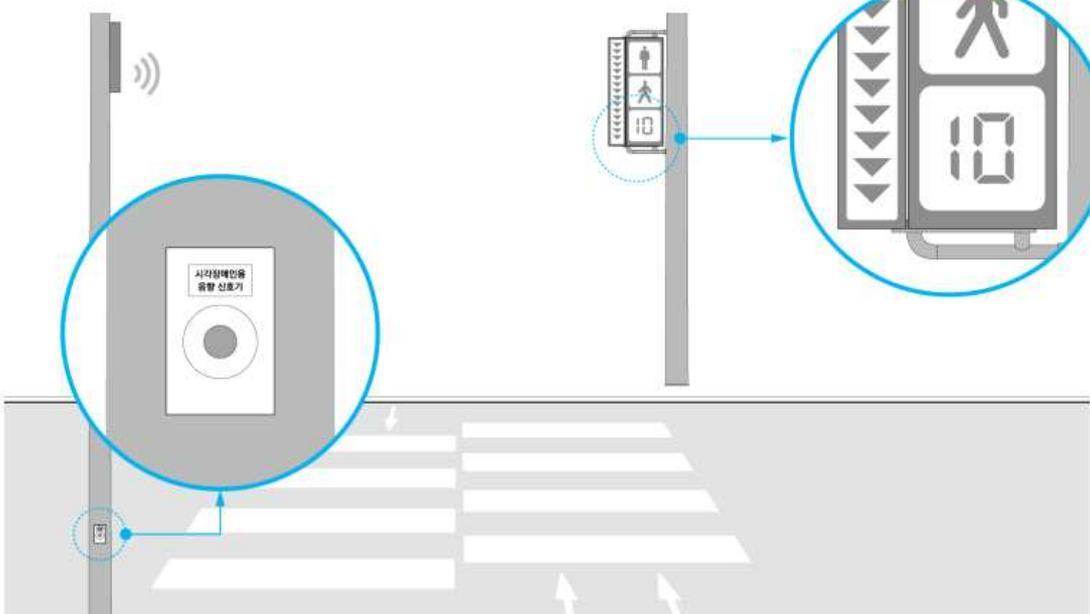
- 폭 2.4m 미만



- 횡단보도가 일직선상에 있지 않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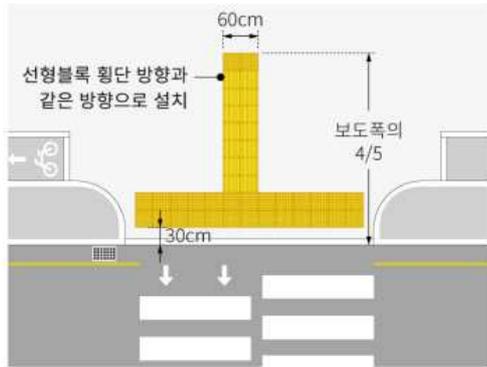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및 교통신호기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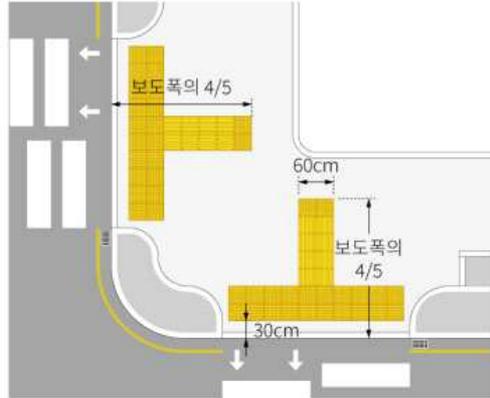
[그림] 점자블록 및 음향신호기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횡단보도 점자블록 설치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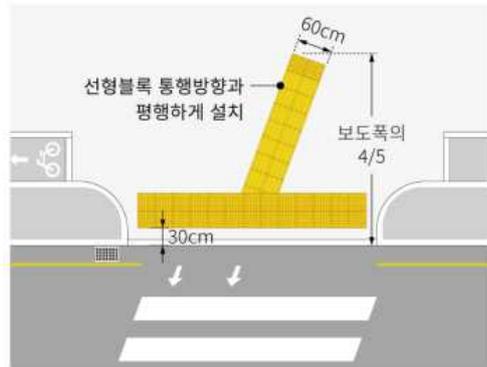
- 기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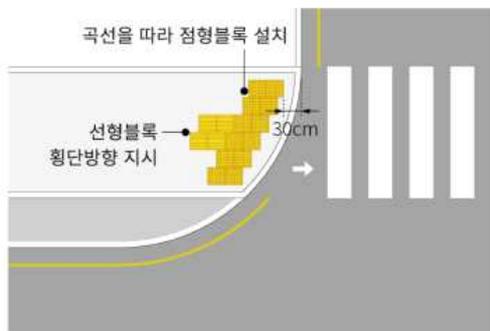
- 두 방향으로 횡단이 가능한 경우



- 횡단방향과 연석이 직각이 아닌 경우



- 연석이 곡선부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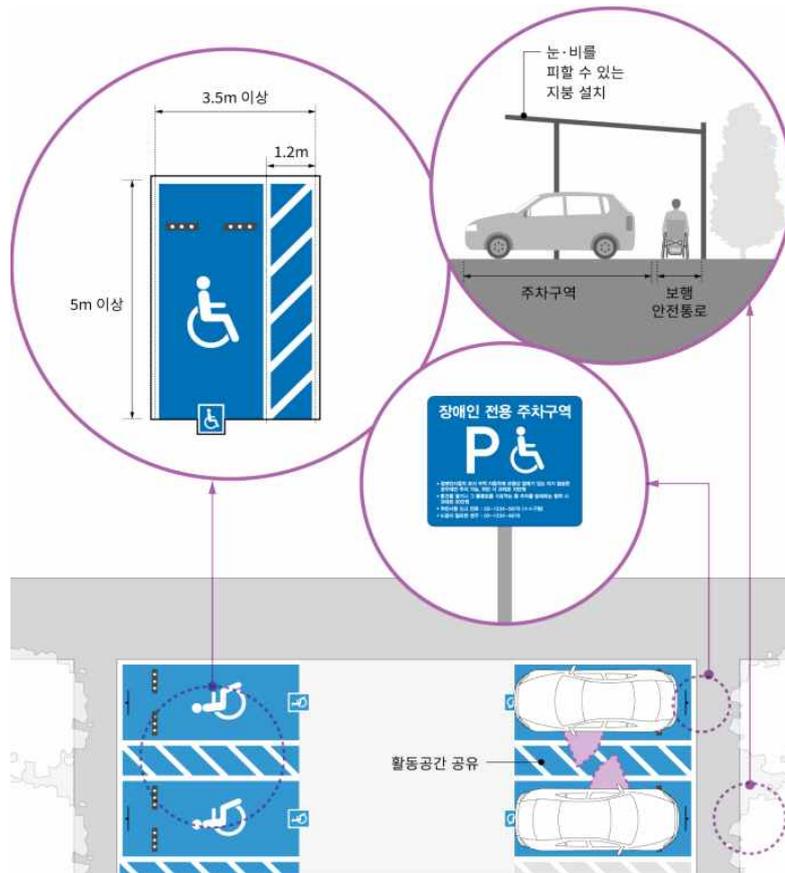
[그림] 횡단보도 점형/선형 블록 설치에

마. 장애인 주차구역 개선

- 주차구역은 법규정의 설치 비율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설의 출입구가 분산되어 있거나 하나의 주차장에 시설 출입구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분산하여 1면 이상 설치.
 - 전기차 충전기 이용을 고려하여, 전기차 충전소 중 1면 이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조성하고 충전기 전후 1.2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 주차구역을 2면 이상 설치할 경우 연속하여 인접 설치하여 활동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폭 3.5m, 길이 5.0m 이상, 휠체어 활동공간 1.2m 이상에 색상 등으로 노면을 표시하고 주차구역 바닥은 단차 없이 평탄하게 마

감하며, 기울기는 종·횡단 1/50 이하로 함

- 주차구역에는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리자 호출·도움 벨 설치를 권장하고 주차구역 바닥 및 입식 안내 표시기준은 관련 법규정을 준수



[그림] 장애인 주차구역 표기 및 안내판 규격

바. 추진방안

- 보행환경 개선지구 및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사업 대상으로 추진하여 매년 2개소 이상 사업을 추진함
 - 대상 지역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 교통약자 보행 다발지역, 보행량이 많은 여객시설 및 도시철도 역사 인근지역
- 추진체계 : 경상남도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도로·보행환경 개선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고 시·군에서 사업을 수행함

사.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1) 필요성

-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정한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관 등 노인·장애인시설, 경로당, 양로원 등 보호시설의 신청을 받아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운영하는 생활보호구역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라 함
- 현재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1,625개 구역, 노인보호구역 104개 구역, 장애인보호구역 1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사회복지관 등 노인·장애인 통합 시설의 경우 대부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양산시 무궁애학원 1곳으로 파악됨 (정부 공공데이터포털, <http://data.go.kr>)



[그림]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창원시 사림동 장애인종합복지관 앞

2) 추진방안

- 어린이, 노인에 비해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은 매우 낮은 편이며 휠체어 등의 보조기구 이용으로 이동권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의 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해 시·군 지자체에서 교통약자 대상시설 파악 후 특성에 맞도록 지정 또는 신청
- 상대적으로 지정률이 낮은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자체별 1개소 이상 시범사업으로 구역 지정 후 효과 분석 및 지정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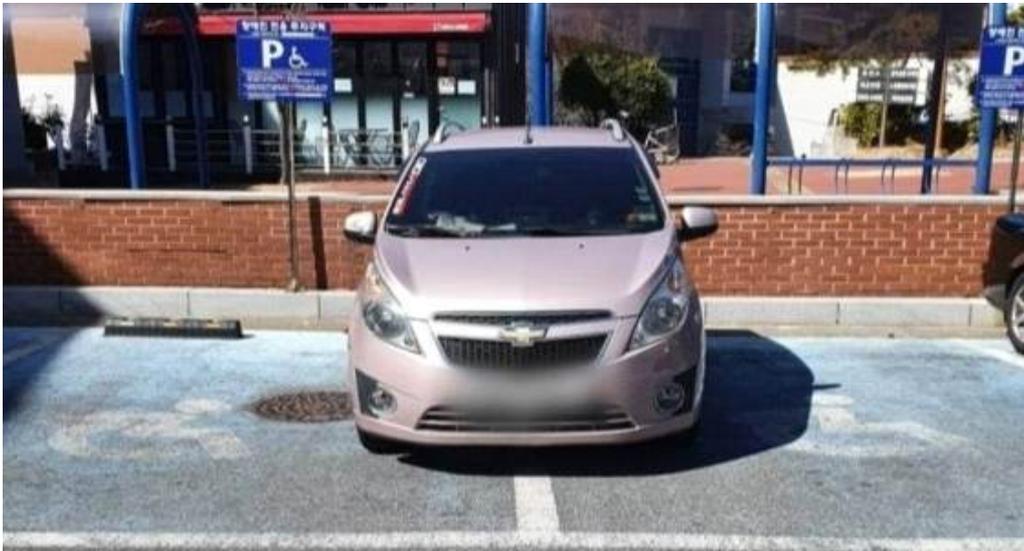


[그림]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된 양산시 물금읍 무궁애학원 앞

아.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개선 (승용차 주차구역)

1) 필요성

-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경우, 승용차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나 법적 기준을 충족하려고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만들어는 냈지만 옆 칸과 너무 붙어 있어 휠체어를 내릴 수가 없는 곳도 있고 일반 차량의 불법 주차로 이용할 수 없는 등 문제가 있음
- 일부 승용차 주차구역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우고 일반차량을 주차하게 하는 등의 관리가 부실하여 장애인 및 교통약자가 주차장 이용시 애로가 많음



[그림] 창원시 진해구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그림] 진주시 고려병원, 장애인 주차구역을 지우고 일반차량 주차 가능하게 변경

2) 추진방안

-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경우, 승용차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나 법적 기준을 충족하려고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만들어는 냈지만 옆 칸과 너무 붙어 있어 휠체어를 내릴 수가 없는 곳도 있고 일반 차량의 불법 주차로 이용할 수 없는 등 문제가 있음
- 일부 승용차 주차구역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우고 일반차량을 주차하게 하는 등의 관리가 부실하여 장애인 및 교통약자가 주차장 이용시 애로가 많음

2. 이동편의시설 개선

가.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목표

1) 경상남도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현황

[표4-28] 경상남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대상시설		제3차계획 '21년 목표		실적('21년)	달성률	
		국토부	경상남도		국토부	경상남도
교통수단	일반버스	79.0%	61.5%	66.0%	83.5%	107.3%
	저상버스	90.0%	90.0%	88.1%	97.9%	97.9%
	도시철도	90.0%	90.0%	93.1%	103.4%	103.4%
	철도	90.0%	-	-	-	-
	항공기	90.0%	-	-	-	-
	여객선	50.0%	50.0%	27.3%	54.6%	54.6%
	교통수단 평균	80.2%	72.9%	68.6%	85.6%	94.2%
여객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73.0%	64.2%	64.9%	88.9%	101.1%
	도시철도역사	90.0%	90.0%	89.4%	99.3%	99.3%
	철도역사	90.0%	90.0%	82.3%	91.4%	91.4%
	공항터미널	90.0%	90.0%	88.5%	98.3%	98.3%
	여객선터미널	79.0%	54.0%	68.9%	87.2%	127.6%
	버스정류장	57.0%	51.0%	27.8%	48.8%	54.5%
	여객시설 평균	79.8%	73.2%	70.3%	88.1%	96.0%
도로(보행환경)		81.0%	52.7%	58.7%	72.5%	111.4%
전체평균		80.1%	71.2%	68.6%	85.7%	96.4%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연구(국토부, 2016.12), 제3차 경상남도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경상남도, 2018.4)

-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 목표 달성률 전체 평균은 제3차 계획 국토부 기준 85.7%이고 경상남도 제3차 계획 기준 96.4%로 나타나 국토부 기준에는 못 미치나 경상남도의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지원 계획의 목표에는 근접한

것으로 나타남

2) 경상남도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목표

[표4-29] 경상남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목표

대상시설		경상남도 실적('21년)	제4차계획 '26년 목표
교통수단	일반버스	66.0%	96.0%
	저상버스	88.1%	96.0%
	도시철도	93.1%	98.0%
	철도	-	-
	항공기	-	-
	여객선	27.3%	52.0%
	교통수단 평균	68.6%	88.5%
여객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64.9%	73.0%
	도시철도역사	89.4%	93.0%
	철도역사	82.3%	90.0%
	공항터미널	88.5%	92.0%
	여객선터미널	68.9%	92.0%
	버스정류장	27.8%	73.0%
	여객시설 평균	70.3%	85.5%
도로(보행 환경)		58.7%	73.0%
전체 평균		68.6%	85.9%

- 본 계획의 비전인 전국 9개 도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의 교통복지 문화 정착을 위해 국가계획에서 도 지역에 제시하는 목표값을 설정함

나. 교통수단 환경개선

1) 버스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개선

(1) 필요성

- 2021년 기준 경상남도 일반버스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66.0%로 제3차 국가계획의 기준적합 설치율 목표 79.0%에 비해 13.0%p가 낮았음
-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중 농어촌버스의 기준적합률이 55.7로 가장 낮았으며 마을버스는 71.8, 시내버스는 79.0으로 나타남
- 자동안내시설의 방송언어를 국어와 영어의 2개 국어로 방송되지 않는 미적합률과 전자문자 안내판의 미설치, 목적지 표시 설치위치 미적합률, 교통약자용 좌석의 비율(1/3 이상) 미준수 및 미설치가 낮은 평가를 받음

(2) 추진방안

- 경상남도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개선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고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함
- 전자문자안내판 및 자동안내시설 설치
 - 전자문자안내판은 버스 탑승객이 어느 위치에서든 도착정류장의 이름, 행선지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버스 안의 윗부분 또는 중간문 부근에 설치하여야 함
 - 문자와 기호는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두터운 글씨체로 하며, 바탕색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색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바탕색과 문자의 대비 정도는 버스 차량 내의 내부 조도를 고려하여야 함

- 교통수단 이용자 범주가 외국인을 포함하므로 외국인을 위한 영어 음성 및 전자문자 안내가 제공되어야 함



[그림] 전자문자안내판(한글 및 영문) 설치 예시

■ 교통약자용 좌석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교통약자전용구역의 시설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교통약자전용구역의 좌석은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와 재질로 설치하고 색상은 일반좌석과 구분하여야 함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에서는 교통약자용 좌석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지정하되, 전체 좌석의 1/3 이상의 좌석을 교통약자용으로 지정해야 하며, 교통약자용 좌석 옆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거나 노란색과 같이 시인성이 높은 색상의 좌석커버를 이용하도록 함
- 교통약자용 좌석의 정차신호 스위치는 옆 창문 바로 아래 부분에 위치하도록 해야 함. 또한, 어린이 등을 위해서 바닥에서 1.2m 정도의 높이에 스위치(수직손잡이 등을 활용)를 추가로 설치하면 편리함



[그림] 교통약자용 좌석 설치 예시(의자커버 표기, 안내판 부착, 손잡이 설치)

■ 목적지표시 및 승강구

- 차량의 전면, 측면 및 후면에 행선지 정보 제공은 야간시의 용이한 식별을 위해 간판식 보다는 가능한 한 LED식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LED식 목적지 표시는 직사광선 하에서도 확실히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2021년 기준 경상남도 버스정류장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27.8%로 제3차 국가계획의 기준적합 설치율 목표 57.0%에 비해 29.2%p가 낮아 매우 저조함



보도와 차도의 높이 기준 미달



휠체어 진출입 및 회전불가



휠체어와 시각장애인의 동선분리 미흡



보도 부재로 인한 도로 노출

[그림] 도내 버스정류장 실태

-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전국 광역지자체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특

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판 점자 및 음성안내는 4.3으로 충남과 함께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음

[표4-30] 전국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준 사례수	378	103	27	46	24	25	16	15	222	85	41	65	50	64	81	89	15
평균	59.0	50.6	54.9	52.4	58.2	60.3	58.1	47.6	37.0	36.6	31.4	34.2	30.5	29.4	41.8	27.8	49.1
턱낮추기	92.9	91.3	44.4	82.6	87.5	80.0	93.8	100.0	29.7	42.4	43.9	52.3	36.0	20.3	54.3	33.7	46.7
활동공간	72.0	90.3	66.7	82.6	95.8	80.0	87.5	0.0	65.3	65.1	36.6	60.0	51.0	45.3	64.2	41.6	73.3
동선분리	69.3	75.7	85.2	93.5	91.7	4.0	87.5	0.0	31.1	43.5	19.5	38.5	46.0	29.7	60.5	31.5	40.0
점형블록	64.3	41.7	66.7	13.0	16.7	40.0	25.0	40.0	23.4	7.1	12.2	12.3	16.0	7.8	14.8	18.0	20.0
선형블록	57.7	29.0	72.2	13.2	13.0	50.0	7.1	-	24.8	12.5	13.3	20.5	12.0	17.2	21.2	21.6	9.1
안내판부착위치	92.5	64.9	100.0	100.0	100.0	84.0	85.7	80.0	84.5	87.9	69.2	77.1	72.7	84.2	72.7	60.9	83.3
안내판점자 및 음성안내	23.6	0.0	3.8	0.0	61.1	52.0	28.6	40.0	6.0	12.1	3.8	4.2	6.8	7.9	15.2	4.3	50.0
버스정보조회버튼	0.0	11.8	0.0	34.2	0.0	92.0	50.0	73.3	31.1	22.0	52.4	8.5	3.7	22.7	31.4	10.5	70.0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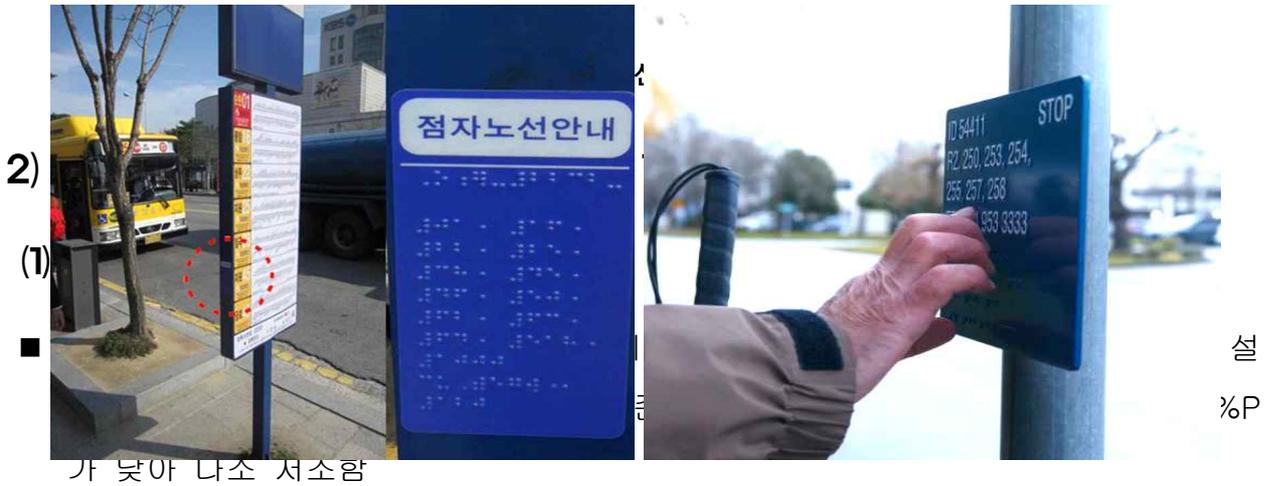
(2) 추진방안

- 경상남도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개선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고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함
- 버스정류장 신설 및 확장
 - 버스안내표지판, 방설시설 등 쉼터 정비
 - 버스안내시설 정비
 - 턱 낮추기, 선형블록, 휴게시설, 장애물 제거 등 정비
- 버스정류장 대기시설
 -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BF규정에 맞도록 15~25cm로 설치하고, 최소 유효보도

폭 1.5m 확보

-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 쉼터가 설치된 버스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판 설치하여 버스운행 정보 제공
- 버스정류장 부근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보도상 노상 적재물 및 노점상 집중 단속으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대





[표4-31] 경상남도 여객자동차터미널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매개시설	보행접근로	79.7	20.3	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64.3	21.4	14.3
내부시설	출입구	54.1	19.9	26.0
	경사로	49.0	26.0	25.0
	계단	68.8	13.0	18.2
위생시설	화장실	56.6	18.2	25.2
	대변기	58.3	30.9	10.8
	소변기	100.0	0.0	0.0
	세면대	44.0	0.8	55.2
안내시설	점자블록	64.0	19.6	16.4
	안내 및 유도시설	8.4	0.6	91.0
	경보피난시설	83.3	0.0	16.7
기타시설	매표소	39.5	0.0	60.5
	자동발매기 및 음료대	63.1	8.3	28.5
	승강장	64.2	8.3	27.5
	임산부휴게시설	7.6	3.5	88.8
	교통약자 이용정보 편의제공	0.6	0.0	99.4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내부자료(2022)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위해 경상남도 내 31개 여객자동차터미널

을 조사한 결과이며 안내 및 유도시설과 교통약자 이용정보 편의제공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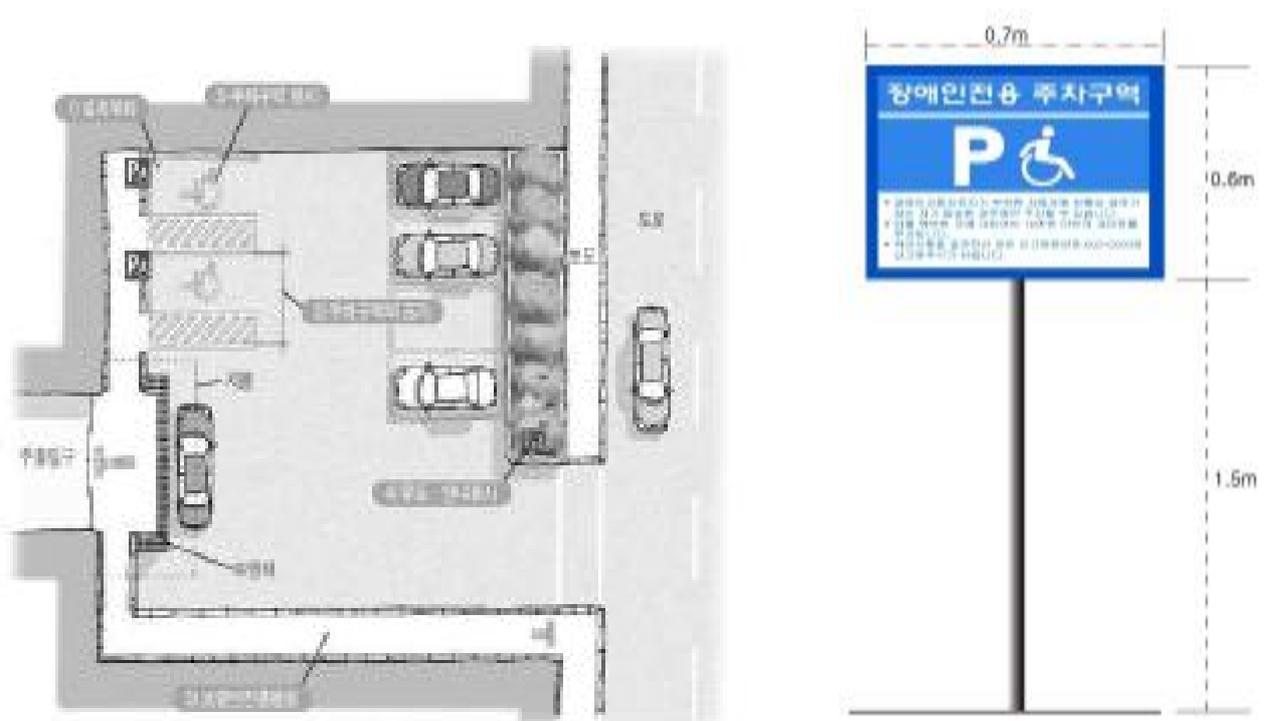
(2) 추진방안



[그림] 도내 여객자동차 터미널 실태 (점자 유도블록, 안내 및 유도시설 등 미비)

- 경상남도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개선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고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함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에는 주차장법령의 규정에 의한 설치 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구분·설치하여야 함
 - 이 경우 주차장법령의 규정에 의한 설치 비율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함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함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여객시설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通行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 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해야 함.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m 이상, 길이 6m 이상으로 해야함
-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1/50 이하로 할 수 있음
-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함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장애인의 접근가능을 나타내는 그림표지를 표시해야 하며, 주차장의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해야 함



[그림] 장애인 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예시

■ 안내표시

-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점자를 병기한 점자안내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설치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점자블록 설치 등)

- 시각장애이용 유도신호장치는 시각 및 음향, 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특수 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에는 대상 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

■ 점자블록 및 유도표시

- 점자블록은 여객시설의 주 출입구에서 매표소, 대합실,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에 설치해야 함. 다만 장애인 종합안내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설치하고 종합안내서비스를 실시할 때는 당해 장소까지만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음
- 유도표시는 반드시 벽면에 근접하도록 함. 이때 핸드레일(손잡이)로 유도를 대체할 수 있을 때는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계단으로 유도하는 접근표시는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 면 유도용 핸드레일(손잡이)이 설치되어 있는 쪽으로 설치하고, 그 시작점 손잡이에 층 표시나 진행방향을 알리는 점자표시를 하는 것으로 통일
-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형 선형블록을 사용해야 하며, 점자블록의 크기는 0.3m×0.3m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해야함
- 점형블록은 블록 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함
- 선형블록은 블록 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하고,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 평면형으로 하고 돌출선의 높이는 0.5±0.1m로 해야 함
-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할 수 있음
- 점형블록은 계단, 승강기, 화장실, 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m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

■ 경보 및 피난시설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피난설비 및 경보설비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이 정하는 바에 의함. 이 경우 비상벨설비의 주변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멸 형태의 비상 경보등을 함께 설치해야 함



[그림] 교통약자 안내시설 설치 예시(선형/점형블록, 유도 안내판, 그림/점자 안내도)

■ 대변기

- 대변기의 칸막이는 유효바닥면적이 폭 1.4m 이상, 깊이 1.8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 0.8m는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최소폭임
- 대변기의 좌측과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해야 하며, 별도의 화장실로 독립하여 설치할 때는 휠체어사용자가 양쪽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0.45m 이하로 해야 함
-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며 바닥면에서 0.6m 이상

0.7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는 것은 사람이 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손잡이를 이용하여 휠체어로 이동하는데 힘을 최대한 쓰게 하기 위함임

- 장애인전용화장실의 크기가 2m×2m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음



[그림] 위생시설 설치 예시(세면대 지지대, 소변기/대변기 지지대)

■ 장애인(교통약자) 전용화장실

- 장애인전용화장실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함
- 별도의 장애인전용화장실을 설치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일반 남·여 화장실에 각각 장애인겸용 화장실을 설치함
- 변기가 하나뿐인 소형 화장실에서는 그 자체를 장애인겸용화장실로 설치함
- 장애인전용화장실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 장애인전용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함
- 장애인전용화장실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함
- 핸드레일이나 출입구 벽면에 점자 안내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점형블록을 생략할 수 있음

- 장애인전용화장실의 출입구(문) 옆 벽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 세면대

-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과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카운터식 세면대를 제외하고는 목발 사용자 등 보행이 불편한 사용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해야 함
- 수도꼭지에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으며, 손으로 잡고 돌리지 않아도 되는 레버식 손잡이를 사용하고 전자감응식 손잡이 등 권장
- 물 온도를 조정하기 위해 수도꼭지에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는 것이 좋으며, 물의 온도 조정도 반드시 레버식 손잡이로 하도록 함
-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을 경사지게 하는 것은 휠체어사용자가 거울을 보거나 휠체어 후면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 교통약자 이용정보 편의제공

- 경상남도내 여객자동차터미널에는 한국어 수어 통역서비스(화상 수화통역), 휠체어 대여, 점자 안내책자 비치, 보청기기 대여, 공중팩스 비치 등의 서비스 제공이 미미하여 낮은 평가를 받음
- 미개선시 매년 실시되는 국토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게 됨, 조속한 개선이 필요



[그림] 청주공항, 인천공항 유아 및 임산부 휴게실(수유실, 냉온정수기, 젖병 소독기 등)

(3) 여객자동차터미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사업 공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설개선 효과가 큰 여객자동차터미널을 공모방식으로 선정(연간 약 10개소)하여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사업 실시
- 공모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전국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BF인증이 가능한 터미널, 인증기준 적용이 어려운 임시·노상정류소는 제외
- 공모신청 : 지자체에서 BF사업을 위한 사업신청서 및 공모서 제출
 - 지자체와 터미널사업자간의 사업시행 합의서 첨부(공용터미널의 경우)
- 경상남도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도로·보행환경 개선 사업계획을 수립 및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국비확보를 통하여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함
- 고성군의 고성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은 2020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BF인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보조를 받아 사업비 2억700만 원으로 2020년 12월에 본격 사업을 시행하고 설계 당시부터 장애물 없는 여객터미널 개념을 도입해 택시승강장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개조하여 재설치,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및 점자 안내판 설치, 아기 엄마들을 위한 수유실 설치 등 다양한 편의 시설물 등을 반영해 시공하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획득



[그림] 고성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점형 선형블록 설치, 유도안내판 설치, 점자안내판 설치)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효율화

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표준화

1) 9개 도 광역지자체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콜센터 예약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인터넷 예약, 모바일 예약, 홈페이지 예약 등을 복수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음
- 광역이동지원센터는 9개도 중 충청북도를 제외한 8개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만 자체적인 광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위탁 운영은 크게 공기업(공단, 공사), 운수사업자(택시, 시내버스 등), 단체(장애인협회, 이동지원센터 등)로 구분됨

[표4-32] 9개 도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자료: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부, 2022.06) 및 강원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강원도 2021.10)

(1) 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

-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는 2013년 관제시스템 구축 이후 운영되고 있음
-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영해오던 특별교통수단에 광

구분	운영방식	위탁기관	접수수단				운영 인력 (명)	
			전화	문자	홈페이지	어플		
광역센터	경기	자체	연계 시스템만 운영					
	강원	위탁	(주)케이티아이에스	○	○	○	○	16
	충북	-	-	-	-	-	-	-
	충남	위탁	(주)케이티아이에스	○	○	x	○	22
	전북	위탁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	x	○	○	26
	전남	위탁	(재)전남복지재단	○	○	x	○	23
	경북	위탁	한국교통장애인협회	○	○	○	x	18
	경남	위탁	경상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	○	○	x	○	31
제주	위탁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	○	○	95	

역기반의 이용자·차량 연계 서비스를 추가하여 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이용자와 차량을 연결하는 콜센터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음

- 2020년 기준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는 약 32만여 건의 운행실적이 있으며 이용실적에 대한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약 8.92%이며, 정선군, 태백시 등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편임. 반면, 속초시와 양양군의 이용실적은 감소추세에 있음

[표4-33] 강원도 이동지원센터 이용실적

- 강원도 18개 시·군의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용요금의 경우 큰 틀에서의 체계는 유사하나 세부적인 규정이 상호 간에 다소 상이한 것을 살펴볼 수 있음
 - 기본적으로 관내·외 이용요금 체계는 기본 1,100원/4Km, 초과시 100원 /Km의 이용요금과 대기시간 1시간 초과 시 30분당 2,000원의 대기료를 징수
- 강원도 18개 시·군의 이용요금 및 대기료의 큰 틀은 유사하나 시·군별로 세부적인 규정이 다소 상이하며, 이로 인한 불편사항 등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 18개 시·군별로 관외요금 부과시에 적용되는 기준이 상이하여 이용자 간에 혼선이 발생함

시·군별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합계	269,759	345,677	320,021	8.92
춘천시	44,431	59,939	53,458	9.69
원주시	91,756	111,169	92,846	0.59
강릉시	55,035	69,378	71,152	13.70
동해시	13,169	17,002	16,588	12.23
태백시	995	2,732	3,536	88.51
속초시	16,410	16,936	15,726	-2.11
삼척시	4,428	10,296	9,479	46.31
홍천군	12,748	16,208	15,190	9.16
횡성군	10,541	11,323	11,129	2.75
영월군	4,352	5,704	5,637	13.81
평창군	2,036	1,787	2,738	15.97
정선군	1,198	5,487	5,070	105.72
철원군	1,814	3,451	3,726	43.32
화천군	1,192	1,694	1,622	16.65
양구군	1,312	2,843	2,924	49.29
인제군	1,006	1,467	1,400	17.97
고성군	2,494	3,420	2,839	6.69
양양군	4,543	4,739	3,960	-6.64
기타	299	102	1,001	82.97

[표4-34]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요금

관내요금		관외요금		대기료
기본	초과	기본	초과	
1,100원/4km	100원/km	1,100원/4km	100원/km	1시간 초과시 2,000원/30분

[표4-35]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요금 특이사항

[표 계속]

- 강원도 18개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범위는 공통적으로 병원 이용시 강원도내 전역 이동이 가능함. 그러나 18개 시·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강원도외 지역의 이동에는 제한이 있음

시·군	권외 이용요금 특이사항	대기료 특이사항
춘천시	편도 이용시 편도요금 징수	개인용무 : 2시간 병원용무 : 3시간
원주시	편도 이용시 왕복요금 징수	개인용무 : 1시간 병원용무 : 3시간
강릉시	-	병원용무 : 4시간
동해시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초과금지	-
태백시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초과금지	-
속초시	한도 규정 없음	-
삼척시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초과금지 타지역 출발시 왕복요금(동해시 제외)	-
홍천군	한도 규정 없음	3시간 제한
시·군	권외 이용요금 특이사항	대기료 특이사항
횡성군	원주, 홍천(홍천읍, 동면)에서 호출 시 운임료 +1,500원	
영월군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초과금지 타지역 출발 시 왕복요금	
평창군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초과금지 타지역 출발 시 왕복요금	
정선군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초과금지 강원도 내 타지역 호출 시 편도요금(통행료는 왕복료 부담)	
철원군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초과금지	
화천군	택시요금의 50% 초과금지 타지역 호출 시 편도요금	
양구군	택시요금의 50% 초과금지	
인제군	-	
고성군	한도 규정 없음	
양양군	한도 규정 없음 편도예약인 경우 왕복요금 부과	

- 예를 들어, 춘천시와 원주시등의 지역에서는 강원도 전지역을 포함하여 서울, 경기 지역의 상급병원 이동이 가능한 반면, 태백시를 비롯하여 평창군, 화천군, 양구군 등은 강원도 내 병원으로의 이동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철원군의 경우에는 강원도 지역을 포함한 전국으로의 이동이 가능함

- 횡성군과 같이 개인용무 목적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불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7개 시·군에서는 강원도 전지역을 개인용무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춘천시의 경우에는 강원도 지역 외에도 서울과 경기지역으로의 개인 이용이 가능하나 횡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강원도 지역 내에서의 이동만 가능함

(2)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의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운영 중임
- 특히, 설립 당시 이용요금 및 이용대상자 등에 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운영규정을 수립하여 이용자들 간에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이용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타 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모범사례로 활용이 되고 있는 실정임
-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하여 산정되었으며, 이용요금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4-36]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요금

시·군	운영범위	관외지역 운행 후 회차여부(왕복운행)
14개 시·군 공통	관내, 관외, 전국	탑승가능(당초이용자) 1시간 무료, 추가 30분당 2,500원)

-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14개 시·군의 운영범위와 관외지역 운행 후 회차(왕복운행)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표4-37]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시·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14개 시·군 공통	<p>「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이용대상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의 정도가“심한 장애인”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보행상 장애인) 2.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3.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3)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은 2016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 각 시·군별로 운영되어 타 지역으로의 이동에 제한이 있었던 시스템을 보완하여 경기도 내 시·군을 통합한 이동지원시스템을 마련함
- 이에 따라 한 번의 접수로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해졌으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출발지 및 목적지를 지도상에서 선택하고 자주 이용하는 지점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등 편의성이 향상됨
- 운영형태 : 국토교통부의 자료에는 자체운영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예산 편성이 없어 민간위탁으로 추정됨
- 경기도의 특별교통수단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와 ‘경기도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 운영’이 있음
- 두 사업 모두 경기도 자체예산으로 시행하였으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자체 예산을 각 지자체에 지원하는 형태로 시행하였고, ‘경기도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 운영’은 자체 예산을 민간이전의 형태로 직접 지출함
- 경기도 31개 시·군의 이용요금은 각기 다른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관내의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10Km까지 약 1,200원에서 1,500원까지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추가요금의 경우에는 5Km당 100원을 적용하는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관외 요금의 경우에는 31개 시·군이 운영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금체계를 변동시켜 왔으며, 향후에는 통합화를 통해 이용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

[표4-38] 경기도 31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현황

(4)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 전라남도는 2015년부터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운영 서비스를 실시함
- ‘광역이동지원센터’설립으로 기존 교통약자의 이동상 문제였던 시·군 간 운행제한 및 요금의 해결을 시도함
- 이에 따라 2018년 현재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운영형태 : 위탁운영(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
-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이전(민간위탁금)의 형태로 2015년부터 총 19억 5천만원이 투입됨
- 전라남도의 경우 관내이용금액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으나 기준이 되는 거리는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관외 이용금액은 시외버스 요금의 1.5배를 적용하여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음

[표4-39] 전라남도 15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현황

2)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표준화 방안

제4장 경상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지원 계획

시·군	관내 요금		관외 요금
	기본요금	추가요금	
수원시	1,250원		5Km당 100원
성남시	1,500원	5Km당 100원	
의정부시	10Km까지 1,000원	1Km당 100원	광역운행 기본요금 1,000원, 추가요금 1Km당 100원
안양시	1,200원	1Km당 100원	경기도 내 100원/Km
부천시	2Km까지 1,000원	1Km당 200원	2Km까지 1,000원, 추가 1Km당 300원
광명시	1,250원		1Km당 100원
평택시	10Km까지 1,200원	5Km당 100원	
동두천시	1,000원	-	1Km당 100원
안산시	1,200원	-	10Km까지 1,200원, 이후 5Km당 100원
고양시	1,300원	5Km당 100원	-
과천시	무료	무료	무료
구리시	10Km까지 1,200원	1Km당 200원	-
남양주시	10Km 이내 1,500원	5Km당 100원	30Km 이내 2,900원 (추가요금 : 100원/5Km)
오산시	1,300원	-	1Km당 100원
시흥시	10Km까지 1,200원	5Km당 100원	관내와 동일
군포시	10Km까지 1,200원	5Km당 100원	-
의왕시	1,200원	-	5Km당 100원
하남시	10Km 1,500원	5Km당 100원	-
용인시	10Km까지 1,200원	5Km당 100원	-
파주시	1,250원	-	5Km당 100원
이천시	10Km까지 1,200원	5Km당 100원	관내와 동일
안성시	10Km까지 1,300원	3Km당 100원	3Km당 120원
김포시	1,000원		서울/인천/경기도 : 5Km당 100원
화성시	10Km까지 1,200원	5Km당 100원	-
광주시	10Km까지 1,200원	5Km당 100원	관내와 동일
양주시	10Km까지 1,200원	5Km당 100원	-
포천시	10Km까지 1,250원	5Km당 100원	1Km당 150원
여주시	10Km까지 1,300원	3Km당 100원	할증 20%
연천군	10Km까지 1,000원	Km당 200원	Km당 200원
가평군	10Km까지 1,300원	5Km당 100원	관내와 동일
양평군	10Km까지 1,500원	5Km당 100원	관내와 동일

(1) 필요성

시·군	관내요금		관외요금
	기본요금	추가요금	
목포시	660원(2Km까지)	36원(146m당)	시외버스 요금의 1.5배
여수시	700원(2Km까지)	26원(146m당)	시외버스 요금의 1.5배
순천시	660원(2Km까지)	100원(146m당)	시외버스 요금의 1.5배
나주시	900원(2Km까지)	36원(146m당)	시외버스 요금의 1.5배
광양시	700원(2Km까지)	36원(146m당)	시외버스 요금의 1.5배
담양군	1,500원(2Km까지)	55원(146m당)	시외버스 요금의 1.5배
곡성군	700원(2Km까지)	32원(146m당)	시외버스 요금의 1.5배
고흥군	1,500원(2Km까지)	70원(146m당)	시외버스 요금의 1.5배
화순군	1,500원(2Km까지)	55원(146m당)	시외버스 요금의 1.5배
장흥군	1,050원(2Km까지)	49원(146m당)	시외버스 요금의 1.5배
해남군	1,500원(2Km까지)	36원(146m당)	시외버스 요금의 1.5배
무안군	1,400원(2Km까지)	64원(146m당)	시외버스 요금의 1.5배
함평군	1,750원(2Km까지)	48원(146m당)	시외버스 요금의 1.5배
진도군	1,500원(2Km까지)	36원(146m당)	시외버스 요금의 1.5배
장성군	1,000원(2Km까지)	30원(146m당)	시외버스 요금의 1.5배

■ 경상남도 내 18개 시·군은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2015.10.29.) 상에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 관외지역 운행 후 회차 여부, 이용대상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군의 개별 조례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유사한 필요성이 제3차 계획에도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음)

- 장애인 이용자들의 광역간 이동이 원활하게 되려면 시군조례나 운영상 운행 요금, 이용시간, 이용방법, 이용대상자의 차이가 없이 시군별로 동일한 기준 이어야 하나 현재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 경상남도 18개 시군별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와 이용요금 및 요금산정 체계가 조금씩 서로 다르게 되어 있음
- 요금 : 거리에 따라 요금이 산정되는 주행거리별 요금제와 거리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요금을받는 정액제로 구분됨
- 지역별로 기본요금과 시외구간 운행에 따른 추가요금이 달라 특정 지역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타 시도와 인접한 시군은 타 시도 운행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운영방식은 모두 위탁운영으로, 시군산하 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와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지역의 택시회사에 직접 위탁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됨 경상남도의 시군별 위탁운영시 이용량이나 서비스 수준에 관계없이 고정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아무런 동기부여가 되고 있지 못함

- 운행횟수에 상관없이 운전원 급여 등 고정비용이 발생함으로써 운영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 그리고 운전원에 대한 평가 및 포상제도가 없어 운영의 효율성 제고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함
 (“경상남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2) 추진계획

- ~~이용요금 및 이용대상자 등에 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운영규정을 조례로 수립한 전라북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적정 이용권역의 설정, 이용대상자, 이용요금의 통일 등이 가능한 경상남도 조례 제정~~
- 가칭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상남도의 특별교통수단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역간 운영체계를 단일화 할 필요가 있음

(3)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경상남도내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배차접수와 배차 등에 관련된 업무
2.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정보관리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

4.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과 관련한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권고
5.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다른 시·도 및 시·군 이동지원센터와 연계 운영
7.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업무) ①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총괄하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을 위임한 시장·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의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운영 또는 지원
 3. 특별교통수단 등의 관리 및 운영 수탁기관 등(시군운영지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시군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도감독
 4. 정기 및 수시로 도지사가 시행한 시군수탁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과 결과보고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및 심사와 변동된 사항의 광역이동지원센터로의 통지
- ③ 도지사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의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위임 및 법 제16조제3항의 이동지원센터의 통합과 제1항 및 제2항의 담당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사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5조(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과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경상남도에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한다.

1. 제14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2. 제15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결정 및 변경
3. 제16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시간대별 운영세부계획 수립
4. 제17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의 결정 및 조정
5. 제18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서비스평가 세부기준 및 평가결과
6. 제19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표준 매뉴얼 및 복무규정 등
7. 제22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준수사항과 이용제한
8. 그 밖에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정책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 및 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과장
2.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상남도의회의원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장은 직권 또는 해당 위원의 신청에 따라 제척여부를 결정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가 되거나 임직원인 경우
 2. 위원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②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의 의견을 들어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 ④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12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수탁기관 선정 등) ①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는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2.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기관에게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위탁 받은 기관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⑤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 지원) 도지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시장·군수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 급수 등에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휠체어의 이용이 등록된 사람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3. 제1호 및 제2호 외 심의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사람
-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등록·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록되거나 변경된 이용대상자에 대한 통지방법 등에 대해 제4조제3항에 따른 업무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요금) 이하
- 2.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 가. 관내요금: 시·군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요금)의 2배
 - 나. 관외요금: 시·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도로통행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등) ①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은 연중 1일 24시간 무휴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지사는 시간대별 운영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②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④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①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경상남도 관내와 인접 생활권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결정 및 조정한다.

②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도지사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

④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 또는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서비스평가 등) ① 도지사는 정기 및 수시로 광역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서비스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서비스평가에 대한 결과와 시정사항에 대해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시장·군수에 통보해야 한다.

③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시정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철회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종료 및 위탁 철회 등으로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할 경우 서비스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업무협약에 서비스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처리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서비스 평가방법 및 시기, 시정방법과 절차 등 세부기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제19조(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을 고려한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표준 매뉴얼 및 복무규정 등을 위원회 심의 후 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광역이동지원센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위탁 받은 시설 등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제18조제1항의 서비스평가에 대한 개선 등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 ①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광역 및 시군포함)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표준 매뉴얼 및 복무규정 등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려는 운전자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근무하려는 사람은 제1항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교육기관은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순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의 준수사항 등) ①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용대상자 세부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예산의 확보)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효율성 제고

1)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요

-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즉 특별교통수단을 광역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곳임
- 경상남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개요
 - 경남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는 2009년 6월1일부터 운영중이며,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대중교통 수단의 접근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상남도 18개 시군 콜센터를 통합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음
 - 통합 콜센터 구축이전에는 시장, 군수 책임하에 개별 시군 지역 및 인근지역까지만 운영되었기 때문에 광역이동상의 제한이 존재하였음
 - 2009년 4월, 콜센터를 착공하여 그 해 6월1일, 창원과 김해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거친 후, 2009년 8월 1일, 8개시가 참여한 96대의 특별교통수단으로 본격적인 운영 시작
 - 2012년 상반기에 고성, 남해, 창녕, 함안 등 4개 군이 추가되었고, 하반기에 거창, 합천, 산청, 하동, 의령 등이 참여하여 모두 17개 시군으로 증가
 - 마지막으로 2013년 6월, 함양군이 2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함으로써 경상

남도 18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함

- 경상남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 이동지원센터 설립 근거(법 제16조 제2항) :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 근거
 - 1) 법 제16조 제3항 :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 설치가능
 - 2) 조례 제12조 제1항 :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이를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으로 연결시켜주는 도 단위 이동지원센터(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2)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방식

- 경상남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
 - 1) 법 제16조 제5항 :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확대 가능
 - 2) 조례 제12조 제2항 : 콜센터는 시·군 간의 경계를 넘어 편리하게 이동연계가 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연중 운영하여야 함
 -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교통약자 이동편의 증

진법 제16조 제8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이동범위 : 특별교통수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운영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시외 이동 운행 여부, 시외이동의 거리가 모두 다름

[표4-40] 경상남도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시외이동 범위

구분	시외이동 가능지역	구분	시외이동 가능지역
창원시	경상남도, 부산시	함안군	경상남도, 부산소재 대학병원 및 김해공항
진주시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대구시
통영시	경상남도, 부산시	고성군	경상남도 18개시군
사천시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부산시(의사소견서 있을 시)
김해시	경상남도, 부산시	하동군	광양, 사천, 산청, 구례, 남해, 진주시
밀양시	부산시, 울산시, 대구시	산청군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부산시	함양군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부산시, 울산시	거창군	경상남도, 대구시
의령군	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남도, 부산시, 대구시

■ 광역이동지원센터 현황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09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 건물내 2층)
- 규모 : 면적 346.5㎡(통신설비 및 상담실 등)
- 운영비 : 1,476백만원(2021년 기준, 인건비 및 운영비 포함)
- 운영 : 경상남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위탁운영
- 주요장비
 - 모든 차량의 운행 상황이 표출되는 관제시스템
 - 관제컴퓨터, 통신설비, 서버(응용/DB/통신), PBX교환기, 전자지도, 통화녹취 장비, SMS관제 컴퓨터

- 상담석 18석 및 기타 집기류
- 위탁관련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광역이동지원센터(콜센터) 운영
- 콜센터는 경상남도 통합으로 운영하므로 이용자가 콜센터에 차량 신청시, 콜센터에서는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운전원에게 배차를 요청
- GPS로 최적차량을 자동으로 선정하여 이용자에게 차량정보를, 운전원에게는 승객정보를 전송하며, 이용자 탑승시 승차보고, 하차시 하차보고가 이루어지므로 콜센터에서 차량배차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음-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영 및 관리와 민원처리는 시군별로 관리함

[표4-41]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인력 및 운영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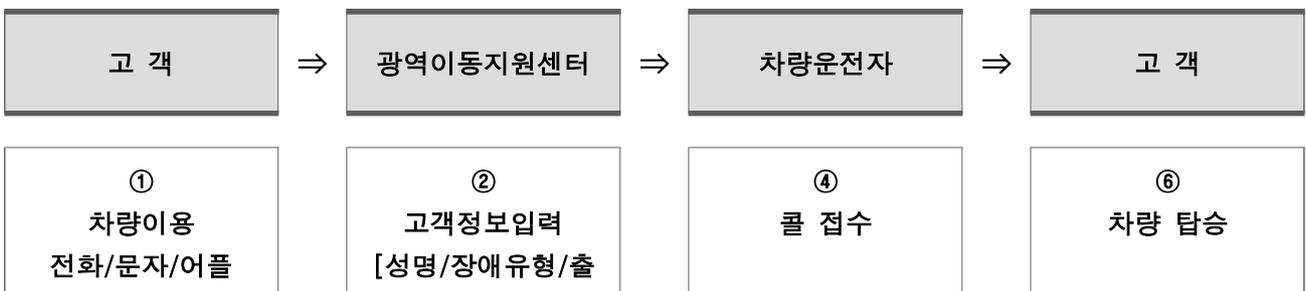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인원	센터장	1	1	1	1	1
	상담원	19	23	26	28	31
	계	20	24	27	29	32
운영비		779	993	1,356	1,439	1,476
운행대수		324	328	331	359	369

※자료: 경상남도특별교통수단콜센터 (2022.06)

■ 운영체계

[표4-42]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체계





■ 즉시 콜 및 1일전 예약제 혼용(단, 예약의 경우 당일 운행대수의 20% 내외)

3)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실적

[표4-43] 연도별 실적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575,294	601,509	648,104	578,737	654,283
창원시	185,206	192,989	204,877	187,961	201,883
진주시	54,932	57,484	64,893	55,959	67,976
통영시	29,729	31,597	40,056	39,115	41,658
사천시	13,351	13,150	12,863	11,028	11,059
김해시	89,358	91,469	89,147	72,228	78,557
밀양시	50,253	53,899	55,042	46,242	51,729
거제시	40,977	44,229	50,737	49,581	63,318
양산시	58,020	62,937	74,089	69,527	77,692
의령군	4,678	5,250	5,481	4,867	5,122
함안군	6,537	6,293	6,146	5,659	7,294
창녕군	6,571	6,606	7,053	5,292	6,645
고성군	3,784	4,312	5,197	4,355	6,292

남해군	10,845	10,708	10,695	8,208	8,106
하동군	5,978	5,119	5,207	4,676	5,866
산청군	2,628	2,223	2,592	2,003	2,733
함양군	2,354	2,187	3,108	2,830	4,156
거창군	3,209	3,045	2,810	3,446	5,820
합천군	6,884	8,012	8,111	5,760	8,377

※자료: 경상남도특별교통수단콜센터 (2022.06)

4)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효율성 제고

(1) 필요성

- 2021년 기준 특별교통수단 369대에서 제4차 계획간 424대로 증차되고 교통약자의 증가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업무효율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담원 인력의 증원이 필요
-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지원 계획이 수립중이며 계획에 따르면 차량도입비 및 운영비까지 지원 예정(2023년 7월)
- 제4차 국가계획에서 지역이동지원센터의 지역·수단간 정보연계를 통해 타광역 지자체에 별도의 이용자 등록 없이 타 지역에서의 이동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가센터를 계획, 각 도 광역지원센터 간의 정보를 연계, 활용하여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구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인력의 증원이 필요

(2) 추진방안

[표4-44] 4차 계획간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인력 및 운행대수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인원	센터장	1	1	1	1	1
	상담원	30	32	33	34	36

	계	31	33	34	35	37
운행대수		369	377	392	406	424
1인당 대수		11.9	11.4	11.5	11.6	11.5

- 특별교통수단의 증차에 따라 현재의 운행대수 당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인원 비율에 따른 증원 및 2022년 바우처 택시가 창원시 145대, 진주시 50대, 김해시 30대, 통영시 50대 합계 275대 증차되어 도내 305대 운영중이며 2023년에도 275대 바우처 택시 증차 예정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상당한 업무 부하가 예상됨에 따른 증원, 향후 바우처 택시의 증차에 따른 인력의 증원이 고려되어야 함

III. 시스템적 장애를 없는 환경 조성

1. 교통복지협의회 구성

가. 경상남도 교통복지협의회 구성(안)

1) 필요성

- 교통복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교통수단 사업자, 여객시설 사업자 등 다양하나, 협력체계 부족으로 체계적인 교통복지정책 추진 저해
- 협력체계 부재로 여객시설과 교통수단 사업자에서 서비스의 중복제공 또는 공백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 문제 발생
-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도시철도, 보도 등 담당 부서들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 정책 시행 일관성 확보 필요

2) 추진방안

-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경상남도-지역(시·군) 교통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
- 교통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가, 사업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 정보공유 및 정책 추진을 위해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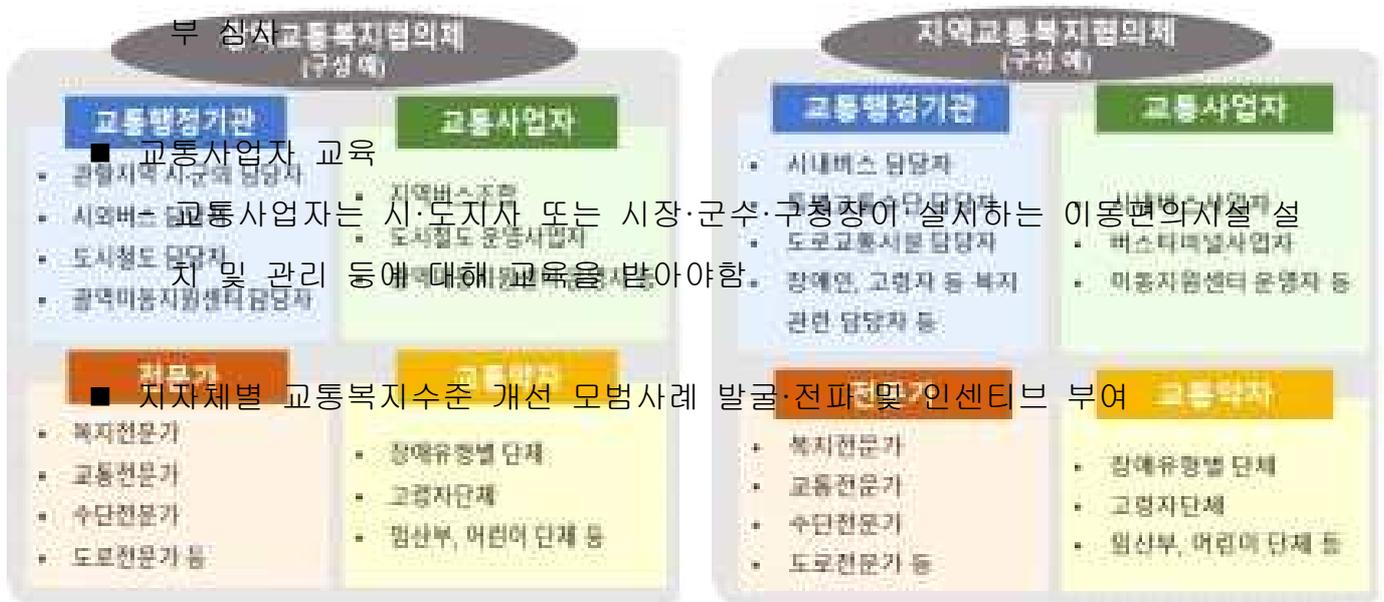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이행, 기준적합성 심사, 교통사업자 교육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 점검체계 구축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이행

- 국가·지방 증진계획의 적기 수립 및 정합성 확보, 연차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관리

- 기준적합성 심사

- 교통행정기관에서 교통수단·여객시설 면허·허가시 이동편의시설 설치 적합여부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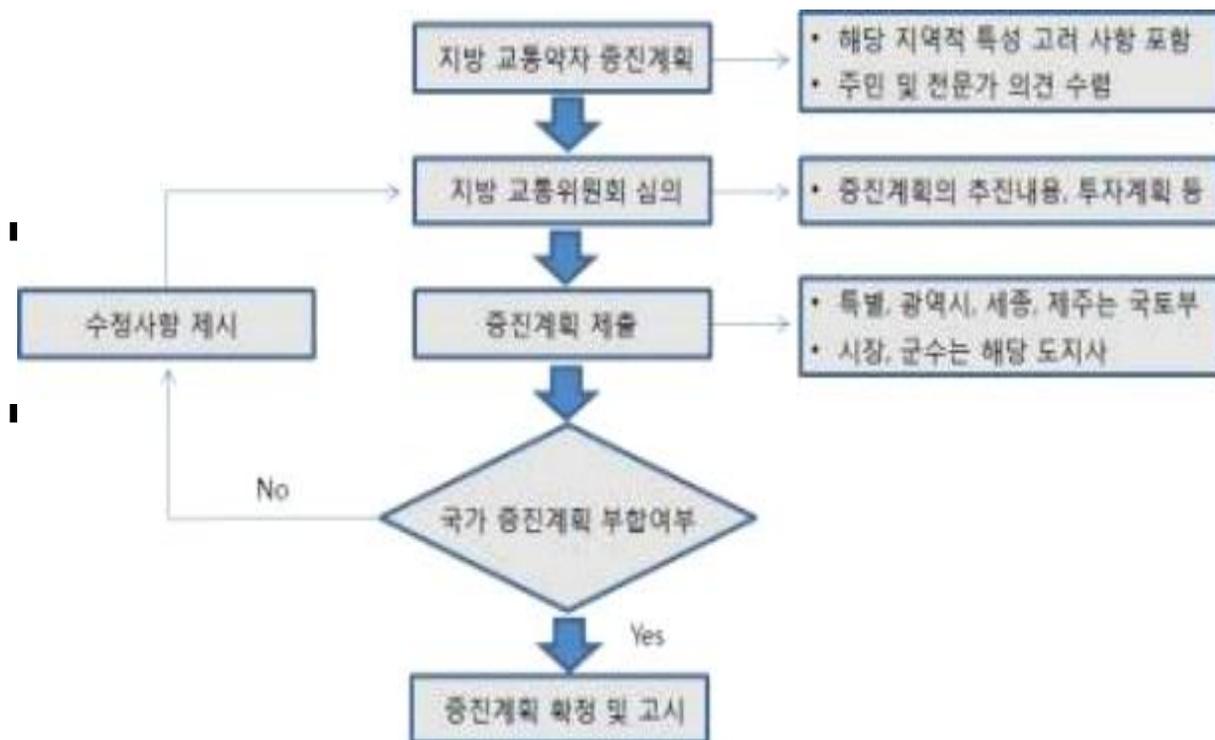
[그림] 교통복지협의체 구성 예 (국토부, 2022)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실행 제고

가. 경상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실행 제고

1) 필요성

- 경상남도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및 도내 지자체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통해 국가 계획의 목표 달성과 경상남도가 전국 최



[그림] 지방 교통약자 증진계획 수립 절차 (국토부, 2022)

IV. 심리적 장애를 없는 환경 조성

1.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강화

가. 교통약자 서비스교육 관리 강화

1) 필요성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안전성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맞출 수 있도록 운전자의 교육강화가 필요하며 고령자와 어린이, 임산부가 많이 이용하는 시내, 시외버스 운수종사자들까지의 교육 확대가 필요함
- 현재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교육)」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교육메뉴얼은 전무한 실정임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차내 안전성, 서비스 증진을 위해 교육 및 서비스 메뉴얼을 제작 및 배포할 필요가 있음

[그림] 창원시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전원 특별교육(2017.12.6.~8)



[그림]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 교육 (2022.8.16.)

2) 추진방안

-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메뉴얼은 경상남도가 내용을 제작하여 2023년까지 18개 시·군에 전달하고 시·군 지자체에서 인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게 설명 및 배포를 추진함

- 특별교통수단 및 시내/시외버스 운전자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강화 방안을 2023년까지 수립한 후 2024년부터 18개 시·군 전체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본 사업은 경상남도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메뉴얼 작성 및 교육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2. 포용적 교통복지 문화 조성

가. 경남도민 교통약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및 배려문화 조성

1) 필요성

-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휠체어 이용자의 저상버스 이용률은 매우 저조
- 지역 내 외출 시 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약 52.4%였으나, 휠체어 이용자 중 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약 10.9%로 큰 차이(국토부, 2022)
- 많은 휠체어 이용자들(27%)이 저상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불친절’ 및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응답(국토부, 2022)
- 제4차 국가계획의 추진계획으로 경상남도 교통 복지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 필요

2) 추진방안

- 경남도민과 대중교통 종사자들이 교통약자를 이해하고 돕는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
-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이동권에 대하

여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모전 시행

- UCC, 웹툰, 포스터, 슬로건, 사진, 아이디어 등 공모전 시행으로 시민참여 유도

- 교통수단별(버스, 철도, 항공기, 선박 등) 교통약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 경험 등을 활용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자료(영상, 포스터, 리플렛 등) 제작·보급

- 언론(TV·신문), SNS(Youtube 등), 옥외광고,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전광판 등을 통한 인식개선 홍보자료 배포

- 교통복지협의회를 통해 교통행정기관,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사업자 등과 협업하여 교육 및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

-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약자 및 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체계 구축
-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사업자는 매뉴얼을 활용한 교통약자 및 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통약자 이해 및 고객응대에 관한 교육 등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집합, 이론 및 실습교육 강화
- 승강장 및 여객터미널 등 미디어 장치를 활용한 교통약자를 위한 대국민 홍보, 교통약자 배려 캠페인 시행

[그림] 부산MBC 교통약자 배려 캠페인 유튜브 동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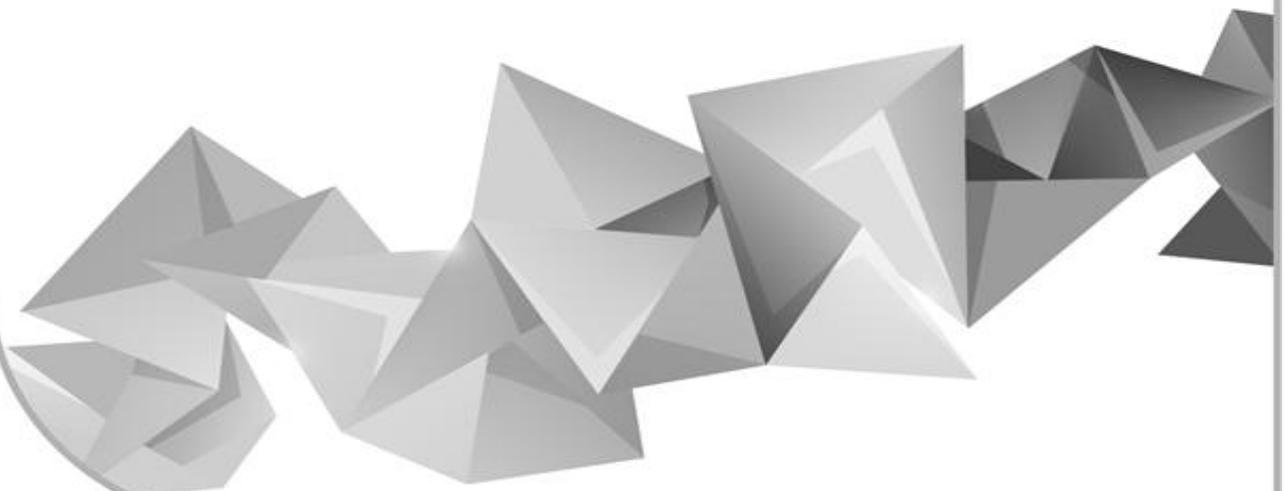
제5장

예산 및 투자계획

제1절 소요사업비 검토

제2절 투자계획

제3절 투자자원 분담방안



제5장 예산 및 투자계획

제1절 소요사업비 검토

1. 소요사업비 산정의 전제

- 소요사업비 산정을 위해 “경상남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경상남도, 2018.04)” 및 국가 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국토부, 2022.10)”을 기초로 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의거,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은 국비50%, 지방비 50%를 기준으로 산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6항에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저상버스 도입 비용처럼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비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국토교통부, 2022.10)을 기준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를 기준으로 산정함
- 지방비의 경우, 도비와 시군비는 각 시군의 재정여건(재정자립도)을 기준으로 도비지원 비율을 차등 설정(30~50%)
-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2에

의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운행 및 관리권자인 해당 시·군에서 전액 부담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설치사업은 각 시·군별 재정으로 담당하고, 경상남도에서는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증차 및 대폐차, 전기충전소 확충 등에 대해서 지원함

2. 지원금 및 사업비

- 저상버스 구입 지원비 시지역의 시내버스인 대형은 100백만원, 군단위 농어촌/마을버스로 사용하는 중형은 50백만원, 특별교통수단은 40백만원으로 산정
-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매뉴얼 제작/디자인 비용은 5백만원으로 산정(인쇄 및 배포는 각 지자체)

[표5-1] 지원금 및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내역	가격	지원금(국비)	비고
시내버스	대형 저상버스	200	100	대당, 국비 50%
농어촌/마을버스	중형 저상버스	100	50	대당, 국비 50%
전기버스충전기	전기버스차량충전	20	-	대당
특별교통수단	스타렉스 휠체어	40	20	대당, 국비 50%
광역이동지원센터	1인 증가 비용	50	-	연간
포용적복지문화	홍보비	500	-	5년간
교육 매뉴얼	제작 용역비	5	-	내용만 제작 인쇄 및 배포 지자체

※현대자동차 슈퍼에어로시티 CNG : 21508만원 ≒ 200백만원

중형 저상버스 가격 : 10백만원 (국토부, 제3차 증진계획)

현대자동차 2021 그랜드 스타렉스 휠체어 : 3854만원 ≒ 40백만원

교육매뉴얼 제작 : 특별교통수단 내용 작성 및 디자인 용역비 5백만원

3. 소요사업비

가. 저상버스

구분		연도별 도입대수						총사업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29,500백만원
경남 전체	시내버스	575	115	115	115	115	115	115,000
	농어촌버스	100	20	20	20	20	20	10,000
	마을버스	45	9	9	9	9	9	4,500
창원시	시내버스	245	49	49	49	49	49	49,000
	농어촌버스							0
	마을버스	10	2	2	2	2	2	1,000
진주시	시내버스	90	18	18	18	18	18	18,000
	농어촌버스							0
	마을버스							0
통영시	시내버스	35	7	7	7	7	7	7,000
	농어촌버스							0
	마을버스	5	1	1	1	1	1	500
사천시	시내버스	10	2	2	2	2	2	2,000
	농어촌버스							0
	마을버스							0
김해시	시내버스	75	15	15	15	15	15	15,000
	농어촌버스							0
	마을버스							0
밀양시	시내버스	10	2	2	2	2	2	2,000
	농어촌버스							0
	마을버스	5	1	1	1	1	1	500
거제시	시내버스	40	8	8	8	8	8	8,000
	농어촌버스							0
	마을버스	0	0	0	0	0	0	0
양산시	시내버스	70	14	14	14	14	14	14,000
	농어촌버스							0
	마을버스	20	4	4	4	4	4	2,000
의령군	시내버스							0
	농어촌버스	5	1	1	1	1	1	500
	마을버스	0	0	0	0	0	0	0
함안군	시내버스							0
	농어촌버스	15	3	3	3	3	3	1,500
	마을버스	0	0	0	0	0	0	0
창녕군	시내버스							0
	농어촌버스	10	2	2	2	2	2	1,000
	마을버스							0

구분	연도별 도입대수						총사업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29,500백만원
고성군	시내버스						0
	농어촌버스	10	2	2	2	2	1,000
	마을버스						0
남해군	시내버스						0
	농어촌버스	10	2	2	2	2	1,000
	마을버스	5	1	1	1	1	500
하동군	시내버스						0
	농어촌버스	5	1	1	1	1	500
	마을버스						0
산청군	시내버스						0
	농어촌버스	5	1	1	1	1	500
	마을버스	0	0	0	0	0	0
함양군	시내버스						0
	농어촌버스	10	2	2	2	2	1,000
	마을버스	0	0	0	0	0	0
거창군	시내버스						0
	농어촌버스	15	3	3	3	3	1,500
	마을버스						0
합천군	시내버스						0
	농어촌버스	15	3	3	3	3	1,500
	마을버스						0

나. 전기버스충전기

구분	연도별 도입대수						총사업비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1,120백만원
경남 군부	56	14	11	10	7	14	1,120
의령군	3	1	-	1	-	1	60
함안군	8	2	2	1	1	2	160
창녕군	5	1	1	1	1	1	100
고성군	5	1	1	1	1	1	100
남해군	8	2	2	1	1	2	160
하동군	3	1	-	1	-	1	60
산청군	3	1	-	1	-	1	60
함양군	5	1	1	1	1	1	100
거창군	8	2	2	1	1	2	160
합천군	8	2	2	1	1	2	160

다. 특별교통수단

구분	연도별 도입대수						총사업비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4,640백만원
경남 전체	116	11	20	27	28	30	4,640
창원시	20	2	2	3	3	10	800
진주시	1	-	-	-	-	1	40
통영시	1	-	-	-	-	1	40
사천시	4	-	1	1	1	1	160
김해시	1	1	-	-	-	-	40
밀양시	0	-	-	-	-	-	0
거제시	8	-	2	3	3	-	320
양산시	11	2	2	3	3	1	440
의령군	4	-	1	1	1	1	160
함안군	12	2	2	2	3	3	480
창녕군	7	-	1	2	2	2	280
고성군	11	-	2	3	3	3	440
남해군	9	1	2	2	3	1	360
하동군	8	1	1	2	2	2	320
산청군	4	1	1	1	1	-	160
함양군	6	1	1	2	1	1	240
거창군	4	-	1	1	1	1	160
합천군	5	-	1	1	1	2	200

다. 광역이동지원센터

구분	연도별						총사업비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8,050백만원
경상남도	5	1,500	1,550	1,600	1,650	1,750	8,050

라. 교육 매뉴얼

구분	연도별						총사업비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5백만원
경상남도	5	-	5	-	-	-	5

마. 포용적 복지문화 조성

구분	연도별						총사업비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500백만원
경상남도	500	-	100	100	100	200	500

제2절 연차별 투자계획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2022~’2026) 기간 시·군별 연차별 투자금액은 다음과 같음
 - 총 사업비 : 143,815백만원
 - 국비 : 67,070백만원 / 지방비 : 76,745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경남	국비	13,170	13,350	13,490	13,510	13,550	67,070
	지방비	14,950	15,225	15,390	15,400	15,780	76,745
창원시	국비	5,040	5,040	5,060	5,060	5,200	25,400
	지방비	5,040	5,040	5,060	5,060	5,200	25,400
진주시	국비	1,800	1,800	1,800	1,800	1,820	9,020
	지방비	1,800	1,800	1,800	1,800	1,820	9,020
통영시	국비	750	750	750	750	770	3,770
	지방비	750	750	750	750	770	3,770
사천시	국비	200	220	220	220	220	1,080
	지방비	200	220	220	220	220	1,080
김해시	국비	1,520	1,500	1,500	1,500	1,500	7,520
	지방비	1,520	1,500	1,500	1,500	1,500	7,520
밀양시	국비	250	250	250	250	250	1,250
	지방비	250	250	250	250	250	1,250
거제시	국비	800	840	860	860	800	4,160
	지방비	800	840	860	860	800	4,160
양산시	국비	1,640	1,640	1,660	1,660	1,620	8,220
	지방비	1,640	1,640	1,660	1,660	1,620	8,220
의령군	국비	50	70	70	70	70	330
	지방비	70	70	90	70	90	390
함안군	국비	190	190	190	210	210	990
	지방비	230	230	210	230	250	1,150
창녕군	국비	100	120	140	140	140	640
	지방비	120	140	160	160	160	740
고성군	국비	100	140	160	160	160	720
	지방비	120	160	180	180	180	820
남해군	국비	170	190	190	210	170	930
	지방비	210	230	210	230	210	1,090
하동군	국비	70	70	90	90	90	410
	지방비	90	70	110	90	110	470
산청군	국비	70	70	70	70	50	330
	지방비	90	70	90	70	70	390
함양군	국비	120	120	140	120	120	620
	지방비	140	140	160	140	140	720
거창군	국비	150	170	170	170	170	830
	지방비	190	210	190	190	210	990
합천군	국비	150	170	170	170	190	850
	지방비	190	210	190	190	230	1,010

제3절 투자재원 분담방안

1. 도비 및 시·군비 분담 관련 규정

가. 경상남도 18개 시군의 경비 분담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9.7.26.)

- 1) 목적(제1조) :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에 의한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정하고 기타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
- 2) 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제2조) :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은 별표와 같이 하되,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며(제1항), 시·도지사는 사업 별로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의 재정자주도 등을 감안하여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이를 차등지원할 수 있음(제2항)
- 3) 별표상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지원내용은 없으므로 사업별로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의 재정자주도 등을 감안하여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이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함 : 별표상 시·군 구분이 없으며, 특별한 몇몇 항목에 있어서 도비지원이 100%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50% 지원이며, 30%와 70% 지원항목도 일부 있음

-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1) 목적(제1조) :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 까지에 따라경상남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 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2) 보조대상사업(제4조) :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보조할 수 있음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시·군 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보조율(제23조 제1항) : 시·군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사업별로 도지사가 따로 정함
- 4) 차등보조율의 적용(제24조) : 도지사는 매년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별표의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음
- 5) 별표상의 차등보조율 적용기준 :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아래 재정자주도 및 재정자립도 산식에 의거 매년 도지사가 정함

나. 투자재원 도비 및 시군비 분담방안(재정자립도에 의한 방법)

- 경상남도 시군별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비 및 지방비 분담비율
 - 국비와 지방비 분담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방비 중 도비와 시군비 분담비율 :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

- 경상남도 시군별 재정자립도(2021년) 현황
 - 재정자립도 30% 이상 : 창원(1)
 - 재정자립도 20% 이상 : 김해, 양산, 거제, 진주(4)
 - 재정자립도 15% 이상 : 함안, 밀양, 사천(3)
 - 재정자립도 10% 이상 : 통영, 창녕, 하동, 고성(4)
 - 재정자립도 10% 미만 : 함양, 산청, 의령, 합천, 거창, 남해(6)

구분	2021년			순위
	자치단체규모	자체수입	자립도(%)	
창원시	2,686,566	926,769	34.5	1
김해시	1,542,322	444,943	28.8	2
양산시	1,217,922	330,108	27.1	3
거제시	871,158	184,857	21.2	4
진주시	1,264,431	253,198	20	5
함안군	517,492	83,610	16.2	6
밀양시	766,217	122,781	16	7
사천시	640,764	101,811	15.9	8
통영시	644,929	77,559	12	9
창녕군	517,017	61,865	12	10
하동군	610,751	65,947	10.8	11
고성군	521,555	53,276	10.2	12
함양군	495,283	47,652	9.6	13
산청군	458,842	42,890	9.3	14
의령군	356,036	30,456	8.6	15
합천군	576,234	46,862	8.1	16
거창군	584,502	45,441	7.8	17
남해군	425,516	30,084	7.1	18

- 경상남도 시군별 재정자립도(2017년)에 따른 도비와 시군비 분담비율
 - 재정자립도 20% 이상 5개 시지역 : 도비 30%, 시비 70%
 - 재정자립도 10% 이상 7개 시군지역 : 도비 40%, 시군비 60%
 - 재정자립도 10% 미만 6개 시군지역 : 도비 50%, 시군비 50%

다. 투자재원 도비 및 시군비 분담방안(시·군 구분에 의한 방법)

- 군지역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고 노령인구 비율 등 여건이 유사하므로 군지역과 시지역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도비분담 비율을 구분
- 경상남도 시군별 구분에 따른 도비와 시군비 분담비율
 - 8개 시지역 : 도비 40%, 시비 60%
 - 10개 군지역 : 도비 50%, 군비 50%

라. 투자재원 도비 및 시군비 분담방안(균등지원 방법)

- 군지역의 여건이 열악하나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수요가 비교적 적은 반면, 시지역은 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등 여건이 우수하나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수요가 비교적 많아 재정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시군별 구분 없이 균등하게 지원하는 방안
- 경상남도 시군별 균등지원에 따른 도비와 시군비 분담비율
 - 18개 시군지역 : 도비 50%, 시군비 50% 균등분담

마. 투자재원 도비 및 시군비 분담방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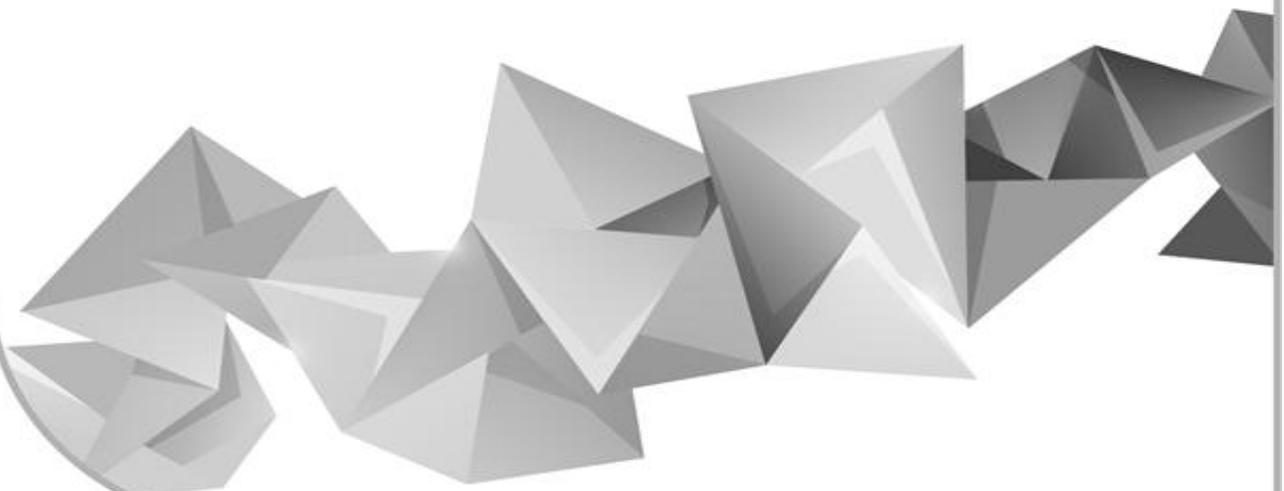
방안	형평성	균형발전	제4차 증진계획 목표실현가능성	종합점수
1.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지원	1	3	3	7
2. 시·군 차등지원	1	2	2	5
3. 균등지원방안	3	1	1	5

제6장

부록

제1절 중간 및 최종보고서 주요의견 및 조치사항

제2절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제6장 부록

제1절 중간 및 최종보고서 주요의견 및 조치사항

1. 중간보고서 주요의견 및 조치사항

- 중간보고회 개최 일시 : 2022. 11. 24 10시 30분 ~ 12시
- 중간보고회 개최시 제시의견 및 조치사항

기관	주요의견	조치사항	반영여부
경상남도 (남영수)	버스차량, 정류장, 보행환경 등 이동편의 실태조사 시군별 상세 자료 첨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료수취후 반영	반영 (P.72, P.88, P.125,P.135)
한국도로교통 안전공단 (홍성민)	보행환경 개선 공모사업은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비로 진행 해야함	보행환경 개선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비로 수정	반영 (P.204)
	저상버스 확대를 위한 CNG/전기 충전소 등 소외지역 충전 인프라 구축 필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친환경 충전시설 지원	반영 (P.183)
	시외버스 차량리프트 장착 및 터미널 내 보행접근로 개선 공모사업을 국토부에서 시행중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버스 도입 추가	반영 (P.181)
	광역이동지원센터 차량도입비 및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방안 수립중이며 바우처 택시 및 임차 택시 확대방안 검토	바우처택시 확대방안 보고서 반영, 임차택시의 경우 현재 국토부의 평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부분으로 국비지원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의 확대가 우선으로 보임	부분 반영 (P.194)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인구 10만 이하 지자체 중증 100명당 1대로 '23년중 시행예정	특별교통수단 도내 인구 10만 이하 지자체 중증 100명당 1대로 수정 보완	반영 (P.190)	

기관	주요의견	조치사항	반영여부
도로교통공단 (신재승)	교통복지문화 조성분야의 반영 및 예산편성	포용적 교통복지 문화조성 분야 추가	반영 (P.252)
	버스승강장 관련 개선 필요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개선분야 추가	반영 (P.214)
	교통약자 중 장애인 보호구역 부족, 개선 필요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분야 추가	반영 (P.205)
경상남도 (석욱희)	정책과제의 구체화 필요 및 구체적 사례, 사진 등 첨부	정책과제와 세부 정책과제로 나누어 구체화 및 예시 및 사례사진 첨부	반영 (P.171 및 전반)

2. 최종보고서 주요의견 및 조치사항

■ 최종보고회 개최 일시 : 2022. 12. 12 10시 30분 ~ 12시

■ 최종보고회 개최시 제시의견 및 조치사항

기관	주요의견	조치사항	반영여부
경상남도 (석욱희)	대중교통이외의 자가용이용 교통약자 편의증진도 고려(장애인 주차장 관리 등)	승용차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개선 추가	반영 (P.207)
경상남도 (김창용)	CNG충전소는 실효성이 없으니 충전소 확대안에서 전기/수소 등 충전소로 변경	친환경 충전소 확대로 수정 및 보완	반영 (P.183)
한국도로교통 안전공단 (홍성민)	임차택시 도입의 적극 검토 향후 특별교통수단으로 반영 검토중	현재 특별교통수단으로 반영되지 않으며 임차택시 도입시 운영방식이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하나 국비 지원 등이 없음	미반영

기관	주요의견	조치사항	반영여부
한국도로교통 안전공단 (홍성민)	수어 통역의 경우 영상 수화통역장치 설치로 개선가능	화상 수화통역장치로 개선 추가	반영 (P.223)
	교통약자관련 교육시 국토부의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가이드라인 참고	부록에 국토부의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첨부	반영 (P.274)
도로교통공단 (신재승)	보도 턱 낮추기 15cm이하 여부를 평가하나 15~25로 현재 개정중	BF규정에 맞추어 15~25cm으로 수정	반영 (P.215)
경상남도 (박지호)	보고서 내 그림하단 설명 필요	보고서 그림 하단 상세설명 첨부	반영 (보고서 전반)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2019. 3.



목 차

[요약]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1
1. 운행관리자 준수사항	3
가. 운전자 자격 관리	3
① 운전자 현장배치 전 기본 자격 확인	3
② 운행 전 운전자 승무준비 상태 점검	5
나. 운전자 교육 활동 지원	6
① 탑승자 응대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 교육 실시	6
② 차량 운용에 필요한 업무요령 교육 실시	7
다. 운전자 보호 관리	7
라. 기존 운행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조치	8
2. 운전자 준수사항	10
가. 차량 운용 시 안전관리	10
① 탑승객 승차 시	10
② 차량 주행 시	13
③ 탑승객 하차 시	14
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 운전	15
① ‘급’이 붙는 운전 지양	15
② 안전한 속도와 충분한 차간거리 유지	15
③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16
④ 운전자 의무 및 준수사항	16
다.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사항 숙지	20
① 경미한 접촉 사고	20
② 사상자 발생 사고	21
# 별첨 1~3. 대상자별 준수사항 (각 1p)	22

[요약]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차내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운행관리자와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운행 지침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필요성

-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안전성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현장민원* 증가에 대한 대응 및 사전 예방

*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저하, 운전자-이용자 마찰 등 민원 발생

-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개별 지자체에 따라 현장 매뉴얼이 서로 상이하거나, 안전운행 지침이 부재한 경우 존재

- ☞ 운전자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고, 특별교통수단 안전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작성 방향

- (운행관리자 준수사항) 운전자 자격 관리(소양 및 기본자격), 운행 준비 상태 점검, 운전자 교육 실시 및 근로여건 개선 등
- (운전자 준수사항) '승차-주행시-하차' 단계별 준수사항, 이용자 보호 및 긴급상황 대응 등 안전운행을 위한 지침

* 항상 숙지할 수 있도록 1페이지로 요약된 준수사항 제시 (별첨 1~3)

□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운행관리자 준수사항

- (운전자 자격관리) 기본자격 및 운행 준비 상태 점검
 - 운전자 채용·배치 시 **결격사유** 및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등 확인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종사자 대상 법정 필수 자격시험
 - **교통안전관리 전담인력*** 지정 등을 통한 차량·운전자 관리, 운행 상태 점검 및 확인
 - *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등
- (운전자 교육 및 보호 관리) 교육활동 실시 및 근로여건 개선 등
 - 정기·비정기 단위 운전자 대상 서비스 및 **업무요령 교육** 실시
 - 운전자의 **과로 예방**을 위하여 근로여건 및 적정 휴식시간 보장
 - 이용자와의 마찰 예방 등 운전자 보호 조치 이행, **이용자 준수 사항** 차내 게시 등
- (기존 운행차량* 안전성 확보) 차량 보강 개조 또는 감속운행 권고
 - * 신설된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정, '19.2.8)」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운행 중 차량

운전자 준수사항

- (차량 운용시 안전관리) '승차 - 주행 시 - 하차' 단계별 준수사항
 - (승차) 올바른 탑승설비 및 안전장치 운용, 장치 체결상태 확인 등
 - (주행) 급출발/급제동 지양, 주행속도·차간거리 준수 등
 - (하차) 안전한 장소 정차, 차량 주변 사각지대 주의 등
- (안전 운전 지침) 이용자 보호, 긴급 상황 대응 등 제시
 - 음주·과로 운행 금지, 휴대폰 사용 금지 등 차량 운행 의무사항
 - 눈·빗길, 교차로 통행 방법, 기타 도로교통법상 준수사항 및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사항 등

1 운행관리자 준수사항

가. 운전자 자격 관리

① 운전자 현장배치 전 기본 자격 확인

□ 운전자 자격사항 점검

○ 운행관리자는 운전자를 채용하여 현장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데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

- 운전자의 면허* 소지 여부, 관련 교통법규 숙지 여부

* 자동차운전면허, 택시운전면허 등 운전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 OO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면허경력, 교통사고, 교통위반)

- 기타 장애인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요한 인성 및 기본 소양

□ 운전적성 정밀검사 실시 및 운전자 수검 여부 점검(필요시)

○ 운전자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운전자 채용 및 현장 배치 시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실시하거나, 수검 여부 점검 가능

* 운전 중 나타날 수 있는 성격, 행동, 심리, 생리적인 특성 등을 검사

-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운수사업법*에 근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 과정으로 별도 의뢰를 통해 실시 가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운전적성 정밀검사 구분 및 대상자 》

구분	대상자
 <신규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로 여객운송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화물자동차운수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제외 -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자. 다만, 화물취업자는 무사고이면 유효함
 <특별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중 중상이상의 사상 사고를 일으킨 자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자격유지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자동차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70세 이상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한다)
 <군 운전적성정밀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운전병 지원자, 군 운전직에 종사하는 장병 및 군무원

□ 운전자 기본 소양 및 자격 관리

- 운행관리자는 장애인 교통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운전자의 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
 -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전문교육훈련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집합·사이버 교육 등(사회복지와 인권, 장애와 인권, 서비스 이용권 보장 교육 등)
- 양질의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전자의 기본 소양과 자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② 운행 전 운전자 준비 상태 점검

□ 운전자 상태 확인 및 조치

- 운행관리자는 전일 운행일지를 검토하고, 음주측정기를 통해 숙취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며, 예약배차 등 당일 운행업무와 관련한 질의 등을 시행
- 안전운전 방법, 탑승자를 대하는 자세 등 운전자 준수사항 관련 기초(약식)교육 실시
- 운전자 운행 부적격 여부를 점검한 결과, 운행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당일 운행 제한 또는 휴식을 유도

□ 안전운전 교통안전관리 전담인력 지정(필요시)

- 센터 규모 및 안전관리업무 강도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인력*(교통안전담당자 등)을 지정 가능

* 「교통안전법」 제5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에 근거

「교통안전법」 제5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지정 방법 및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①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보존
2.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항행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의 지도·감독
3. 교통시설의 조건 및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 운행등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전자등의 운행등 중 근무상태 파악 및 교통안전 교육·훈련의 실시
5. 교통사고 원인 조사·분석 및 기록 유지
6.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의 점검 및 관리

나. 운전자 교육 활동 지원

구분		교육활동
필수 서비스 교육	정기교육	- 운전자 기초 준수사항 - 탑승자에 대한 서비스 자세 - 긴급 상황 시 응급처치 방법
	비정기교육	- 특별교통수단 사고 및 운행 관련 이슈사항 알림
업무요령 교육	정기교육	- 차량 관리 요령 - 차래 장치 운용 및 관리 요령

① 탑승자 응대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 교육

(정기) 운전자 기초 준수사항

-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안전한 운행 및 탑승자 응대 등과 관련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7대 준수사항(별첨2)' 교육

(정기) 탑승자에 대한 서비스 자세

- 교통약자를 대하는 운전자의 자세와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탑승자의 장애유형·성별·개인특성별 대응 요령 등을 운행관리자 주관 또는 외부 전문강사 활용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정기) 긴급 상황 시 응급처치 방법

- 특별교통수단 차량고장, 단말 및 안전장치 파손(기능불가),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운전자로서 대처해야하는 방안과

절차 등을 운행관리자 주관 또는 외부 전문강사 활용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 (비정기) 특별교통수단 사고 및 운행 관련 이슈사항 알림

- 특별교통수단 관련 사회적 이슈사항이 발생하거나, 센터 자체 운영 관련 특이사항(사고사례, 주요 민원사항, 운영방법 개선 등) 등을 운행관리자 주관 하에 비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② 차량 운용에 필요한 업무요령 교육

□ (정기) 차량 관리 요령

- 일반적 차량정비 상식과 운행 중 차량 이상감지(핸들떨림, 냄새, 경고등 발생 등) 시 응급조치 요령, 계절별 차량관리 방안 등을 운행관리자 주관 또는 외부 전문강사 활용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 (정기) 차내 장치 운용 및 관리 요령

- 리프트·슬로프 등 휠체어 승강설비로부터 휠체어 고정장치, 탑승객 구속장치, 탑승객 손잡이까지 차내 모든 안전장치를 대상으로 올바른 운용 방법과 주의사항, 관리 절차 등을 운행관리자 주관 또는 제작사측 협조(필요시) 하에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대상 정기/상시 교육 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다. 운전자 보호 관리

- 걱정 휴식 보장 및 근로여건 개선
 - 운행관리자는 졸음운전의 원인이 되는 운전자의 과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운전자에게 걱정 휴식시간을 보장
 - 양질의 운행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운전자의 업무적 고충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현장 민원 해소를 위하여 노력
- 운전자 보호책 강구
 - 운전자가 탑승자 또는 동승자 등 제3자로부터 비인격적, 비신사적 폭언이나 폭행,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구
 - 특별교통수단 운행 관련하여 운전자와 이용자간 마찰이 발생하거나, 혹은 운전자가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 대비하여 운전자의 보호와 올바른 현장 대응을 위한 행동지침 등을 마련
- 탑승자 준수사항 게시 및 알림
 - 휠체어 고정장치 및 구속장치 체결, 전동스쿠터 탑승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탑승자와 운전자 간의 불필요한 다툼이나 마찰을 예방
 - 이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탑승자 준수사항을 게시하고, 장치 체결 관련 운전자의 도움에 적극 협조해야 함을 고지
 - 운행관리자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탑승객이 소지할 수 있는 화물을 사전에 고지
 - 각 지자체에서 마련하여 운용중인 택시운송약관 내 화물 규정을 준용 하되,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별도 적재함(트렁크)이 없기에 소지할 수 있는 화물의 크기, 부피 등은 별도 규정

라. 기존 운행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 조치

- '특별교통수단 내부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공포
(19.7.1 이후부터 시장·군수가 신규로 도입하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적용)

* 특별교통수단 내부 장치인 휠체어 고정장치, 탑승객 안전띠 등에 대한 안전기준 규정

** 국토교통부령 제592호, 2019. 2. 8., 일부개정, 「별표 1의2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

- 신설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차량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 조치(감속 운행, 차량 개조 등) 이행 필요

- 특별교통수단 차량 감속 운행

- 적정 주행속도 준수 및 차간거리 확보를 위한 운전자 교육 필요

- 특별교통수단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하여 차량 주행속도 50km/h 제한, 차간거리* 25m 이상 확보 필요

* 차량이 50km/h 속도로 주행 중 급정거 시, 통상 약 2.24초 후 정지하게 되며, 이때 차량 이동거리(제동거리)는 약 21m로 차간거리 25m 이상 확보 시 충돌 사고 예방이 가능

[참 조]

- 운전자 상황 인지 및 브레이크 작동 시 까지 소요시간(인지반응 시간) : 0.8초

- 브레이크 작동 후 정지 시까지 소요시간(제동시간) : 1.44초*

* 주행속도 50km/h(13.9m/s) ÷ 평균 감속도 9.6m/s² 기준

⇒ 운전자 '인지-반응-정지'시 까지 소요시간 2.24초

□ 특별교통수단 차량 보강 개조(Rework) 권장

- 특별교통수단 내 휠체어 고정장치 위치 개선 및 안전띠(3점식) 추가 등 차량 보강 개조

《 기존 특별교통수단 차량 보강 개조 비용 (예시) 》

구분	위치개선	안전띠	계
신형 카니발	90만원	140만원	230만원
스타렉스	120만원	180만원	300만원
올뉴쏘울	100만원		100만원

주) 위 차량 보강 개조(Rework) 비용은 개략적 예시 비용으로써, 특별교통수단 제작 업체마다 다를 수 있음

2 운전자 준수사항

가. 차량 운용 시 안전관리

① 탑승객 승차 시

□ 차량 정차 시 준수사항

- 휠체어 탑승을 위한 승강설비의 작동반경 및 탑승객의 위치를 고려하여 안전한 공간에 차량을 정차
- 탑승객이 보호자(동승자)와 동행할 경우, 운전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안전한 탑승 위치를 지정한 후 차량을 정차



《휠체어 탑승을 위한 승강설비》

□ 승차 준비 시 준수사항

- 운전자는 승강설비의 작동이 완료되었음을 반드시 확인
 - * 승강설비가 수동식 슬로프인 경우, 슬로프와 지면이 만나는 부위에 유격이나 슬로프의 흔들림이 없는지 확인
- 장치 운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조작장치 오작동에 주의
- 휠체어 탑승객이 불안하지 않도록 장치를 주의하여 운용

□ 승차 시 준수사항

- 휠체어 승강설비를 활용하여 휠체어 탑승객을 안전하게 탑승
 - * 탑승객의 보호자(또는 동승자)가 있는 경우, 보호자(동승자)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승차

- 승강설비에 안전장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체결한 후 작동하여야 하며 설비 작동 중 안전장치를 강제로 개방하지 않도록 주의



《승강설비 내 안전장치》

□ 안전장치 체결 및 확인

- 차량 내 휠체어 고정장치를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 후 휠체어가 뒤로 밀리거나,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



《휠체어 고정장치 체결》

- 휠체어 자체 고정장치(핸드 브레이크 등)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작동
- 탑승객이 휠체어로부터 이탈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띠(구속장치)를 반드시 체결



《탑승객 안전띠》

- 휠체어 고정장치는 반드시 휠체어의 프레임과 차내 지정된 위치에 체결하여야 하며, 휠체어 바퀴, 차내 임시 거치부에 체결하는 등의 행위는 일체 금지



《휠체어 고정장치의 잘못된 사용 (사례)》

□ 출발 전, 탑승객 승차상태 및 주변 확인

- 차량 출발 전, 안전벨트와 휠체어 고정장치 등 안전장치 일체에 대한 체결상태를 한번 더 확인
- 휠체어 탑승객에게 불편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차량 출발을 고지
- 휠체어 탑승객 승차 공간 내 고정되어 있지 않은 물건이나 탑승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변을 정리
- 특히, 탑승객이 소지한 물건(화물)의 경우, 탑승객 승차공간에 놓아서는 안되며, 일반 승객용 좌석이나 바닥 등에 보관하고, 가능한 안전벨트로 고정하여 사고 등 긴급상황 시 2차사고를 예방

[참조] 탑승객 승차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사고 유형

- 승차 시 부주의로 보조장치 밖으로 휠체어가 추락하는 사고
- 안전장치를 체결하지 않아, 출발 시 휠체어가 밀려 격벽에 부딪히는 사고
- 문을 닫지 않은 채 급출발하면서 휠체어가 문밖으로 떨어진 사고

② 차량 주행 시

□ 출발/정차 시

- 급출발, 급제동 시 차내 탑승객 상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순간적으로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운전은 지양

□ 차량 주행 시

-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안전속도 또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권고속도를 준수하며, 무리한 끼어들기 등의 난폭운전 지양
- 급정거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소에 안전거리를 여유있게 확보(시속 50km/h 기준, 최소 25m 이상)하는 운전습관

□ 차량 회전/과속방지턱 통과 시

- 차량 회전 시, 탑승객과 휠체어의 무게중심이 크게 흔들려 휠체어 전도 등 발생 가능
- 차량 회전 시 충분한 감속을 선행하여 안전사고 발생 예방
- 과속방지턱은 탑승객에게 큰 충격을 가할 수 있으며, 휠체어가 크게 흔들림에 따라 안전바나 격벽에 머리 또는 가슴을 강하게 부딪혀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감속하여 통과

□ 차량 주행 중 상시 준수사항

- 차내 안전바가 있을 경우, 운행중에는 탑승자가 안전바를 잡고 있도록 고지하고, 운행 중 수시로 확인
- 휠체어 또는 탑승객 안전장치가 풀리거나, 탑승객이 불안정한 상태 인지를 항시 체크
- 차량 운행 중, 전화나 문자 등 운전과 관련 없는 기기의 사용은 긴급상황이 아니면 절대 금지

[참조] 차량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사고 유형

- 급출발, 급제동, 방지턱 앞 과속 등으로 인한 탑승객 부상
- 안전벨트 미착용 또는 안전고리 미체결에 따른 휠체어 전도사고
- 신호대기 정차 중 앞차 후미추돌사고(졸음운전, 휴대전화 사용 등)

③ 탑승객 하차 시

□ 하차 준비

- 휠체어 하차를 위한 승강설비 작동 반경과 하차 후 휠체어 이동 경로를 확인한 후 안전한 곳에 정차
- 탑승객이 보호자(동승자)와 동행할 경우, 운전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안전한 하차 위치를 지정한 후 차량을 정차
- 하차문 개방 후에 탑승객 안전띠와 휠체어 브레이크, 차내 고정 장치를 해제하여야 하며, 하차 시 휠체어 바퀴에 걸리지 않도록 모든 장치를 정리하여 수납
- 운전자는 탑승객 하차를 위한 승강설비의 작동이 완료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
 - * 승강설비가 수동식 슬로프인 경우, 슬로프와 지면이 만나는 부위에 유격이나 슬로프의 흔들림이 없는지 확인

□ 하차 시 준수사항

- 운전자는 승강설비를 활용하여 탑승객을 차량에서 안전하게 하차
 - * 탑승객의 보호자(또는 동승자)가 있는 경우, 보호자(동승자)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하차
- 승강설비에서 진출 시, 탈착 가능한 보호대는 반드시 고정
- 운전자는 탑승객이 하차 후, 최종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로까지 이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여기서, '보행로'란 보도 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생활(이면)도로 등을 의미

□ 하차 후 출발 시 준수사항

- 차량에서 내린 탑승객이 차량주변 사각지대에 들어올 수 있으며, 옷이나 가방 등이 문에 끼일 수도 있으므로 출발 전 반드시 차량 주변을 주의 깊게 확인
- 보이지 않는 부분은 보호자(동승자)를 통해 확인하며, 밖에서 나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운전석 창문을 열고 출발

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 운전

① '급'이 붙는 운전 지양

- 급출발, 급정차, 급가감속, 급핸들조작 등 '급'이 붙는 운전은 탑승객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되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증가
- 교통사고 원인 중 급출발, 급제동 등으로 발생한 사고의 비율이 상당수를 차지

② 안전한 속도와 충분한 차간거리 유지

-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특수차량으로서 무엇보다도 안전운행이 최우선
- 운행 중 도로별로 제한속도가 바뀔 때 자연스러운 가·감속으로 탑승객의 편안한 승차감을 유지
- 앞차와는 충분한 차간거리를 유지하여 돌발 상황 시 앞차가 급정차 하더라도 충분히 인지하고 제동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며 안전운전

- 차간 안전거리 확보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끼어들기로 인해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여유롭게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바람직한 제동방법 : 충분한 차간거리를 두고 브레이크를 가볍게 밟아 브레이크 등을 2~3회 점멸시켜 후속차량에게 신호를 보낸 후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 위치에 정차

③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 앞차가 좌측으로 진로를 바꾸거나 다른 자동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
-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 마주 오는 차의 진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
- 뒤차가 앞지르려고 할 때
- 앞차가 교차로나 건널목 등에서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을 때
- 앞차가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을 때
-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할 때
- 기타 앞지르기 금지 장소 :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고갯마루 부근, 비탈길의 내리막길, 도로가 구부러진 곳

④ 운전자 의무 및 준수사항

□ 운전자의 의무

구분	내용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할 수 없음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누구든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없음 -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 상태의 기준은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신 상태를 뜻하며, 2019년 6월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혈중알코올농도 0.05% → 0.03%)되어 소주 반잔도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못함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Eco-Driving)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됨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여 연료소모와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함
휴대용기기 사용 금지	- 운전 중에는 운전 외 다른 생각을 떨쳐버리고 오로지 운전에만 집중해야 하고, 전화 및 문자 등 운전과 관련 없는 기기의 사용은 긴급 상황이 아니면 절대 금지하여야 함
차량 점검	- 운행 중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의 정비·점검을 성실하게 하고, 특이사항은 운영자에게 보고하여 운행전 즉시 조치하여야 함

□ 안전 운전 요령

구분	내용
<p>빗길에서의 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도 줄이기 - 차간 거리 확보하기(차간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길게 유지) - 낮에도 전조등 켜기 - 엔진브레이크 사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가 오면 브레이크라이닝과 드럼에 물기가 들어가 제동 거리가 길어지며, 급제동 시 타이어 잠김 현상으로 차가 스핀 할 염려가 있고, 수막현상이 일어나 급제동 대신 여러번 조금씩 나누어 밟아주는 펌핑 브레이크나 엔진브레이크를 사용 - 마모된 타이어 교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막현상으로 제동 시 미끄러지기 쉬움, 마모된 타이어를 점검하고 타이어 공기압은 평소보다 10% 이내로 높임 - 물웅덩이에서 속도 낮추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를 지나다가 시동이 꺼지는 경우, 물이 최대한 적게 튀기도록 속도를 줄이고, 저단기어를 사용해 멈추지 않고 한 번에 통과하는 것이 요령이며, 물이 고여 있는 곳을 통과한 후에는 두번 정도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음 - 평상시 와이퍼 관리하기 - 배터리 점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가 올 때에는 평소에 비해 에어컨이나 전조등·와이퍼 등 전기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므로 갑작스럽게 배터리가 방전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 - 침수 등 위험예상지역에는 주·정차 하지 않기
<p>눈길에서의 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거리 확보 및 서행 운전(방어운전) - 급제동 금지와 엔진 브레이크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길에서의 급제동은 차량의 조향력을 잃기 쉬워 급제동을 삼가고, 가급적 감속 시에는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하며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 확보를 통해 서서히 멈추어 추돌사고 예방 : 브레이크를 사용할 때는 미리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서 상태를 확인하고 주위차량에도 주의를 주는 것이 좋음 - 스노우 체인 및 스노우 타이어 사용 - 핸들 등의 과조작(급차선 변경·급가속 등)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들을 급격히 조작하는 급차선 변경은 평소 마른 노면에서의 운전조건보다 어려움이 많아 매우 위험한 상황 유발 - 주간 전조등 점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이 내리는 날에는 낮에도 맑은 날에 비해 어둡기 때문에 주간에도 전조등을 사용하여 방어운전

교차로에서의 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차로 통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 그리고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 :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 : 회전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으면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됨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양보운전이 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자동차 등 통행우선권이 있는 차에 양보 :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에 양보 :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에 양보 :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갈 경우에는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에 양보 - 더욱 안전한 교차로 통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신호라 하더라도 반드시 안전을 확인한 다음 출발 : 교차로에 진입 직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앞에서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라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빠져 나가야 함 : 신호기를 설치한 교차로에 접근할 때는 신호가 잘 보이는 위치로 진입하고 대형차 바로 뒤에서는 신호를 볼 수 없으므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
-----------	--

□ 그 밖의 도로교통법상 준수사항

구분	내용
운전 중 피해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운행 중 일시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한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맹인안내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거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차마통행 방해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서 차량을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운전자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히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운전 시 소음 발생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 차량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 행위를 내버려두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통하여 운전자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차량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 안내 영상 : 운전을 할 때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사항 숙지

① 경미한 접촉 사고

-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사고 현장보존을 위해 스프레이로 노면 흔적을 표시하고, 신속히 차량을 이동주차하여 2차 추돌사고를 예방
- 이때, 탑승객 또는 보호자에게 사고 상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전달하고, 시간이 지체되어 탑승객이 환승 이동을 원할 경우에는, 신속히 이동지원센터(☎ 00-0000-0000)에 연락하여 환승 차량을 호출
- 만일, 탑승객이 시각·청각 복합장애인인 경우, 사고 상황에 대한 인지능력이 낮아, 불안감이 더욱 클 수 있으므로 사고처리에 앞서, 현재 상황과 이후 사고처리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여 탑승객이 불안하지 않도록 선 조치
- 사고 차량의 지속 운행 여부 판단 및 사후 사고처리를 위하여 담당 이동지원센터(☎ 00-0000-0000)와 가입보험사(☎ 0000-0000)에 연락하여 사고 처리 진행

② 사상자 발생 사고

□ 인명사고 발생 즉시 신고 후 구호 활동 실시

-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다툼이 심한 경우, 차량의 심한 파손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는 신속히 이동지원센터(☎ 00-0000-0000)와 가까운 경찰서에 사실을 알려 조치
- * 인명 사고 발생 시, 신고하지 않다가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나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탑승객이 부상을 당한 경우, 운전자는 아래 방법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관할 이동지원센터(☎ 00-00000-0000)에 상황을 전파하여야 하며, 탑승객의 이동이 가능한 상태라면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

* 운전자만으로 사상자 구호가 힘들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지체 없이 신고

교통사고
부상자
응급조치
방법

- 신속히응급구호기관(119) 연락
- 응급처치전 반드시 환자 허락이 필요
-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동의할 거라고 가정된 상태로 처치
-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부상자를 움직이지 않는다.

□ 사고현장 보존과 목격자 확보

- 운전자는 사고 위치를 표시하고 현장을 촬영
- 목격자가 있을 경우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두는 것이 차후 사고처리에 도움
- * 증거 부족 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 있음

□ 2차 추돌사고 예방 활동

-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차량 표식을 설치
- 야간일 때는 후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성광 신호 등을 설치

□ 신속히 보험사에 사고 접수

- 경찰서에 신고와 함께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하여야 하며, 관련 이동지원센터의 업무처리 지시 및 보험사 직원 도움을 통해 사고처리를 진행

별첨 1

운행관리자 준수사항(1p)

특별교통수단 운행관리자 준수사항

1. 특별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과 질 높은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한다.
2. 운전자 현장 배치 시, 운전적성 정밀검사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격요건을 검증한다.
3. 운전자 준수사항, 서비스 자세, 긴급 상황 시 응급처치 방법 등 운전자 서비스 교육을 실시한다.
4. 차량 안전관리, 차내 단말/안전장치 활용, 운행일지 작성 등 업무요령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5. 운전자의 과로/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적정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근로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6. 운전자가 탑승자 또는 제3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7. 특별교통수단 불편 및 개선사항에 대한 탑승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별첨 2

운전자 준수사항(1p)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준수사항

1. 운행 전 차량과 각종 장치의 작동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히 유지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자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 하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3. 탑승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승강 및 안전장치(휠체어 고정/탑승객 구속) 작동 방법을 숙지한다.
4. 승하차 방법을 탑승자에게 자세히 안내하고, 안전하고 편안히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5.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의무를 고지하고, 출발 전 안전띠 착용 여부와 차량문 닫힘 여부를 확인한다.
6. 차량 내 흡연, 음주, 금지약물 복용 등을 아니하며,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 한다.
7. 지정된 탑승객 이외의 자를 승차시키거나, 부당한 요금을 수령하지 않는다.

별첨 3

이용자 준수사항(1p)

특별교통수단 탑승자 준수사항

1. 탑승자는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운전자의 안내와 도움을 받아야 한다.
2. 휠체어는 차량 내 격벽 충돌, 전복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고정장치를 체결해야 한다.
3. 탑승자는 차량 운행 중 휠체어로부터 이탈, 충돌상해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구속장치(안전띠)를 체결해야 한다.
4. 탑승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있어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5. 오물 투기, 흡연 등을 금하고, 차량 내부를 청결히 유지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하며, 운전자에게 심부름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6. 전동스쿠터의 경우 안전을 위해 휠체어석에 격납, 이용자는 운전자가 지정한 좌석에 반드시 착석한다.

특별교통수단 탑승자 준수사항

3. 탑승자는 차량 운행 중 휠체어로부터 이탈, 충돌상해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구속장치(안전띠)를 체결해야 한다.

3. 탑승자는 차량 운행 중 휠체어로부터 이탈, 충돌상해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속장치(안전띠)를 체결해야 한다.

단, 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승차하는 때에는 별도의 구속장치(안전띠 등)를 체결할 수 있다.

6. 전동스쿠터의 경우 안전을 위해 휠체어석에 격납, 이용자는 운전자가 지정한 좌석에 반드시 착석한다.

6. [1안] 전동스쿠터의 경우 안전을 위해 휠체어석에 격납, 이용자는 운전자가 지정한 좌석에 반드시 착석한다.

단, 운전자가 지정한 좌석에 착석하기 현저히 곤란한 이용자는 전동스쿠터에 착석할 수 있다.

[2안] <삭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7] [행정안전부령 제211호, 2020. 11. 27, 일부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 12. 31., 2018. 9. 28.>

1.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때

도로교통법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11호, 2020. 5. 26, 일부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18. 3. 27.>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18. 3. 27.>